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욕구조사 종합보고서**

제 출 문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욕구조사”에 관한 연구의 종합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 21.

책임연구원	정 용 충	
연구원	김 현	
	김 재 원	
	양 인 숙	
	조 숙 경	
	차 현 미	
	박 종 두	
	신 문 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욕구조사 종합보고서

2021. 12. 21.

책임연구원

정 용 충(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연구원

김 현(청운대학교 교수)

김 재 원(서정대학교 교수)

양 인 숙(동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센터장)

조 숙 경(서경대학교 교수)

차 현 미(마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 종 두(KCF153교육복지연구소 연구원)

신 문 영(KCF153교육복지연구소 연구원)



Contents 목차

연구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 목적	3
3. 연구수행체계	4
II. 발달장애인 특성 및 관련 정책	5
1.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특성	5
2. 발달장애인 문제의 시대적 흐름과 주요 쟁점	21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45
4.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78
III.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인구 및 정책 현황	103
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현황	103
2.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정책 현황	108
IV.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15
1. 설문조사 개요	115
2. 연구 분석 결과	118
V. 결론 및 제언	115
참고문헌	115
부록1. 설문지(장애인 당사자용)	103
부록2. 설문지(장애인 보호자용)	108
부록3. 설문지(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03
부록4. 설문지(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108

표 목차

〈표 1.1〉 연구수행체계	4	〈표 2.27〉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54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5	〈표 2.28〉 전국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56
〈표 2.2〉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7	〈표 2.29〉 연령대별 발달장애인 현황	56
〈표 2.3〉 지역별 발달장애인 규모	8	〈표 2.30〉 국내 발달장애 분야의 PNNC 세부 군집별 키워드	63
〈표 2.4〉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	12	〈표 2.3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65
〈표 2.5〉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후, 정신적 장애 비교	14	〈표 2.32〉 N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 내용	69
〈표 2.6〉 지적장애의 구분	17	〈표 2.33〉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70
〈표 2.7〉 지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	18	〈표 2.34〉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71
〈표 2.8〉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심각도 수준	19	〈표 2.35〉 자기결정 영역별 하위요소	73
〈표 2.9〉 2000년 이전 장애인 관련법과 주요내용	24	〈표 2.36〉 평생교육 6대 영역별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의 방향성	74
〈표 2.10〉 2000년~2010년 장애인 관련법과 주요내용	25	〈표 2.37〉 장애인 관련 주요법률	80
〈표 2.11〉 2011년~2021년 장애인 관련 법과 주요내용	26	〈표 2.38〉 경기도 장애인 관련 주요조례	83
〈표 2.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27	〈표 2.39〉 평생교육법 주요 개정사항	88
〈표 2.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30	〈표 2.4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92
〈표 2.14〉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중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내용	34	〈표 2.41〉 역할분담체계 및 지역 관련기관의 역할	94
〈표 2.15〉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주요내용	35	〈표 2.42〉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 주요 추진과제	95
〈표 2.1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용어 및 개념	38	〈표 2.43〉 경기도 장애인복지계획 비전에 따른 분과별 과제	100
〈표 2.1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40	〈표 3.1〉 의정부시 장애인 현황	103
〈표 2.18〉 중증발달장애인 직무체험프로그램 수행기관	41	〈표 3.2〉 경기도 장애인 현황	104
〈표 2.19〉 발달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수행기관	41	〈표 3.3〉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	106
〈표 2.20〉 발달장애인 사회적 증진사업 수행기관	41	〈표 3.4〉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현황	106
〈표 2.2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설	42	〈표 3.5〉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동별 현황	107
〈표 2.22〉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43	〈표 3.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현황	114
〈표 2.23〉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4	〈표 3.7〉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금액	115
〈표 2.24〉 2020 유형별 및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47	〈표 3.8〉 장애수당 지급 기준	116
〈표 2.25〉 거주시설별 현황	48	〈표 3.9〉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분류표	121
〈표 2.26〉 2020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현황	52	〈표 3.10〉 의정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등록 현황	121
		〈표 3.11〉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123
		〈표 3.12〉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124

〈표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118	〈표 4.31〉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이유	000
〈표 4.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	120	〈표 4.32〉 평생교육프로그램 고려사항	000
〈표 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욕구	126	〈표 4.33〉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000
〈표 4.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기술통계	129	〈표 4.3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000
〈표 4.5〉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130	〈표 4.3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000
〈표 4.6〉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132	〈표 4.3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	000
〈표 4.7〉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135	〈표 4.37〉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000
〈표 4.8〉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137	〈표 4.38〉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000
〈표 4.9〉 보호자의 특성	000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000
〈표 4.10〉 당사자의 특성	000	〈표 4.40〉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000
〈표 4.11〉 학력 및 학교생활	000	〈표 4.41〉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표 4.12〉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 및 도움 정도	000	〈표 4.42〉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표 4.13〉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000	〈표 4.43〉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표 4.14〉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000	〈표 4.44〉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표 4.15〉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	000	〈표 4.45〉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000
〈표 4.16〉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및 이유	000	〈표 4.46〉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000
〈표 4.17〉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받는 방법	000	〈표 4.47〉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000
〈표 4.18〉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	000	〈표 4.48〉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000
〈표 4.19〉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방법	000	〈표 4.49〉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000
〈표 4.20〉 기존 참여한 평생교육프로그램	000	〈표 4.50〉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000
〈표 4.21〉 평생교육 참여기관	000	〈표 4.51〉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000
〈표 4.22〉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000	〈표 4.52〉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000
〈표 4.23〉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	000	〈표 4.53〉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000
〈표 4.24〉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000	〈표 4.54〉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000
〈표 4.25〉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000	〈표 4.55〉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000
〈표 4.26〉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000	〈표 4.56〉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000
〈표 4.27〉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000	〈표 4.57〉 기관현황	000
〈표 4.28〉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000	〈표 4.58〉 기관 규모	000
〈표 4.2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000	〈표 4.59〉 편의시설 설치 현황	000
〈표 4.30〉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빈도 및 시간	000	〈표 4.60〉 장애인 학습 현황	000
		〈표 4.61〉 장애인 학습자 현황	000

〈표 4.62〉 교·강사 현황 및 강사료 000
 〈표 4.6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000
 〈표 4.6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000
 〈표 4.6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 000
 〈표 4.66〉 중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과제 000
 〈표 4.67〉 일반상황 000
 〈표 4.68〉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000
 〈표 4.6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수강거부 경험 000
 〈표 4.70〉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000
 〈표 4.71〉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000
 〈표 4.7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000
 〈표 4.73〉 FGI 연구 참여자의 특성 000
 〈표 4.74〉 FGI 연구 결과 000

〈그림 2.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48
 〈그림 2.2〉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PFNet와 PNNC 세부군집) 62
 〈그림 2.3〉 경기도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가상) 76
 〈그림 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5단계 과정 77
 〈그림 2.5〉 제5차 계획 정책 비전도 93
 〈그림 2.6〉 제5차 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98
 〈그림 2.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비전 체계도 99
 〈그림 2.8〉 경기도 발달장애인 중장기 정책과제 102

〈그림 3.1〉 의정부시 장애인 조직 108
 〈그림 3.2〉 의정부시 장애인 부서 업무 108

〈그림 4.1〉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 120
 〈그림 4.2〉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참여 욕구 122
 〈그림 4.3〉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 참여 욕구 122
 〈그림 4.4〉 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준비활동) 참여 욕구 123
 〈그림 4.5〉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 참여 욕구 123
 〈그림 4.6〉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 참여 욕구 124
 〈그림 4.7〉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 참여 욕구 124
 〈그림 4.8〉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 참여 욕구 125
 〈그림 4.9〉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 참여 욕구 125
 〈그림 4.10〉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 참여 욕구 126
 〈그림 4.11〉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 참여 욕구 126
 〈그림 4.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평균 비교 128
 〈그림 4.13〉 장애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 욕구 차이 134
 〈그림 4.14〉 거주지역에 따른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욕구 차이 137
 〈그림 4.15〉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 및 도움 정도 000
 〈그림 4.16〉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000

<그림 4.17>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1순위	000	<그림 4.48>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3순위)	000
<그림 4.18>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2순위	000	<그림 4.49>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다중응답)	000
<그림 4.19>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3순위	000	<그림 4.50>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1순위)	000
<그림 4.20>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다중응답)	000	<그림 4.51>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2순위)	000
<그림 4.21>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	000	<그림 4.52>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3순위)	000
<그림 4.22>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000	<그림 4.53>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다중응답)	000
<그림 4.23>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받는 방법	000	<그림 4.54>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1순위)	000
<그림 4.24>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	000	<그림 4.55>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2순위)	000
<그림 4.25>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방법	000	<그림 4.56>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3순위)	000
<그림 4.26> 기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000	<그림 4.57>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000
<그림 4.27> 평생교육 참여기관	000	<그림 4.5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1순위)	000
<그림 4.28>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000	<그림 4.5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2순위)	000
<그림 4.2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	000	<그림 4.6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3순위)	000
<그림 4.30>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000	<그림 4.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다중응답)	000
<그림 4.31>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000	<그림 4.6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000
<그림 4.32>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000	<그림 4.6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2순위)	000
<그림 4.33>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000	<그림 4.6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3순위)	000
<그림 4.34>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기초문해교육)	000	<그림 4.6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다중응답)	000
<그림 4.35>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학력보완교육)	000	<그림 4.6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	000
<그림 4.36>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직업능력향상교육)	000	<그림 4.67>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000
<그림 4.37>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문화예술교육)	000	<그림 4.68>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그림 4.38>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인문교양교육)	000	<그림 4.69>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000
<그림 4.39>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시민참여교육)	000	<그림 4.70>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000
<그림 4.4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1순위)	000	<그림 4.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000
<그림 4.41>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2순위)	000	<그림 4.7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000
<그림 4.4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3순위)	000	<그림 4.7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000
<그림 4.43>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다중응답)	000	<그림 4.7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000
<그림 4.44>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빈도	000	<그림 4.7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000
<그림 4.45>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시간	000	<그림 4.7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000
<그림 4.46>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1순위)	000	<그림 4.7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취업, 창업 등)	000
<그림 4.47>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2순위)	000	<그림 4.78> 장애인 학습 현황	000

<그림 4.7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방법	000
<그림 4.80>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방법	000
<그림 4.81>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000
<그림 4.82> 운영에 어려운 점	000
<그림 4.83> 필요한 지원	000
<그림 4.8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	000
<그림 4.85> 중점프로그램	000
<그림 4.86> 확충해야 할 편의제공	000
<그림 4.87> 개선 과제	000
<그림 4.88>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정도	000
<그림 4.89>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1순위)	000
<그림 4.90>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2순위)	000
<그림 4.91>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3순위)	000
<그림 4.92>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다중응답)	000
<그림 4.93>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필요성	000
<그림 4.94>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000
<그림 4.95>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000
<그림 4.9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1순위)	000
<그림 4.97>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2순위)	000
<그림 4.98>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3순위)	000
<그림 4.9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다중응답)	000
<그림 4.100>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1순위)	000
<그림 4.101>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2순위)	000
<그림 4.102>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3순위)	000
<그림 4.103>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다중응답)	000
<그림 4.10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1순위)	000
<그림 4.105>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2순위)	000
<그림 4.106>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3순위)	000
<그림 4.10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중응답)	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구조사 종합보고서

연구요약

요 약 문

연구과제명	국 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욕구조사		
	영 문	A Study on Research of Lifelong Education Support Need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연구책임자	성 명	정 용 충	소속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정책 동향 및 주요 내용과 발달장애인의 현황 등을 문헌조사 하였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문제와 욕구를 진단하고 파악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대면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1월 10일의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94명,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보호자 135명,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15곳,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종사자 33명, 총 277부의 응답 설문을 수거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질적분석(FGI)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의 순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욕구가 높고,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참여욕구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의 경우가 타 장애보다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는 문화예술교육,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순으로 높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순으로 높았으며,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평생교

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정책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장애 감수성과 친화력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의정부형 방문형 교·강사의 양성 및 보급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수행체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표현·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용득, 2013). 또한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경험과 의존된 생활습관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더 나아가 주변인들의 편견으로 인해 자기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평생 지속되고 자기표현,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보호자나 후견인 등의 인력지원이 없으면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정희 외, 2013).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생애과업과 사회적 욕구를 가지며 취업 등 독립적인 성인기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독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내용을 다양화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편견, 지역사회 평생교육 기회의 부족 등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인 책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법 제26조)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제공(법 제30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2019년 12월에는 포용복지국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 발표되면서 평생교육법 등에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여건과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및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며, 17개 시·도 전체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2월 24일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5160호)」를 제정하였고 31개 시·군·구 중에서는 성남시가 최초(2017. 07. 19. / 제3094호)로 제정하였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21개 시·군·구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4개 시·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서 일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1).

의정부 역시 발달장애인의 심각성을 인식¹⁾하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 12. 19. / 제2884호)」를 제정하였다. 기타 관련 조례로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2012. 12. 31. / 제2479호)」,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2017. 05. 08. / 제2763호)」가 제정은 되었으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포함)의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을 뿐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1). 더군다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음은 향후 의정부시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정부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 틀 안에서 발달장애인 정책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것이 의정부시 장애인 정책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기존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대상 연구를 살펴보면, 「의정부시 제5기 행정혁신위원회 하반기 연구과제」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은 시설의 활용 가용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관련 공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다수이고 이들은 자택에

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의정부시에서 수행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에서는 직업기술교육(57.7%), 정보화 교육(24.4%), 인간관계 심리상담(1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연구경향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적·물적 지원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또는 자기 결정에 기반 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은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준과 방식들에 맞춰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가치로 논의 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관련문제들은 상호 동반하여 발생하고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평생교육이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방안 도출이 어렵고 유기적인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통계자료 및 현황분석의 제약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실제 프로그램 욕구를 파악한다.

셋째,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1) 의정부시 전체 인구 462,588명 중에서 등록 장애인은 22,101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2021. 6.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7,588명으로 지적장애가 2,001명(24.2%)로 가장 많고, 발달장애 1,822명(22.0%), 뇌병변장애 1,485명(18.0%), 기타장애 1,822명(22.9%)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9%, 2017년 5.6%, 2020년 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0. 12. 기준).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통계시스템

3. 연구수행체계

<표 1.1> 연구수행체계



2장. 발달장애인 특성 및 관련 정책

1.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특성
2. 발달장애인 문제의 시대적 흐름과 주요 쟁점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4.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II. 발달장애인 특성 및 관련 정책

1.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특성

가. 발달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발달장애란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자폐성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체계로 되어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표 2.1>와 같다.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부기관의 장애	청력장애	청력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	간질에 의한 뇌세포신경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장애와 장애의 올바른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에서 1980년 국제장애분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이 정립되었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 불능, 및 불리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손상이라 함은 심신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이라 함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고, 불리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

1997년 ICIDH-2는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킨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로 구분하였는데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었고, ICF는 ‘건강영역’ 과 ‘건강관련영역’ 이 포함되어 있고,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인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상호복합적인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2014년, 2017년, 2019년도로 조사된 등록 장애유형별 추정장애 인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수

(단위: 명)

장애 유형	2011년	2014년	2017년	2018년
	추정장애인수	추정장애인수	추정장애인수	추정장애인수
지체	93,813	1,309,285	1,267,174	1,238,532
뇌병변	261,746	253,493	250,456	253,083
시각	249,259	253,095	252,794	252,957
청각	260,403	255,399	271,843	342,582
언어	17,207	17,830	19,409	20,744
지적	161,249	178,866	195,283	206,917
자폐성	14,888	18,133	22,853	26,703
정신	95,821	95,675	100,069	102,140
신장	57,142	66,551	78,750	87,892
심장	12,864	6,928	5,507	5,304
호흡기	15,551	13,150	11,831	11,761
간	7,920	9,194	11,042	12,524

안면	2,696	2,696	2,680	2,689
장루·요루	12,072	12,546	14,404	15,027
뇌전증	9,772	7,271	6,956	7,021
계	2,611,126	2,646,064	2,580,340	2,585,876

2018년 지역별 발달장애인 추정 장애인 비율을 본 연구와 관련한 항목만 살펴보면 <표 2.3>와 같다.

<표 2.3> 지역별 발달장애인 규모

(단위: 명)

지역	총계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
전국	2,585,865	253,083	20,744	206,917	26,703
서울	392,920	4,1801	3,233	26,231	5,798
부산	173,820	20,108	1,422	11,528	1,771
대구	123,070	12,999	1,046	9,829	1,156
인천	141,177	13,224	1,319	10,104	1,415
광주	69,884	6,846	564	6,703	773
대전	72,927	7,532	571	6,305	984
울산	50,640	4,908	393	4,150	563
세종	11,404	994	84	985	144
경기	547,386	54,606	4,517	42,933	7,037
강원	100,693	9,277	737	8,213	664
충북	97,086	8,738	662	10,205	694
충남	131,910	10,993	1,011	11,661	898
전북	131,746	12,118	1,190	12,140	721
전남	142,213	11,586	1,004	11,847	729
경북	176,550	15,989	1,202	15,827	1,126
경남	186,016	17,824	1,395	15,037	1,709
제주	35,840	3,540	394	3,219	521

발달장애란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

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으로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약칭은 발달장애인법으로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정서(자폐성 포함), 언어,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은 발달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결합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나타나고, 무한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중요한 생활 활동 영역으로는 자기보호,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관리,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중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기능상의 한계를 갖게 하고, 평생 또는 장기간, 특수하거나 둘 이상의 다른 분야나 일반적인 보호, 처치, 기타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중증의 만성 장애라고 설명하고 있다.

WHO는 ‘심리적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말과 언어 발달장애, 특정 학문 기술 발달장애, 특정 운동 기능 발달장애, 특정 혼재성 발달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기타 심리적 발달장애, 불특정 심리적 발달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기와 청년기에 시작되는 행동 및 정서 장애에 과다성 운동장애, 품행장애, 품행과 정서의 혼재성 장애, 특히 아동기에 시작되는 정서장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사회적 기능 수행 장애, 틱 장애, 일반적인 아동기와 청년기에 시작되는 기타 행동 및 정서 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는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정신장애로 정신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 장애, 의사소통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다성 형태 장애, 유아 또는 아동초기에 섭식 장애 틱 장애, 배출장애, 기타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애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뇌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염색체 이상이나, 미숙아들의 생물학적 요인과 임신시의 음주, 부모와 격리된 환경, 부모의 약물 중독 등의 환경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년기에 시작되거나 진단되는 정신장애 중 발달장애의 진단 준거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장애는 정신지체와 광범위성 발달장애이다. 일부 발달장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정신지체도 있을 수 있고, 주의력 결핍과 과다성 형태의 장애,

틱 장애, 기타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년기 장애 중 일부는 발달장애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의 중복장애 중 일부도 발달장애의 진단 준거에 포함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 뇌성마비가 이에 속한다. 미국정신의학회는 광범위성 발달장애를 자폐성 장애, 레트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불특정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박사논문으로 ‘발달장애인’을 검색하면 49건의 논문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신체적 효과에 대해 입증한 논문을 조사하였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수진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역량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평생과정설계 준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을 대상으로 평생과정설계 프로그램을 총23회기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전 사전검사와 프로그램 개입 직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개입 후 2주 뒤, 4주 뒤 반복측정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과정설계 준비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의 자립역량은 측정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열은 본인의 15년간의 마라톤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기술한자문화기술지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를 A, B, C로 나누어 A 그룹의 대상자는 철인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고, B 그룹은 발달장애인을 상시 살피며 부모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생활시설 직원이고, C 그룹은 자원봉사자 그룹이다. 자료의 분석은 ‘귀납적 범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 기술, 해석은 나선형으로 하고, 자료의 타당도나 진실성은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삼각검증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철인교실을 통해 본인의 삶의 주체임을 자각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뿐 아니라 자립역량강화의 기회가 된 것으로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박광옥은 발달장애인의 어떤 고용서비스 경험이 취업에 진입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명의 발달장애인과 11명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대상자로 하였고,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사회적인 조직화 양상의 장면을 묘사하는 방법인 시퀀스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3가지의 조직화 양상을 탐색 할 수 있었는데 초기면접에 있어 본인을 배제한 대화에 참여하는 경험, 낮은 평가도구의 경험, 본인도 모르는 계획 등이 있었다. 또한 관련 제도

에 의해 축소된 취업알선 과정과 원치 않아도 참여해야만 하는 과정도 경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취업 후에는 근로자를 위한 옹호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고 발달장애인의 고용서비스 경험을 통한 다양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신경숙은 직업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여가 음악활동 경험에 대한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2세~27세 청·장년기 성인 발달 장애인 5명으로 이들은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일주일에 2회, 1시간씩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심층 면담은 개인면담 2.6회, 집단면담 2~3회로 진행되었다. 면담 원 자료와 관찰일지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음악활동을 통해 일과 후 긴장이완이나 자유 시간을 고차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자신의 흥미를 발견함과 동시에 적극적이며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여가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 여가교육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권명숙은 발달장애인 요리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의미와 가치를 찾고 장애인 요리활동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연구자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문화기술지와 연구자의 기억자료 자기성찰, 현장노트, 활동일지, 활동후기 그리고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자료를 범주화하여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요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본 매뉴얼을 구성하였고,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개발한 요리활동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의 행동특성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천적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임정연은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공공기관, 직업재활시설, 민간업체 카페 등 124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506명을 대상으로 4주간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가 확인되었고, 직무스트레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간에 구조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전경화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돌봄 스트레스 대처 경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주 돌봄자인 어머니 10명으로 총 8회기를 개별 및 그룹으로 2시간 반 정도의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였고 연구결과 삶에 대하는 차원과 속성에 따라 부정적 능동형, 부정적 수동형, 긍정적 능동형, 긍정적 수동형의 4가지 유형으로 파악 하였다.

유진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연구의 혼합방법을 사용하였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양적연구를 하였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 자료를 근거이론에 따라 개방 코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다양화를 위해 교육과 사회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시화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산림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미취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에 있어 양적연구 분석 대상자는 2018년 장애인고용 패널 중 지적장애인 376명, 자폐성장애인 32명이고, 질적 연구 분석대상자는 서울, 강원,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6명과 발달장애인의 부모 6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미취업 상태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업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학위	방법	대상자	연구변인
유수진 (2016)	박사	평생과정설계를 위한 준비프로그램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역량 자아존중감
신경숙 (2017)	박사	여가 음악활동 경험	성인 발달장애인	삶의 질
권명숙 (2018)	박사	요리활동 경험	발달장애인	삶의 질

연구자	학위	방법	대상자	연구변인
송금열 (2018)	박사	철인교실 운영기반 자문화기술지	발달장애인	신체적 변화 정서적 변화 자립역량
박광옥 (2018)	박사	고용서비스 경험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임정연 (2019)	박사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성인 발달장애인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조직시민행동
전경화 (2020)	박사	돌봄 스트레스 대처 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	성인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유진희 (2020)	박사	산림복지서비스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삶의 질
정연구 (2020)	박사	취업과 미취업간 비교	발달장애인	삶의 만족도

나. 발달장애의 개념과 특성

미국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의 정의를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심각한 기능 결핍으로 인한 한 개인의 만성 장애로서, 이러한 장애는 일생동안 영구히 지속되며, 이러한 장애를 가진 개인은 인지, 신체, 언어 및 정신사회적인 발달 영역과 자기 보살핌의 기술 영역에 결핍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발달 지연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질환의 경우도 포함하여 발달장애를 규정하고, 이러한 장애를 지닌 개인은 일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필요한 특수 혹은 일반 보호와 치료 혹은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법으로서 명문화하고 있다(우영중, 2006).

발달장애에 관한 개념은 1963년 미국의 「정신지체 시설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건축법」에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76년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뇌전증, 뇌병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등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는 특정한 장애 범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에 장애가 유발되어 그 장애가 평생 지속되는 손상으로 정의 된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장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항구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현재 미국법전 제42편 제144장 ‘발달장애원조와 권리장전’에서는 발달장애를 특정장애유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발달장애는 5세 이상 22세 이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장애로, 정신적이거나 신체적 손상, 혹은 2가지를 복합적으로 동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지시, 독립생활능력, 경제적 자족 등 주요 일상생활 영역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적 한계를 지니며,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개별적으로 계획 조정되고 통합된 형태의 다학문적이고 포괄적인 특별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22세 이전에 주요 일상생활 영역 중 3가지 이상의 기능에 제한이 나타나고, 그 상태가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될 때 발달장애로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특정 장애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몇 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발달장애로 포함시키는 비범주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당시 장애 범주 확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발달장애를 통상적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의 정의를 따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기존의 5개 유형의 장애범주를 10개 유형의 장애범주로 확대 구분하여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시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현재의 ‘자폐성장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까지 포함한 용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폐성장아만을 발달장애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표 2.5>와 같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아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였고,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장애유형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자폐성장아를 지칭하는 용어에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아를 포함하는 중분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표 2.5>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후, 정신적 장애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장애 (지능지수 70이하인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 양극성정동,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아
	발달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아)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주요정동장애

출처 : 이채식 외(2015). P.44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정신박약’으로 사용되었으며, 60년대 이후에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그리고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적장애’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의 강조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지체는 개인의 결함으로 무력감과 의존성을 전제로 당사자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체계적인 개별지원으로 인간의 잠재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박약’이나 ‘지체’된 인간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와 생태학적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이 강조되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발맞춘 것이다.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관계법령에서 제외되었다가 2014년 4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시 법률적인 용어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미국의 비범주적 접근방식처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뿐 아니라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발달의 지연을 보이는 사람”까지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적, 자폐성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발달장애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하나의 장애유형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장애유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은 장애 정도와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된 특징은 ‘자기결정 및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지적장애의 경우, 낮은 인지능력과 언어능력 발달의 지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운동 기능 발달의 지체, 정서적, 사회적, 학업적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대인관계형성 장애와 언어 장애, 행동 장애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과 달리 지적 수준이 낮으며, 의사표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평생에 걸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지적장애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개인이 생활기술과 학습능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일컫는다. 장애의 정도는 경도에서 중증도까지로 광범위하다. 지적장애아는 심한 경우 평생 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장애아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과 학습이 느리다. 그래서 말하는 것, 걷는 것, 옷 입는 것, 도움 없이 식사하는 것 등을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학교에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지적능력 부족, 운동·신체감각의 저하, 학습능력 부족, 사회정서적 능력의 결여이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없으며, 자율성과 자기통제가 어렵다. 이로 인해 사회성 발달이 늦어지게 되는 지적장애인은 자기중심적 행동이 많아지게 되어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적장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만18세 이전에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상이나 질병 또는 뇌의 이상이 원인이 된다. 많이 알려진 지적장애의 사례로는 유전적 상태에 의한 선천적 장애로 인한 경우인 다운증후군(down syndrome), 태아 알코올 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프래자일엑스 증후군(fragile x syndrome)이 있고, 후천적인 경우로는 생후 감염이나 뇌막염과 같이 질병에 의한 경우가 있다. 간혹 심각한 뇌수술을 받거나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거나,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어른이 될 때까지 지적장애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양주연, 2020). 많은 경우 지적장애의 특징을 보면 안거나, 기어 다니거나, 걷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고 이야기하는 것도 늦게 배우며,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기억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사회적인 규칙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해결능력에 어려움이 따른다(양주연, 2020).

지적장애의 정도를 정리하면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지적장애의 구분

구분	내용
경도 지적장애 (Mild MR)	·전체의 70~75% 가량이 이에 해당 ·대부분의 지적장애가 이에 해당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음 ·IQ가 50~59 정도,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만 8~10세 경에 해당 ·자발적으로 개인위생·식생활 관리가 가능함 ·주변의 보조 하에 직업활동 가능하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 ·Educable level(교육가능 수준) 이라 함
중등도 지적장애 (moderate MR)	·전체의 20% 가량이 이에 해당 ·IQ가 35~49 가량,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4~8세 가량 ·자발적으로 개인위생·식생활관리 가능 ·주변의 적극적인 보조 하에 단순 직업활동 가능, 주변의 도움 하에 독립활동 가능 ·Trainable level(훈련가능수준) 이라 함
고도 지적장애 (MR)	·전체의 3~4% 가량이 이에 해당 ·IQ 20~34 정도, 정신연령은 2~3세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 개인신변 관리 혼자서 못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 ·완전한 보호가 필요한 수준(complete care group)
최고도 지적장애 (profound MR)	·1~2% 가량이 이에 해당 ·IQ 20 미만, 2세 미만의 정신연령 ·언어발달이 거의 되지 않음 ·보호자의 완전한 보조가 필요함(complete care group)

출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한때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경도(mild), 중도(中度, moderate), 중도(重度, severe), 최중도(profound)로 분류한 적도 있으나, 1992년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AIDD)에서 간헐적 지원, 제한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전반적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의 종류 및 강도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지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선천적인 특성이나 영구적인 상태’로 보는 것에서 학생의 ‘현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AAIDD, 2010).

<표 2.7> 지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른 지적장애 분류

분류	지원의 종류와 강도
간헐적 지원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지원, 인생의 전환(transition)시기 (예: 실직, 심각한 의료적 위기 상황)에 단기간 지원
제한적 지원	정해진 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예: 시간제한적 고용훈련 또는 조기교육 현장에서 학교교육 현장으로 이동하는 기간)
확장적 지원	정해진 몇몇의 환경(예: 직장 또는 가정)에서 정규직으로 요구되는 지원 (예: 직업 또는 가정환경에서 장기간의 지원)
전반적 지원	고강도의 항구적 지원, 전반적 환경에 걸쳐서 제공되며, 삶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지원

출처: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AIDD: America Association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10)

2) 자폐성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와 자폐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장애이다. 흔히 발달장애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포함하지만 자폐성 장애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가능했고, 2000년부터 자폐성 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다. 자폐성 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었던 2007년으로 이때는 정신지체가 지적장애라는 명칭으로 바뀔 때이다(나무위키, 2020).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이에 정서, 지각, 언어, 인지 영역에서 일차적 문제를 지니며 자폐성 장애인은 기능적인 언어의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언어적 특징이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상호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닌 도구적인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사회관계는 상대방과 눈 맞추는 것이 어려우며 주변인들과의 부족한 애착형성, 특정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어울려 놀기보다는 고립된 행동을 하며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폐성 장애아들은 탄생 때부터 주변 환경과의 관계 형성이 안되며, 언어발달이 더디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적 장애가 수반된다고(Kanner,1943) 보고한다.

DSM-5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심각도 수준을 표로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심각도 수준

심각도 수준	사회적 의사소통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1단계 (지원이 필요한 수준)	·지원이 없을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분명한 손상을 야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이나 성공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수 있다.	·용통성 없는 행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기능을 확연히 방해한다. ·활동 전환이 어렵다. ·조직력과 계획력의 문제는 독립을 방해한다.
2단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언어적·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뚜렷한 결함, 지원을 해도 명백한 사회적 손상이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의 시작이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감소된 혹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용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연히 관찰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방해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이 야기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데 극도로 제한적이며, 사회적 접근에 대해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	·용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 데 뚜렷한 방해를 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출처: 정신질환의 진단과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자폐성 장애아는 규칙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이 자신의 생각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쉽게 흥분하거나 매우 불안해하기도 한다(김은경, 2009). 자폐성 장애아가 보이는 우울과 불안은 비장애아의 그것보다 더 심하다. 이로 인해 자폐성 장애아는 주변 환경 탐색과 스스로가 느끼는 관심 영역을 넓혀나가는데 위축된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과잉행동과 주의 집중문제가 나타난다(Ashburner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도 불안에서 나오는데(Elder et al., 2006) 공격적 행동은 결국 사회적 관계의 손상으로 이어져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김경민, 2012). 고기능 자폐아는 높은 인지 및 언어적 능력을 보이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감정 통제가 어려워 충동성과 주의 산만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 발달장애인문제의 시대적 흐름과 주요 쟁점

가. 문제의 시대적 흐름

발달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역기능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의 약 50%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으로 ‘자기관리, 수용 및 표현 언어, 학습, 이동, 독립적인 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 등과 같은 영역에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물기, 때리기, 머리치기, 할퀴기와 같은 자해 또는 타해의 형태로 고 위험 행동, 울기, 소리 지르기, 말하기 거부, 자리 이탈하기, 공공장소에서 반항어, 손뺌치기, 킁, 흔들기 등과 같은 상동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행동은 주 양육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까지 이어져 발달장애 당사자 아동에게 과도한 약물투여로 이어지거나 가정에서 돌볼 수 없어 보호시설에 맡겨지기도 한다(홍경기·송호광·오매화 외, 2018).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3)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식적 서비스 지원체계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며, 당사자에 대한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가족이 체감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돌보는 비율이 많으며, 돌보는 비용은 30~50만원 정도로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큰 비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2016년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작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간 학교에만 의존했던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으로 구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당사자 가족들, 서비스 제공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요구의 결과로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였으나 발달장애인법은 인지적·정신적 장애 영역의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룡(2015)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권리보장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이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전담 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및 보호조치 역할 부여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권리 구제 지원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복지서비스 측면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발달장애인 개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별도의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여가·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서비스 실시 등으로 지역사회 참여 및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진행하여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치료자 양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홍경기·송호광·오매화 외, 2018, 191-20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중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일상생활 분야, 건강 및 보건의료 분야, 교육 분야, 경제활동 분야, 소득지출 분야, 주거 분야, 체육문화 활동 분야의 7개 영역으로 나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을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발달장애인에 비해 발달장애인이 대체적으로 7개 영역에서 많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2020,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020년 말 현재 고용등록 장애인 기준 247,910명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나타났으며, 15세~29세 발달장애인은 65.1%가 차지하였다. 한편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2%로 전체 장애인 평균 3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차별과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사회적 불편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역할을 가중시켰으나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전보다는 다소 당사자 중심주의적 서비스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관련법의 흐름

1) 발달장애에 대한 개념의 흐름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2014년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의 정의 및 기준의 흐름

가) 2000년도 이전

1982년 2월 17일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심신장애자의 기준을 5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로 구분하였으며, 정신박약자의 정의를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하였다.

1990년 12월 1일 전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공무원임용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신박약자’를 ‘정신지체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준을 5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정신지체의 기준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를 의미한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은 10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표 2.9> 2000년 이전 장애인 관련법과 주요내용

년도	관련법	주요내용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제정)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 사회복지증진 기여
1989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법제명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1999	장애인복지법(개정)	‘발달장애인’라는 명칭 공식 사용

나) 2000년~2010년

2003년 5월 1일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15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나뉘게 되었고, 발달장애인의 정의 역시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전 보다 자세히 정의하였다.

2005년 2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정기총회에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치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 안건이 의결되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가속화되었다.

2007년 10월 15일 대통령령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15개 유형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나뉘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이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아인으로 변경하여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표 2.10> 2000년~2010년 장애인 관련법과 주요내용

년도	관련법	주요내용
2002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 배우자, 장애아동 대상 포함
2004	건강가정기본법	장애인가정 포함
2007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법제화
2007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로 포괄
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007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를 취약 보육 대상에 포함
2008	국제 장애인 권리협약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

다) 2011년~2021년 현재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의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생에 대부분이 돌봄이 필요하며 이들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 주장이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에 매우 취약하기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인프라 부족으로 당사자나 주 양육대상자의 부담은 정신적·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구체적인 장애 범위, 보호자 및 가족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및 가족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 커질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여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1> 2011년~2021년 장애인 관련 법과 주요내용

년도	관련법과 제도	주요내용
20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법제화
2016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교육조항 포함
20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 2018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게 되었다.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의 요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를 중심으로 2007년에 ‘지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성안되었고, 이후 장애인부모단체들이 외국 연수를 통해 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접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의 법제화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2010년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과 삭발투쟁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해 진행되었고, 2011년에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각각의 발달장애인지원법안을 성안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각 단체별로 추진되어온 법제정 운동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한

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주요단체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체 간 연대를 결의하고, 2012년 2월 발달장애인 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을 공식 출범시킨다. 그리고 ‘발제련’ 내에 법률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법안을 준비하였다. 발달장애인법안의 국회 발의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2년 총선에서 여야의 각 당 모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법 제정의 긍정적인 흐름이 빠르게 형성되었고, 특히 4월 20일 새누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신속한 추진이 발표되면서, 새누리당 김정록의원의 대표발의로 제19대 국회 의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이 제출되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인권보호를 두 축으로 하여, 성인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지역사회의 자기 주도적 참여 및 권리의 보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발달장애인 청년에 대한 금융경제교육지원 방안연구,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015)

2013년 3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당사자 토론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발제하는 토론회로 2012년 19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즉,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존심 있는 9.23 발달장애인 권리 선언문”을 작성하여 당사자 스스로의 자기결정권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시간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표 2.12>.

<표 2.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

년도	주요내용
2011.12.6.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공동 연대체 구성 결의
2012.2.22.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식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 본격화
2012.4.20. - 5.22.	여·야 정당 간담회 - 19대 국회 1호 법안 ‘발달장애인법’ 발의 약속
2012.5.30.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19대 국회 제 1호 법안
2013.11.19. - 11.23.	18대 대통령 선거 메니페스토 협약 체결 - 박근혜·문재인 후보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약 약속
2013.3.	박근혜정부, ‘발달장애인 법’ 제정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연내 제정계획 발표(2013.3.21.) -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 제정계획 발표 (2013.5.28.)
2013.3.21. - 6.26.	발달장애인법 촉구 천막농성 - 발달장애인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98일간), 국회의원 116명 법률 제정 동의서 작성, 10만명 시민 촉구 서명 참여
2013.12.6.	김명연의원(새누리당)등 14인 입법 발의(2013.12.6.)
2014.1-4.11.	‘발제련’ 및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법안 협의 진행
2014.4.10.	발달장애인법 4월 임시국회 내 통과 및 보건복지부 협의안 법안 제정 등 요구 - 전국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부모 80여명 집단 식발
2014.4.17.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4.4.2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수정가결
2014.4.29.	「발달장애인법」 원안 가결 - 재석 186명 의원 중 181명 찬성(5명 기권)으로 가결(4.29) 발달장애인 제정 축하 기자회견 - 발제련, 법률 제정 기념 기자회견, 여의도 20일간 천막농성 정리.

출처: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 자료집(2014). 재구성.

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정 목적을 구체화 하였다.

특히, 법 24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행동 치료 전문가 및 행동 치료 지원 전문가 양성 업무, 그 밖에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 25조 ‘고용 및 직업훈련지원’ 부분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

(1) 2014. 5. 20., 제정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 이유이다.

(2) 2016. 12. 2.,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였다.

(3) 2019. 12. 3., 일부개정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20. 4. 7., 일부개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였다.

(5) 2020. 12. 29., 일부개정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위임·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전문성 있는 특정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2021. 6. 8., 일부개정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며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표 2.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년도	주요내용
2014. 05. 20. 제정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
2016. 12. 02.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와의 조화를 도모
2019. 12. 03. 일부개정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 교육을 실시
2020. 04. 07. 일부개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
2020. 12. 29. 일부개정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위임·위탁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
2021. 06. 08. 일부개정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발달장애인 정책’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었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 제1항).

이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제1차(1998-2002) 장애인복지 발전 계획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추진·결정하였다(1996.12.)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중장기 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가 통합하여 1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²⁾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자폐증)이 포함되어 범주가 확대 시행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자폐 및 정신지체아) 특수교육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자폐의 경우 7.8%, 정신지체는 61.3%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제 강화, 특수학교 확대,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5개년계획 수립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정책, 장애 인식개선 사업 부족, 장애인 단체 참여 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시혜적 복지시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2차(2003-2007) 장애인복지 발전 계획은 10개 장애유형에서 5개 유형을 추가³⁾하여 15개로 장애 범주 확대, 장애수당 지원 대상 및 급여액 확대, 활동보조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범위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입,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문화바우처 도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서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체계적 틀을 갖추고 대상자 및 수급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 미비 등 시혜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대라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제3차(2008-2012)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10.05. 시행)과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2012.07.06.)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조기발견 및 치료, 복지서비스 및 교육·고용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장애유형별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201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뇌 발달이 활발한 생애초기 개입 시 긍정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 장애 의심은 빠르나 진단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장애인 돌봄의 부담으로 보호자 중 우울증 의심이 51.9%, 전반적 삶에 만족이 1.6%로 일반가구가 52.7%인 것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부모 등 가족의 정서적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후 소득보장이 곤란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소득을 준비하고자 하여도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2013-2017)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2) 기존 5개 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에서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추가하여 10가지로 확대

3) 기존 10개 유형에서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어 15가지 장애 범주로 확대

법률」(14.4월 제정, 15.11월 시행)을 통해 개발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범죄 피해 시 권리구제·보호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을 2013년 6억 원에서 2017년 91억 원으로 85억 원 증액하였다. 첫째,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 진단도구 개발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모 및 종사자 인식개선을 통한 조기발견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립서울병원부터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 치료실을 설치하여 문제행동 치료 사정도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복지시책 및 이용방법, 주요 제공기관 현황 등 발달장애인 부모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 상품을 도입하고 장애인신탁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복지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제 5차(2018-2022)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만 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의 운영 및 확대, 발달장애 대상 전용 훈련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 취업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맞춤 근로지원인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할 때 쉬운 용어 사용으로 내용전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선택권 보장 등이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첫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반을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서비스 연계 노력,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달장애 이해 교육 실시, 시·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의 관계 및 센터 고유 기능을 재정립 하도록 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며, 발달장애인거점병원과 행동발달 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서 센터를 통해 도전적 행동 개입매뉴얼 개발, 부모 교육, 약물 사용 지침, 행동치료전문가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센터-가정-학교-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통합지원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셋째,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의 건전

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사업의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발달장애인 가족(비장애 형제·자매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신규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내용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정책 협의체의 상설 운영과 정기 회의(분기) 및 담당자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내용의 연계·조정 등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자질향상, 활동보조인의 저임금, 이용료 자부담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2.14>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중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차('9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장애 범주 확대(5개 유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강화 - 특수학교 확대 - 편의시설 확충 - 국가 종합5개년계획 수립
2차('0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범주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제 도입 - 세제·요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확대 - 주택 서비스 지원 -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재활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정신지체인지원센터 설치·운영) - 발달장애 성인 및 여성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성인 발달장애인의사회참여·여가활동 지원)
교육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고용노동부- 발달장애인 고용훈련센터

구분	주요내용
3차('08-'12)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11.10.05. 시행) -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2012.07.06.)
4차('13-'17)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4.4월), 15.11월시행.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17개소) 신설 -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신탁제도 신설
5차('18-'22)	- 발달장애인(만 9세~24세)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성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발달장애 대상 전용 훈련센터 17개 시·도에 설치 -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할 때 쉬운 용어사용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호·돌봄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

출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재구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2018)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각 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각자의 필요 사항에 맞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교육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15>.

이 외에도 제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021.03.23.)에서는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20년 6.1만명→ 21년 6.5만명), 긴급활동지원 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의 시행된다고 보도하였다.

<표 2.15>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생애주기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확대(1천명→7천명)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17개), 특수학습 확대(731학급→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2019년 4천명→ 022년 2만2천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325학급→ 197교, 1만1575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2018년 7개소→ 2019년 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 (2019년 1,500명→ 2022년 1만7천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 (2018년 2,500명→ 20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2018년 1,200명→ 2019년 3,000명)
중노년기	- 장애인 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1만명→ 2만명)

출처: news1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을 대상으로 낮 시간에 교육이나 직업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등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1대1의 활동지원의 활용도가 낮고 낮 시간 이용 프로그램이 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개인형과 그룹형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고, 최대 5개의 서비스 그룹을 결합할 수 있으며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중증의 경우 그룹형에 개별 활동보조인을 동행하여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 협력 가능하고 서

비스 제공인력은 재활전문가나 장애인 직업이나 취미 전문 학사 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로 장애 관련 다른 프로그램의 겸업을 금지하여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⁵⁾. 활동지원 기관은 서비스의 30%이상을 지역 내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지원기관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이나 취미, 체육, 직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약하고 전문 인력이 없으므로 취한 조치이다.

1차 시범사업⁶⁾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전국 확대를 목표로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제 3차 시범 사업에 보조를 맞춰 2017년엔 2차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지역은 전국 20개 지역⁷⁾에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었다. 2차 시범사업 학교에 의존하던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예산 없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6개월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간 활동 급여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서비스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며 발달장애인의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국정과제로 ‘중증 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이 채택되어 주간 활동 서비스 도입을 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부모들은 1차 시범사업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2차 시범사업에서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냐는 반발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지원제공기관 중에서 주간활동 시설의 기준(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조건과 활동지원제공기관은 활동지원사의 파견은 적절하지만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발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있어서도 왜 활동지원제공기관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반문과 함께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 기타 장애인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고나면 외부 기관과 연계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이러한 조건 역시 반발을 낳았다. 더욱이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와 함께 당연히 예산 증액이 있어야 하나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왜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 추가 투입이나 새로운 체계를 갖추지 않고 활동지원 서비스 총액 내에서만 다른 용도

로 사용해야 하는가도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 불만을 낳았다. 서비스를 사용하게 확대해 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서비스의 양도 늘어나야 활동지원 서비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에 근거하여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표 2.16>.

<표 2.1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요용어 및 개념

주요용어	개념
주간활동/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주간활동 이용자	성인 발달장애인 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격을 획득하고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최중증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 등이 있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간활동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주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주간활동 협력기관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계약 체계 등)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선호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협력기관
주간활동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 제공기관에서 주간활동 계획, 조정, 연계 등 서비스 전반의 코디네이터, 주간활동 지원인력의 슈퍼비전,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사업 운용에 따른 행정·사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 ● 주간활동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5) 서비스 단가는 개별형은 9,240원으로 활동보조와 동일하며, 3인 그룹의 경우 각각 7,390원, 4인은 6,470원으로 삭감되지만 참여 인원의 증가로 인해 최대 25,880원이 된다. 그룹에 개별형으로 활동보조인이 대동할 경우 가산금 4,620원이 추가된다. 제공기관의 수수료는 24\$이다.
 6) 1차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와 서초구, 부산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광주시 광진구, 대전시 서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와 완산구, 경남 창원시 등 이다.
 7) 20개 지역은 강동구·구로구·서초구(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동구, 인천 동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천안시·예산군(충남),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창원시·합천군(경남), 제주 제주시 등 이다.

주요용어	개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중앙 1곳, 17개 광역 시도 등에 설치 운영 중) ●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이용자 선정 지원, 제공인력 교육, 제공 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주간활동 이용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 수행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자료

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기관 및 내용

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는 2018년 12월 19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하였다. 본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단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특히 제 2조 (정의) 3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⁸⁾” 과 4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⁹⁾” 에 대한 정의를 두어 타 지자체와 다르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한 달여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주장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평생교육센터 설치, 발달장애 부모와 시장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시범적 관련 사업 추진,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연내 마무리 등이 포함된 내용 이었다¹⁰⁾.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10) 의정부시청 농성 발달장애 부모해산...시장 제안 방안 수용(연합뉴스, 2018.10.14.).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4043100060>

2) 의정부시 장애인 교육 및 복지시설 현황

의정부시 장애인분야 사회복지기관은 총 36개소이며, 이중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은 의정부밀알복지재단 산하 ‘밀알의집(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의정부복지재단 산하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기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부모회 행복다섯(산들마을현대A), 장애인공동생활가정 YMCA 행복한집(장암동아A), 장애인공동생활가정(송산주공1단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울타리 장애인공동생활가정(녹양동 현대A), 대건카리타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북부지사, 한국장애인부모회 보호작업장 ‘솔빛터’, 의정부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의정부통합부모회,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 등 약 1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의정부시는 올 3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 혜택이 소외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3)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후견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5만원이 지원되며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활동비용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표 2.17>.

<표 2.1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마음자람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의정부동
지피지기심리상담연구소	민락동
신한대학교 로고스봉사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센터	호원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라) 중증발달장애인 직무체험프로그램 운영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취업의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조립·포장, 외식보조 등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표 2.18>.

<표 2.18> 중증발달장애인 직무체험프로그램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의정부 세움자립생활(IL)센터	호원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마) 발달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만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원예활동, 종이접기, 축구, 생활체육 등)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표 2.19>.

<표 2.19> 발달장애인 역량강화교육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	용현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바) 발달장애인 사회적 증진사업 지원
성인기 발달장애 학생의 여가·문화활동(사물놀이, 제과제빵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표 2.20>.

<표 2.20> 발달장애인 사회적 증진사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부	민락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4)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의정부지역 성인 발달장애인은 1,361명으로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다. 단축형(월 56시간), 기본형(월 100시간), 확장형(월 132시간) 등 3가지로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되면 바우처 제공기관이 운영하는 참여형(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일상생활 자립 교육 등)과 창의형(음악·예술 활동 등) 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시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신청을 받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뒤 심의위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와 함께 12세 이상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236명으로 기존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40명에서 76명으로 늘려 중고교에 재학하는 발달장애인이 방과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설

시설명	운영주체	입소 정원	입소 비용	주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시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월 15만원	민락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밀알복지재단		월 20만원	녹양동
발달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	의정부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5)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 주거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이다.

<표 2.22>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입소 정원	입소 비용	주소지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밀알복지재단	12명	월 40만원	녹양동
장애인 365 쉼터			-	1일 2만원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행복한집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청년회전 국연맹유지재단	4	월18 만원	장암동
	행복다섯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4	월20만 원	민락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6)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정부시에는 현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와 직업적응훈련시설 2개소가 운영되어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표 2.23>.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나)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적응교육, 직무기능향상교육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호된 환경 속에서 근로 기회 제공,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한다.

<표 2.23>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분	시설명	운영주체	입소 정원	주소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빛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31명	용현동
	청춘D	사회적협동조합 '너른마당'	30명	용현동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두리손잡고	두리손잡고 사회적협동조합	20명	민락동
	바름터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라'	20명	민락동

출처: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복지분야)

다양한 대책 수립은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호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 제공과 권리보장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 장애인 평생교육

1) 장애인의 인권과 평생교육

가) 장애의 뉴패러다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장애인은 미성숙한 존재로 통제와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불안정하지만 자율과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 즉 양육의 관점에서 자기결정의 관점으로 인권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장애의 원인과 특징과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먼저 품위 있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UN 장애인권리선언 제3조, 1975). 이는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장애인복지법 제4조)을 뒷받침하는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갖는 당사자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리보장을 위해서 평생교육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내가 사는 집에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을 받아 자립생활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 복지 분야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임경미·김선자·김소윤·이석진·임정임, 2019).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과 전문 진로교육 제도를 강구하여야 하며,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0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은 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또한 광의의 관점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한정하여 문해교육 위주로 제한된 영역이었으나 2016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옮겨오면서 장애인 관련 법령에만 명시된 제한된 분야가 아닌 일반 평생교육 체계로 확장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다.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뿐만아니라 장애유형과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분리교육까지도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이지수, 2019).

다) 장애인 평생학습자의 이해

성공적인 평생교육의 선제조건은 학습자의 이해일 것이다. 성인의 학습은 폐다고지가 아닌 안드라고지로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한 문제해결학습으로 자기주도성을 갖는다. 장애인 학습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가 복잡다양하고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으므로 학습 당사자인 장애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장애인 평생학습자 현황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63만3천명이며, 총인구의 5%를 상회한다. 장애성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96.6%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은 학교의 특수교육을 제외한 전체 장애인의 교육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2.24> 2020 유형별 및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천명)

계	지체	시각	언어청각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633	1,207	252	418	217	250	31	104	98	5	12	14	3	15	7
계	장애 아동 (20세 미만)			장애 성인 (20세 ~ 70세 미만)				장애 노인 (70세 이상)						
2,633	90 (3.4%)			1,515 (57.6%)				1,028 (39.0%)						

출처 : e-나라지표(2021).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는 생계급여 15.4%, 의료급여 16.2%, 주거급여 14.4%, 교육급여 1.4%로 총 47.4% (보건사회연구원, 2017)를 차지하므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임경미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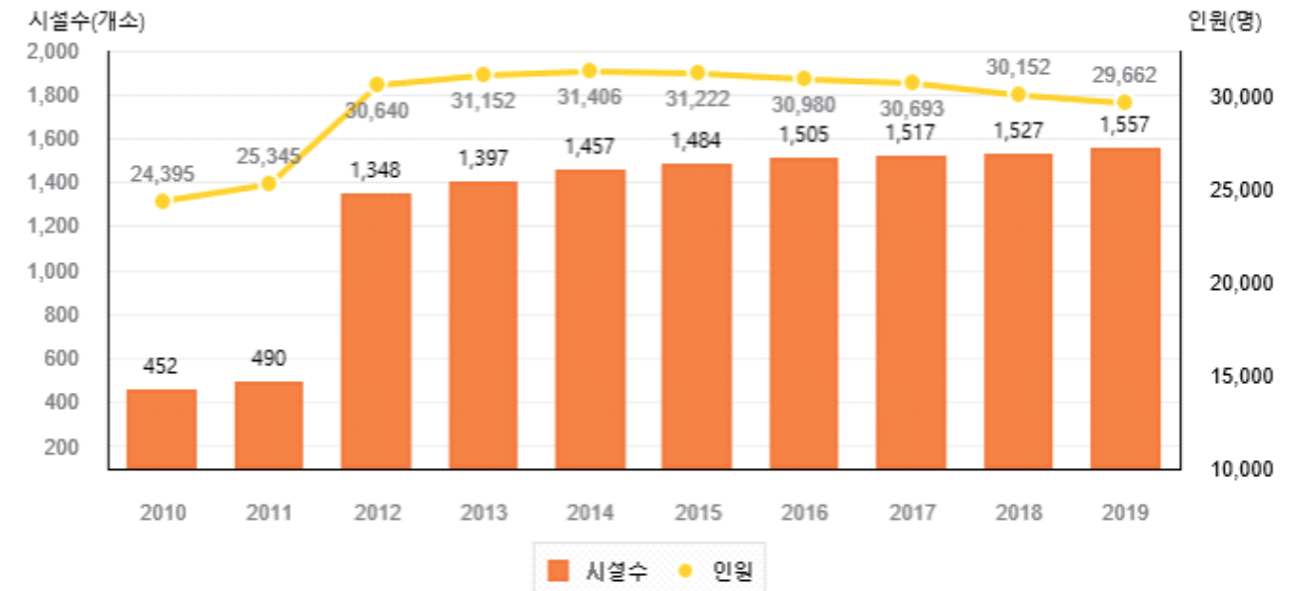
(2)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현황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하여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로 구분되는데,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은 거주가 목적이 아닌 이용시설이다.

보건복지부(2020)에 의하면,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체육시설, 수련시설, 점자도서관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1,486개소가 소재한다. 직업재활시설은 683개소, 의료재활시설은 18개소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에 1,557개소가 있으며 입소장애인은 29,662명이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수가 소폭 증가는 반면, 입소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은 <그림 2.1>과 같다.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출처 : e-나라지표(2021).

[그림 2.1]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약 1%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중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75.7%에 해당하는 22,463명이 거주한다. 시설별 거주 인원은 <표 2.25> 과 같다.

<표 2.25> 거주시설별 현황

(단위: 개, 인원 :명)

계	계	지적	중증	지체	시각	청각언어	영유아	단기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1,557	313	251	33	15	7	9	159	770
인원 (%)	29,662 (100)	11,485 (38.7)	10,978 (37.0)	1,304 (4.4)	615 (2.1)	216 (0.7)	382 (1.3)	1,733 (5.8)	2,949 (10.0)

출처 : e-나라지표(2021).

(3) 평생교육의 이념과 장애인복지의 이념

평생교육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평생교육법 제4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나) 장애인 평생교육

(1) 장애인 복지와 평생교육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보장한다.”(제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 라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비전(2018~2022)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2)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고 있다(임경미 외, 2019).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은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사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포용사회(2018.9.11.) 실현을 위한 실천 전략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등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애인 문해교육 교육과정 신설 및 학력인정 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상설협의체 구성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교육부, 2019).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에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장애인 평생교육 법령 고찰

2007년 이전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민간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2015년까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야학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은 일반평생교육기관 내에서 운영하였다. 2016년 5월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 신설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이 설치되었으며, 2021년 6월 8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이용권을 담아 개정되었다. 최근 단독법령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가 2020년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유기홍 의원 등 국회의원 48인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발의(2021. 4. 20.)하였는데, 제안 이유를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의안정보시스템, 2021).

-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부 주관으로 2021년 7월 22일 온라인 웨나비(ZOOM)에서 장애인평생교육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교육부는 2020년 12월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애인평생교육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설명회 자료집, 2021).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권과 관련한 법률은 「헌법」, 「장애인복지법」(1989 전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한국수화 언어법」(2016),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 전부개정) 등이 있다. 아울러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다(임경미 외, 2019).

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장애인 평생학습 현황

평생교육은 모두를 위한(For All) 교육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워서 나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제약이 따른다. 우선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라 일반 평생교육 시설에 접근성이 낮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5%(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를 차지하는 등 참여 경험이 극히 저조하다(임경미 외, 2019).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야학,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전공과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야학과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이 대표적인데, 장애인야학에서는 학력보완교육(32.3%)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60.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김두영, 2013)

(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에 따라 지역중심 장애인 역량개발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접근권 강화에 중점을 두어 <표 2.26>과 같이 경기 광명시 등 5개 도시를 지정하였다(임경미 외, 2019).

<표 2.26> 2020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현황

도시명	사업명	비고
경기 광명시	장애유형별 평생학습형 일자리 사업	국고 15억 지원
경기 오산시	이동 문제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러닝메이트(Learning Mate)	
부산광역시	비장애인 대상‘장애 인식 개선 교육’및‘장애인인식개선지도사 자격취득과정’운영	
전북 군산시	행복한 장애인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충북 청주시	경로당, 공방, 아파트 등‘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또한, 2차년도인 2021년 3월 공모를 통해 202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5개를 선정하였는데, 경기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이천시, 대구광역시 연합(수성구, 달서구), 부산광역시 연합(동구, 동래구), 부산광역시 연합(서구, 사상구), 부산광역시 연합(연제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충주시로 국고 15억 원이 지원되었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021년 6월 8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의정부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오산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다.

[사례1]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개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의정부시평생학습TV)를 통해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송원찬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길을 걷고 또한 함께

배움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의 장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모두를 위한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목표로 의정부시의 모든 장애인이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달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fn투데이).

[사례2] 오산시,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발달장애인 마림바밴드와 함께하는 작지만 큰 음악회’ 버스킹 공연 성료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0월 23일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에서 ‘발달장애인 마림바밴드와 함께하는 작지만 큰 음악회’ 버스킹 공연이 성료 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마림바밴드 작지만 큰 음악회’는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이 악보 보는 법, 악기 연주법 등을 배우며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오산시가 올해 4월 교육부 소속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생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오산시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4대 추진과제(▲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 진흥,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지속가능발전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를 가지고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총 38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오산시,2020).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 분석

이하영·임경원(2019)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 분석 연구 결과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었고,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특히 2015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 방법은 조사연구와 문헌 연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실제 연구 대상은 장애인 당사자보다 부모나 관련자였다. 셋째, 연구주제영역은 정책 관련 연구와 실천현장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수행된 반면 학문적 근간을 이루는 패러다임이나 철

학, 이론, 학문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 연구 경향은 장애인 평생교육 요구와 프로그램 등 실천적 접근에 편중되어 있었다. 즉 평생교육 철학 및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와 이론적 고찰은 미흡했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

교육부(2019)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참여율의 저조와 접근성 미약,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문해교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족, 지원 체계의 미비, 체계적 관리의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라)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2016년 5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개소하였고, 시·도, 시·군·구, 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야학,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1번지답게 2018년 9월 27일 전국 최초로 광명시 평생학습원 내에 시(市) 직영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하였다. 서울시 25개 구와 인천서구, 울산광역시도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2.27>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역 할
국가(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운영
시·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등록관리, 시설기준 고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각급 학교장,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출처: 교육부(2019).

2018년 5월 개소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의 국내 최고의 허브 기관이자 핵심 국가기관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선도를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과 협치에 기반 한 운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마)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2019년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포용복지국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평생교육법 제5조)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관한 국가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개발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2021)는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다음의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장애인 평생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의 현재 역할에 대한 점검과 재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가 10여 개 있는데 그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렴하고 논의하는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기관 중심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자를 모색하는 것은 센터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장애 학습자의 환경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도시의 장애인 환경을 고려한 네트워크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명시의 발전계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1) 발달장애인 현황

가)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전국 발달장애인 연도별 인구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은 각각 <표 2.28>, <표 2.29>와 같다. 발달장애인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대비 26.0% 증가하였는데, 이는 등록장애인 수가 2013년 대비 5.26% 증가와 비교할 때 무려 5배 정도가 많은 것이다.

<표 2.28> 전국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단위: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
등록장애인	2,501	2,494	2,490	2,511	2,546	2,586	2,619	2,633	2,633
발달장애인	197 (7.88)	204 (8.17)	211 (8.47)	218 (8.69)	226 (8.86)	234 (9.03)	242 (9.23)	248 (9.42)	249 (9.44)

또한, 등록장애인은 60대 이후가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62%를 차지하는 반면, 발달장애인은 20대 24.8%, 30대 16.7%, 40대 13.7%로 20~40대가 전체 발달장애인 인구수의 55.2%를 차지하였다. 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방향성 결정시 감안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표 2.29> 연령대별 발달장애인 현황

(단위:천명, %)

구분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등록장애인	2,633 (100)	31 (1.2)	59 (2.2)	98 (3.7)	121 (4.6)	242 (9.2)	449 (17.1)	605 (23.0)	1,028 (39.0)
발달장애인	249 (100)	18 (7.4)	43 (17.3)	62 (24.8)	42 (16.7)	34 (13.7)	28 (11.1)	16 (6.6)	6 (2.4)

출처: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2021),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나)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법령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618호로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6조는 평생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21).

다) 국내 발달장애성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정현·박현옥(2020)은 국내 발달장애 성인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첫째, 2016년 이후 논문 수가 급증하였고,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으나 점차 연구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었고, 조사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성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고, 당사자 연구는 특수교육학, 부모 연구는 사회과학 일반이 가장 많았다. 장애 영역은 지적장애, 장애 정도 언급이 없는 연구, 연령 혼합, 참여 인원 10명 이내가 가장 많았다. 연구 주제는 실태, 프로그램 효과, 능력이나 특성 연구, 지원 요구 순이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달장애 성인기도 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을 하는 부모나 형제자매도 고령화 추세이므로 당사자와 보호자의 연령대를 감안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 연구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 전담기관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장애인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야학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전담기관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에 각 구별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인천 서구, 울산광역시, 경기 구리시 등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서울시 평생교육센터의 사례를 그 간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안인숙·안덕근·남영란·한정은(2020)은 서울시 16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8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센터장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한 초점집단인터뷰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적 조사 결과로 대상, 교사, 시설, 수업현황 등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과 인력비율,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현황 및 필요도, 향후 센터 이용대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적 조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센터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 방안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내 임대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6개 센터 중 11개소로 73.2%를 차지한다. 시설 공간 구성에 있어서 전 직원통합사무실은 11개소로 68.7%, 강당 및 심리안정실은 13개소로 81.2%, 상담실은 12개소로 75.0%, 개별활동실은 9개소로 60.0%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은 직원이 평균 11.13명, 보조인력은 1.8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평균 7.86명인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고,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순이다. 이용자 현황은 남성이 평균 19.33명으로 여성보다 많고, 연령대는 20대가 23.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의사소통수준은 무발화가 평균 12.64명으로 가장 높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은 연간 4~6회가 49.7%로 가장 많고, 교육내용으로는 의무교육이 29.1%,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행동지원관련 교육이 23.0%로 각각 가장 많다. 응답자의 82.6%가 직원교육이 된다고 하였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유로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43.6%로 나타나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슈퍼비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11명인 65.7%가 슈퍼비전 경험이 있으며, 172명인 96.1%가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3년 미만의 경력자가 직원의 절반 이상인 51.8%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직원이 슈퍼비전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운영 시간은 10~16시로 운영하는 센터가 8개소로 절반을 차지하고, 1교과 평균 시간은 45분인 68.7%, 1일평균 수업시수는 5교시인 68.7%가 가장 높다. 종사자 인식조사결과 적절한 시간은 1교과 평균시간은 30~60분으로 79.1%, 1일 평균 수업시수는 5~6교시로 49.7%가 적절하다. 교육목표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은 자기결정, 자기옹호, 자기관리 등의 일상생활 역량강화와 의미 있는 낮 활동, 지역사회참여 순서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센터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적 지원체계의 구비, 효과적 운영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최소한의 기준 재정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에 따른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과정 및 발전방안

강진숙·심향은·김성동·이은혜(2020)은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현황 및 종사자 인식에 대해 연구결과, 이용자는 남자, 지적장애, 20대가 많고 안인숙 외(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센터 당 평균 11.1명의 지원인력이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다. 수업시간은 45분 운영, 단과반 미운영이 많으며, 대부분의 센터에서 개인별 교육지원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과지도방법으로는 시각자료 활용이 33.0%, 전달식교육이 15.1%, 모델링이 15.1%이다. 종사자들은 교육목표로 일상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6진 분류 영역 중에서 직업능력과 학력보완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는데, 기초문해영역 중 기초자립생활의 필요도와 실행도도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영역은 중간 정도 이상의 필요도를 보였다. 일상생활 및 미래준비 관련 교육과정은 8개 전 영역에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교과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용자의 장애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6%를 차지하였으므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개별화 교육지원 매뉴얼 개발이 가장 시급하며, 이용자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개발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지원인력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발화가 불가하거나 짧은 단어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이용자가 한 센터 당 평균 22명 정도이며, 도전적 행동을 가진 이용자는 센터 당 평균 8.9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의 발달장애인 관련 총 경력은 낮기 때문에 중증발달장애인의 지원과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 등의 마련이 요구된다.

(3)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교육연극 프로그램

김정선(2020)은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자기표현 및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019년 7월 12일~10월 25일까지 16주(22회)에 걸쳐 중증 발달장애성인 10명과 비장애인 교사 5명이 과정 중심 ‘연극공연 만들기’를 하였는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중증 발달장애성인임을 감안하여 교육연극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난이도 낮은 연극놀이 중에서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게임을 구성하고 진행하였음에도 참여자들이 게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발달장애성인들이 연극을 감상만 하지 말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연극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중증 발달장애성인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적 기술이 향상될 것이다. 경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연극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는 제1회 발달장애인영화제와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연극영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지역별센터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발달장애성인 프로그램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성(性)인권 교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21).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2호에 근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월~금 이용가능하며, 단축형(56H), 기본형(100H), 확장형(132H)이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음악 및 미술활동, 공예활동, 도예, 체육활동, 제과제빵, 자조모임, 자립교육 등이 있다.

(2) 성(性)인권 교육사업

발달장애성인 당사자 및 가족 등 보호자, 발달장애인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권 전문정보 및 대처기술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성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으로 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 및 개인상담, 성인권 관점에 대한 접근, 성인권 사례별 대응방안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권 관련 주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경계존중교육 등 성폭력 피해 및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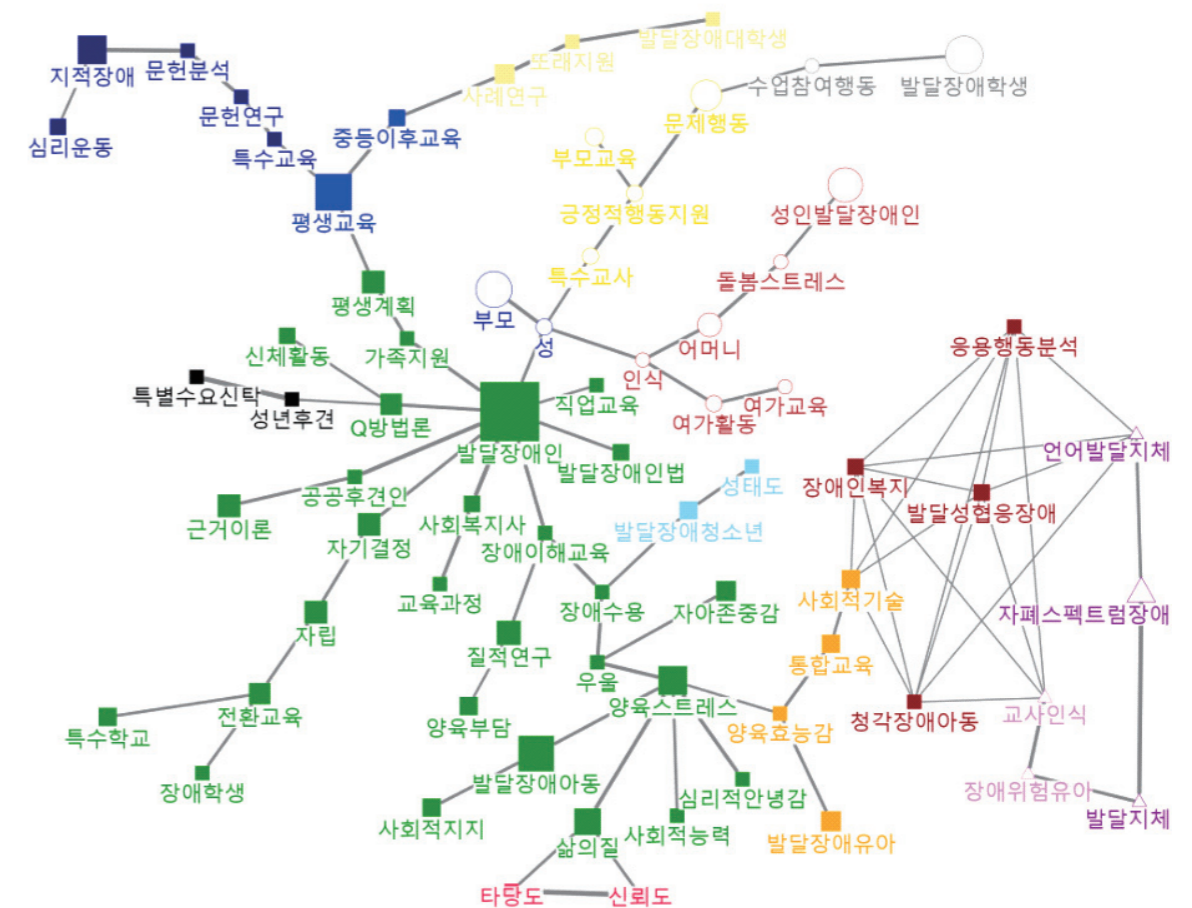
해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발달장애인 성(性)인권 교육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사업이다.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동향

1) 국내 발달장애 분야 연구 동향

가) 국내 발달장애 분야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주영하·박미진(2020)은 발달장애 분야를 주제로 수집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발달장애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국외 WoC인데, KCI에서는 논문제목에서 ‘발달장애’로, WoC에서는 Topic에서 ‘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게재된 논문이고, 최종 분석 대상은 국내 393건, 국외 5,876이다.



출처: 주영하 외(2020),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그림 2.2>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저자키워드 네트워크 분석(PFNet와 PNNC 세부군집)

<표 2.30> 국내 발달장애 분야의 PNNC 세부 군집별 키워드

영역	군집	키워드	영역	군집	키워드
제 1 영역	제 1군집 (28개) 장애수용	Q방법론	제 1 영역	제 4군집 (4개) 양육효능감	발달장애유아
		가족지원			사회적기술
		공공후견인			양육효능감
		교육과정			통합교육
		근거이론		또래지원	
		발달장애아동		발달장애대학생	
		발달장애인		사례연구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청소년	
		사회복지사		성태도	
		사회적능력		발달성협응장애	
		사회적지지		응용행동분석	
		삶의질		장애인복지	
		신체활동		청각장애아동	
		심리적안녕감		제 8군집 (2개) 특별수요신탁	성년후견
		양육부담	제 2 영역	특별수요신탁	
		양육스트레스		제 9군집(2개) 신뢰도	신뢰도
		우울		신뢰도	타당도
		자기결정		제 10군집 (2개) 수업참여행동	발달장애학생
		자립		수업참여행동	수업참여행동
		자아존중감		제 11군집 (2개) 성	부모
		장애수용		성	성
		장애이해교육		제 12군집 (6개) 돌봄스트레스	돌봄스트레스
		장애학생			성인발달장애인
		전환교육			어머니
		직업교육			여가교육

영역	군집	키워드	영역	군집	키워드
제 1 영역	제 1군집 (28개) 장애수용	질적연구	제 2 영역	제 13군집 (4개) 특수교사	여가활동
		특수학교			인식
		평생계획			긍정적행동지원
	중등이후 교육	문제행동			
	제 2군집 (2개) 중등이후 교육	평생교육	부모교육		
		특수교사	특수교사		
	제 3군집 (5개) 특수교육	문헌분석	제 3 영역	제 14군집 (3개) 언어발달지체	발달지체
		문헌연구			언어발달지체
		심리운동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제 15군집(2개) 장애위험유아	교사인식	
		특수교육		장애위험유아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주영하 외, 2020). 첫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패스파인더 네트워크(PFNET)와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NNC)을 통해서 형성된 군집은 국내 15군집으로 나타났으며, 제2군집은 중등이후 교육과 평생교육이다. 세부군집 및 세부군집별 키워드는 <그림 2.2>, <표 2.30> 과 같다. 둘째, 발달장애 관련한 연구는 KCI 주제 분야 분류를 통해 평생교육, 특수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WoC 주제 분야 분류를 통해 교육과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IT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공통적 핵심 4 주제어는 교육, 가족, 행동, 참여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는 성 및 평생교육 군집이, 국외는 과학기술 및 IT 군집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발달장애 분야의 연구가 주영하 외(2020)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과학기술 및 IT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나)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특성 및 취업의사 요인

김유진(2021)은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특성을 알아보고,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의사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는 주로 하고 지내는 활동이 쉽스로 66.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심신장애’ 39.2%, ‘쉬었음’ 27.0%로 나타났다. 구직을 하지도 않고 취업을 희망하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며,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상태와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연령, 최종학력과 초중고등학교 유형이다. 아울러 비경제활동 발달장애 인구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주관적 근로가능 수준으로 밝혀졌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박사혁(2021)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그가 요구와 인식을 대별하여 연구한 47편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핵심 주제별로 재정리하면 <표 2.31>와 같다.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3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1-1. '평생교육요구'를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성인식과 성교육, 성교육 지원 방안 (2015)	자립생활 능력개발, 전환교육 활용방안 (2015)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 제시(2015)	상담요구 준거 틀 마련(2016)
생애주기별 욕구 분석(2017)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미국연구 동향(2017)	취업결정요인 탐색, 고용촉진 방안제언 (2018)	도전적 행동에 대한 양육부담, 사회적 이해증진(2018)
가족기능 양육부담, 가족지원(2018)	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 및 접근증진 (2018)	전환기 지원체제 및 어머니 준비(2018)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직무교육(2019)

스마트폰 활용, 사회 활동 수행능력 영향 (2019)	개인중심계획 현장 적용활성화방안 (2019)	직업흥미검사 하위 유형 도구 문항분포 및 관계성 분석(2019)	리빙랩 활용 父 양육 참여를 위한 ICT개발과 효과성 확인(2019)
자존감의 평균과 다중 발달 궤적을 알아봄(2019)	선거참여 경험과 의미(2020)	삶의 질 전체 및 하위 수준 제시, 배경변인에 따른 삶의 질 수준 차이 분석(2020)	경제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실제적 대안과 방안 모색(2020)

1-2. '평생계획요구'를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평생계획의 필요성 인식 및 준비정도와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분석(2015)	부모대상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해 성별, 연령, 유형과 등급에 따른 차이 (2015)	평생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자녀성, 학교과정, 유형과 정도로 파악(2015)	
--	---	--	--

1-3.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자기결정 프로그램 문헌연구, 주도적 자기결정적인 삶의 방향성(2015)	이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요구 파악(2016)	연극동아리 참여 경험을 통한 심리적·정서적·행동적 변화과정 밝힘(2019)	
---	-----------------------------	---	--

2-1. '부모의 인식'을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성인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분석(2016)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과 참여 실태 (2017)	자녀의 문제행동과母的 우울관계, 母가 경험하는 객관적·주관적 양육부담의 직렬매개효과 검증(2020)	
--------------------------------	---------------------------	---	--

2-2. '관련종사자의 인식'을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성에 대한 부모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종사자의 성 인식과 인식 차이(2015)	사회적기업 고용주에 대한 인식분석으로 고용확대방안 탐색 (2017)		
---	---------------------------------------	--	--

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식'을 주제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실태 요구와 만족도, 이용현황과 이용후 요인에 대한 인식 파악(2016)	이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요구 파악 (2018)	중등 이후 교육기회 제공의 의미, 강사들의 관점 (2018)	
---	------------------------------	-----------------------------------	--

2-4.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의 특징

주거 연구동향과 그 특징 (2015)	발달장애성인들의 주거환경 및 지원 서비스의 현실과 개선방안(2016)	탈시설 과정과 현황, 쟁점을 검토하여 정책과제 도출(2016)	지원정도척도의 성인용·아동용 심층적 분석(2018)
국내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사점(2018)	발달장애성인 대상의 사회적 기술 중재연구 동향 파악(2019)	정보접근권 보장위해 '읽기 쉬운 문서'제작 구체적인 제도마련 필요성 제시(2019)	성인기 주요서비스 및 지원요구 분석(2020)

출처: 박사혁(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중심으로 PP13-38 재구성.

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

김진희(2021)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실험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매우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효과크기 차이에서 효과크기가 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연구대상자가 연령은 30대, 집단원 수는 10명 이상일 경우이다. 둘째, 중재 장소는 장애인복지시설, 중재기간은 8주 이하, 총진행 회기 수는 21 회기 이상, 주당 회기 수는 주2회, 시행시간은 60~65분일 때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 유형으로는 문화예술향유일 때,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인 경우이다. 넷째, 행동관리 영역이 높고 체력 및 신체기능 영역이 가장 낮다. 이는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 실생활 도구로의 발달장애 학생 스마트폰 활용

박상희(2020)는 '사회 실생활 도구로의 발달장애 학생 스마트폰 활용 방안' 을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하여 발달장애 학생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배우고 익혀 이용함으로써,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며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중재

권현진·양한나(2020)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신체활동 연구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가상현실 운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처음 관련 논문은 2010년에 발표되었고 초기에는 심동적 영역의 효과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정의적 영역으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아동,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했다.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Nintendo Wii fit/sports, X-Box와 같은 상용 제품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최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다. 심동적 영역에서는 물체조작 기술, 건강 체력, 협응력, 평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정의적 영역에서는 주의집중, 운동 몰입도,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에 영향이 있으며, 인지적 영역에서는 게임 규칙 및 전략에도 효과가 있었다. 향후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첨단 ICT 기술이 활용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신체활동 영역에 가상현실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 발달장애성인의 취업과 연계된 화훼중심 직업교육

한민정·강영심·옥혜숙(2020)은 발달장애성인의 취업과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훼중심의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N 평생교육원은 화훼를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긍정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화훼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학생의 취업과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 N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 내용은 <표 2.32> 과 같다.

<표 2.32> N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 내용

		교육 내용	세부 사항
교과과정	일반과정(1~3년)	생활지도	이동, 인사, 정리정돈
	전공 과정(1, 2년)	전공 기초과정(1년차)	절화 디자인, 분화 디자인
		전공 심화과정(2년차)	가공화 디자인, 아트 등
	공통과정(1, 2년)	사회관계 영역	자립 생활, 자기표현, 대인관계
		자기관리 영역	건강관리, 경제생활, 성생활
		정보소통 영역	SNS, 자격증, 기능대회
		힐링 관계 영역	영화관람, 기관탐방, 여행
인턴 과정(3년차)	현장실습	취업 연계기관에서 현장실습	

출처: 한민정 외(2020), 발달장애성인의 취업과 연계된 화훼중심 직업교육 사례연구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이 단순노무직만이 아닌 질 높은 직종의 종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발달장애인들의 재능과 장점,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취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취업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성인의 의미 있는 자립으로 이어짐으로써 발달장애성인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이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사례

1)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기초문해교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19)는 2019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초문해교육 영역은 다음과 같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동안 알파벳, 숫자, 한글문해가 어려웠던 중도중복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알파벳, 숫자, 한글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생활, 공공생활, 여가생활, 미디어생활 영역에서의 기초 알파벳, 숫자를 문해하고 한글을 깨우치기 어려운 중도의 장애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림 문자로 된 상징언어를 문해하여 대중교통 이용, 건물에서의 필요한 정보수집, 전자제품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각 12회기로 ①신나는 알파벳 대문자 세상, ②톡-톡-톡 신기방기 수 세상, ③그림 문자로 읽는 한글 세상, ④대중교통 세상의 재발견이다.

2)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이 개발한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개발·수행을 거친 프로그램 사례이다. 모두 10개의 프로그램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표 2.33>과 같다.

<표 2.33>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나, 너,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	인문교양(과학, 역사)142차시, 문화예술(미술, 목공)112차시, 총254차시
양(養)식당[기르고 만들어 먹는 식당]	인문교양(생활 제빵, 생활 조리, 자조 회의)106차시, 문화예술(천연염색, 생활 텃밭, 차 만들기)146차시로 총 252차시
우리 동네 동백문화교실	문화예술(한국무용 125차시, 연극125차시) 총 250차시, 한국무용과 연극이 통합과정으로 운영
일상생활기술 통합 지원 프로그램	문해교육-일상생활문해(정리수납 100차시, 스마트폰 활용 38차시, 생활요리 112차시) 총 250차시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우리 동네 금천 학교	기초문해 60차시, 문화예술(건강관리, 원예)86차시, 인문교양(일상생활, 요리, 성 인권)110차시, 총256차시
꿈을 담은 틀: 꿈틀	문화예술(체력관리, 원예, 음악, 통합예술)136차시, 인문교양(일상생활훈련, 인권, 성교육, 정리수납)120차시, 총 256차시
도레미 음악 집합소	문화예술 250차시
와글와글 영(young) 극단	문화예술 250차시
중장년 발달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기초문해(한글문해)20차시, 인문교양(자기관리)96차시, 문화예술(문화생활) 134차시
청년발달장애인의 뉴미디어 활용교육	문화예술 250차시

출처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구성.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직업준비교육 39차시, 개인역량강화 12차시, 레크레이션 강사 20차시, 요리사 10차시, 응급구조사 4차시, 피부관리사 10차시, 도시농업전문가 32차시, 미술심리상담가 42차시, 바리스타 69차시, 현장체험학습 12차시, 총 250차시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작가 양성 프로젝트	미술 129차시, 음악 69차시, 체육 52차시, 총250차시
발달장애 청년 바리스타 양성 교육	바리스타기초교육 54차시, 바리스타 심화교육 141차시, 핸드드립 및 바리스타 자격시험 교육 55차시, 총 250차시
발달장애청년 행정보조원 양성 교육	한글문서 기초교육 40차시, 직업준비교육 42차시, 직업생활교육 66차시, PC활용향상교육 50차시, 발달행정보조사 양성교육 52차시, 총 250차시

출처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재구성.

3)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은 지역기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지역기반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 2.34>과 같다.

<표 2.34>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 내용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론 56차시, 요양보호사 실무 75차시, 마사지 63차시, 여가활동 24차시, 정서지원활동 18차시, 현장체험학습 14차시, 총 250차시
도전하개 나도 애견훈련사	애견이론 26차시, 애견실무 28차시, 애견훈련 104차시, 애견간식 49차시, 애견미용 14차시, 현장체험학습 29차시, 총 250차시

마. 과제와 전망

1)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은 미성숙한 존재로 통제와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불안전하지만 자율과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 즉 양육의 관점에서 자기결정의 관점으로 인권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듯 자기결정권이 장애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자기인식, 선택하기, 계획하기, 수행하기, 평가하기, 자기옹호, 사회성 기술, 안전기술의 8가지 자기결정영역과 하위요소를 감안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자기결정영역과 하위요소는 <표 2.35>과 같다.

<표 2.35> 자기결정 영역별 하위요소

자기결정영역	영역별 하위요소 (예시)
자기인식	1.나의 신상정보 기록하기 2.나의 하드웨어 분석하기 3.우리 가족 소개하기 4.내가 좋아하는 것 5.나의 장래희망
선택하기	1.나의 패션 감각 2.나의 헤어디자이너 3.선물 고르기 4.책과 음악 그리고 영화 5.즐기는 스포츠
계획하기	1.장래 설계도 그리기 2.나만의 진로 찾기 3.나의 목표 그리기 4.다이러리 만들기 5.여행을 떠나요
수행하기	1,어떻게 할까요? 2.경청하고 대화하기 3.내가 하는 일 4.협력하여 목표 성취하기 5.해결사를 찾아라
평가하기	1.나의 일상 평가하기 2.자신에게 칭찬하기 3.검사결과 이해하기 4.생산량 점검하기 5.수입에 알맞게 지출하기
자기옹호	1.나의 불편함 알기 2.나를 보호해요. 3.권리 탐구 4.지원망 연결하기 5.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사회성 기술	1,마음 읽기.2.우정 유지하기 3.스트레스 관리하기 4.칭찬과 꾸중 수용하기 5.함께 협력하여 만들기
안전기술	1.나는야 몸짱! 2.중요한 먹거리 3.남녀 탐구생활 4.상담이 필요해 5.민주시민

출처: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2020),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 1급 교재 pp. 58-63 재구성

2) 주제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방향성

김원호·이운우(2020)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방향성과 6대 주제 영역별 요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과 발달장애인의 보호자(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분석 결과, 첫째, 방향성에 있어서 평생교육과정은 모든 발달장애인의 삶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참여확대 차원에서 유연성을 확보된 영역별 분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주제 영역에 있어서는 학력보완교육은 생활중심의 편성, 기초문해교육은 생활연령에 적합한 내용구성,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향유, 직업능력교육은 직업의 의미 확장, 시민참여교육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자존감 형성, 인문교양교육은 장애수용으로 자아정체감 확립 등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 2.36> 평생교육 6대 영역별 발달장애인 교육과정의 방향성

평생교육 6영역	교육과정의 방향성	비고
학력보완교육	생활중심의 편성	관련 전문가 집단, 발달장애인의 보호자(학부모) 대상 면담 실시 결과
기초문해교육	생활연령에 적합한 내용구성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의 향유	
직업능력교육	직업의 의미 확장	
시민참여교육	성인발달장애인의 자존감 형성	
인문교양교육	장애수용으로 자아정체감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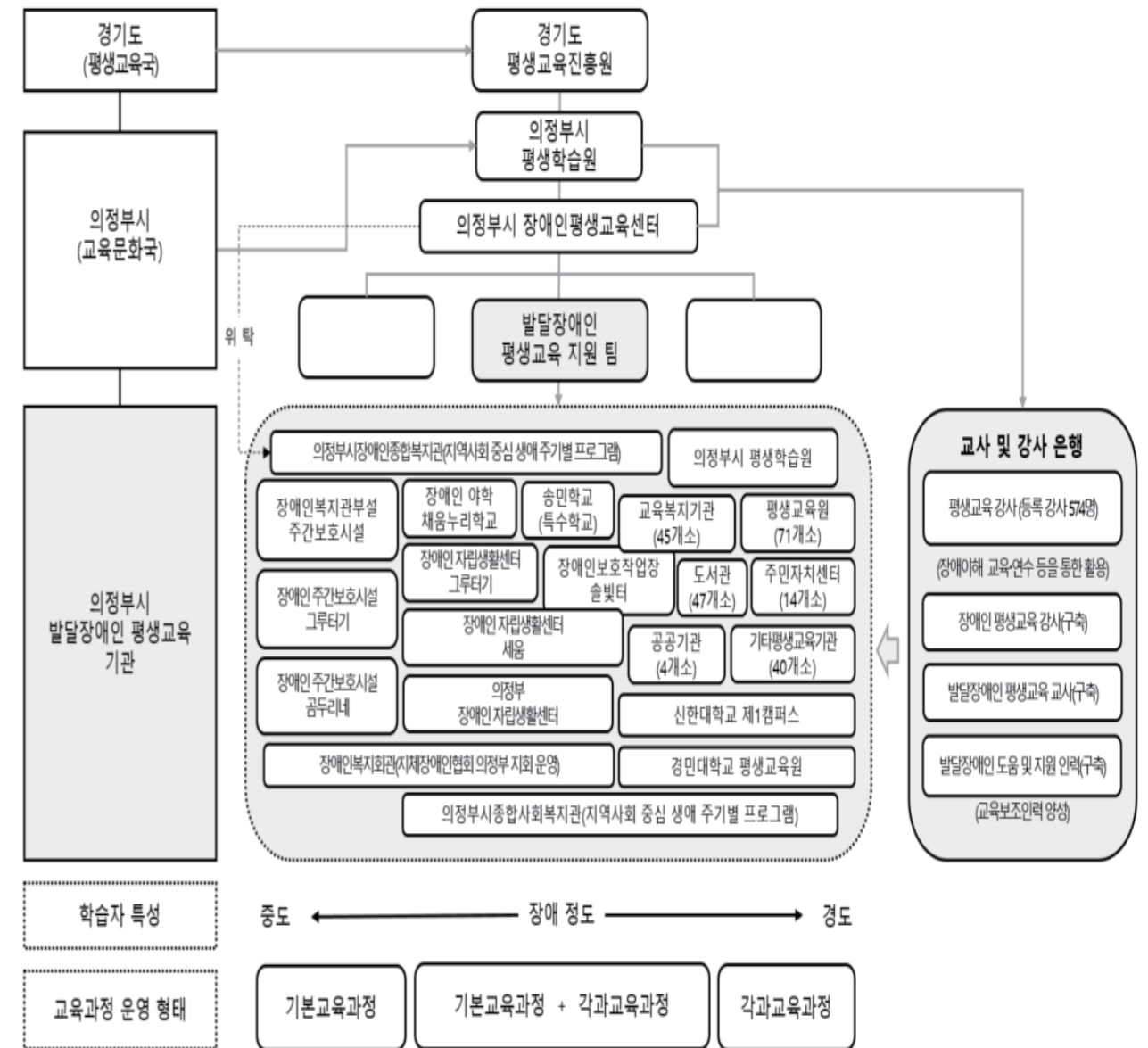
출처 : 김원호·이운우(2020), 주제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념 및 방향성에 대한 고찰: 6대 영역을 중심으로, 재구성

3) 발달장애 성인의 성(性)과 성교육

김유리·표윤희·서민경·조당을(2021)는 발달장애성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장애복지기관 종사자의 경험 및 인식연구를 통해 장애복지기관 종사자가 가진 발달장애성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성인의 데이트와 사랑의 모습, 성에 대한 관심, 비장애인의 경험과 유사하게 사회정서 측면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성인의 성교육과 상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역량 부족, 외부 성교육 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했다. 셋째, 성폭력 예방, 성 건강과 위생, 사회성 기술 등을 포함하는 성교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참고할만한 교재교구가 부족했다. 넷째, 발달장애성인의 성교육이 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지식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결혼생활에서 알아야할 구체적인 교육과 지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끝으로 보호자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김주영(2020)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관, 기타 대학 등 8개소의 현황과 운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향은 상호 이해와 통합 지원, 참여자의 요구에 맞는 즉시 지원, 지역사회 중심 지원의 세 가지이며, 평생교육 지원의 목적은 발달장애성인의 요구 특성에 적합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가능하도록 학령기 이후 단절된 생애주기별 기본교육과정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성인으로서의 개인적인 기호와 필요 그리고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는 크게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제공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발굴 및 확충,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담팀 운영을 기반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모형을 <그림 2.3>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5단계 지원 과정으로 학습자 평생교육 의뢰, 센터 평생교육 진단, 평생교육 계획 수립, 평생교육과정 운영, 평생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제시하였는데 <그림 2.4>와 같이 같다.



출처; 김주영(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p23.

[그림 2.3] 경기도 의정부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모형(가상)

4.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가. 장애인 관련 주요법률

1) 중앙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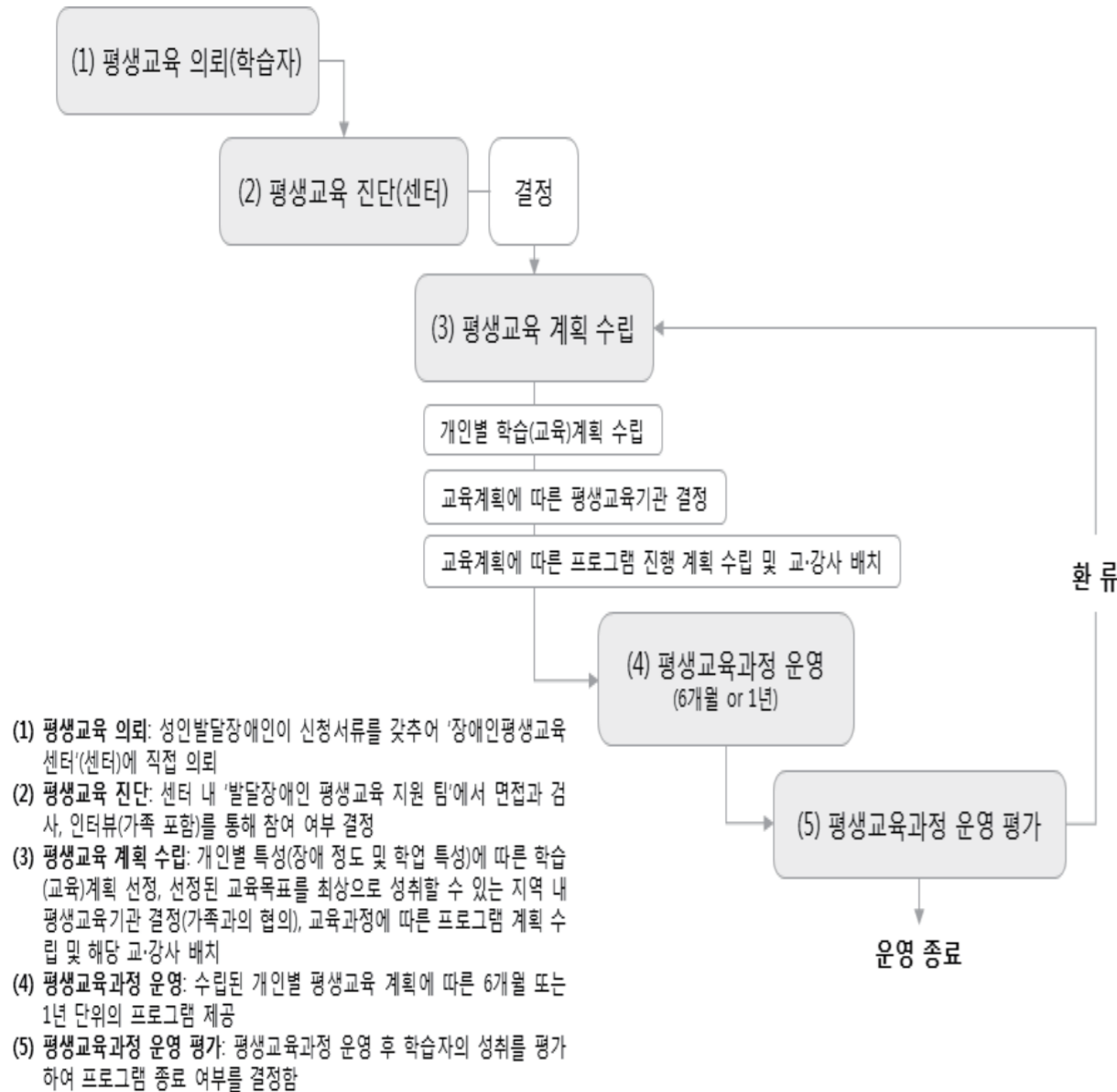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와 관련한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이 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최초 장애인 관련 법으로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후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등록제를 신설하는 등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후 1999년, 2007년 두 차례 전부 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 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들로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총칙, 기본정책의 강구, 복지조치, 자립생활의 지원,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20조).



출처; 김주영(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p22.

[그림 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5단계 과정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차별행위,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의 내용을 시작으로 6가지 영역(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에서의 차별금지의 내용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 활동지원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비용의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시행,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 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관련 주요법률을 살펴보면 <표 2.37>과 같다.

<표 2.37> 장애인 관련 주요법률

법률명	제정일	주요내용(목적)
장애인복지법	1981.06.05.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01.13.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04.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01.27.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005.07.2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명	제정일	주요내용(목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04.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05.25.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03.21.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법	2010.04.12.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01.04.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02.2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05.20.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명	제정일	주요내용(목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29.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12.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경기도

가) 경기도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경기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들은 주로 장애유형별 지원 조례, 시설에 관한 지원 조례, 인권에 관한 내용의 조례 등이 있다.

장애인 관련 주요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장애인 관련 조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인복지 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권리증진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권리, 의견수렴, 차별금지, 중증장애인의 보호,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장애인복지정책 기본 방향을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장애인의 고용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주거안정, 가족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도지사는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토록 하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적합한 교육 자료 제작·배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요조례의 내용은 <표 2.38>와 같다.

<표 2.38> 경기도 장애인 관련 주요조례

법률명	제정일	주요내용(목적)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	2020.5.1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수립·추진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2020.05.19.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2021.03.16.	경기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2016.02.24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경기도 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2021.07.14.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2019.06.18.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2018.01.11.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률명	제정일	주요내용(목적)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2008.01.7.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014.10.2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2.04.06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2010.03.18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2019.06.18	경기도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2.24.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2016.12.16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6.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009.09.13.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타 시도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

타 시도에서도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한 조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 자립과 권리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에 가장 먼저 제정·시행되었으며, 17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에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2011년에 가장 먼저 제정·시행하였으며, 전라남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8년에 서울시에 가장 먼저 제정·시행되었으며, 현재 부산, 대전, 울산, 경상북도, 제주도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대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시행되었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4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등 경기도 및 각 시도 별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시행하고 있다.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1) 중앙정부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의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정밀진단 비용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및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의사소통지원),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제26조 평생교육 지원) 규정짓고 있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2007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장애영아의 교육 지원 및 보호자의 의무,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개정은 학교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의 필요로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과정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연수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도구 개발·지원과 평생교육의 지원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자해독 교육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다)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 제개정 내용

평생교육법은 1982년 「사회교육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지식, 기술이 확대되고 생활 환경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한평생 보람된 생활을 위하여 누구든지 평생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헌법 제29조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교육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 개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법의 제명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이수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사내대학·원격대학 등 학교교육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5월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및

제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교육법 주요 개정사항은 <표 2.39>과 같다.

<표 2.39> 평생교육법 주요 개정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제5조제2항 신설, 제9조제2항).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 국가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 평생교육 일원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부분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함(제20조의2, 제21조의2 신설).
- 평생교육사 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제26조제3항).

2019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2)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관련 주요 내용

2021년 6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조)
 -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
 -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 적극 권장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제9조)
 -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제10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제12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제1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위원 포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제15조의 2)
 -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제19조의 2)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제19조의 3)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 이수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제20조)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포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제20조의 2)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제21조)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제21조의 2)
 -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
 -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제26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배치

2) 경기도

(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6년 2월에 제정되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정·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 계획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 7월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1조(평생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지원)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평생교육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시민참여 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2월에 제정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시행되었고, 경기도, 제주, 광주, 대전,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시행계획)는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법률에 의해 수립되며, 정부의 매5년마다 수립되는 장애인종합계획,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 특수교육 발전5개년 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 장애인복지계획(2021~2023)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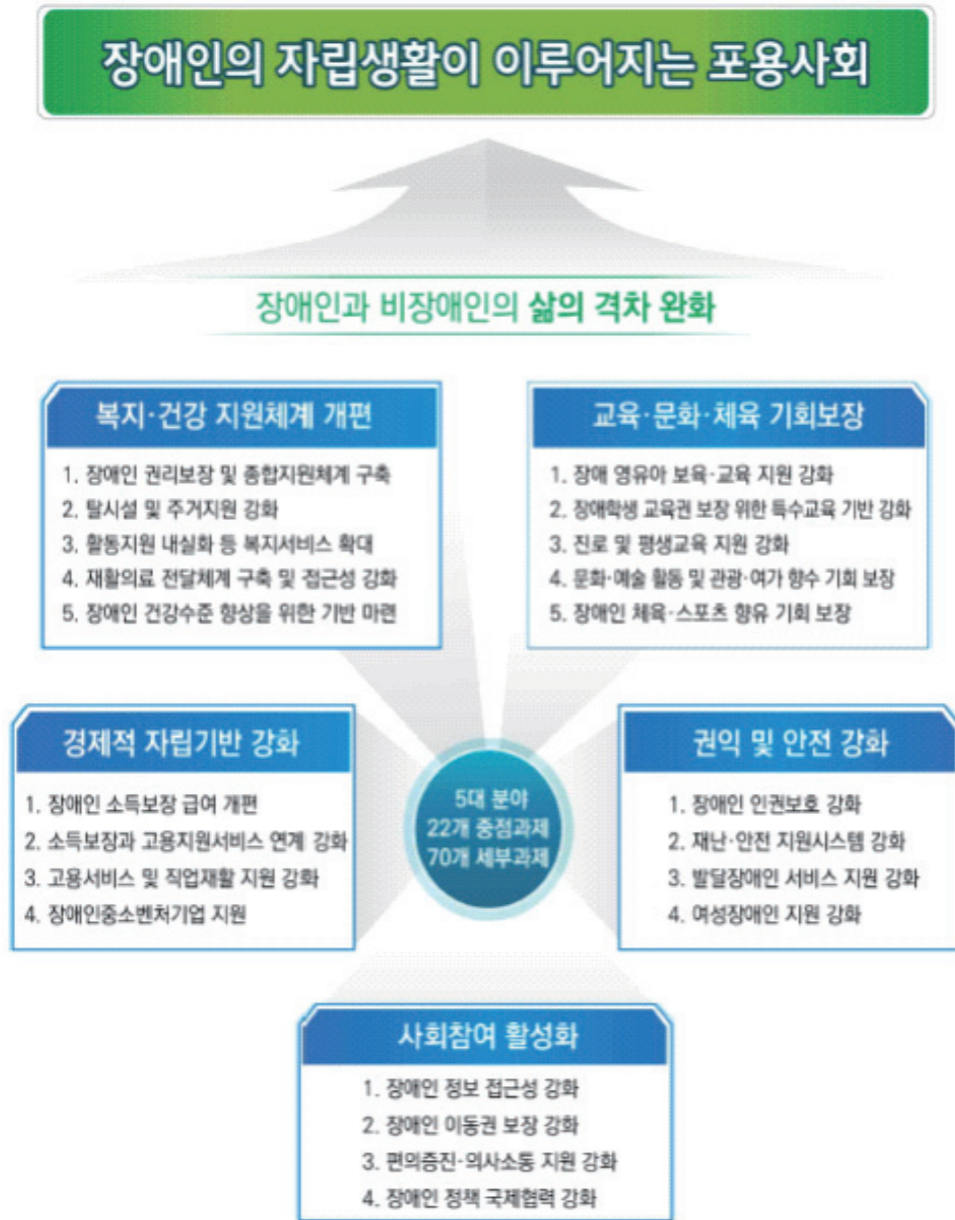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매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하고 있다. 5차 계획의 두 번째 분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의 세부 계획을 담고 있으며, <표 2.40>과 같다.

<표 2.4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
 - * ('18)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 지원 및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 ('19)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 ('20~) 전국 확대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참여 학생 수: ('18) 1,871명 → ('22) 2,185명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 * 프로그램 수: ('18) 650개 → ('22) 1,130개



[그림 2.5] 제5차 계획 정책 비전도

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2018~202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헌법」 제31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의 청사진으로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법」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포함되면서 지난 2018년 시행된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2018-2022)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중점 정책 대상으로 장애인을 설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이 추가되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학습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지역의 소외계층 맞춤형 강좌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시·도 간 분담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역할 분담토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행계획의 추진정도를 매년 평가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표 2.41> 역할분담체계 및 지역 관련기관의 역할

<p>< 역할 분담 체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 (시·도) 지역 실정을 감안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등
<p>< 지역 관련기관의 역할(예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지정·운영 및 등록 관리 ○ (각급 학교장,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

4차 계획에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제도 접근성(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등에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 장애인 맞

춤형 프로그램 지원(학력보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확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학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확대 계획을 제시하였다.

<표 2.42>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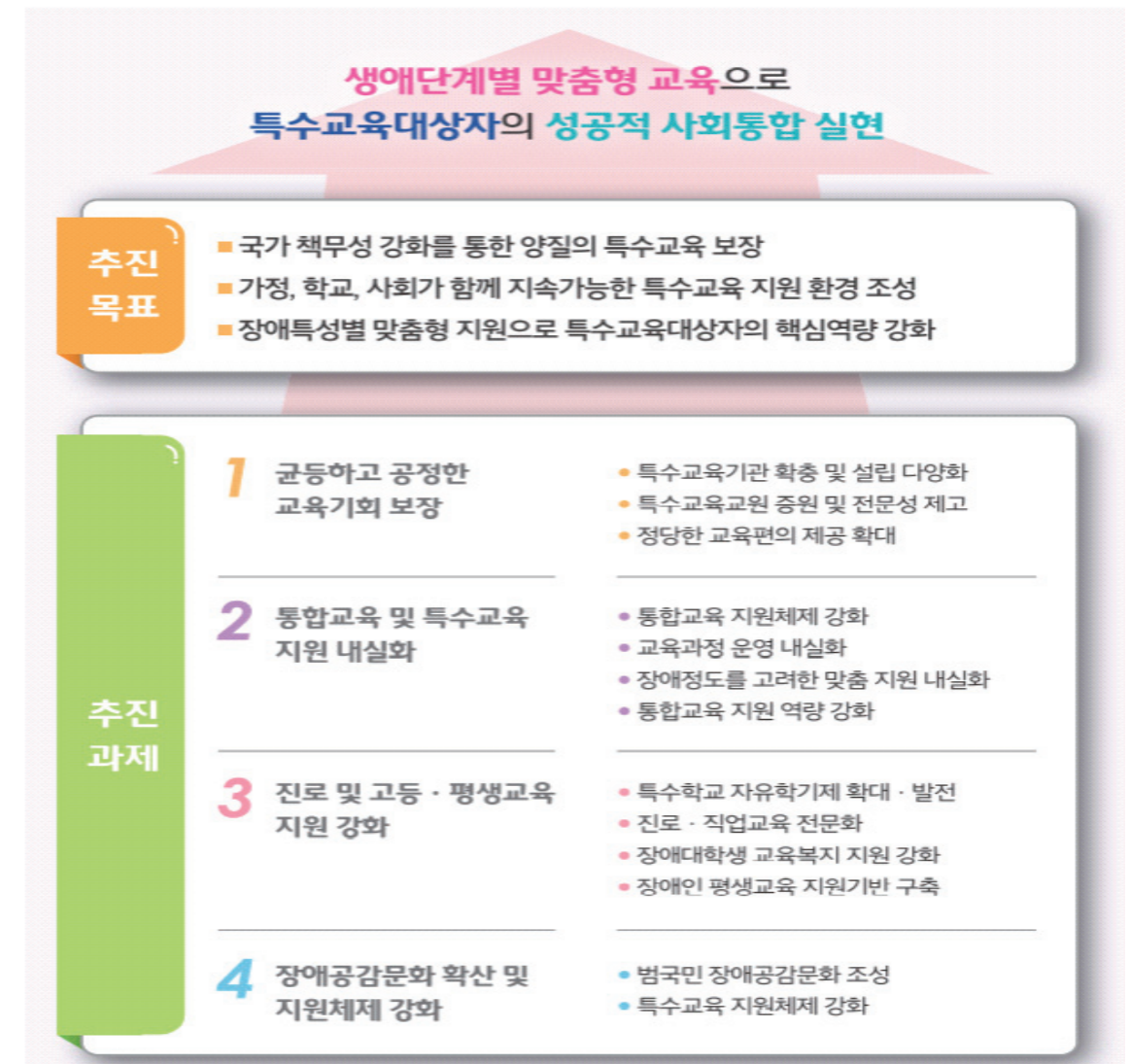
대 과제	중 과제	소과제	세부내용
1.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 학습	① 전국민 평생 학습권 보장	가) 재직자 등 성인의 자발적 평생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급 학습휴가제 확산 인생 전환기 진로설계 컨설팅 지원 성인의 학습능력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평생 학습이력관리 및 학습이력인정제도 개선
		나) 학습자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 고졸 취업자 후진학, 경력개발 지원 다문화 가족 학습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 지원
	② 소외계층 평생 학습 사다리 마련	가) 문해, 학력보완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문해교육 지원 확대 학습자 특성을 감안한 방송통신중·고 교육의 질 개선 방통대 활용,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 지원 및 특성화
		나)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 학습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 학습	① 온라인 평생 교육 생태계 구축	가) 4차 산업혁명 대비 K-MOOC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 MOOC 구축 및 직업교육 혁신 기제로 활용 4차 산업혁명 관련 K-MOOC 개발 및 제공 확대
		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능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② 산업 맞춤형 평생 교육 확대	가) 매치업(Match業) 시범운영 및 현장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운영 모델 구축 직업교육 혁신 모델로 안착 지원
		나)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민관 합동 추진체계 마련	

대 과제	중 과제	소과제	세부내용
2. [일자리]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 학습	③ 대학의 평생 교육 기능 강화	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 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성인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유연한 학사운영(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한 성인친화적 대학 운영 학점은행제를 통한 양질의 산업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나) 전문대학을 평생 직업교육의 허브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혁신 전문대학의 성인평생교육 기능 강화 대학본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3.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 학습	①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 학습 역량 강화	가) 지역 단위 평생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 학습도시 성과평가를 통한 특성화 지원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 확대 등 주민의 접근성 제고
		나) 지역의 자생적 평생 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평생 학습의 핵심기관으로 평생 학습기관 질 제고 지역 평생 교육 전문인재로서 평생 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
	② 평생 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 가치 창출 지원	가) 지역 단위 시민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시민역량 강화 인문특화 평생 학습도시 육성 수요자 맞춤형 인문강좌, 시민·안전·환경 교육 확대
		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 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및 우수 학습 모임 성장 지원
4. [기반]이 튼튼한 평생 학습	① 평생 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가) 평생 교육 관련 법령 및 통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 교육 관련 법령 정비 추진 평생 교육 통계 질 및 효용성 제고
		나) 평생 교육 정책 추진 체계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 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선 국가-시도 평생 교육진흥원 연계 협력 및 운영 내실화 지원
		다) 평생 교육 분야 국제 협력 확대 및 특수 외국어 교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와의 평생 교육 협력 확대 한국 평생 교육의 세계 기여 특수 외국어 교육 활성화
	② 평생 교육 자원 투자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가) 국가 차원의 평생 교육 투자 확대	
나) 중앙·지방 정부 평생 교육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및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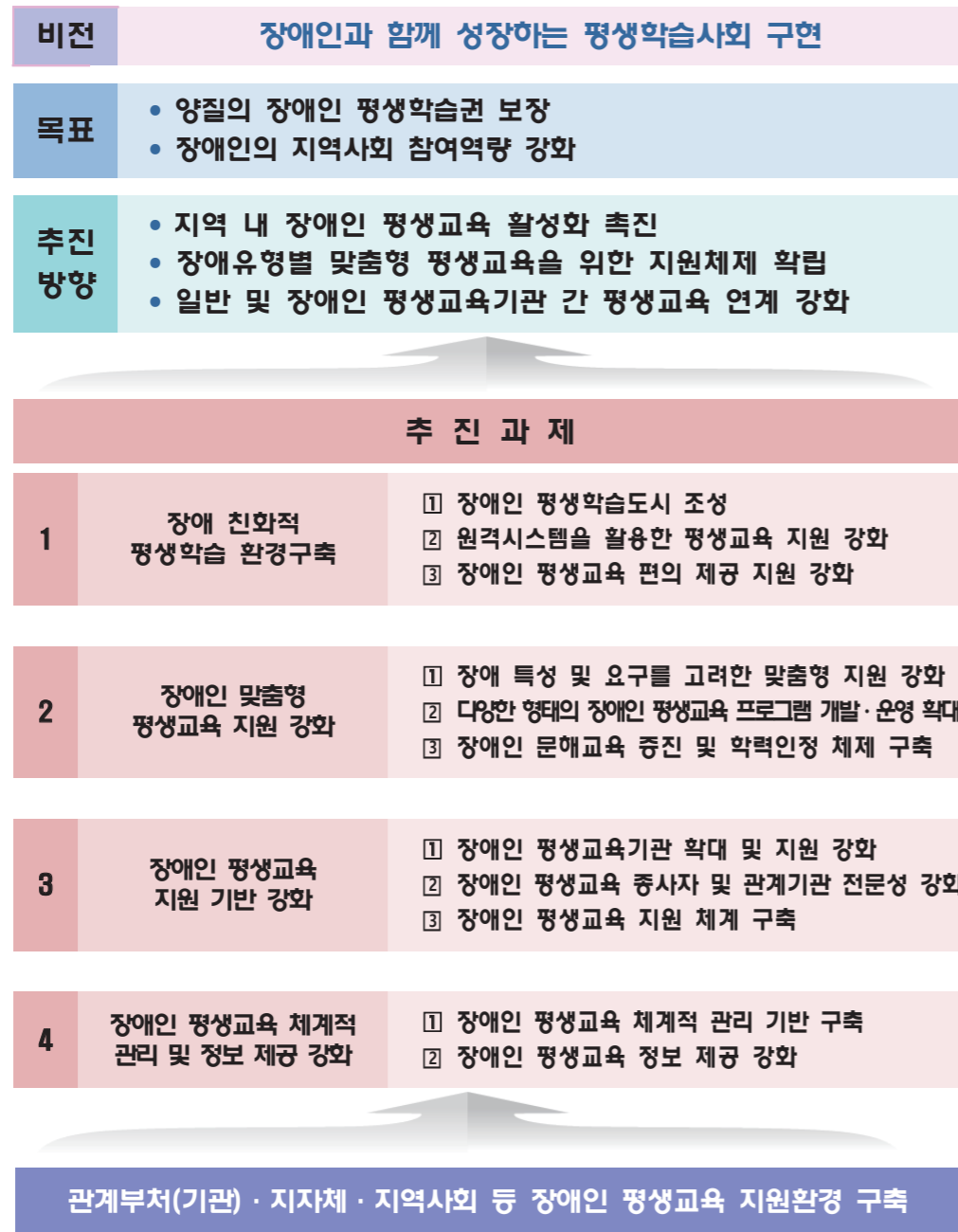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제3차(2008~2012) 계획에서 장애성인을 위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이 포함되면서, 특수교육 정책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제4차 계획(2013~2017)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계획이 추가되었다(김기룡 외, 2020).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2018~2022)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확대, 둘째,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강화, 넷째,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책임 확대이며, 해당 내용은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제5차 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그리고, 교육부는 2019년 12월, 포용복지국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평생교육법 등에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여건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평생교육 연계 강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전체계도는 <그림 2.7>와 같다.



[그림 2.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비전 체계도

2) 경기도

가) 경기도 장애인복지계획(2021~2023) 수립연구

경기도는 2020년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는 장애인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하고자 ‘장애인을 포용하는 공정한 사회 경기도’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를 수립하였다.

<표 2.43> 경기도 장애인복지계획 비전에 따른 분과별 과제

<p>○ 분야별 과제(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립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지원(공약) • 일하는 장애인 통장(신규) • 장애인 일자리 개발(확대) - 사회참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전환 T/F팀 자립전환지원 조직으로서 기능강화(확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공약) • 저상버스 확대 및 휠체어 고속버스 시범 도입 추진(공약) • 장애인콜택시 확대(공약) • 장애인 AAC 마을 만들기(신규) •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신규) • 소수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확대) - 교육·문화·체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시범사업(신규) •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확대)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신규) - 사회적 돌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고령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서비스(365 쉼터 확대와 긴급돌봄 시간 추가 제공) •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 건강 및 복지서비스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 소수장애인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 맞춤형 장애인 상담 지원 •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재난 발생시 장애인 대응체계 마련
--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사회돌봄분야에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노력이 정책에 반영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장애인 AAC 마을 만들기,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의 과제를 수립하여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을 지원하는 과제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과제로 보이나, 최종중 발달장애인의 지원 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경기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중장기 정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상상/이상/꿈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 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다.

5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용 및 직업재활 분야 ‘발달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기도’
- 둘째, 건강 및 주거 분야 ‘발달장애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기도’
- 셋째, 가족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기도’
- 넷째, 인권 및 권리보장 분야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
- 다섯째, 미래보장 분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기도’

이중 네 번째 분야 인권 및 권리보장 분야에서는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에 기반한 프로그램 마련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복지관 등에 사업비 지원 방안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관련 평생교육정책 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 경기도 발달장애인 중장기 정책과제

3장.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인구 및 정책 현황

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현황
2.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정책 현황

Ⅲ.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인구 및 정책 현황

1.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현황

가. 의정부시 장애인 현황

의정부시 인구는 458,466명이며, 등록장애인 인구는 총 22,186명(4.8%)이다. 등록장애인 중 남성 장애인은 12,842명(57.9%), 여성 장애인은 9,344명(42.1%)이다(2021년 10월 30일 기준).

장애 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총 1,904명으로 남성 1,224명, 여성 680명 등록되어 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총 10,144명으로 남성 5,807명, 여성 4,337명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총 2,206명으로 남성 1,350명, 여성 856명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총 3,085명으로 남성 1,656명, 여성 1,429명이며, 언어장애인의 경우 총 176명으로 남성 129명, 여성 47명이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총 2,411명으로 남성 1,418명, 여성 993명이며, 정신장애인의 경우 총 807명으로 남성 377명, 여성 430명이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총 987명으로 남성 569명, 여성 418명이며, 심장장애인의 경우 총 49명으로 남성 35명, 여성 14명이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총 103명으로 남성 77명, 여성 26명이며, 간장애인의 경우 총 108명으로 남성 80명, 여성 28명이다. 안면장애인의 경우 총 25명으로 남성 16명, 여성 9명이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우 총 126명으로 남성 74명, 여성 52명이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총 55명으로 남성 30명, 여성 25명이다.

<표 3.1> 의정부시 장애인 현황

구분		합계		
		합계	남성	여성
의 정 부 시	지적	1,605	963	642
	자폐성	299	261	38
	지체	10,144	5,807	4,337
	시각	2,206	1,350	856
	청각	3,085	1,656	1,429
	언어	176	129	47

구분	합계			
	합계	남성	여성	
의정부시	뇌병변	2,411	1,418	993
	정신	807	377	430
	신장	987	569	418
	심장	49	35	14
	호흡기	103	77	26
	간	108	80	28
	안면	25	16	9
	장루·요루	126	74	52
	뇌전증	55	30	25
합계	22,186	12,842	9,344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내부자료.(2021.10.30.)

의정부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다음으로 10번째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 수가 많았다. 등록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 유형은 안면 장애(21번째), 간 장애(15번째), 언어 장애(13번째), 지적, 장루·요루 장애(12번째), 지체, 자폐성, 심장, 호흡기, 뇌전증 장애(11번째), 시각, 청각, 신장 장애(10번째)였으며, 상대적으로 등록된 인구가 많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정신 장애인(9번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 경기도 장애인 현황

시·군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569,726	267,043	55,060	54,212	78,042	5,168	45,883	8,287	19,563	23,587	1,312	2,482	3,504	629	3,538	1,416
수원시	43,065	19,866	4,287	4,463	5,584	429	3,332	729	1,531	1,927	78	152	250	46	280	111
고양시	41,878	18,210	4,383	4,145	6,059	376	3,248	972	1,507	1,871	104	227	344	47	296	89
부천시	37,378	17,316	3,480	3,647	5,352	337	2,818	513	1,427	1,680	57	155	226	53	213	104
용인시	36,491	15,851	3,942	3,450	5,413	328	2,775	699	1,523	1,590	109	153	290	30	270	68
성남시	36,135	15,471	3,752	3,588	5,481	331	2,860	672	1,409	1,642	129	203	232	43	235	87
안산시	32,918	16,999	2,684	2,897	4,182	291	2,728	332	984	1,239	67	107	146	32	145	85
남양주시	31,904	15,574	3,155	3,085	4,051	308	2,354	410	877	1,364	77	152	184	29	197	87

시·군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화성시	29,202	14,302	2,617	2,717	3,863	333	2,305	453	930	1,069	69	102	182	34	163	63
평택시	24,881	12,602	2,079	2,249	3,356	209	2,069	205	743	855	64	100	125	29	144	52
의정부시	21,941	10,161	2,407	2,200	2,974	169	1,551	271	781	963	54	99	102	26	128	55
파주시	21,156	9,787	2,184	1,935	2,939	202	1,773	389	624	803	58	101	119	23	146	73
안양시	21,107	9,817	2,130	2,103	2,875	176	1,465	336	703	1,029	47	87	129	22	128	60
시흥시	20,924	10,767	1,818	1,817	2,778	216	1,562	217	546	787	39	74	125	25	109	44
김포시	17,931	8,573	1,641	1,769	2,472	158	1,336	238	511	805	41	81	108	22	123	53
광주시	16,542	7,847	1,712	1,590	2,093	159	1,500	203	349	670	37	98	109	18	124	33
광명시	12,928	6,086	1,245	1,257	1,749	120	947	174	492	540	32	79	81	9	73	44
양주시	12,244	5,815	1,199	1,104	1,485	108	1,050	140	565	500	32	48	65	18	81	34
군포시	11,654	5,327	1,121	1,102	1,836	113	787	173	393	538	30	67	58	12	73	24
안성시	11,116	5,280	900	1,040	1,688	88	1,136	104	330	350	16	32	55	11	63	23
하남시	11,111	5,213	1,136	1,039	1,579	102	760	187	322	510	27	61	78	10	63	24
이천시	10,689	4,991	917	962	1,380	93	1,216	166	326	411	11	47	69	13	59	28
포천시	10,219	5,164	895	894	1,275	70	1,003	56	307	357	11	24	68	11	63	21
오산시	8,849	4,053	769	849	1,071	90	894	122	457	325	22	43	59	14	57	24
구리시	8,750	4,340	777	814	1,149	72	658	121	243	386	29	45	39	6	46	25
양평군	7,878	3,597	777	700	1,051	69	891	74	239	277	13	36	65	11	57	21
여주시	7,330	3,400	725	751	867	58	820	62	243	245	10	22	53	12	45	17
의왕시	6,561	3,053	628	595	984	52	443	110	235	284	13	27	57	4	52	24
동두천시	6,318	2,851	708	560	852	48	550	46	335	230	18	33	22	6	40	19
가평군	5,226	2,148	493	402	773	33	626	30	457	156	9	15	38	5	28	13
연천군	3,438	1,766	295	298	506	17	268	20	108	102	4	6	19	5	18	6
과천시	1,962	816	204	190	325	13	158	63	66	82	5	6	7	3	19	5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나.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현황

1)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

의정부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총 1,904명으로 남성이 1,224명(64.3%)으로 여성 680명(35.7%)보다 많이 등록되어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모두 심한 장애에 해당하며, 의정부시 전체 등록장애인 인구 중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장애 정도별 등록 현황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의정부시	지적	1,605	963	642	0	0	0
	자폐성	299	261	38	0	0	0
합 계		1,904	1,224	680	0	0	0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내부자료.(2021.10.30.)

2) 장애 유형별, 연령별 등록 현황

의정부시 등록 발달장애인 인구는 총 1,904명이며, 20세~ 39세까지의 지적장애인이 723명, 자폐장애인이 116명 총 839명(44.1%)으로 청년층이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8세 ~ 19세(학령기)까지의 지적장애인이 339명, 자폐장애인이 132명 총 471명(24.7%)이었으며, 40세~ 64세(중장년기)까지의 지적장애인이 429명, 자폐장애인이 3명 총 432명(22.7%)이었다. 1세~ 7세(영유아기)까지의 지적장애인은 48명, 자폐장애인이 48명 총 96명(%)이었으며, 65세 이상(노년기)의 경우 지적장애인만 66명(3.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4>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연령별 현황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의정부시	1세 ~ 7세	48	35	13	48	39	9
	8세 ~ 19세	339	199	140	132	115	17
	20세 ~ 39세	723	449	274	116	104	12
	40세 ~ 64세	429	245	184	3	3	0
	65세 이상	66	35	31	0	0	0
합 계		1,605	963	642	299	261	38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내부자료.(2021.10.30.)

3) 장애 유형별, 동별 등록 현황

의정부시 등록 발달장애인 인구는 총 1,904명이며, 지적장애인의 경우 송산동이 404명(2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곡동 321명(20%), 의정부동 235명(14.6%), 호원동 187명(11.7%), 장암동과 자금동 각각 99명(6.2%), 흥선동과 녹양동 각각 87명(5.4%), 마지막으로 가능동이 86명(5.4%) 순이었다. 자폐장애인의 경우 송산동이 97명(3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곡동 69명(23.1%), 호원동 30명(10%), 의정부동 29명(9.7%), 자금동 19명(6.4%), 가능동 16명(5.4%), 장암동과 녹양동 각각 15명(5%), 마지막으로 흥선동이 9명(3%) 순이었다.

<표 3.5>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유형별, 동별 현황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의정부동	235	135	100	29	27	2
호원동	187	103	84	30	24	6
장암동	99	56	43	15	15	0
신곡동	321	191	130	69	62	7
송산동	404	259	145	97	85	12
자금동	99	60	39	19	17	2
가능동	86	53	33	16	10	6
흥선동	87	53	34	9	8	1
녹양동	87	53	34	15	13	2
합 계	1,605	963	642	299	261	38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내부자료.(2021.10.30.)

2.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정책 현황

가. 장애인 관련 조직

1) 조직도



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홈페이지

[그림 3.1] 의정부시 장애인 조직

2) 부서업무

노인정책팀	노인돌봄서비스 추진, 독거노인 관리
노인요양팀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변경 신고
노인지원팀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지원, 기초연금, 월등난방비 등 지급
장애인정책팀	장애연금 등 각종 수당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지원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업무 협의

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홈페이지

[그림 3.2] 의정부시 장애인 부서 업무

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 사업내용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정하는 후견심판청구비용(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제출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첨부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 이해관계인 동의서(이해관계인 범위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인감증명서 첨부)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후견인 후보자 선정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하거나 가족 중 후견인 선정
-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
-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비용 지원(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급)
- 지원내용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급 (월 150천원, 단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활동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공공후견인 활동 감독
 - 후견인 활동보고서 확인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제출
 - 기타 후견활동 감독 : 후견심판청구 결정 직후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 결과를 후견인 통해 확인
- 후견인의 업무 수행 체계
 -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후견인은 해당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공후견법인에 후견인 선임 결과를 통지
 - 후견 감독인이나 후견법인은 후견인에게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후견법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 조사 및 복지 수요조사(사회조사보고서 참고, 보충·변경 사항여부 확인)
 - 후견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공공후견법인이 업무지원 가능)
 - 후견인은 후견인 활동보고서를 후견감독인에게 제출(일차적으로 공공후견법인에 보고하여 점검을 받음), 후견 활동 개시
 - 후견인의 활동목표는 “피후견인 안전망 조력자” 형성에 있음. 이를 위해 필요한 사무의 후원, 대리권행사가 필요. 활동에서는 항상 긴급연락망 숙지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도움을 받도록 함
 - 후견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협이 발생하면 공공후견법인 및 후견감독인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
 - 정기보고서 제출. 후견 활동과 관련된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후견인은 매월 정기보고서 작성 → 후견법인에 제출 → 후견감독인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

- 정기보고서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유하는 것은 법인후견에만 한함
- 후견업무의 종료 : 후견종료보고서 제출, 후견 종료 등기 신청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 후견 심판의 결정
 - 가정법원은 청구 후 심리를 걸쳐 통상 6~8주 후에 심판청구의 적격성을 판단
 -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림
 -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등)
 -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함(민법 제950조)
 - 후견감독인은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대신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 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의 종료에 관하여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 후견인 활동 지원
 - 후견인 활동 안내 매뉴얼 제공(공공후견법인)
 - 후견인을 대상으로 후견인 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재산상황 조사방법, 활동방법, 후견인 활동 매뉴얼의 이해 등에 대해 안내(공공후견법인)
 - 후견인에게 후견인 정기보고서 작성 안내(공공후견법인)
 - 기타 후견인이 후견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협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력 제공(공공후견법인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공후견인 활동을 할 경우, 지자체 및 시설은 후견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인정

3) 공공후견법인

- 지정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 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지정기간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 공공후견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초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공후견법인 운영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아 목표 인원 후견인 모집, 교육 실시 등 사업 수행
 -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부[서식 35]를 작성하여 지자체장 및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제공 → 지자체장은 후견심판 청구 시 동 명부에서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추천된 자를 선택하여 법원에 추천
 -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일차적 관리 및 활동지원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수요 발굴을 위해 가정법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공공후견법인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 일반사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제도 홍보
 - 공공후견법인은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후견업무 수행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필요시 사회조사보고서 및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비 및 후견인활동비 집행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공공후견법인과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
 - 공공후견법인과 지자체는 반기별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참여(시·도 주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 공공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
 - 공공후견법인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지원, 실적관리 등에 있어 협조체계 구축하고, 공공후견법인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분기별로 업무관련 사항을 필히 상호 공유

4)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사업내용 :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
- 지원대상 : 심리상담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12개월간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의 연장조치가 없는 한 향후 2년간 재이용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00천원 이내
 -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0천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이용자 본인부담

○ 제공기관 현황

<표 3.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소
마음자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백미선	의정부시 평화로 635, 305호 (의정부동, 미림프라자)
지피지기 심리상담 연구소	백원대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67, 603호(민락동,파워프라자)
신한대학교 로고스 봉사지원단 지역사회 서비스센터	송정애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신한대학교 은혜관 지하 1층)

-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검사 결과 및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 대상자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시 일시, 서비스 내용,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례 발생 주의
- 서비스 종료 및 연장
 - 서비스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 사업내용 : 저소득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단독가구1,220천원/부부가구1,952천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금액

<표 3.7>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금액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만원
	보장시설수급자	0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4만원

○ 장애수당

<표 3.8> 장애수당 지급 기준

구분		기초생활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
만18세미만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만18세이상 경증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6)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 사업내용 : 하절기 및 동절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7월~9월 월 40,000씩, 11월~3월까지 월 50,000원씩 냉난방비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제외

○ 지급일

- 매월 20일 (7월~9월, 11월~3월)

○ 지급개시 :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결정일은 수급자 선정일, 장애등급 결정일 기준

○ 지급정지 :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남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되 단독가구는 지원제외

○ 정지기간 :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부재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원내용 : 하절기 7~9월까지 가구당 40,000원, 동절기 11월~3월까지 가구당 50,000원 지원

7)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 사업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

○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

○ 알선절차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경기도)
- 신청접수 계획 시달(경기도 → 시·군→ 읍·면·동)
-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읍·면·동 →시·군 →경기도)
- 신청자 명단 보고(동 → 시 → 경기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기도 → 시 → 동, 경기도 → 공동주택 공급처)
- 인터넷 청약접수(대상자 → www.applyhome.co.kr)

○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정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긴 경우

- 신청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읍·면·동 비치)
 - 신청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8) 장애인 일자리사업

- 사업내용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춘 복지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 사업기간 : 매년 1월 ~12월(12개월)

- 근무분야 및 급여

- 일반형일자리 : 36명(월 급여 1,745,150원)
 - 근무내용 : 복지 및 일반 행정 지원
 - 근무처 : 동 주민센터, 시청, 장애인 단체
 - 근무시간 : 5일(월~금, 40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시간제일자리 : 11명(월 급여 872,580원)
 - 근무내용 :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 근무처 : 동 주민센터, 장애인 단체 등
 - 근무시간 : 5일(월~금, 20시간) / 1일 4시간 근무
- 복지형일자리 : 54명(월 급여 467,600원)
 - 근무내용 : 사무 보조, 환경 보조(청소), 급식 보조 등
 - 근무처 : 장애인 단체, 학교(급식 도우미, 도서관 사서 보조)
 - 근무시간 : 주 14시간·월 56시간 원칙, 격일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근무제

- 신청시기 : 매년 12월 초, 시청 내 일자리센터 접수

- 신청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장애인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본, 자격증사본 등

- 참여자 제외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 참여한 자(중증장애인 등 제외) 등

9)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신청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신청서류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지원내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나)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구비서류(장애인등록 검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 센터에 제출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1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사업내용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외)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보조 급여비용(시간당 서비스 단가)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분류표

<표 3.9>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분류표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6,730천원
2구간	435점 이상	450	6,309천원
3구간	405점 이상	420	5,889천원
4구간	375점 이상	390	5,468천원
5구간	345점 이상	360	5,048천원
6구간	315점 이상	330	4,627천원
7구간	285점 이상	300	4,206천원
8구간	255점 이상	270	3,786천원
9구간	225점 이상	240	3,365천원
10구간	195점 이상	210	2,945천원
11구간	165점 이상	180	2,524천원
12구간	135점 이상	150	2,103천원
13구간	105점 이상	120	1,683천원
14구간	75점 이상	90	1,262천원
15구간	42점 이상	60	842천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47	660천원

○ 의정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등록 현황

<표 3.10> 의정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등록 현황

제공기관명	대표자	주소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경기도의정부시용민로160 (민락동,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복지재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임현아	경기도의정부시가능로136번길7(의정부동)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김은주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274,3층 (호원동,대경빌딩)
의정부시밀알 장애인활동보조센터	박춘섭	경기도의정부시체육로224,3층(녹양동)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김진식	경기도의정부시추동로140,4층 (신곡동,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시장장애인부모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배연희	경기도의정부시산단로76번길93,1층 (용현동,뉴빛)

- 신청방법
 -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가족, 후견인 등)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11)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이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 (※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 신청기간 :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표 3.11>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2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돌봄서비스)

- 사업내용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필수서류)
 - 기타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연중(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표 3.12>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1,726,000	3,157,000	4,698,000	5,379,000	5,468,000

○ 지원시간

- 신청자의 희망, 지원한도(아동당 연 528시간/월 88시간 이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신청 후 돌보미 연계까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

○ 장애아돌보미의 역할

- 기본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사업수행기관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다. 발달장애인 전달체계 시사점

1)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전달체계가 여러 부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의정부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용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데 어려움 존재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특성과 인적자본을 고려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필요

○ 근로 장애인의 근로유지와 저축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확대되어야 함

○ 장애인의 욕구 반영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취업연계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개발이 확대될 필요 있음

2) 사회참여 확대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청내 T/F팀의 운영에는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 지역사회중심 서비스 확대와 탈시설 지원 전담 및 복지서비스와의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센터 운영 필요 있음

○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보제공,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로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함

-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에서 차별 당한다는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자원을 공유하고 일터, 삶의 터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불편함 없는 지역사회조성이 필요함

3) 교육·문화·체육 지원 확대

- 성인발달장애인의 수 증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가 별도로 필요함
- 장애인시설 및 일반시설의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설되어 있지 않음. 실질적인 계획 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접근권의 확보가 중요함
-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문화적 권리 확대 및 문화예술 참여와 창작역량 강화를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4)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은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소수 장애인은 사회활동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장애특성으로 인한 대인기피현상으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음. 특별한 접근을 통해 소수 장애인의 심리와 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함
- 탈시설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주거공급은 장애인의 요구에 부족한 상황
- 긴급재난 및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메뉴얼이 미흡한 상황

5) 사회적 돌봄 강화

- 시내 중증장애인의 증가와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각각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구성 및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하고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고령 장애인과 도전적 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 및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지원확대 필요. 개별적 욕구를 고려한 주간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4장.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연구 분석 결과

IV.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연구내용 및 방법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조사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욕구분석
- 조사 참여 대상
 -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229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평생교육, 특수교육 등) 14명
- 조사내용
 - 인구사회학적 현황(기본 현황, 장애 상태, 경제적 여건, 평상시 생활 등)
 -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복지시설 이용, 학령기 때의 교육상황, 평생교육 참여 여건, 희망 교육과정 및 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실 및 지원 요구사항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방향 및 지원방안(전략 및 추진과제)
- 조사방법
 - 발달장애인 : 조사대상자 대면 설문조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 FGI 실시
- 분석방법 : 빈도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질적분석(FGI)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 조사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및 지원체계 분석
- 조사 참여 대상 :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15곳
- 조사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기관 유형, 직원, 학습 환경·장비 등)
 - 프로그램 운영 현황(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수강료, 홍보방법, 프로그램 만족도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방문 또는 온라인)
- 분석방법 : 빈도분석, 평균분석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진행을 위한 실태현황 파악 조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진행을 위한 실태현황 파악
- 조사 참여 대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33명
- 조사내용
 - 일반현황(성별, 학력, 경력, 보유 자격증, 근로·고용 형태 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평생교육 참여 기회, 통합교육 여부 등)
 - 근무여건(교육 및 연수 경험, 근무 시설 만족도, 교육 진행방법 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종사자 및 강사 처우 개선, 현장 애로사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방문 또는 온라인)
- 분석방법 : 빈도분석, 평균분석

나. 양적 연구 방법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연구진들이 선행 연구검토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외부 전문가 7명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총 4회에 걸쳐 수정을 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과 pilot-test를 실시 한 후에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실 및 지원 요구사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방향 및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근무여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업무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15곳을 섭외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수행이 가능한 조사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실시된 설문조사요원 교육은 두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조사방법과 기술, 설문내용 숙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1월 10일의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94명,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보호자 135명,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15곳,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종사자 33명, 총 277부의 응답 설문을 수거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곧바로 취합되어 코딩작업을 수행하였고, 코딩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IBM 2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실 및 지원 요구사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방향 및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근무여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변수(집단)들 간의 t-test,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다. FG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전문가 대상 FGI를 시행했다.

FGI는 2021년 10월 19일(화)과 10월 26일(화) 2차례 진행이 되었으며 각각 두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전문가 대상 FGI 질문 내용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방향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FGI는 책임연구원이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2시간가량 진행하였고, 공동연구원 2인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전문속기사에 의해 전사되었다.

2. 양적 연구 분석 결과

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으로 성별을 보면, 여성 52명(55.3%), 남성 42명(44.7%)이 응답함으로써 여성의 빈도가 높았다. 연령대로는 20대가 48명(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30대 29명(30.9%), 40대 및 50대 이상이 각각 6명(6.4%), 10대가 5명(5.3%)의 비율을 보였다. 장애유형에 관한 응답으로 지적장애가 81명(8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자폐성장애 7명(7.4%), 뇌병변장애 6명(6.4%)의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역에 관한 응답으로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8명(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과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이 각각 24명(25.5%)의 비율을 보였다.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은 18명(19.1%)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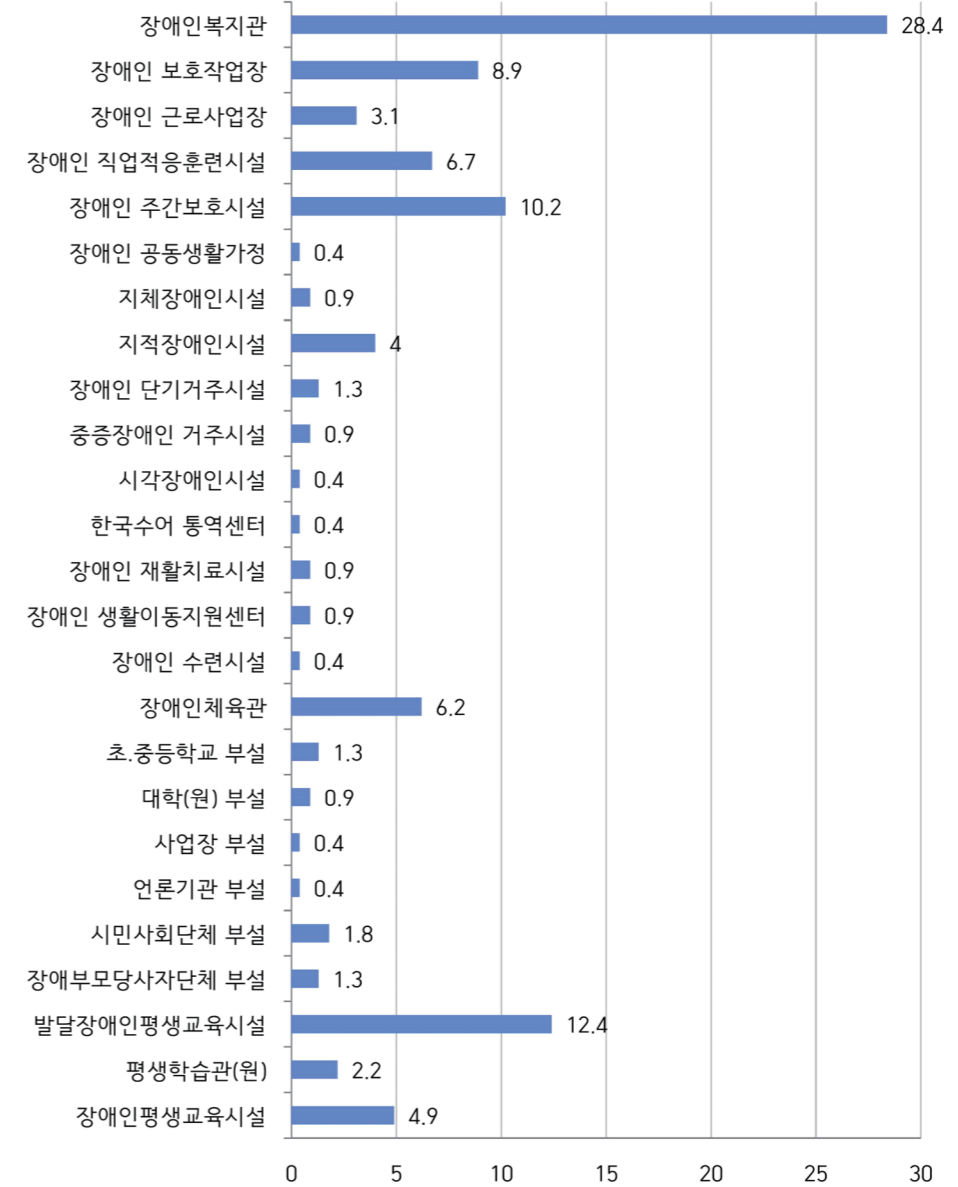
<표 4.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42	44.7
	여성	52	55.3
	총계	94	100.0
연령대	10대	5	5.3
	20대	48	51.1
	30대	29	30.9
	40대	6	6.4
	50대 이상	6	6.4
	총계	94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81
자폐성장애		7	7.4
뇌병변장애		6	6.4
총계		94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거주지역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24	25.5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18	19.1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28	29.8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24	25.5
	총계	94	100.0

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이 64명(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8명(12.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3명(10.2%), 장애인 보호작업장 20명(8.9%),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5명(6.7%), 장애인체육관 14명(6.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명(4.9%), 지적장애인지원시설 9명(4.0%), 장애인 근로사업장 7명(3.1%) 평생학습관(원) 5명(2.2%), 시민사회단체 부설 4명(1.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초·중등학교 부설,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이 각각 3명(1.3%), 지체장애인지원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대학(원) 부설이 각각 2명(0.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시각장애인지원시설, 한국수어 통역센터, 장애인 수련시설, 사업장 부설, 언론기관 부설이 각각 1명(0.4%)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

<표 4.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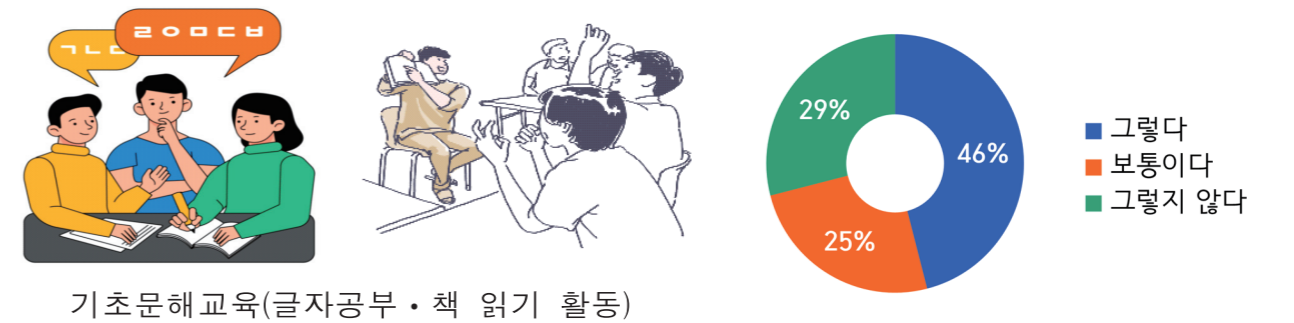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복지관	64	28.4%
장애인 보호작업장	20	8.9%
장애인 근로사업장	7	3.1%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5	6.7%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3	10.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0.4%
지체장애인시설	2	0.9%
지적장애인시설	9	4.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1.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	0.9%
시각장애인시설	1	0.4%
한국수어 통역센터	1	0.4%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2	0.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	0.9%
장애인 수련시설	1	0.4%
장애인체육관	14	6.2%
초·중등학교 부설	3	1.3%
대학(원) 부설	2	0.9%
사업장 부설	1	0.4%
언론기관 부설	1	0.4%
시민사회단체 부설	4	1.8%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3	1.3%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8	12.4%
평생학습관(원)	5	2.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	4.9%
총계	225	100.0%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욕구¹¹⁾

(1)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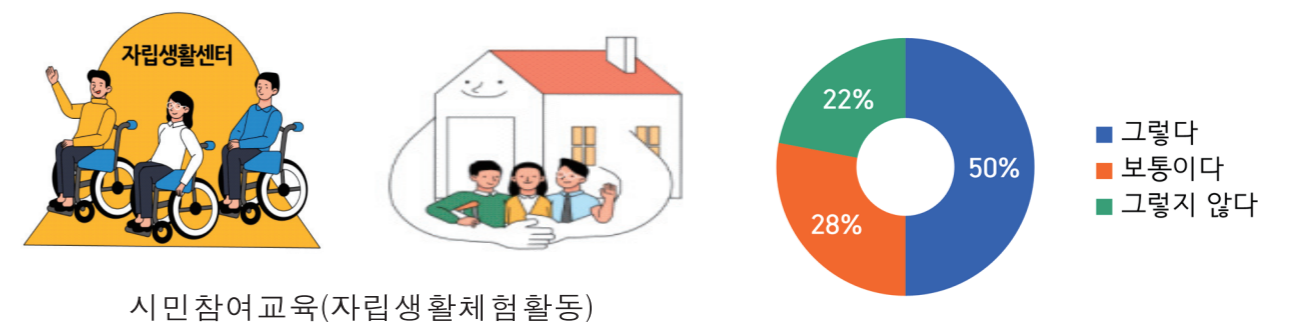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43명(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27명(28.7%), 보통이다가 24명(25.5%)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2]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참여 욕구

(2)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에 관한 욕구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47명(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26명(27.7%), 그렇지 않다가 21명(22.3%)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3]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 참여 욕구

11) 설문 이미지 파일 출처 : 알기쉬운 자료개발센터 <http://www.easy-read.or.kr/>

(3) 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준비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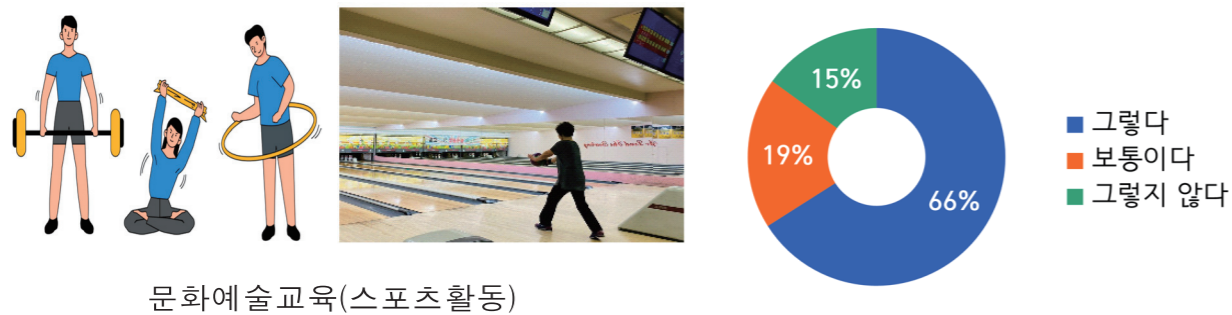
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준비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51명(5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25명(26.6%), 보통이다가 18명(19.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 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준비활동) 참여 욕구

(4)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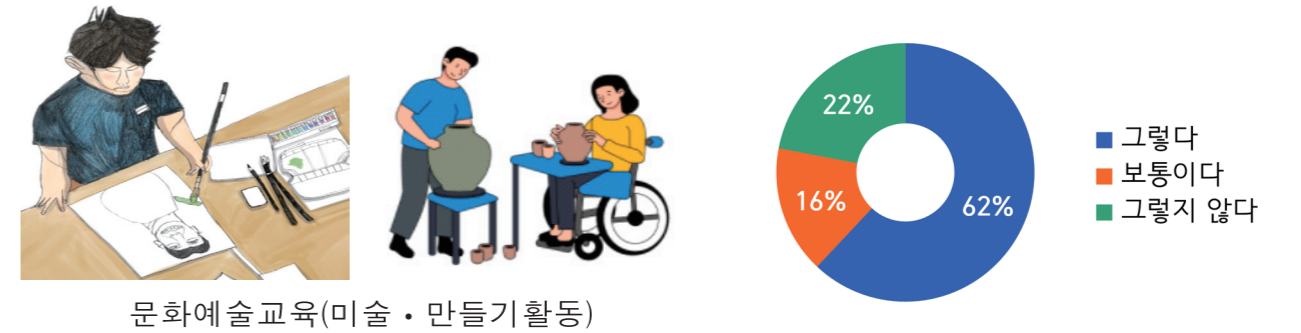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62명(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18명(19.1%), 그렇지 않다가 14명(14.9%)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5]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 참여 욕구

(5)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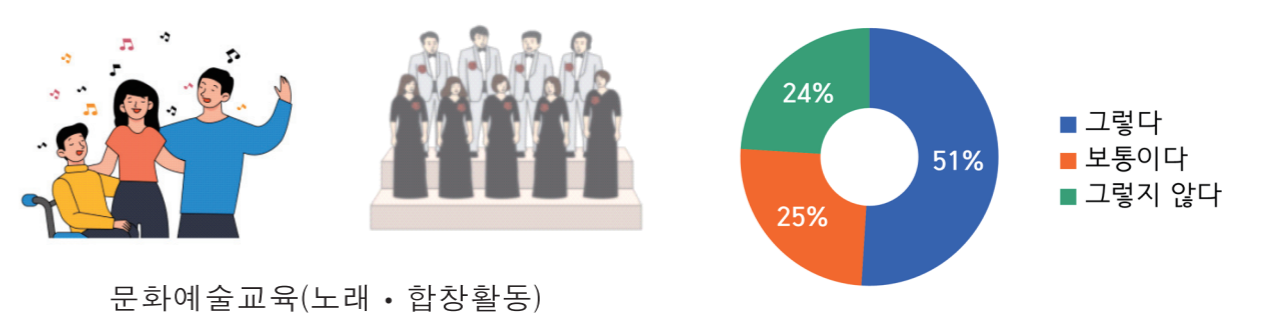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58명(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21명(22.3%), 보통이다가 15명(16.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6]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 참여 욕구

(6)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에 관한 욕구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48명(5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보통이다가 각각 23명(24.5%)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7]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 참여 욕구

(7)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에 관한 욕구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49명(5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29명(30.9%), 보통이다가 16명(17.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 참여 욕구

(8)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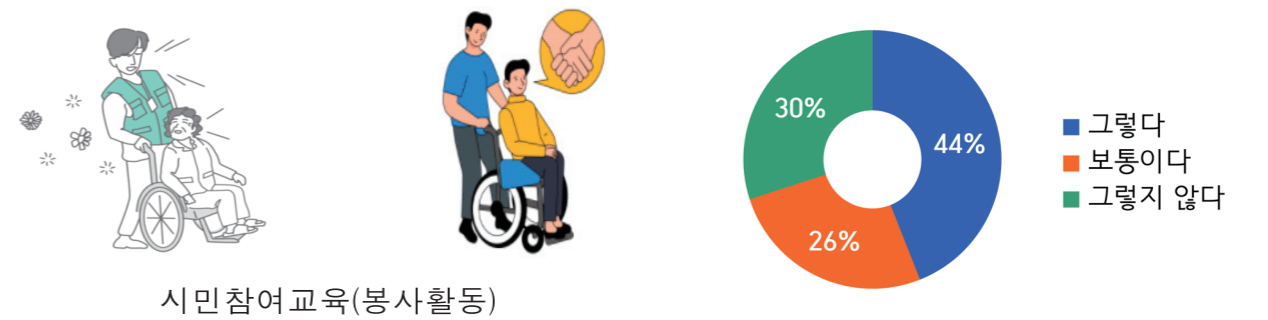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62명(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보통이다가 17명(18.0%), 그렇지 않다가 15명(16.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9]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 참여 욕구

(9)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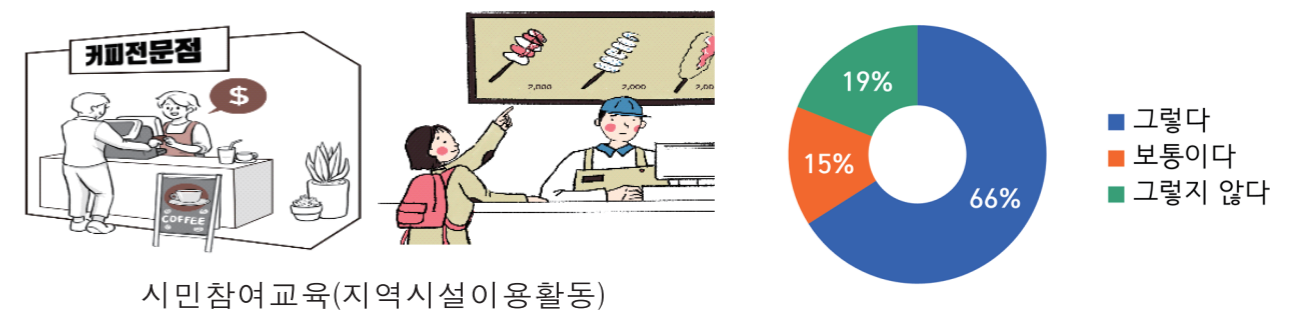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41명(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28명(29.8%), 보통이다가 25명(26.6%)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10]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 참여 욕구

(10)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에 관한 욕구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에 관한 참여 의사 욕구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가 62명(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가 18명(19.1%), 보통이다가 14명(14.9%)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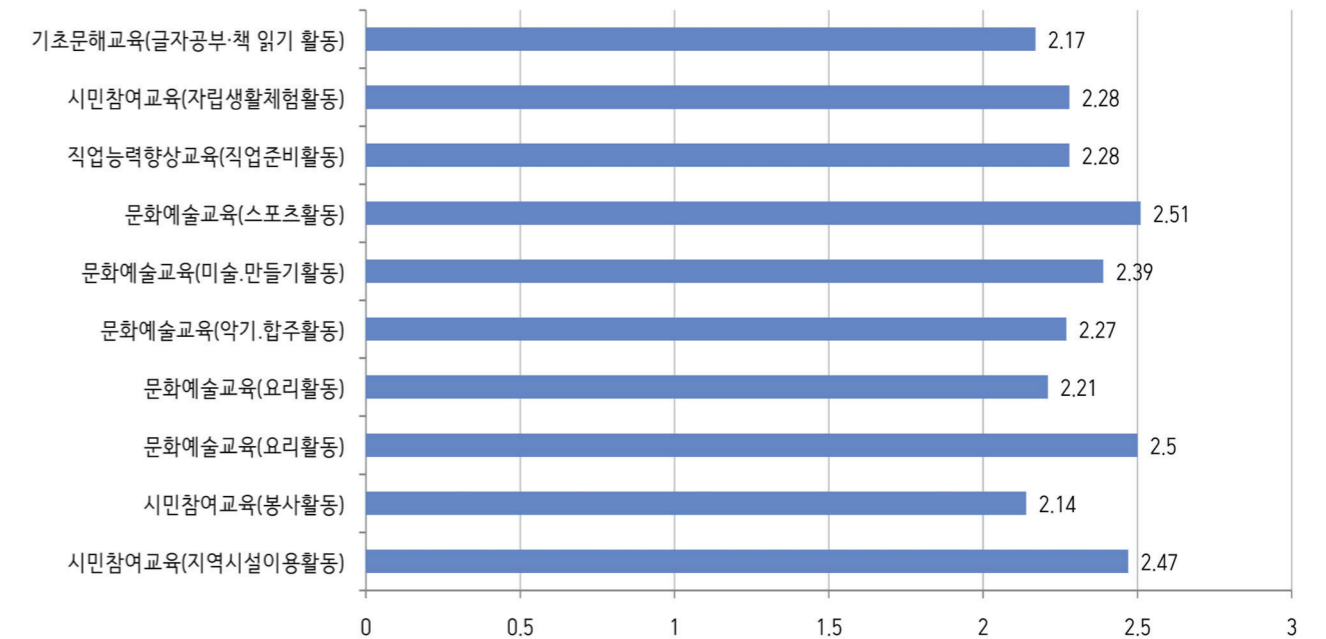
[그림 4.11]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 참여 욕구

<표 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욕구

구분		빈도	퍼센트
기초문해교육 (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그렇다	43	45.8
	보통이다	24	25.5
	그렇지 않다	27	28.7
	총계	94	100.0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체험활동)	그렇다	47	50.0
	보통이다	26	27.7
	그렇지 않다	21	22.3
	총계	94	100.0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준비활동)	그렇다	51	54.3
	보통이다	18	19.1
	그렇지 않다	25	26.6
	총계	94	100.0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그렇다	62	66.0
	보통이다	18	19.1
	그렇지 않다	14	14.9
	총계	94	100.0
문화예술교육 (미술·만들기활동)	그렇다	58	61.7
	보통이다	15	16.0
	그렇지 않다	21	22.3
	총계	94	100.0
문화예술교육 (노래·합창활동)	그렇다	48	51.0
	보통이다	23	24.5
	그렇지 않다	23	24.5
	총계	94	100.0
문화예술교육 (악기·합주활동)	그렇다	49	52.1
	보통이다	16	17.0
	그렇지 않다	29	30.9
	총계	94	100.0
문화예술교육 (요리활동)	그렇다	62	66.0
	보통이다	17	18.0
	그렇지 않다	15	16.0
	총계	94	100.0
시민참여교육 (봉사활동)	그렇다	41	43.6
	보통이다	25	26.6
	그렇지 않다	28	29.8
	총계	94	100.0
시민참여교육 (지역시설이용활동)	그렇다	62	66.0
	보통이다	14	14.9
	그렇지 않다	18	19.1
	총계	94	100.0

(1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평균 비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기술통계를 통한 평균비교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이 평균 2.51(SD=.744)으로 가장 높은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이 평균 2.50(SD=.758),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이 평균 2.47(SD=.799),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이 평균 2.39(SD=.832),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이 평균 2.28(SD=.809),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이 평균 2.27(SD=.832),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이 평균 2.21(SD=.890),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이 평균 2.17(SD=.851),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이 평균 2.14(SD=.850) 순이었다.



[그림 4.1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평균 비교

<표 4.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별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기초문해교육 (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1	3	2.17	.851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체험활동)	1	3	2.28	.809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준비활동)	1	3	2.28	.860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1	3	2.51	.744
문화예술교육 (미술·만들기활동)	1	3	2.39	.832
문화예술교육 (노래·합창활동)	1	3	2.27	.832
문화예술교육 (악기·합주활동)	1	3	2.21	.890
문화예술교육 (요리활동)	1	3	2.50	.758
시민참여교육 (봉사활동)	1	3	2.14	.850
시민참여교육 (지역시설이용활동)	1	3	2.47	.799

(12)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차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차이가 없었다.

<표 4.5>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구분		성별		총계	X ² / p
		남성	여성		
기초문해교육 (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그렇다	16 38.1%	27 51.9%	43 45.7%	4.224 /.121
	보통이다	15 35.7%	9 17.3%	24 25.5%	
	그렇지 않다	11 26.2%	16 30.8%	27 28.7%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체험활동)	그렇다	18 42.9%	29 55.8%	47 50.0%	1.576 /.455
	보통이다	13 31.0%	13 25.0%	26 27.7%	
	그렇지 않다	11 26.2%	10 19.2%	21 22.3%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준비활동)	그렇다	25 59.5%	26 50.0%	51 54.3%	.854 /.652
	보통이다	7 16.7%	11 21.2%	18 19.1%	
	그렇지 않다	10 23.8%	15 28.8%	25 26.6%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그렇다	28 66.7%	34 65.4%	62 66.0%	.667 /.716
	보통이다	9 21.4%	9 17.3%	18 19.1%	
	그렇지 않다	5 11.9%	9 17.3%	14 14.9%	
문화예술교육 (미술·만들기활동)	그렇다	24 57.1%	34 65.4%	58 61.7%	1.708 /.426
	보통이다	9 21.4%	6 11.5%	15 16.0%	
	그렇지 않다	9 21.4%	12 23.1%	21 22.3%	

구분		성별		총계	X ² / p
		남성	여성		
문화예술교육 (노래·합창활동)	그렇다	21	27	48	.826 / .662
		50.0%	51.9%	51.1%	
	보통이다	9	14	23	
		21.4%	26.9%	24.5%	
	그렇지 않다	12	11	23	
		28.6%	21.2%	24.5%	
문화예술교육 (악기·합주활동)	그렇다	21	28	49	.249 / .883
		50.0%	53.8%	52.1%	
	보통이다	8	8	16	
		19.0%	15.4%	17.0%	
	그렇지 않다	13	16	29	
		31.0%	30.8%	30.9%	
문화예술교육 (요리활동)	그렇다	25	37	62	1.400 / .497
		59.5%	71.2%	66.0%	
	보통이다	9	8	17	
		21.4%	15.4%	18.1%	
	그렇지 않다	8	7	15	
		19.0%	13.5%	16.0%	
시민참여교육 (봉사활동)	그렇다	17	24	41	1.797 / .407
		40.5%	46.2%	43.6%	
	보통이다	14	11	25	
		33.3%	21.2%	26.6%	
	그렇지 않다	11	17	28	
		26.2%	32.7%	29.8%	
시민참여교육 (지역시설이용활동)	그렇다	30	32	62	1.815 / .404
		71.4%	61.5%	66.0%	
	보통이다	4	10	14	
		9.5%	19.2%	14.9%	
	그렇지 않다	8	10	18	
		19.0%	19.2%	19.1%	

(13)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차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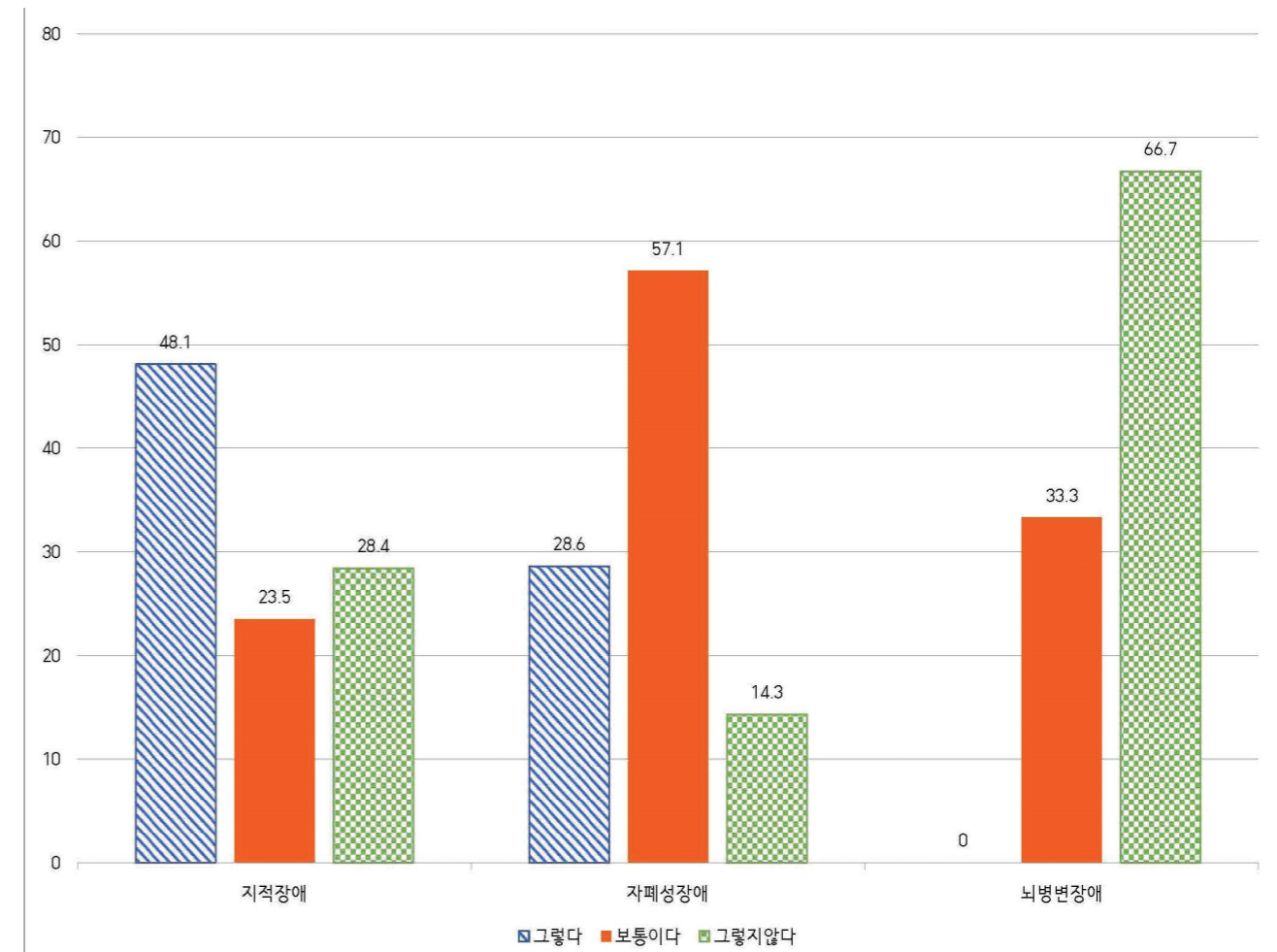
<표 4.6>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구분		연령대					총계	X ² / p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기초문해 교육 (글자공부 · 책 읽기 활동)	그렇다	1	22	13	4	3	43	5.011 / .756
		20.0%	45.8%	44.8%	66.7%	50.0%	45.7%	
	보통이다	2	14	5	1	2	24	
		40.0%	29.2%	17.2%	16.7%	33.3%	25.5%	
	그렇지 않다	2	12	11	1	1	27	
		40.0%	25.0%	37.9%	16.7%	16.7%	28.7%	
시민참여 교육 (자립생활 체험활동)	그렇다	2	29	9	4	3	47	12.566 / .128
		40.0%	60.4%	31.0%	66.7%	50.0%	50.0%	
	보통이다	3	10	12	0	1	26	
		60.0%	20.8%	41.4%	0.0%	16.7%	27.7%	
	그렇지 않다	0	9	8	2	2	21	
		0.0%	18.8%	27.6%	33.3%	33.3%	22.3%	
직업능력 향상교육 (직업준비 활동)	그렇다	3	31	13	2	2	51	13.119 / .108
		60.0%	64.6%	44.8%	33.3%	33.3%	54.3%	
	보통이다	2	7	8	1	0	18	
		40.0%	14.6%	27.6%	16.7%	0.0%	19.1%	
	그렇지 않다	0	10	8	3	4	25	
		0.0%	20.8%	27.6%	50.0%	66.7%	26.6%	
문화예술 교육 (스포츠 활동)	그렇다	5	32	15	5	5	62	10.188 / .252
		100.0%	66.7%	51.7%	83.3%	83.3%	66.0%	
	보통이다	0	8	10	0	0	18	
		0.0%	16.7%	34.5%	0.0%	0.0%	19.1%	
	그렇지 않다	0	8	4	1	1	14	
		0.0%	16.7%	13.8%	16.7%	16.7%	14.9%	

구분		연령대					총계	X ² / p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문화예술 교육 (미술·만들기 활동)	그렇다	3 60.0%	31 64.6%	16 55.2%	4 66.7%	4 66.7%	58 61.7%	8.516 / .385
	보통이다	1 20.0%	9 18.8%	2 6.9%	1 16.7%	2 33.3%	15 16.0%	
	그렇지 않다	1 20.0%	8 16.7%	11 37.9%	1 16.7%	0 0.0%	21 22.3%	
문화예술 교육 (노래·합창 활동)	그렇다	2 40.0%	21 43.8%	17 58.6%	6 100.0%	2 33.3%	48 51.1%	11.722 / .164
	보통이다	1 20.0%	15 31.3%	4 13.8%	0 0.0%	3 50.0%	23 24.5%	
	그렇지 않다	2 40.0%	12 25.0%	8 27.6%	0 0.0%	1 16.7%	23 24.5%	
문화예술 교육 (악기·합주 활동)	그렇다	2 40.0%	24 50.0%	16 55.2%	4 66.7%	3 50.0%	49 52.1%	5.826 / .667
	보통이다	0 0.0%	8 16.7%	6 20.7%	0 0.0%	2 33.3%	16 17.0%	
	그렇지 않다	3 60.0%	16 33.3%	7 24.1%	2 33.3%	1 16.7%	29 30.9%	
문화예술 교육 (요리 활동)	그렇다	3 60.0%	34 70.8%	16 55.2%	5 83.3%	4 66.7%	62 66.0%	5.640 / .688
	보통이다	1 20.0%	8 16.7%	7 24.1%	1 16.7%	0 0.0%	17 18.1%	
	그렇지 않다	1 20.0%	6 12.5%	6 20.7%	0 0.0%	2 33.3%	15 16.0%	
시민참여 교육 (봉사 활동)	그렇다	1 20.0%	23 47.9%	9 31.0%	5 83.3%	3 50.0%	41 43.6%	10.120 / .257
	보통이다	3 60.0%	12 25.0%	8 27.6%	1 16.7%	1 16.7%	25 26.6%	
	그렇지 않다	1 20.0%	13 27.1%	12 41.4%	0 0.0%	2 33.3%	28 29.8%	
시민참여 교육 (지역시설 이용 활동)	그렇다	3 60.0%	33 68.8%	17 58.6%	4 66.7%	5 83.3%	62 66.0%	2.551 / .959
	보통이다	1 20.0%	6 12.5%	5 17.2%	1 16.7%	1 16.7%	14 14.9%	
	그렇지 않다	1 20.0%	9 18.8%	7 24.1%	1 16.7%	0 0.0%	18 19.1%	

(14)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는 다음과 같다.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차분석 결과,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차이가 있었다 (X²=9.577, p<0.05). 지적장애의 경우가 자폐성 장애 및 뇌병변 장애보다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욕구가 높았다.



[그림 4.13] 장애유형에 따른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 욕구 차이

이 외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차분석 결과,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에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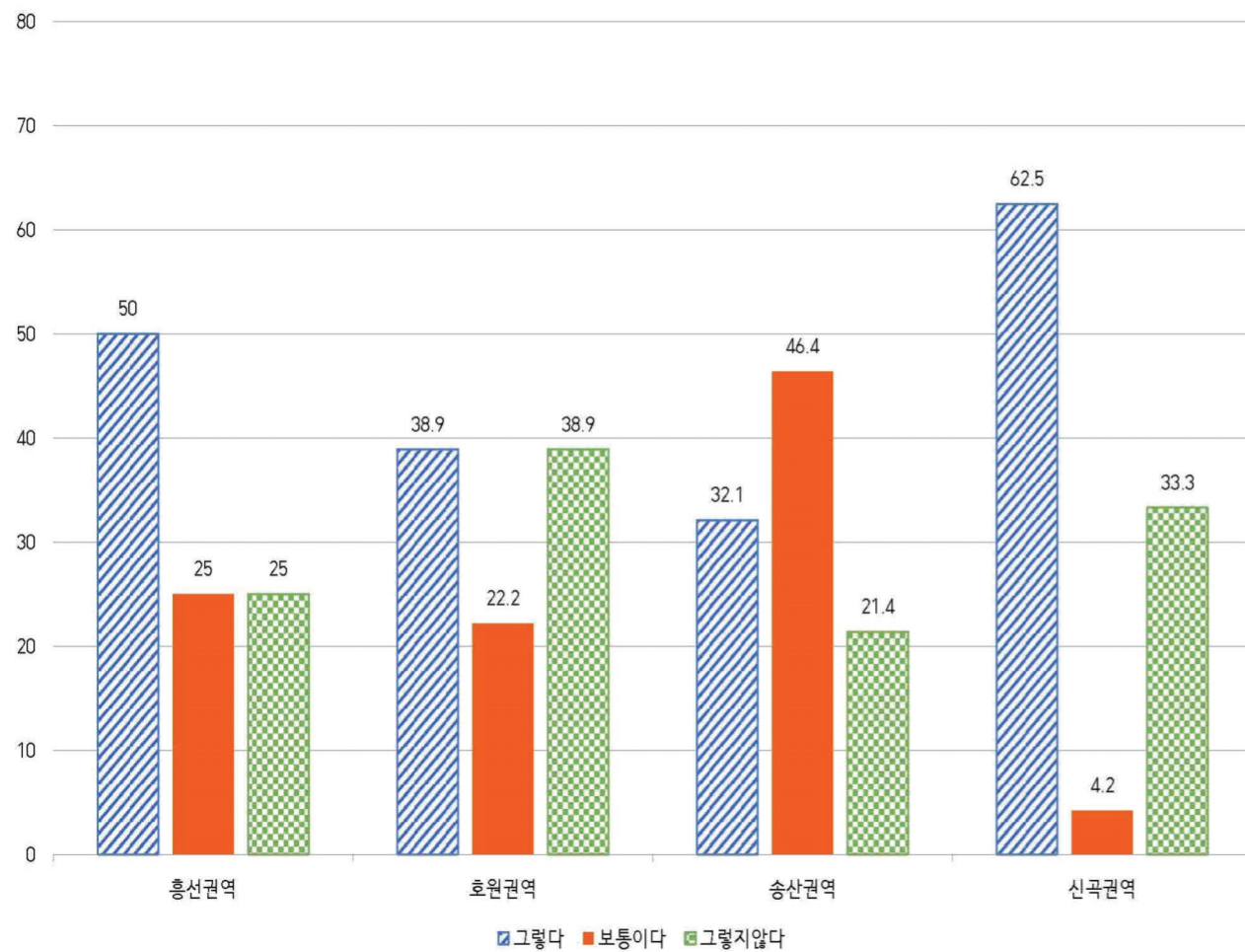
<표 4.7>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기초문해교육 (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그렇다	38	3	2	43	1.469 / .832
		46.9%	42.9%	33.3%	45.7%	
	보통이다	21	2	1	24	
		25.9%	28.6%	16.7%	25.5%	
	그렇지 않다	22	2	3	27	
		27.2%	28.6%	50.0%	28.7%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체험활동)	그렇다	42	2	3	47	1.649 / .800
		51.9%	28.6%	50.0%	50.0%	
	보통이다	21	3	2	26	
		25.9%	42.9%	33.3%	27.7%	
	그렇지 않다	18	2	1	21	
		22.2%	28.6%	16.7%	22.3%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준비활동)	그렇다	44	3	4	51	3.279 / .512
		54.3%	42.9%	66.7%	54.3%	
	보통이다	14	3	1	18	
		17.3%	42.9%	16.7%	19.1%	
	그렇지 않다	23	1	1	25	
		28.4%	14.3%	16.7%	26.6%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그렇다	55	5	2	62	3.245 / .518
		67.9%	71.4%	33.3%	66.0%	
	보통이다	15	1	2	18	
		18.5%	14.3%	33.3%	19.1%	
	그렇지 않다	11	1	2	14	
		13.6%	14.3%	33.3%	14.9%	
문화예술교육 (미술·만들기활동)	그렇다	51	3	4	58	1.422 / .840
		63.0%	42.9%	66.7%	61.7%	
	보통이다	12	2	1	15	
		14.8%	28.6%	16.7%	16.0%	
	그렇지 않다	18	2	1	21	
		22.2%	28.6%	16.7%	22.3%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문화예술교육 (노래·합창활동)	그렇다	44	3	1	48	3.739 / .442
		54.3%	42.9%	16.7%	51.1%	
	보통이다	19	2	2	23	
		23.5%	28.6%	33.3%	24.5%	
	그렇지 않다	18	2	3	23	
		22.2%	28.6%	50.0%	24.5%	
문화예술교육 (악기·합주활동)	그렇다	44	4	1	49	8.441 / .077
		54.3%	57.1%	16.7%	52.1%	
	보통이다	15	1	0	16	
		18.5%	14.3%	0.0%	17.0%	
	그렇지 않다	22	2	5	29	
		27.2%	28.6%	83.3%	30.9%	
문화예술교육 (요리활동)	그렇다	55	5	2	62	5.774 / .217
		67.9%	71.4%	33.3%	66.0%	
	보통이다	15	1	1	17	
		18.5%	14.3%	16.7%	18.1%	
	그렇지 않다	11	1	3	15	
		13.6%	14.3%	50.0%	16.0%	
시민참여교육 (봉사활동)	그렇다	39	2	0	41	9.577 / .048
		48.1%	28.6%	0.0%	43.6%	
	보통이다	19	4	2	25	
		23.5%	57.1%	33.3%	26.6%	
	그렇지 않다	23	1	4	28	
		28.4%	14.3%	66.7%	29.8%	
시민참여교육 (지역시설이용활동)	그렇다	55	5	2	62	5.887 / .208
		67.9%	71.4%	33.3%	66.0%	
	보통이다	13	0	1	14	
		16.0%	0.0%	16.7%	14.9%	
	그렇지 않다	13	2	3	18	
		16.0%	28.6%	50.0%	19.1%	

(15)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차분석 결과,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에 차이가 있었다($X^2=13.505$, $p<0.05$).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과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이 다른 지역보다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욕구가 높았다.



[그림 4.14] 거주지역에 따른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욕구 차이

이 외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차이는 없었다.

<표 4.8>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욕구 비교

구분	거주지역				총계	X^2 / p		
	흥선권역 (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호원권역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송산권역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신곡권역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기초문해교육 (글자공부· 책 읽기 활동)	그렇다	12 50.0%	7 38.9%	9 32.1%	15 62.5%	43 45.7%	13.505 / .036	
	보통 이다	6 25.0%	4 22.2%	13 46.4%	1 4.2%			24 25.5%
	그렇지 않다	6 25.0%	7 38.9%	6 21.4%	8 33.3%			27 28.7%
시민참여교육 (자립생활체 험활동)	그렇다	11 45.8%	9 50.0%	13 46.4%	14 58.3%	47 50.0%	2.631 / .854	
	보통 이다	9 37.5%	4 22.2%	8 28.6%	5 20.8%			26 27.7%
	그렇지 않다	4 16.7%	5 27.8%	7 25.0%	5 20.8%			21 22.3%
직업능력 향상 교육 (직업준비 활 동)	그렇다	13 54.2%	8 44.4%	15 53.6%	15 62.5%	51 54.3%	4.374 / .626	
	보통 이다	3 12.5%	3 16.7%	7 25.0%	5 20.8%			18 19.1%
	그렇지 않다	8 33.3%	7 38.9%	6 21.4%	4 16.7%			25 26.6%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활동)	그렇다	15 62.5%	13 72.2%	17 60.7%	17 70.8%	62 66.0%	2.580 / .859	
	보통 이다	5 20.8%	4 22.2%	5 17.9%	4 16.7%			18 19.1%
	그렇지 않다	4 16.7%	1 5.6%	6 21.4%	3 12.5%			14 14.9%
문화예술교육 (미술·만들기 활동)	그렇다	18 75.0%	12 66.7%	13 46.4%	15 62.5%	58 61.7%	5.483 / .484	
	보통 이다	3 12.5%	2 11.1%	7 25.0%	3 12.5%			15 16.0%
	그렇지 않다	3 12.5%	4 22.2%	8 28.6%	6 25.0%			21 22.3%
문화예술교육 (노래·합창 활동)	그렇다	14 58.3%	9 50.0%	14 50.0%	11 45.8%	48 51.1%	10.364 . .110	
	보통 이다	7 29.2%	6 33.3%	8 28.6%	2 8.3%			23 24.5%
	그렇지 않다	3 12.5%	3 16.7%	6 21.4%	11 45.8%			23 24.5%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흥선권역 (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호원권역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송산권역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신곡권역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문화예술교육 (악기·합주 활동)	그렇다	12	12	12	13	49	3.627 / .727
		50.0%	66.7%	42.9%	54.2%	52.1%	
	보통 이다	5	3	5	3	16	
		20.8%	16.7%	17.9%	12.5%	17.0%	
그렇지 않다	7	3	11	8	29		
	29.2%	16.7%	39.3%	33.3%	30.9%		
문화예술교육 (요리활동)	그렇다	17	11	18	16	62	2.150 / .905
		70.8%	61.1%	64.3%	66.7%	66.0%	
	보통 이다	5	4	5	3	17	
		20.8%	22.2%	17.9%	12.5%	18.1%	
그렇지 않다	2	3	5	5	15		
	8.3%	16.7%	17.9%	20.8%	16.0%		
시민참여교육 (봉사활동)	그렇다	11	8	11	11	41	4.459 / .615
		45.8%	44.4%	39.3%	45.8%	43.6%	
	보통 이다	7	2	10	6	25	
		29.2%	11.1%	35.7%	25.0%	26.6%	
그렇지 않다	6	8	7	7	28		
	25.0%	44.4%	25.0%	29.2%	29.8%		
시민참여교육 (지역시설 이용활동)	그렇다	18	11	16	17	62	10.735 / .097
		75.0%	61.1%	57.1%	70.8%	66.0%	
	보통 이다	6	3	4	1	14	
		25.0%	16.7%	14.3%	4.2%	14.9%	
그렇지 않다	0	4	8	6	18		
	0.0%	22.2%	28.6%	25.0%	19.1%		

나. 장애인 보호자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보호자의 특성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 관계로 부모가 111명(82.2%) 응답 비율이 높았고, 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12명(8.9%), 형제·자매, 기관/시설종사자가 각각 6명(4.4%)의 비율이었다. 보호자 거주로는 같이 살고 있다가 121명(89.6%)의 비율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다가 14명(10.4%)의 비율이었다. 보호자 성별은 여성 110명(81.5%), 남성 25명(18.5%)의 비율이었다. 보호자 연령대로 50대가 73명(54.1%)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60대 이상 36명(26.7%), 40대 16명(11.9%), 30대 이하 10명(7.4%)의 비율이었다.

<표 4.9> 보호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보호자 관계	부모	111	82.2
	형제·자매	6	4.4
	기관/시설 종사자	6	4.4
	장애인활동지원사	12	8.9
	총계	135	100.0
보호자 거주	같이 살고 있다	121	89.6
	같이 살고 있지 않다	14	10.4
	총계	135	100.0
보호자 성별	남성	25	18.5
	여성	110	81.5
	총계	135	100.0
보호자연령대	30대 이하	10	7.4
	40대	16	11.9
	50대	73	54.1
	60대 이상	36	26.7
	총계	135	100.0

(2) 당사자의 특성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69명(51.1%), 여성 66명(48.9%)의 비율이었고, 연령대는 30대 72명(53.3%), 40대 43명(31.9%), 20대 이하 11명(8.1%), 50대 이상 9명(6.7%)의 비율이었다. 거주지역으로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이 43명(31.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41명(30.4%),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37명(27.4%),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14명(10.4%)의 비율이었다.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가 107명(79.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자폐성장애 23명(17.0%), 뇌병변장애 5명(3.7%)의 비율이었다. 장애등록연도로는 2000~2009년이 64명(47.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1999년 이전 41명(30.4%), 2010년 이후 18명(13.3%)의 비율이었다. 장애등급으로 1~3급 133명(98.5%)의 비율이었고, 4~6급 2명(1.5%)의 비율이었다. 중복장애로는 없다가 100명(74.1%), 있다가 35명(25.9%)의 비율이었다. 중복장애 종류로는 언어장애가 13명(35.1%)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지적장애 7명(18.9%), 지체장애 6명(16.2%), 뇌병변장애 4명(10.8%), 뇌전증장애 및 정신장애가 각각 3명(8.1%), 시각장애 1명(2.7%)의 비율이었다. 주거형태로 자택이 131명(97.0%), 장애인 거주시설이 4명(3.0%)의 비율이었다. 주거가 자택인 경우 주거형태로 가족동거가 105명(84.0%), 독거가 20명(16.0%)의 비율이었다. 혼인상태로 미혼이 133명(98.5%), 기혼이 2명(1.5%)의 비율이었다. 보호구분으로 일반세대가 87명(64.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8명(20.7%), 차상위계층이 20명(14.8%)의 비율이었다. 학력에 관한 응답으로 특수학교가 78명(57.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일반학교 40명(29.6%), 무학 12명(8.9%), 기타 5명(3.7%)의 비율이었다.

<표 4.10> 당사자의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69	51.1
	여성	66	48.9
	총계	135	100.0
연령대	20대 이하	11	8.1
	30대	72	53.3
	40대	43	31.9
	50대 이상	9	6.7
	총계	1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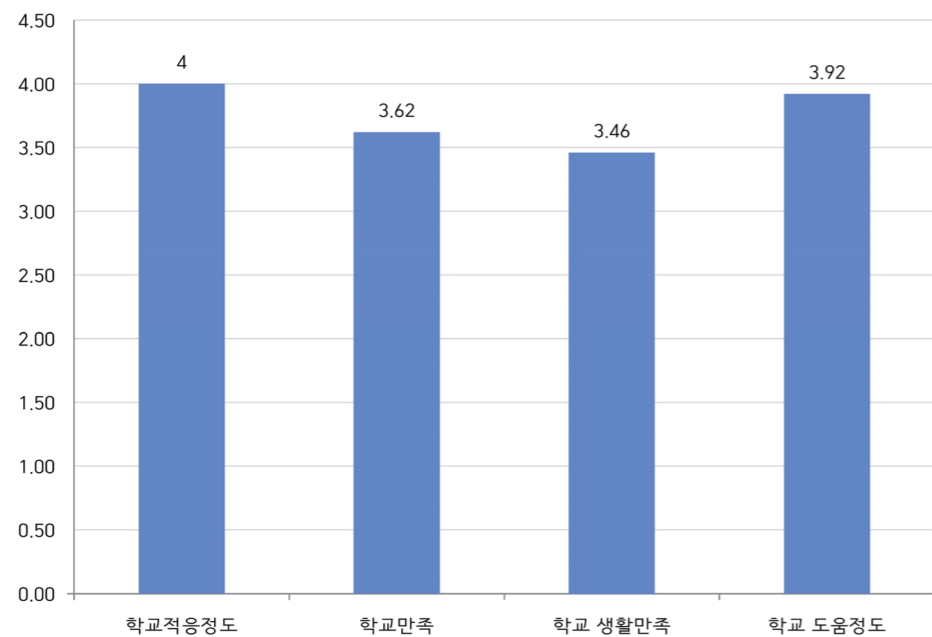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거주지역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37	27.4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14	10.4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41	30.4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43	31.9
	총계	135	100.0
장애유형	지적장애	107	79.3
	자폐성장애	23	17.0
	뇌병변장애	5	3.7
	총계	135	100.0
등록연도대	1999년 이전	41	33.3
	2000~2009년	64	52.1
	2010년 이후	18	14.6
	총계	123	91.1
장애등급	1~3급	133	98.5
	4~6급	2	1.5
	총계	135	100.0
중복장애	있다	35	25.9
	없다	100	74.1
	총계	135	100.0
중복장애 종류	지체장애	6	16.2
	시각장애	1	2.7
	언어장애	13	35.1
	지적장애	7	18.9
	정신장애	3	8.1
	뇌병변장애	4	10.8
	뇌전증장애	3	8.1
	총계	37	100.0
주거형태	자택	131	97.0
	장애인 거주시설	4	3.0
	총계	135	100.0
주거형태 (자택)	가족동거	105	84.0
	독거	20	16.0
	총계	125	100.0
혼인상태	미혼	133	98.5
	기혼	2	1.5
	총계	135	100.0
보호구분	기초생활수급권자	28	20.7
	차상위계층	20	14.8
	일반세대	87	64.4
	총계	135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학력	무학	12	8.9
	일반학교	40	29.6
	특수학교	78	57.8
	기타	5	3.7
	총계	5	100.0

2) 학교생활

학교적응정도에 관한 응답으로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가 10명(38.5%), 잘 적응하고 있다 9명(34.6%), 그저 그렇다가 5명(19.2%),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2명(7.7%)의 비율이었다. 학교만족으로 보통임 10명(38.5%), 좋아하는 편임 7명(26.9%), 매우 좋아함 6명(23.1%), 싫어하는 편임 3명(11.5%)의 비율이었다. 학교도움정도로 도움이 되는 편이다 15명(57.7%), 그저 그렇다와 큰 도움이 된다가 각각 5명(19.2%),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가 1명(3.8%)의 비율이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 및 도움 정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학교적응 정도는 평균 4.00점(SD=.938), 학교 도움정도는 평균 3.92점(SD=.744), 학교 만족은 평균 3.62점(SD=.983), 학교 생활 만족은 평균 3.46점(SD=.905)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확인했다.



[그림 4.15]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 및 도움 정도

<표 4.11> 학교생활에 관한 만족 및 도움 정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학교적응정도	2	5	4.00	.938
학교만족	2	5	3.62	.983
학교 생활만족	1	5	3.46	.905
학교 도움정도	2	5	3.92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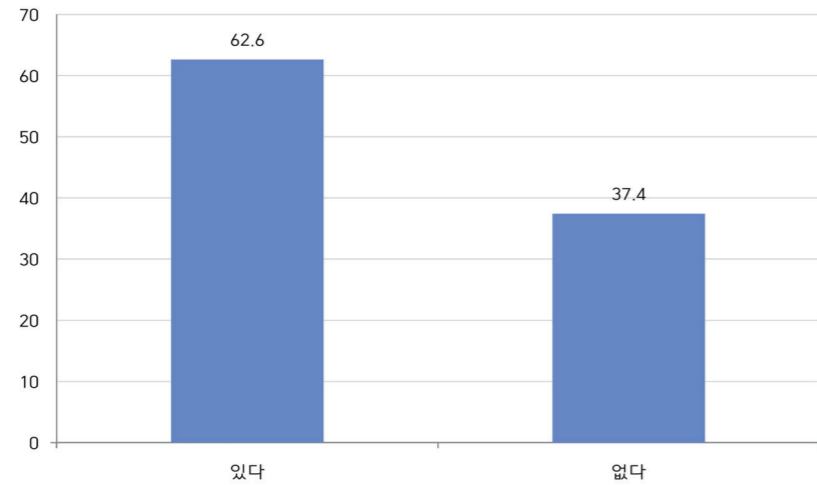
<표 4.12> 학교생활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적응 정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	7.7
	그저 그렇다	5	19.2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10	38.5
	잘 적응하고 있다	9	34.6
	총계	26	100.0
학교만족	싫어하는 편이다	3	11.5
	보통이다	10	38.5
	좋아하는 편이다	7	26.9
	매우 좋아한다	6	23.1
	총계	26	100.0
학교 생활만족	매우 불만족	1	3.8
	불만족	1	3.8
	보통	12	46.2
	만족	9	34.6
	매우 만족	3	11.5
	총계	26	100.0
학교 도움정도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1	3.8
	그저 그렇다	5	19.2
	도움이 되는 편이다	15	57.7
	큰 도움이 된다	5	19.2
	총계	26	100.0

3) 평생교육프로그램

(1)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응답으로 있다가 82명(62.6%)의 비율로 없다 49명(37.4%)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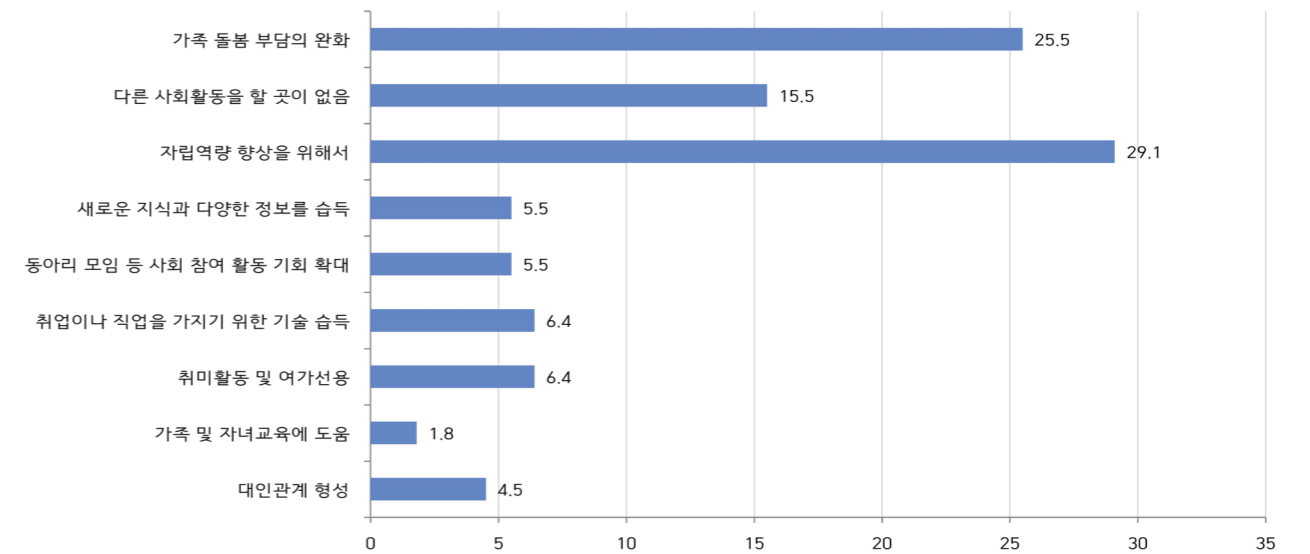
[그림 4.16]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표 4.13>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	있다	82
	없다	49
	총계	131
		62.6
		3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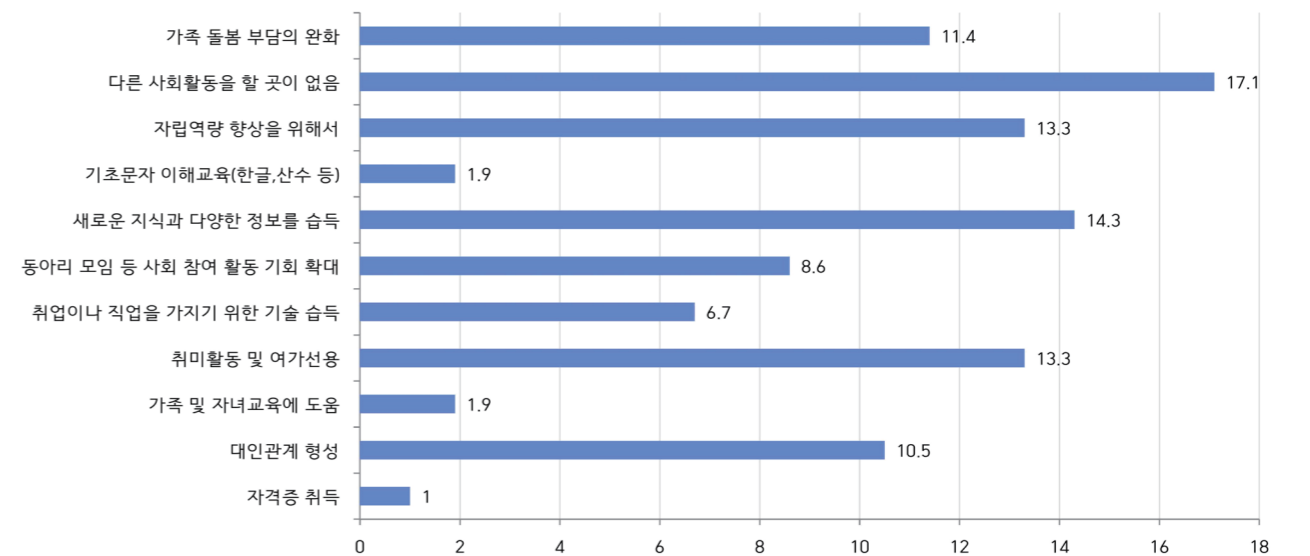
(2)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응답으로 1순위로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가 32명(29.1%)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28명(25.5%),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17명(15.5%),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과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이 각각 7명(6.4%),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및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이 각각 6명(5.5%), 대인관계 형성 5명(4.5%),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2명(1.8%)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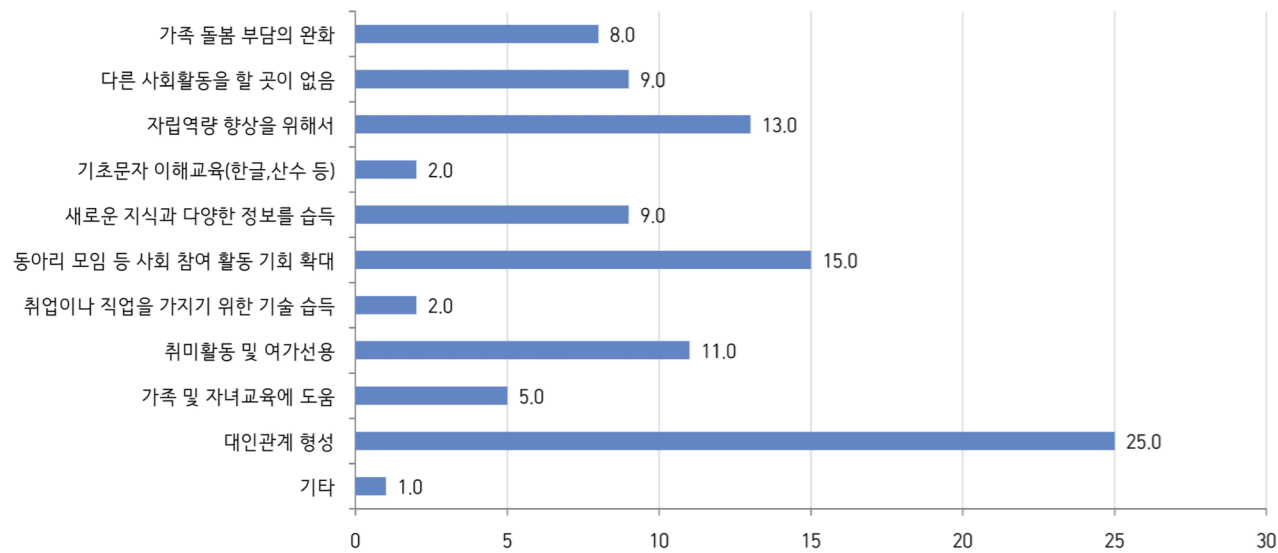
[그림 4.17]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응답으로 2순위로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이 18명(17.1%)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15명(14.3%),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와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이 각각 14명(13.3%),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12명(11.4%), 대인관계 형성 11명(10.5%),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9명(8.6%),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7명(6.7%),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및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각각 2명(1.9%), 자격증 취득이 1명(1.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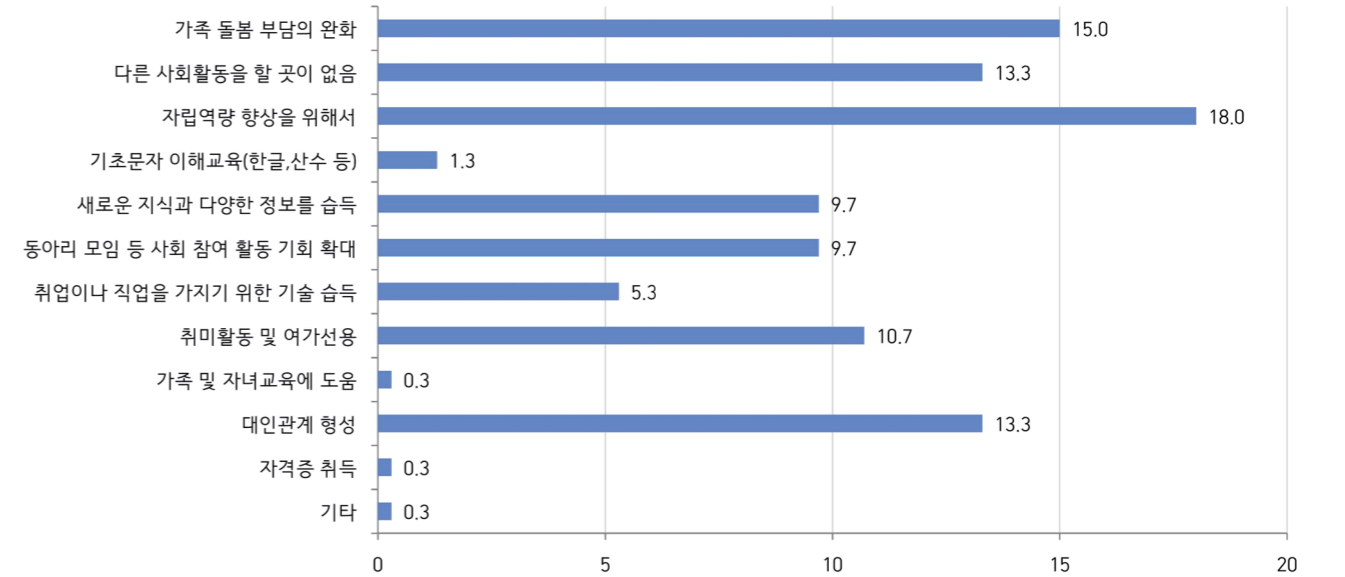
[그림 4.18]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응답으로 3순위로 대인관계 형성 25명(25.0%)이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15명(15.0%),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13명(13.0%),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11명(11.0%),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및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이 각각 9명(9.0%),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가 8명(8.0%),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5명(5.0%),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및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이 각각 2명(2.0%)의 비율이었다.



[그림 4.19]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다중응답로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가 54명(18.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가 45명(15.0%),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과 대인관계 형성이 각각 40명(13.3%),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이 32명(10.7%),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과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가 각각 29명(9.7%),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이 16명(5.3%),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9명(3.0%),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이 4명(1.3%), 자격증 취득과 기타가 각각 1명(0.3%)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20]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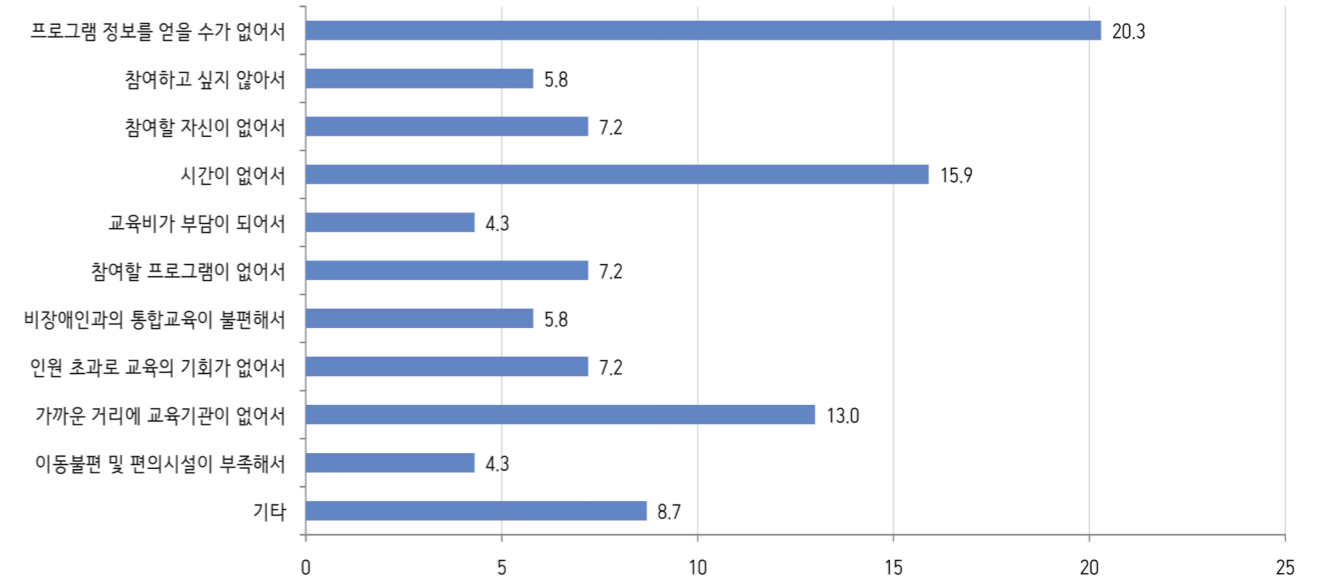
<표 4.14>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1순위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28	25.5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17	15.5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32	29.1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6	5.5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6	5.5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7	6.4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7	6.4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2	1.8
	대인관계 형성	5	4.5
	총계	110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2순위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12	11.4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18	17.1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14	13.3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2	1.9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15	14.3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9	8.6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7	6.7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14	13.3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2	1.9
	대인관계 형성	11	10.5
	자격증 취득	1	1.0
총계	105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3순위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8	8.0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9	9.0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13	13.0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2	2.0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9	9.0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15	15.0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2	2.0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11	11.0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5	5.0
	대인관계 형성	25	25.0
	기타	1	1.0
	총계	100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다중응답)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45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40	13.3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54	18.0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4	1.3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29	9.7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29	9.7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16	5.3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32	10.7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9	3.0
대인관계 형성		40	13.3
자격증 취득		1	0.3
기타		1	0.3
총계		300	100.0

(3)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사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미참여 사유로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가 14명(20.3%)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11명(15.9%),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9명(13.0%), 기타 6명(8.7%),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와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가 각각 5명(7.2%),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와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이 불편해서가 각각 4명(5.8%),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서와 이동불편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각각 3명(4.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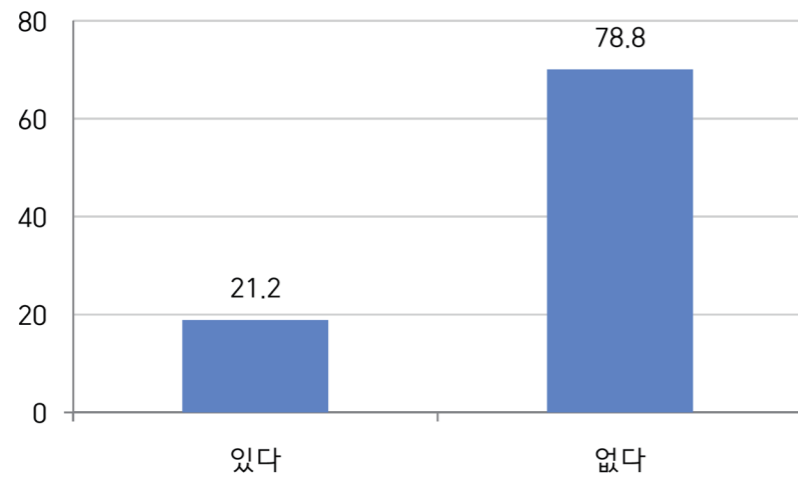
[그림 4.21]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

<표 4.15>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은 이유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14	20.3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4	5.8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	5	7.2
	시간이 없어서	11	15.9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3	4.3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5	7.2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이 불편해서	4	5.8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5	7.2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9	13.0
	이동불편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3	4.3
	기타	6	8.7
	총계	69	100.0

(4)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및 이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및 이유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의 경우 없다가 78명(78.8%)으로 있다 21명(21.2%)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그림 4.22]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강사, 프로그램 등)와 기타가 각각 7명(19.4%)의 비율이었고, 기타사유로는 단기프로그램으로 사업 종료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코로나 마스크로 힘들, 하교시간과 맞지 않아서였다. 이어서 계속 참여할 자신이 없거나 싫어서가 6명(16.7%), 교육시설(편의시설 등)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및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직장 업무로 시간이 부족해서가 각각 4명(11.1%), 건강상의 이유로 및 거리가 멀어서(이동이 어려워서)가 각각 2명(5.6%)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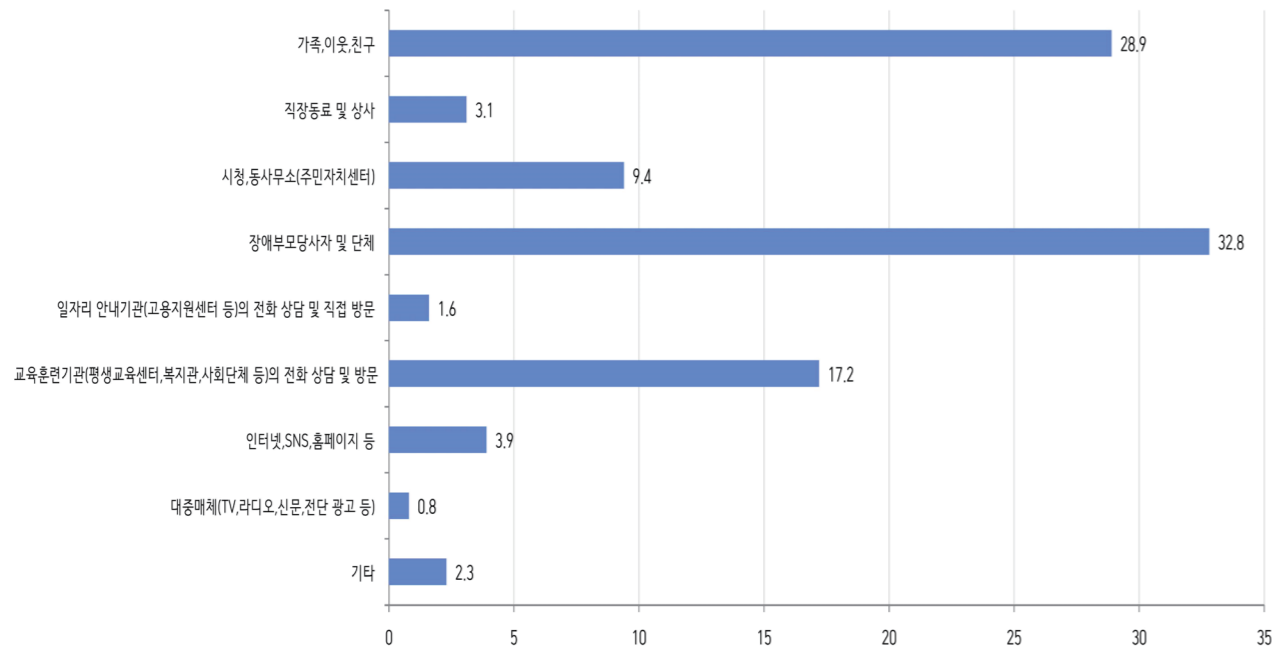
<표 4.16> 평생교육프로그램 포기경험 및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포기경험	있다	21	21.2
	없다	78	78.8
	총계	99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포기 이유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강사, 프로그램 등)	7	19.4
	교육시설(편의시설 등)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4	11.1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4	11.1
	계속 참여할 자신이 없거나 싫어서	6	16.7
	건강상의 이유로	2	5.6
	직장 업무로 시간이 부족해서	4	11.1
	거리가 멀어서(이동이 어려워서)	2	5.6
	기타	7	19.4
	총계	36	100.0

(5)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받는 방법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장애부모당사자 및 단체가 42명(32.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가족, 이웃, 친구가 37명(28.9%),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센터, 복지관, 사회단체 등)의 전화 상담 및 방문 22명(17.2%), 시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12명(9.4%), 인터넷, SNS, 홈페이지 등 5명(3.9%), 직장동료 및 상사 4명(3.1%), 기타 3명(2.3%), 일자리 안내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 2명(1.6%),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전단 광고 등) 1명(0.8%)의 비율이었다. 기타로는 고등학교 선생님 추천, 장애인복지관 안내가 있었다.



[그림 4.23]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받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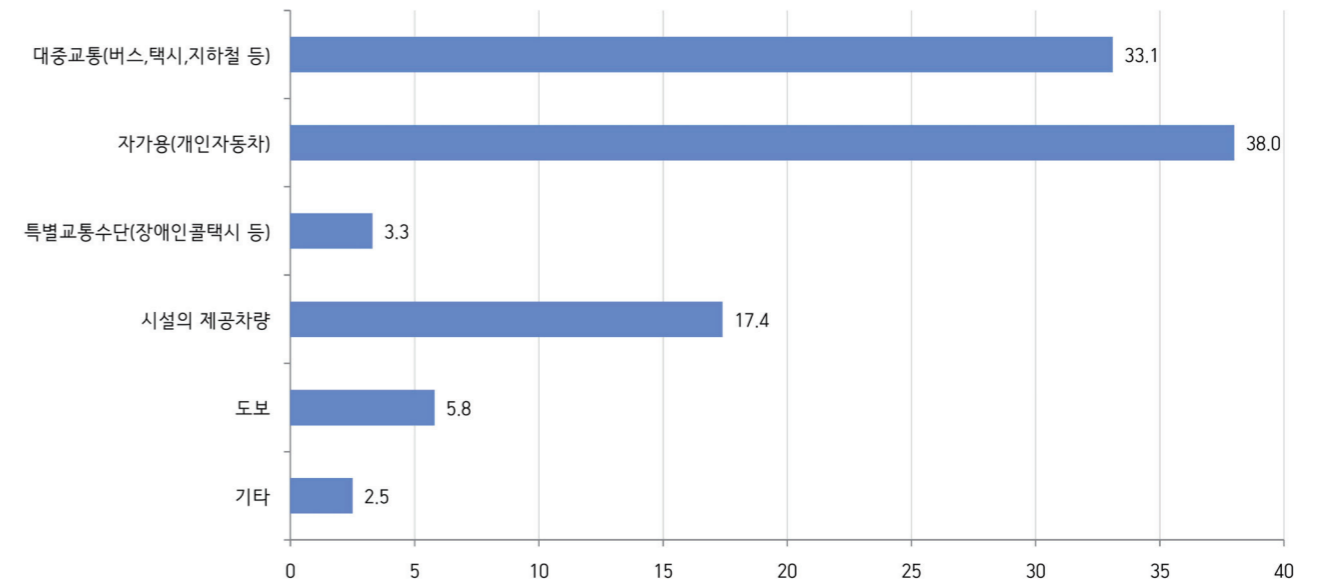
<표 4.17> 평생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받는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가족, 이웃, 친구	37	28.9
직장 동료 및 상사	4	3.1
시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12	9.4
장애부모당사자 및 단체	42	32.8
일자리 안내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	2	1.6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센터, 복지관, 사회단체 등)의 전화 상담 및 방문	22	17.2
인터넷, SNS, 홈페이지 등	5	3.9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전단 광고 등)	1	0.8
기타	3	2.3
총계	128	100.0

(6)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에 관한 응답으로 자가용(개인 자동차)이 46명(38.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40명(33.1%), 시설의 제공차량 21명(17.4%), 도보 7명(5.8%),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4명(3.3%), 기타 3명(2.5%)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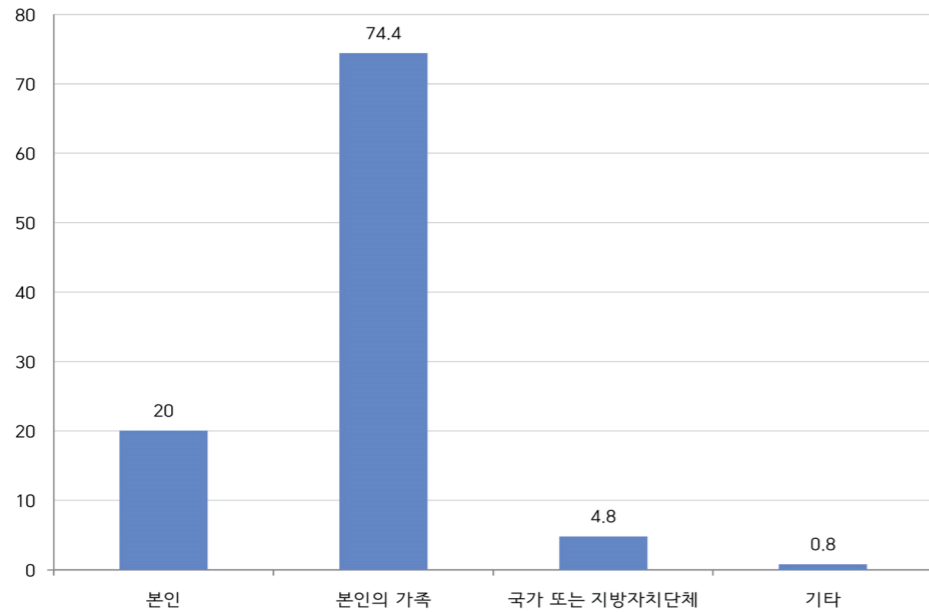
[그림 4.24]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

<표 4.18>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교통수단

구분	빈도	퍼센트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40	33.1
자가용(개인 자동차)	46	38.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4	3.3
시설의 제공차량	21	17.4
도보	7	5.8
기타	3	2.5
총계	121	100.0

(7)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방법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방법으로 본인의 가족이 93명(74.4%)로 높은 비율이었고, 본인이 25명(2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6명(4.8%), 기타가 1명(0.8%)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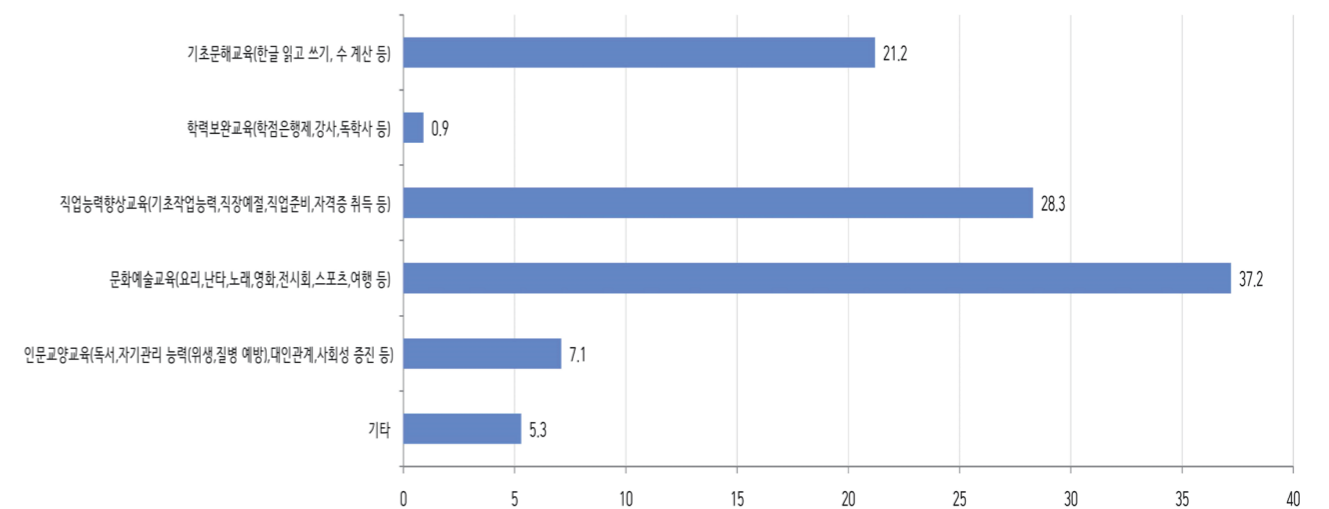
[그림 4.25]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 방법

<표 4.19>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비 부담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부담방법	본인	25	20.0
	본인의 가족	93	7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6	4.8
	기타	1	0.8
	총계	125	100.0

(8) 기존 경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기존 경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요리, 난타,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이 42명(37.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직업능력향상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이 32명(28.3%), 기초문해교육(한글 읽고 쓰기, 수 계산 등) 24명(21.2%), 인문교양교육(독서, 자기관리 능력(위생, 질병 예방),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등) 8명(7.1%), 기타 6명(5.3%),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강사, 독학사 등)이 1명(0.9%)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화분만들기, 미술, 산책, 색칠공부, 성교육, 안전교육, 지역사회 이용기술 습득, 스트레스관리, 직업준비취득, 컴퓨터, 글방공부가 있었다.



[그림 4.26] 기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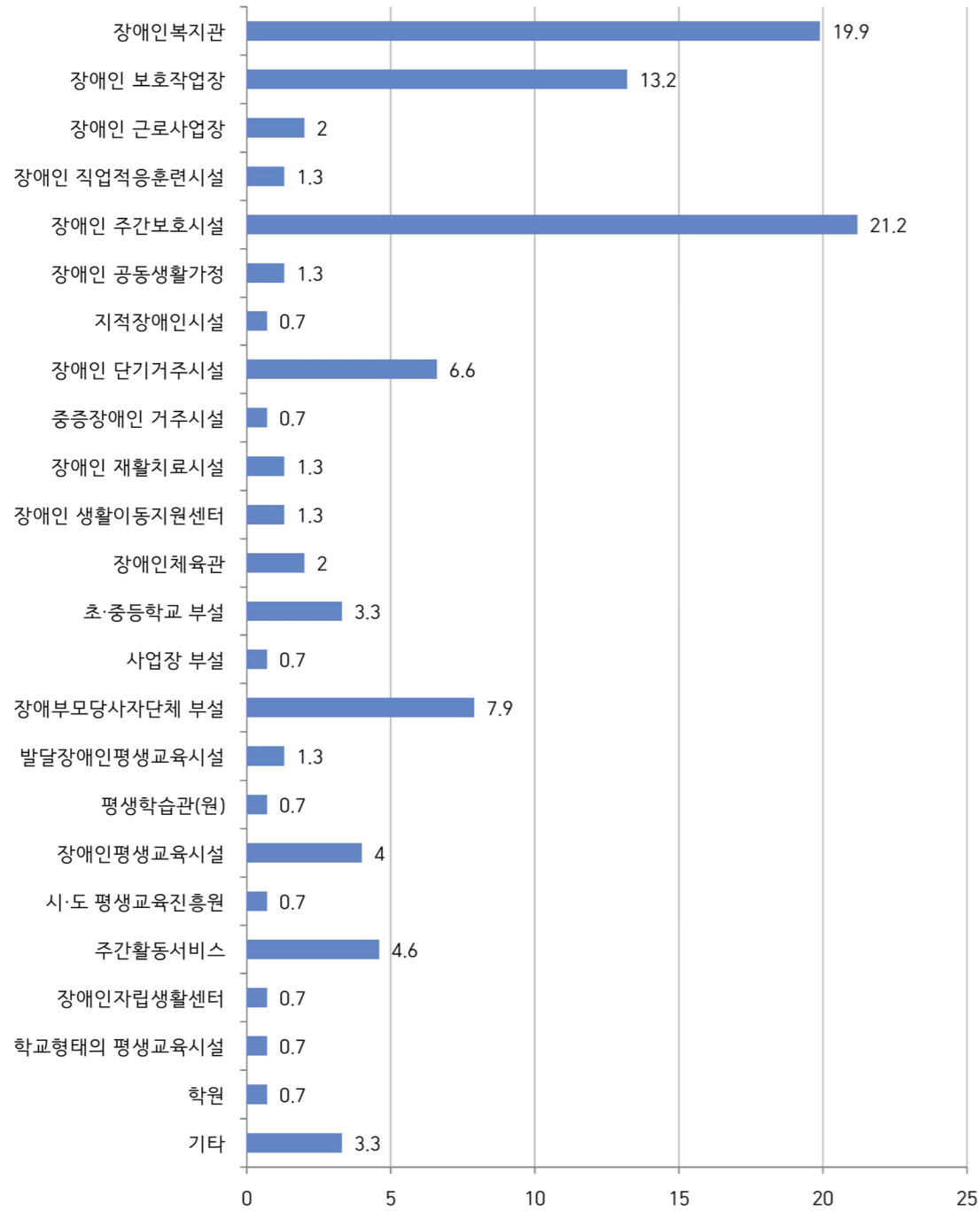
<표 4.20> 기존 참여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구분	빈도	퍼센트	
기존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초문해교육(한글 읽고 쓰기, 수 계산 등)	24	21.2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강사, 독학사 등)	1	0.9
	직업능력향상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32	28.3
	문화예술교육(요리, 난타,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	42	37.2
	인문교양교육(독서, 자기관리 능력(위생, 질병 예방),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등)	8	7.1
	기타	6	5.3
	총계	113	100.0

(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기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기관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2명(21.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30명(19.9%), 장애인 보호작업장 12명(13.2%),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12명(7.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0명(6.6%), 주간활동서비스 7명(4.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6명(4.0%), 초·중등학교 부설 및 기타가 각각 5명(3.3%),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체육관이 각각 3명(2.0%), 장애인 직업적응훈

런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각각 2명(1.3%), 지적장애인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학습관(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각각 1명(0.7%)의 비율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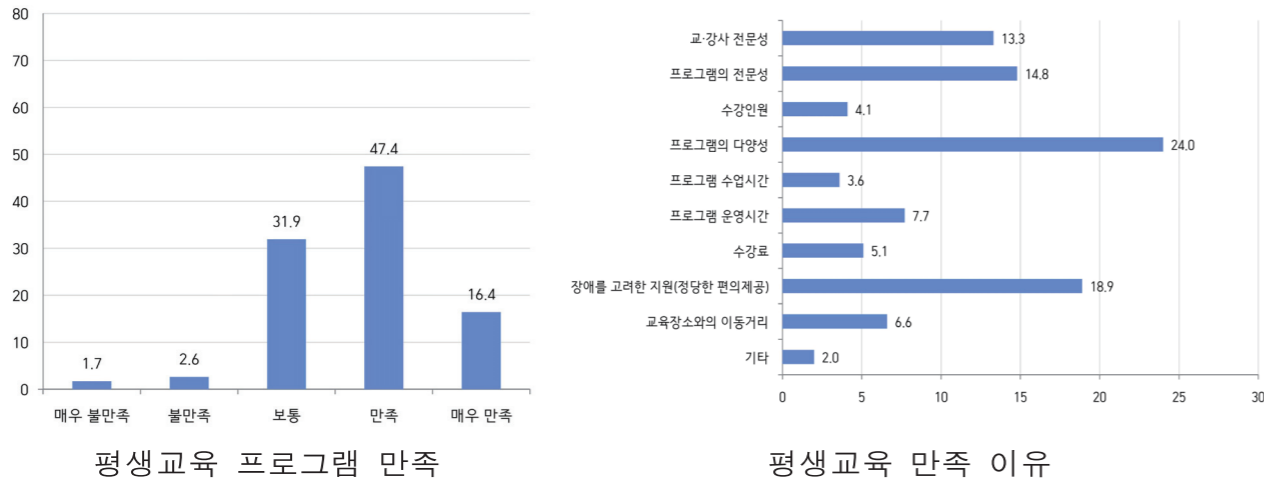
[그림 4.27] 평생교육 참여기관

<표 4.21> 평생교육 참여기관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복지관	30	19.9
장애인 보호작업장	20	13.2
장애인 근로사업장	3	2.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2	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2	21.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1.3
지적장애인시설	1	0.7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0	6.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0.7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2	1.3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2	1.3
장애인체육관	3	2.0
초·중등학교 부설	5	3.3
사업장 부설	1	0.7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12	7.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	1.3
평생학습관(원)	1	0.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6	4.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	0.7
주간활동서비스	7	4.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0.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0.7
학원	1	0.7
기타	5	3.3
총계	151	100.0

(10)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에 관한 의견으로 만족이 55명(47.4%)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보통 37명(31.9%), 매우 만족 19명(16.4%), 불만족 3명(2.6%), 매우 불만족 2명(1.7%)의 비율 순이었다. 평생교육 만족이유에 관한 응답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47명(24.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이 37명(18.9%),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29명(14.8%), 교·강사 전문성 26명(13.3%), 프로그램 운영 시간 15명(7.7%), 교육장소와의 이동거리 13명(6.6%), 수강료 10명(5.1%), 수강인원 8명(4.1%), 프로그램 수업시간 7명(3.6%), 기타 4명(2.0%)의 비율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강사의 마음과 열정, 최종중 우리 아이를 잘 케어해주셔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4.28]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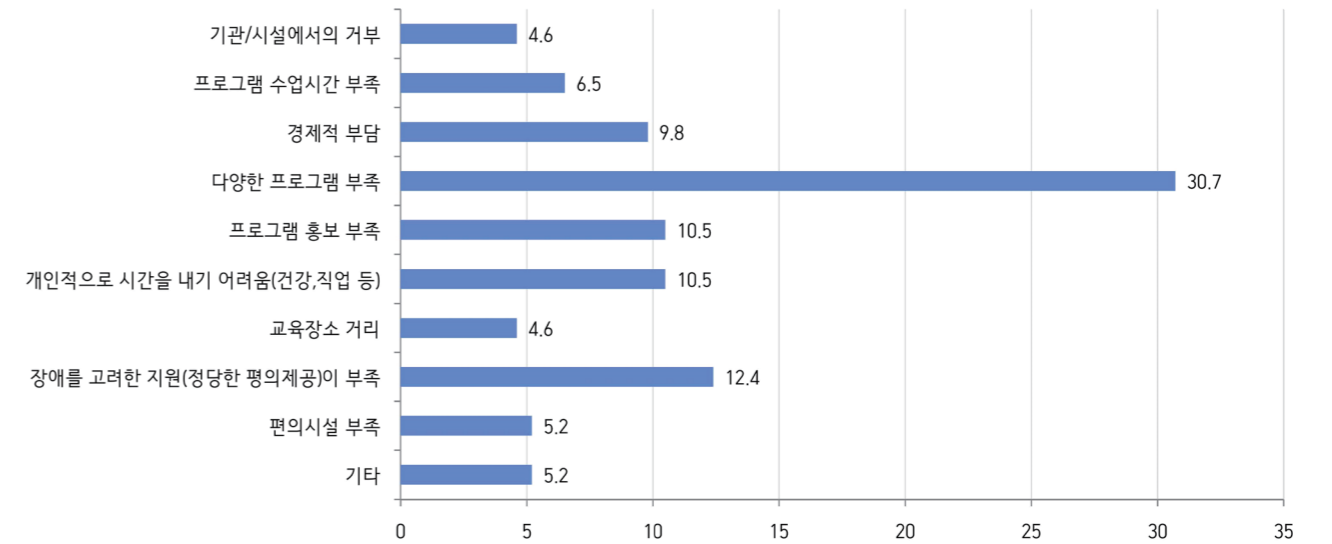
<표 4.22>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	매우 불만족	2	1.7
	불만족	3	2.6
	보통	37	31.9
	만족	55	47.4
	매우 만족	19	16.4
	총계	116	100.0
평생교육만족이유	교·강사 전문성	26	13.3
	프로그램의 전문성	29	14.8
	수강인원	8	4.1
	프로그램의 다양성	47	24.0
	프로그램 수업시간	7	3.6
	프로그램 운영 시간	15	7.7
	수강료	10	5.1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	37	18.9
	교육장소와의 이동거리	13	6.6
	기타	4	2.0
총계	196	100.0	

(11)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으로 다양한 프로

그램 부족이 47명(30.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족이 19명(12.4%), 프로그램 홍보 부족 및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움(건강, 직업 등)이 각각 16명(10.5%), 경제적 부담 15명(9.8%), 프로그램 수업시간 부족 10명(6.5%), 편의시설 부족 및 기타가 각각 8명(5.2%), 기관/시설에서의 거부 및 교육장소 거리가 각각 7명(4.6%)의 비율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의 자녀의 비참여, 본인이 적응이 어려웠음, 안전상의 문제,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음, 최종증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의 부족이 있었다.



[그림 4.2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

<표 4.23>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참여에 어려운점	기관/시설에서의 거부	7	4.6
	프로그램 수업시간 부족	10	6.5
	경제적 부담	15	9.8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47	30.7
	프로그램 홍보 부족	16	10.5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움(건강, 직업 등)	16	10.5
	교육장소 거리	7	4.6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족	19	12.4
	편의시설 부족	8	5.2
	기타	8	5.2
	총계	153	100.0

(12)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유무로 보통이다가 52명(45.2%), 조금 그렇다 29명(25.2%), 매우 그렇다가 21명(18.3%), 별로 그렇지 않다가 10명(8.7%),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2.6%)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로 보통이다가 42명(36.5%), 조금 그렇다 40명(34.8%), 매우 그렇다가 21명(18.3%), 별로 그렇지 않다가 7명(6.1%),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명(4.3%)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로 조금 그렇다 49명(42.6%), 보통이다가 31명(27.0%), 매우 그렇다가 30명(26.1%), 전혀 그렇지 않다가 3명(2.6%), 별로 그렇지 않다가 2명(1.7%)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로 보통이다가 40명(34.8%), 조금 그렇다 37명(32.2%), 매우 그렇다가 18명(15.7%), 별로 그렇지 않다가 15명(13.0%),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명(4.3%)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는 보통이다가 37명(32.2%), 전혀 그렇지 않다가 27명(23.5%), 별로 그렇지 않다가 26명(22.6%), 조금 그렇다 16명(13.9%), 매우 그렇다가 9명(7.8%)의 비율을 보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는 조금 그렇다 39명(33.9%), 보통이다가 34명(29.6%), 매우 그렇다가 21명(18.3%), 별로 그렇지 않다가 14명(12.2%),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6.1%)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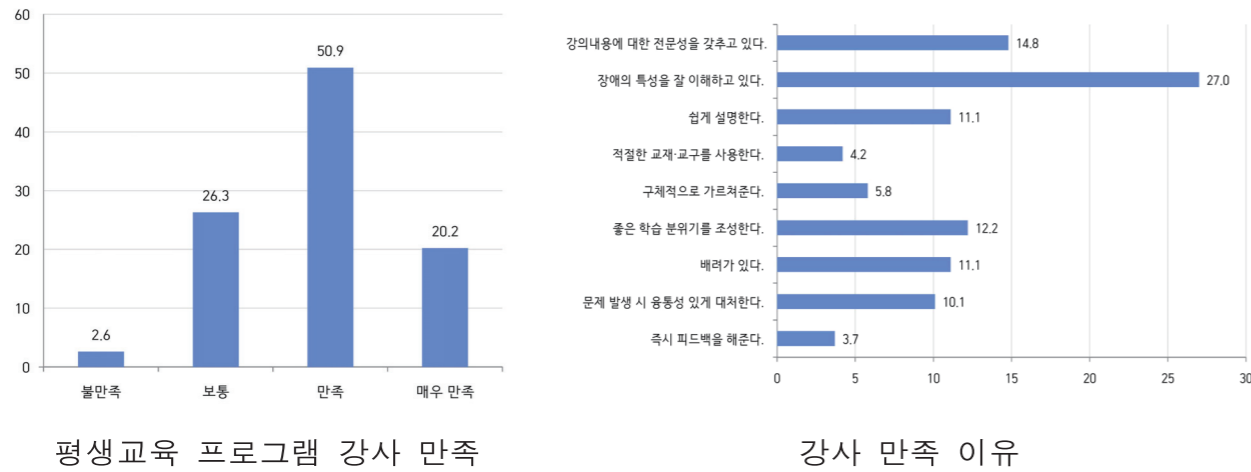
<표 4.24>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유무	전혀 그렇지 않다	3	2.6
	별로 그렇지 않다	10	8.7
	보통이다	52	45.2
	조금 그렇다	29	25.2
	매우 그렇다	21	18.3
	총계	11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전혀 그렇지 않다	5	4.3
	별로 그렇지 않다	7	6.1
	보통이다	42	36.5
	조금 그렇다	40	34.8
	매우 그렇다	21	18.3
	총계	115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3	2.6
	별로 그렇지 않다	2	1.7
	보통이다	31	27.0
	조금 그렇다	49	42.6
	매우 그렇다	30	26.1
	총계	11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전혀 그렇지 않다	5	4.3
	별로 그렇지 않다	15	13.0
	보통이다	40	34.8
	조금 그렇다	37	32.2
	매우 그렇다	18	15.7
	총계	11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전혀 그렇지 않다	27	23.5
	별로 그렇지 않다	26	22.6
	보통이다	37	32.2
	조금 그렇다	16	13.9
	매우 그렇다	9	7.8
	총계	11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7	6.1
	별로 그렇지 않다	14	12.2
	보통이다	34	29.6
	조금 그렇다	39	33.9
	매우 그렇다	21	18.3
	총계	115	100.0

(13)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만족으로 만족이 58명(50.9%)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보통 30명(26.3%), 매우 만족 23명(20.2%), 불만족 3명(2.6%)의 비율 순이었다. 강사만족에 관한 이유로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51명(27.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가 28명(14.8%),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가 23명(12.2%), 쉽게 설명한다와 배려가 있다가 각각 21명(11.1%), 문제 발생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가 19명(10.1%),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가 11명(5.8%), 적절한 교재·교구를 사용한다가 8명(4.2%), 즉시 피드백을 해준다가 7명(3.7%)의 비율 순이었다.



[그림 4.30]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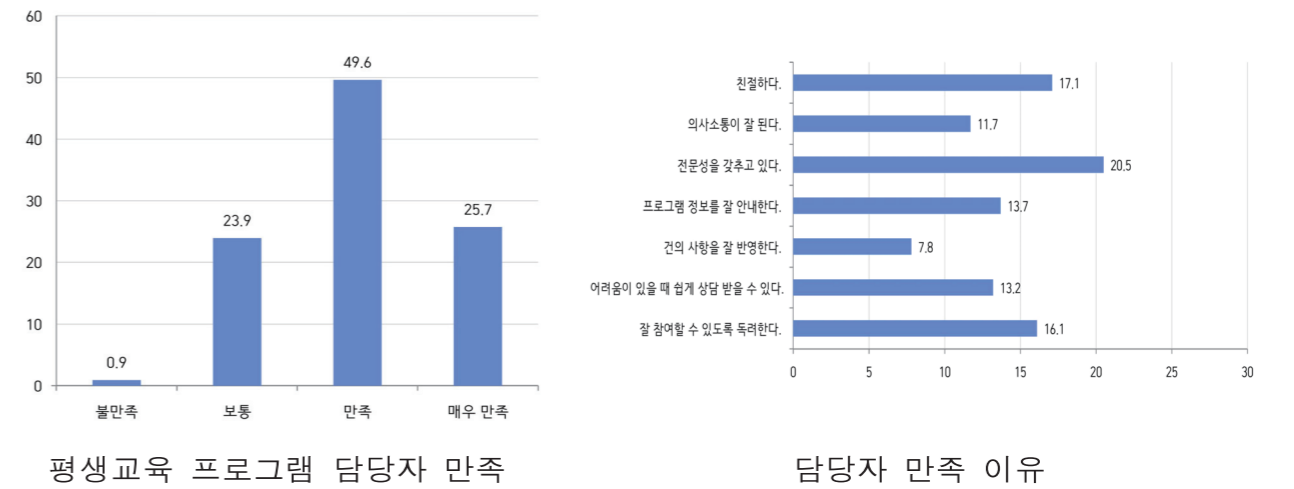
<표 4.25>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만족	불만족	3	2.6
	보통	30	26.3
	만족	58	50.9
	매우 만족	23	20.2
	총계	114	100.0
강사만족이유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8	14.8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51	27.0
	쉽게 설명한다.	21	11.1
	적절한 교재·교구를 사용한다.	8	4.2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11	5.8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23	12.2
	배려가 있다.	21	11.1
	문제 발생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19	10.1
	즉시 피드백을 해준다.	7	3.7
총계	189	100.0	

(14)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만족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6명(49.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매우 만족 29명(25.7%), 보통 27명(23.9%), 불만족 1명(0.9%)의 비율 순이었다. 담당자 만족에 관한 이유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가 42명

(20.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친절하다가 35명(17.1%),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다가 33명(16.1%), 프로그램 정보를 잘 안내하다가 28명(13.7%),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가 27명(13.2%), 의사소통이 잘 된다가 24명(11.7%), 건의 사항을 잘 반영하다가 16명(7.8%)의 비율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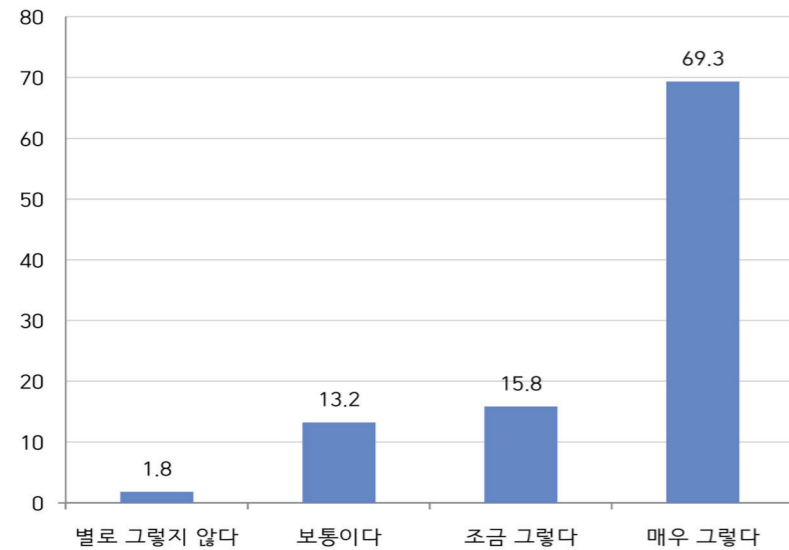
[그림 4.31]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표 4.26>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불만족	1	0.9
	보통	27	23.9
	만족	56	49.6
	매우 만족	29	25.7
	총계	113	100.0
담당자만족이유	친절하다.	35	17.1
	의사소통이 잘 된다.	24	11.7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2	20.5
	프로그램 정보를 잘 안내한다.	28	13.7
	건의 사항을 잘 반영한다.	16	7.8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	27	13.2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3	16.1
	총계	205	100.0

(15)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에 관한 의견으로 매우 그렇다가 79명(69.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조금 그렇다가 18명(15.8%), 보통이다가 15명(13.2%), 별로 그렇지 않다가 2명(1.8%)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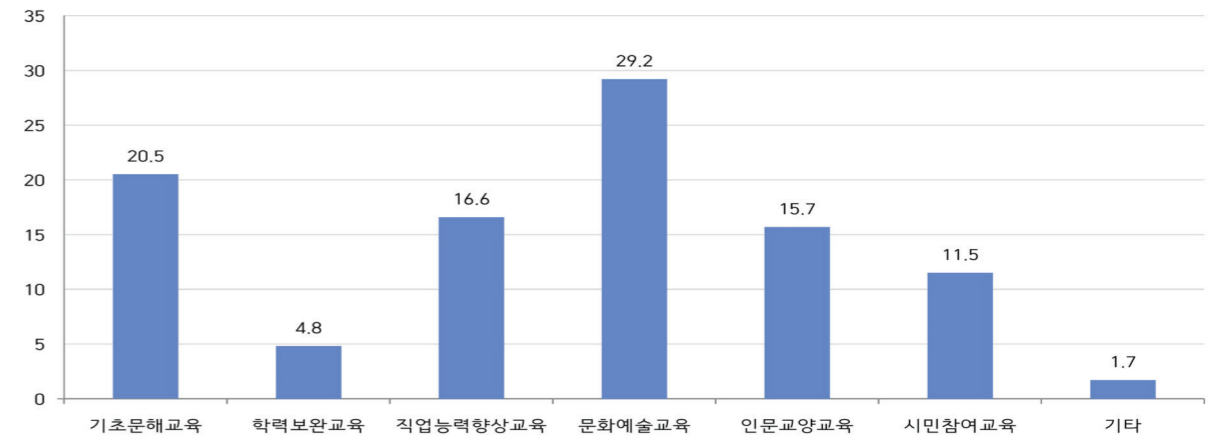
[그림 4.32]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표 4.27>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희망 여부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희망여부	별로 그렇지 않다	2	1.8
	보통이다	15	13.2
	조금 그렇다	18	15.8
	매우 그렇다	79	69.3
	총계	1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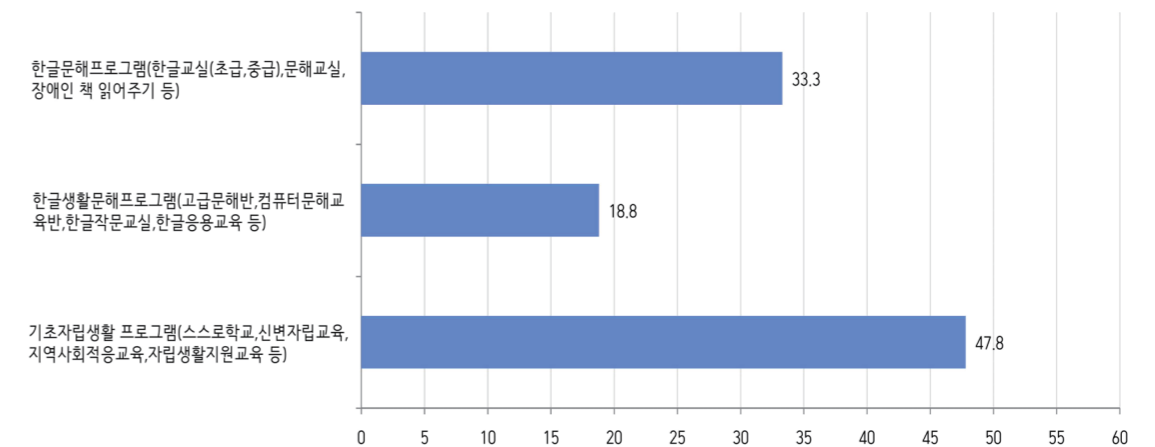
(16)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질문으로 문화예술교육이 104명(29.2%)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기초문해교육 73명(20.5%), 직업능력향상교육 59명(16.6%), 인문교양교육 56명(15.7%), 시민참여교육 41명(11.5%), 학력보완교육 17명(4.8%), 기타 6명(1.7%)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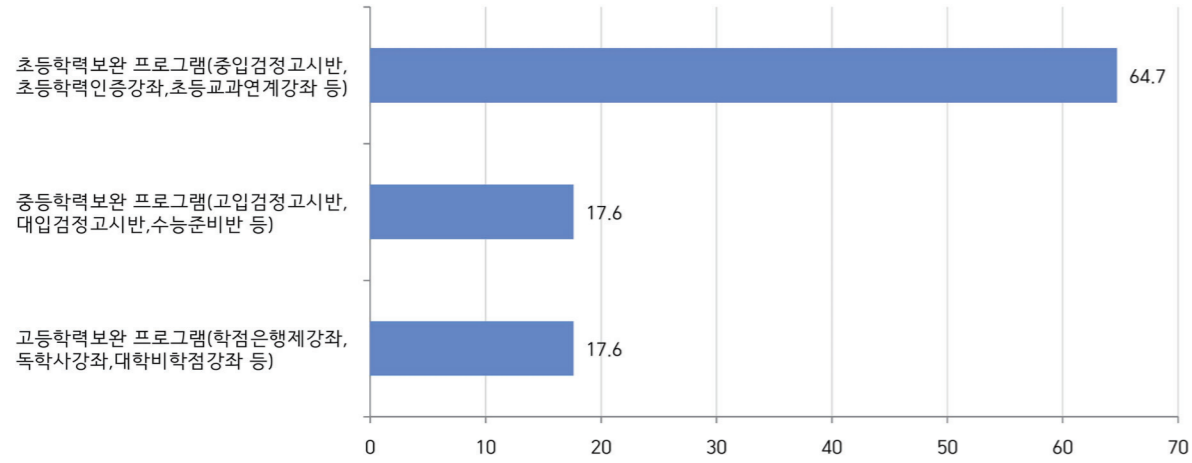
[그림 4.33]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기초문해교육에 관한 세부항목에 관한 욕구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등)이 33명(47.8%), 한글문해프로그램(한글교실(초급, 중급), 문해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등) 23명(33.3%),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고급 문해반, 컴퓨터문해교육반, 한글작문교실, 한글 응용교육 등) 13명(18.8%)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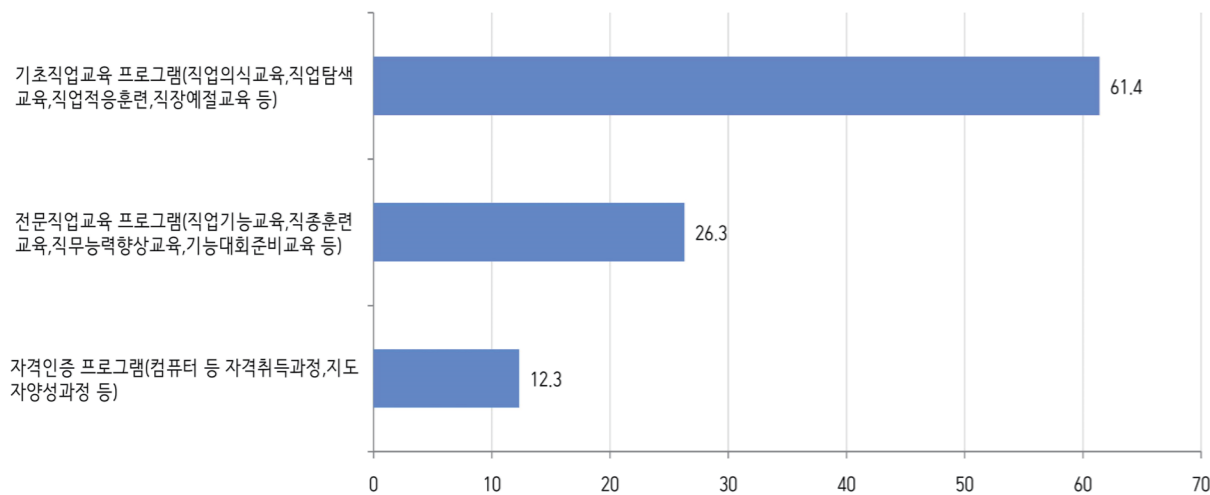
[그림 4.34]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에 관한 욕구로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등)이 11명(64.7%),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등) 및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등)이 각각 3명(17.6%)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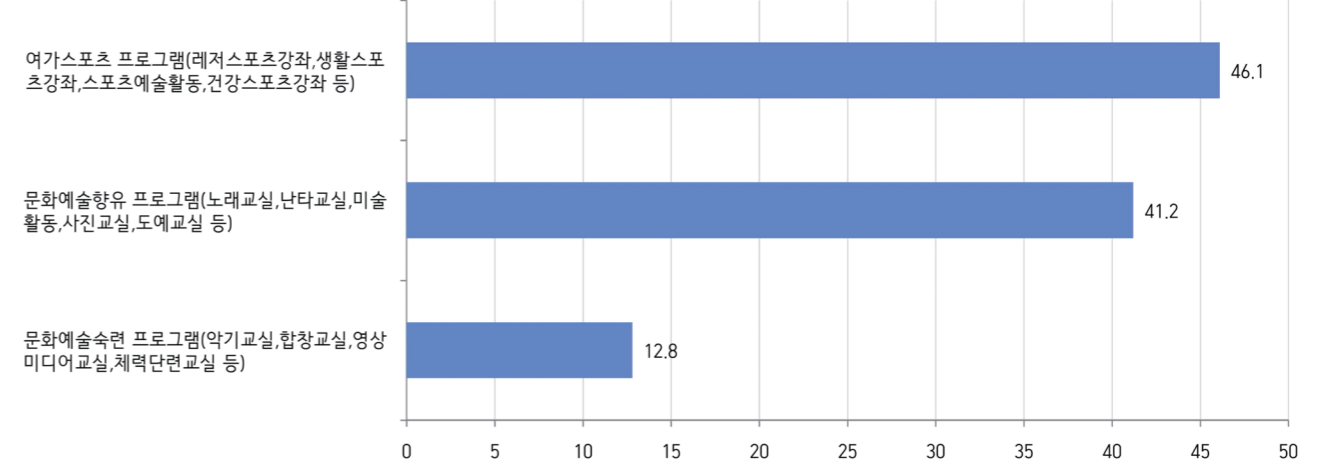
[그림 4.35]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에 관한 욕구로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예절교육 등)이 35명(61.4%),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기능교육, 직종훈련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등)이 15명(26.3%), 자격인증 프로그램(컴퓨터 등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등)이 7명(12.3%)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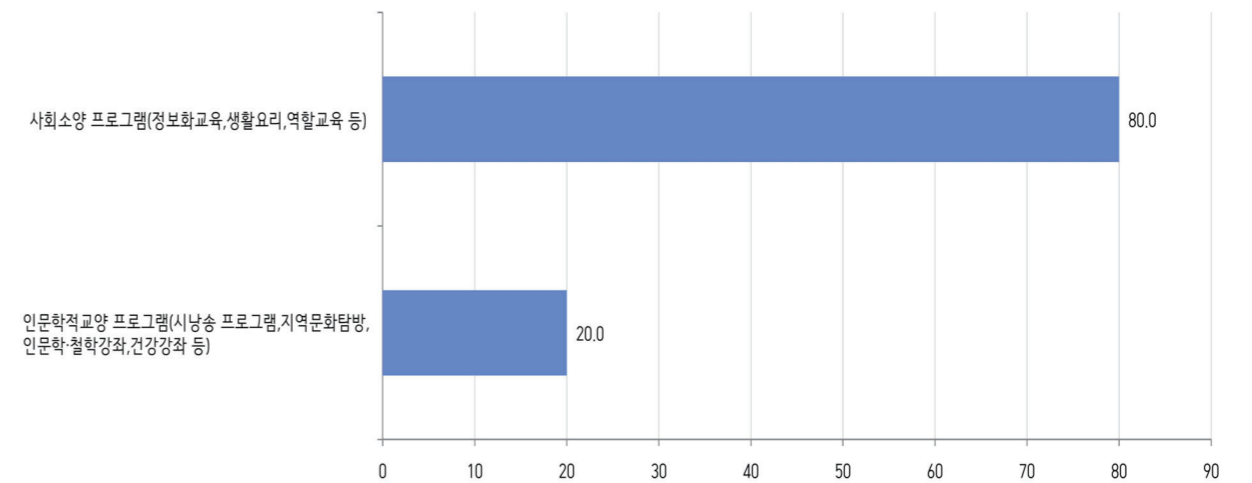
[그림 4.36]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욕구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등)이 47명(46.1%),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노래교실, 난타교실, 미술활동, 사진교실, 도예교실 등)이 42명(41.2%),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악기교실, 합창교실, 영상미디어교실, 체력단련교실 등)이 13명(12.8%)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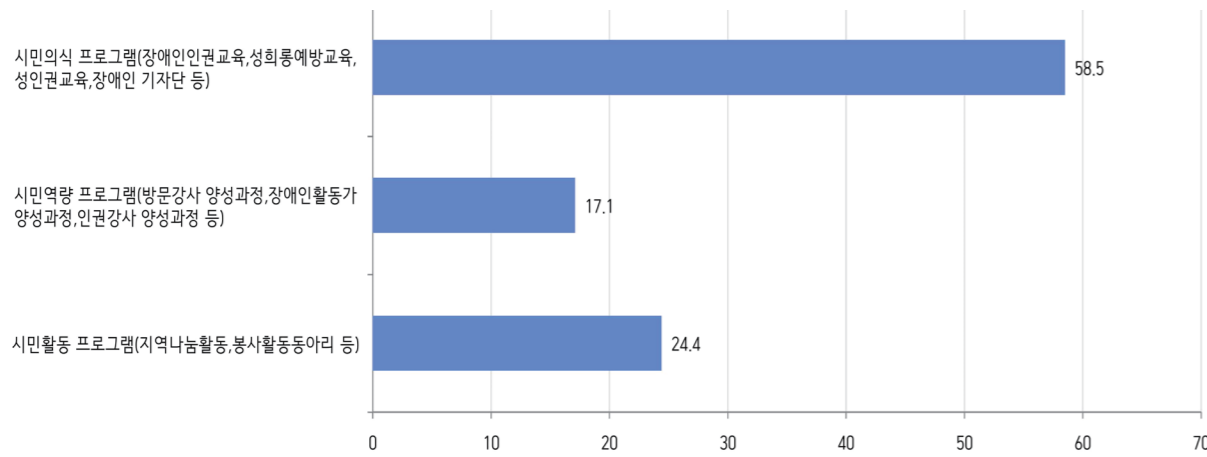
[그림 4.37]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에 관한 욕구로 사회소양 프로그램(정보화교육, 생활요리, 역할교육 등)이 44명(80.0%),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철학강좌, 건강강좌 등)이 11명(20.2%)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38]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욕구로 시민의식 프로그램(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권교육, 장애인 기자단 등)이 24명(58.5%), 시민활동 프로그램(지역나눔활동, 봉사활동동아리 등)이 10명(24.4%), 시민역량 프로그램(방문강사 양성과정,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이 7명(17.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39]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시민참여교육)

<표 4.28>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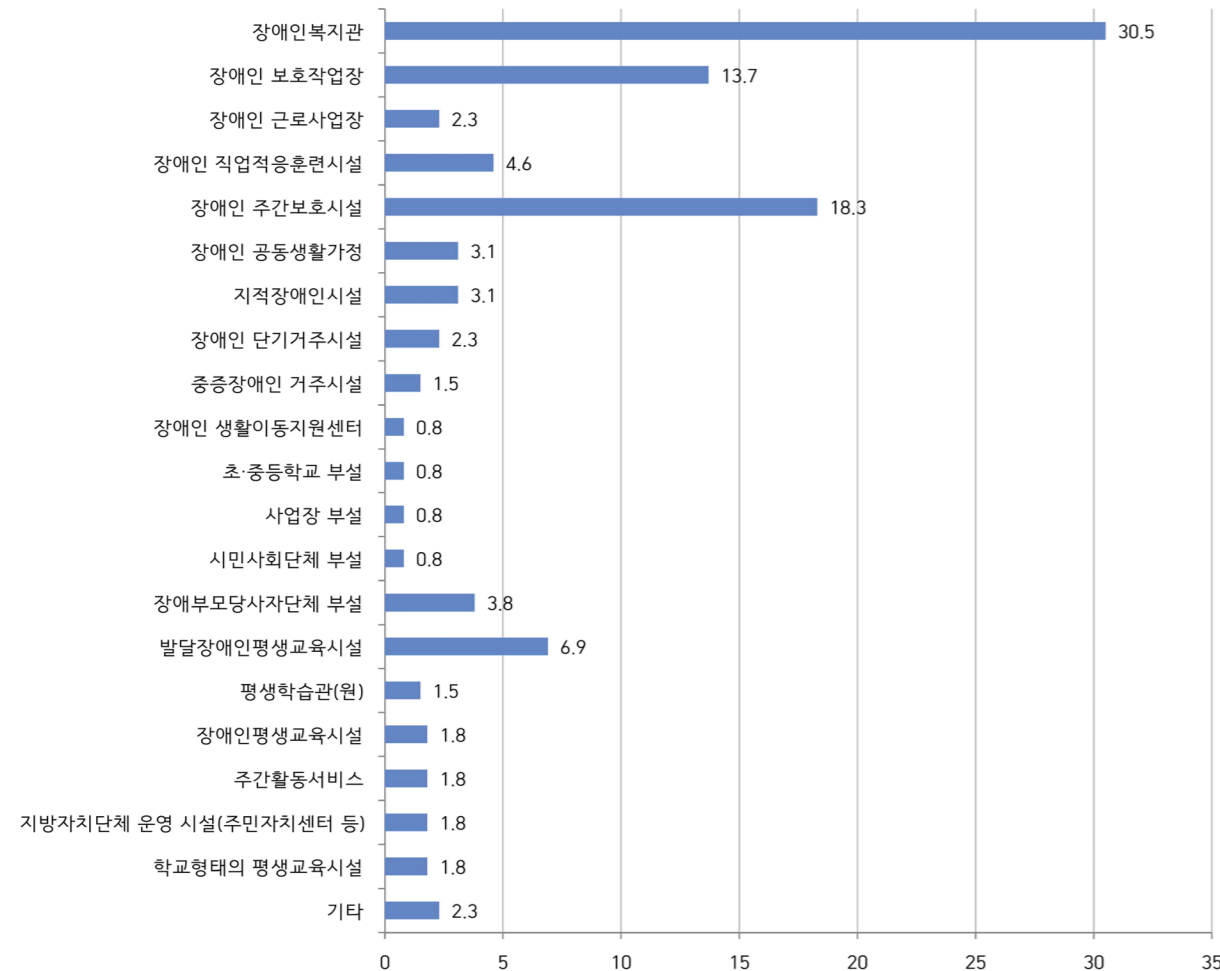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기초문해교육	73	20.5
	학력보완교육	17	4.8
	직업능력향상교육	59	16.6
	문화예술교육	104	29.2
	인문교양교육	56	15.7
	시민참여교육	41	11.5
	기타	6	1.7
	총계	356	100.0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프로그램(한글교실(초급, 중급), 문해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등)	23	33.3
	한글생활문해프로그램(고급 문해반, 컴퓨터문해교육반, 한글작문교실, 한글 응용교육 등)	13	18.8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등)	33	47.8
	총계	69	100.0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등)	11	64.7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등)	3	17.6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등)	3	17.6
	총계	17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직업능력향상 교육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에절교육 등)	35	61.4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기능교육, 직종훈련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등)	15	26.3
	자격인증 프로그램(컴퓨터 등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등)	7	12.3
	총계	57	100.0
문화예술교육	여가스포츠 프로그램(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등)	47	46.1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노래교실, 난타교실, 미술활동, 사진교실, 도예교실 등)	42	41.2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악기교실, 합창교실, 영상미디어교실, 체력단련교실 등)	13	12.8
	총계	102	100.0
인문교양교육	사회소양 프로그램(정보화교육, 생활요리, 역할교육 등)	44	80.0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철학강좌, 건강강좌 등)	11	20.0
	총계	55	100.0
시민참여교육	시민의식 프로그램(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권교육, 장애인 기자단 등)	24	58.5
	시민역량 프로그램(방문강사 양성과정,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	7	17.1
	시민활동 프로그램(지역나눔활동, 봉사활동동아리 등)	10	24.4
	총계	41	100.0

(17)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1순위로 장애인복지관이 40명(30.5%)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4명(18.3%), 장애인 보호작업장 18명(13.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9명(6.9%),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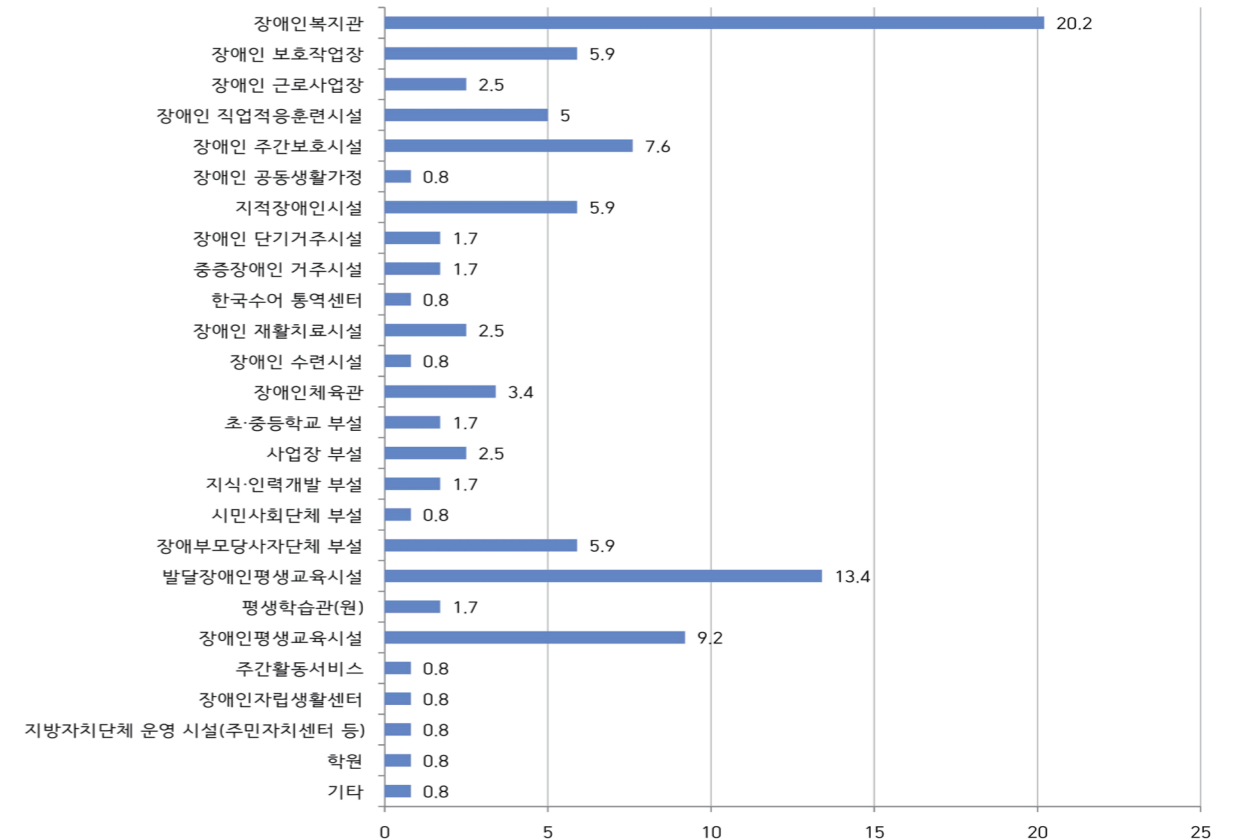
(4.6%),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5명(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지적장애인시설이 각각 4명(3.1%),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기타가 각각 3명(2.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평생학습관(원)이 각각 2명(1.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초·중등학교 부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활동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각각 1명(0.8%)의 비율 순이었다.



[그림 4.4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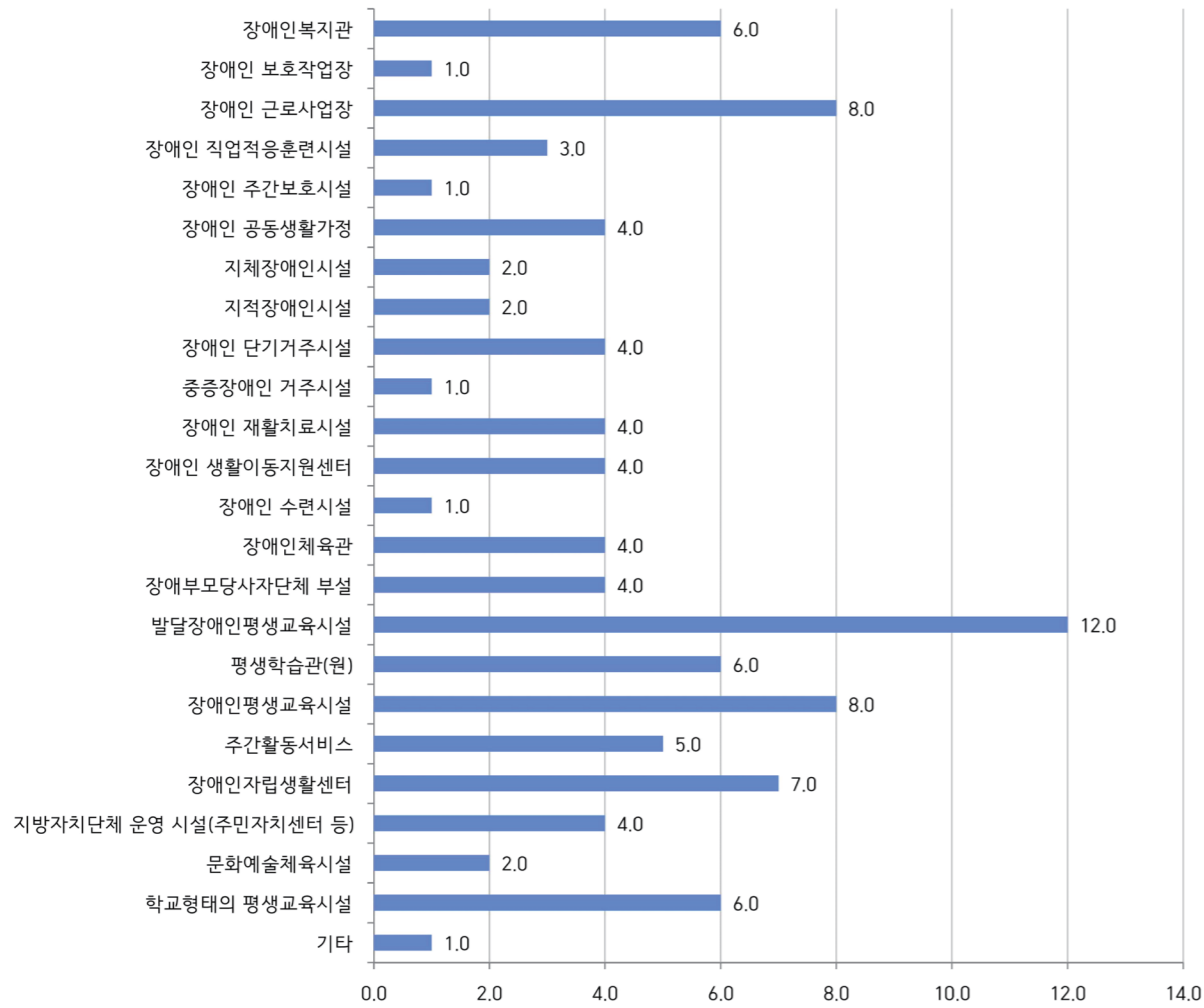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2순위로 장애인복지관이 24명(20.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16명(13.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1명(9.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명(7.6%),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지적장애인시설,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이 각각 7명(5.9%),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6명(5.0%), 장애인체육관 4명(3.4%),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사업장

부설이 각각 3명(2.5%),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초·중등학교 부설, 지식·인력개발 부설, 평생학습관(원)이 각각 2명(1.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한국수어 통역센터, 장애인 수련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학원, 기타가 각각 1명(0.8%)의 비율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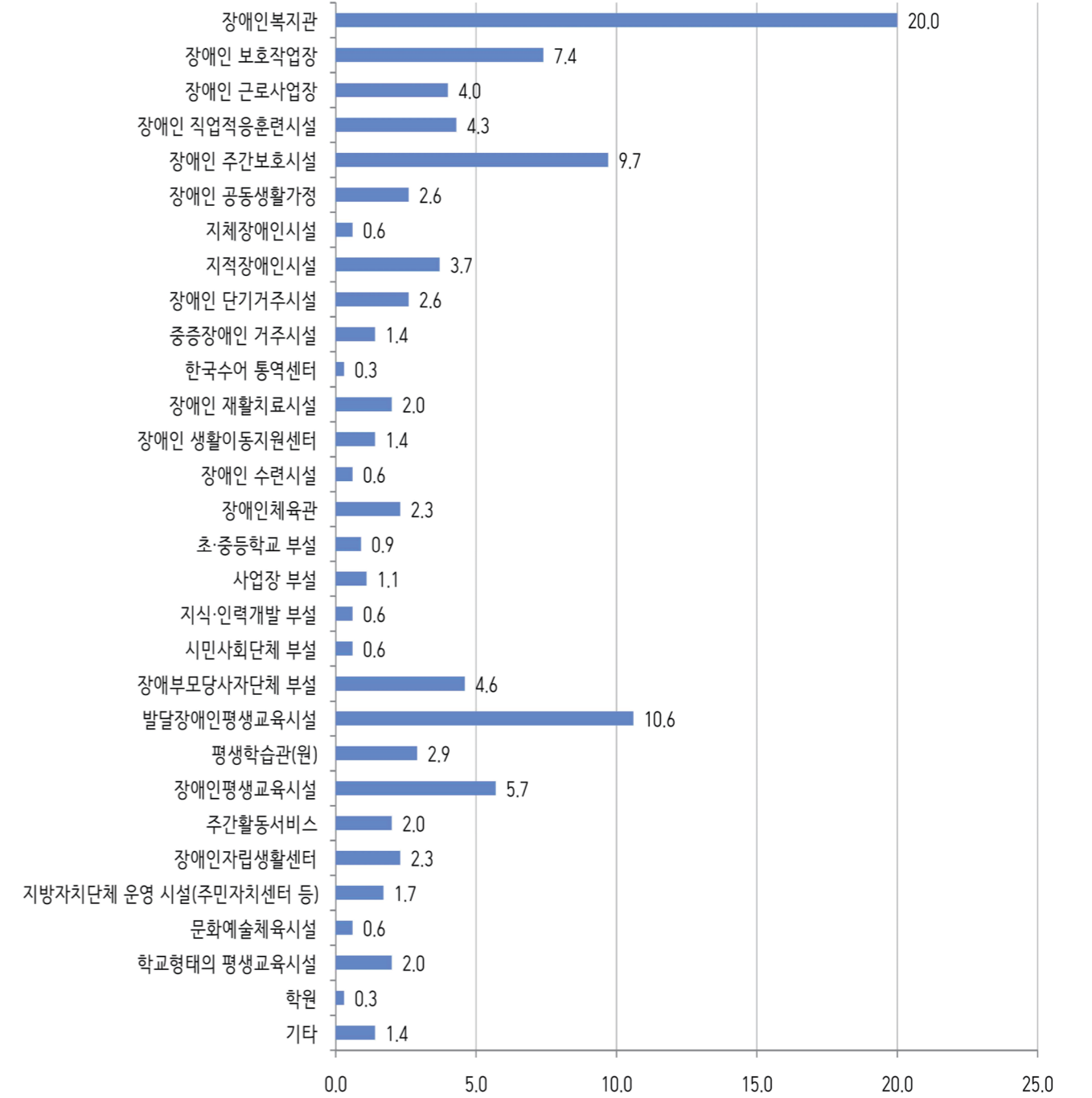
[그림 4.41]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 3순위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12명(12.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각각 8명(8.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명(7.0%), 장애인복지관과 평생학습관(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각각 6명(6.0%), 주간활동서비스 5명(5.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체육관,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이 각각 4명(4.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3명(3.0%), 지적장애인시설과 지적장애인시설, 문화예술체육시설이 각각 2명(2.0%),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기타가 각각 1명(1.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2]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기관에 다중응답으로 장애인복지관이 70명(20.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37명(10.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4명(9.7%),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26명(7.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20명(5.7%),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이 16명(4.6%),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15명(4.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14명(4.3%), 지적장애인시설이 13명(3.7%), 평생학습관(원)이 10명(2.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각각 9명(2.6%),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체육관이 각각 8명(2.3%), 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주간활동서비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7명(2.0%),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이 6명(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기타가 각각 5명(1.4%), 사업장 부설이 4명(1.1%), 초·중등학교 부설이 3명(0.9%), 지체장애인시설과 장애인 수련시설, 지식·인력개발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문화예술체육시설이 각각 2명(0.6%), 한국수어 통역센터 1명(0.3%)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3]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3순위)

<표 4.29>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희망 기관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1순위	장애인복지관	40	30.5
	장애인 보호작업장	18	13.7
	장애인 근로사업장	3	2.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6	4.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4	18.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	3.1
	지적장애인시설	4	3.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2.3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	1.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8
	초·중등학교 부설	1	.8
	사업장 부설	1	.8
	시민사회단체 부설	1	.8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5	3.8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9	6.9
	평생학습관(원)	2	1.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8
	주간활동서비스	1	.8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1	.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8
기타	3	2.3	
총계	131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2순위	장애인복지관	24	20.2
	장애인 보호작업장	7	5.9
	장애인 근로사업장	3	2.5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6	5.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	7.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8
	지적장애인시설	7	5.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	1.7
	한국수어 통역센터	1	.8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3	2.5
	장애인 수련시설	1	.8
	장애인체육관	4	3.4
	초·중등학교 부설	2	1.7
	사업장 부설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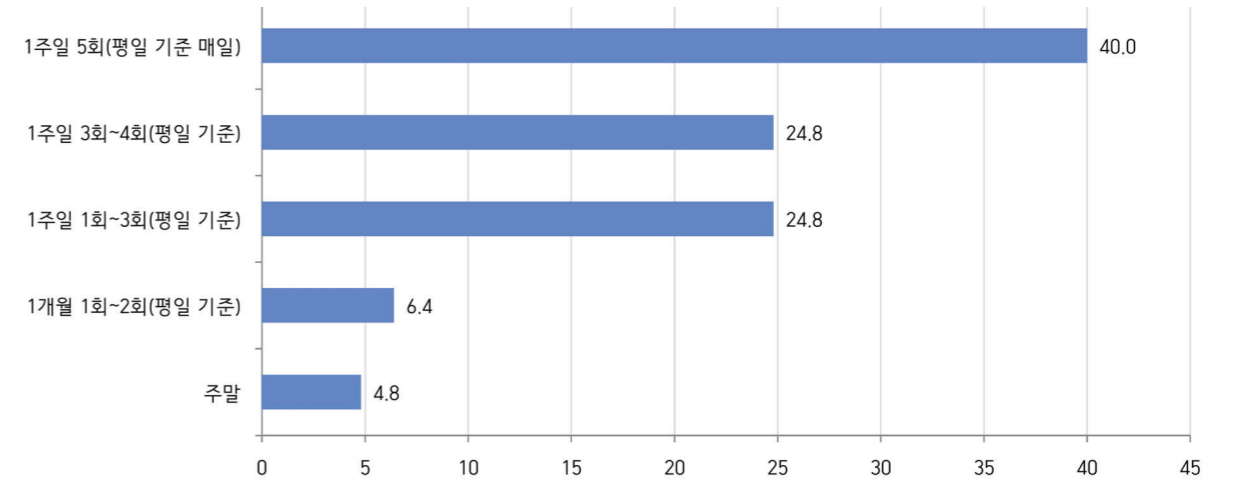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2순위	지식·인력개발 부설	2	1.7	
	시민사회단체 부설	1	.8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7	5.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16	13.4	
	평생학습관(원)	2	1.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	9.2	
	주간활동서비스	1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8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1	.8	
	학원	1	.8	
	기타	1	.8	
	총계	119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3순위	장애인복지관	6	6.0
		장애인 보호작업장	1	1.0
장애인 근로사업장		8	8.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3	3.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1.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	4.0	
지체장애인시설		2	2.0	
지적장애인시설		2	2.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	4.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1.0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4	4.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4	4.0	
장애인 수련시설		1	1.0	
장애인체육관		4	4.0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4	4.0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12.0	
평생학습관(원)		6	6.0	
장애인평생교육시설		8	8.0	
주간활동서비스		5	5.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7.0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4	4.0		
문화예술체육시설	2	2.0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6.0		
기타	1	1.0		
총계	10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복지관	70	20.0
장애인 보호작업장	26	7.4
장애인 근로사업장	14	4.0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15	4.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4	9.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9	2.6
지체장애인시설	2	0.6
지적장애인시설	13	3.7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9	2.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5	1.4
한국수어 통역센터	1	0.3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7	2.0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5	1.4
장애인 수련시설	2	0.6
장애인체육관	8	2.3
초·중등학교 부설	3	0.9
사업장 부설	4	1.1
지식·인력개발 부설	2	0.6
시민사회단체 부설	2	0.6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16	4.6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37	10.6
평생학습관(원)	10	2.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0	5.7
주간활동서비스	7	2.0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	2.3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6	1.7
문화예술체육시설	2	0.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7	2.0
학원	1	0.3
기타	5	1.4
총계	350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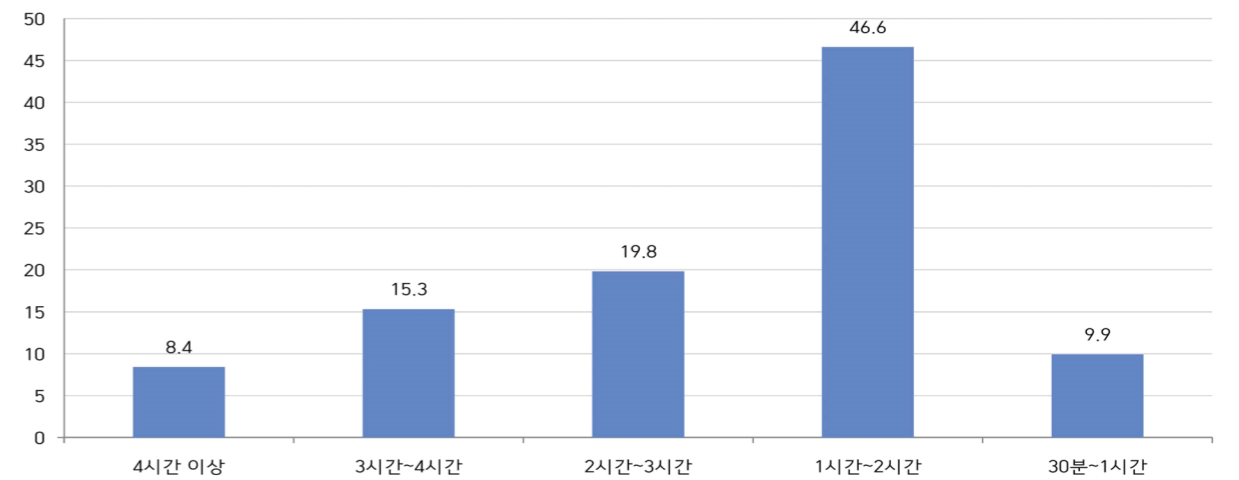
(18)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빈도 및 시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참여 빈도로 1주일 5회(평일 기준 매일)이 50명(40.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1주일 3회 ~ 4회(평일 기준) 및 1주일 1회 ~ 3회(평일 기준)이 각각 31명(24.8%), 1개월 1회 ~ 2회(평일 기준) 8명(6.4%), 주말 6명(4.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4]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빈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간으로는 1시간 ~ 2시간이 61명(46.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2시간 ~ 3시간 26명(9.8%), 3시간 ~ 4시간 20명(15.3%), 30분 ~ 1시간 13명(9.9%), 4시간 이상 11명(8.4%)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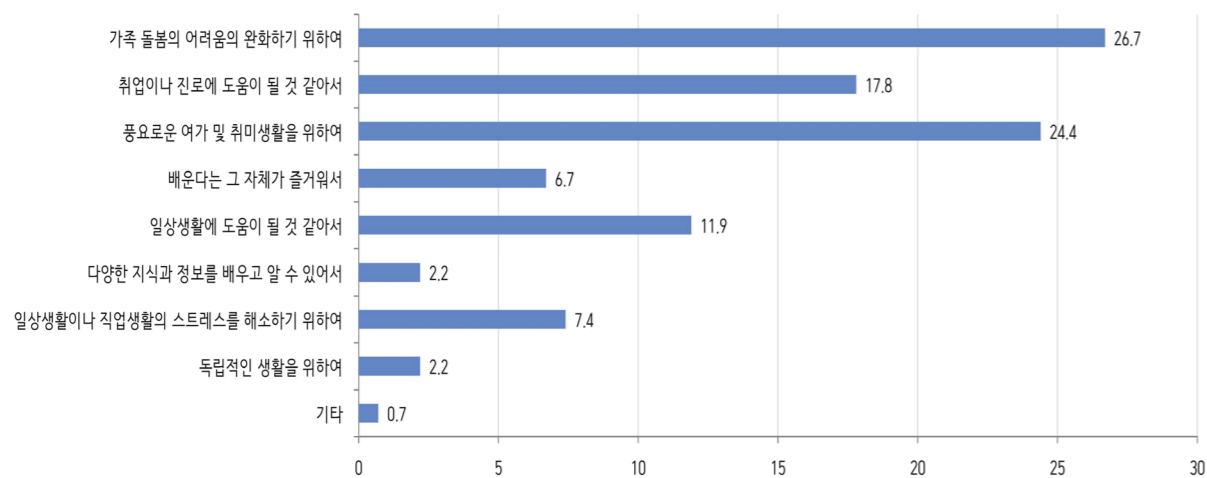
[그림 4.45]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시간

<표 4.30>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참여 빈도 및 시간

구분		빈도	퍼센트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빈도	1주일 5회(평일 기준 매일)	50	40.0
	1주일 3회 ~ 4회(평일 기준)	31	24.8
	1주일 1회 ~ 3회(평일 기준)	31	24.8
	1개월 1회 ~ 2회(평일 기준)	8	6.4
	주말	6	4.8
	총계	125	100.0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간	4시간 이상	11	8.4
	3시간 ~ 4시간	20	15.3
	2시간 ~ 3시간	26	19.8
	1시간 ~ 2시간	61	46.6
	30분 ~ 1시간	13	9.9
	총계	1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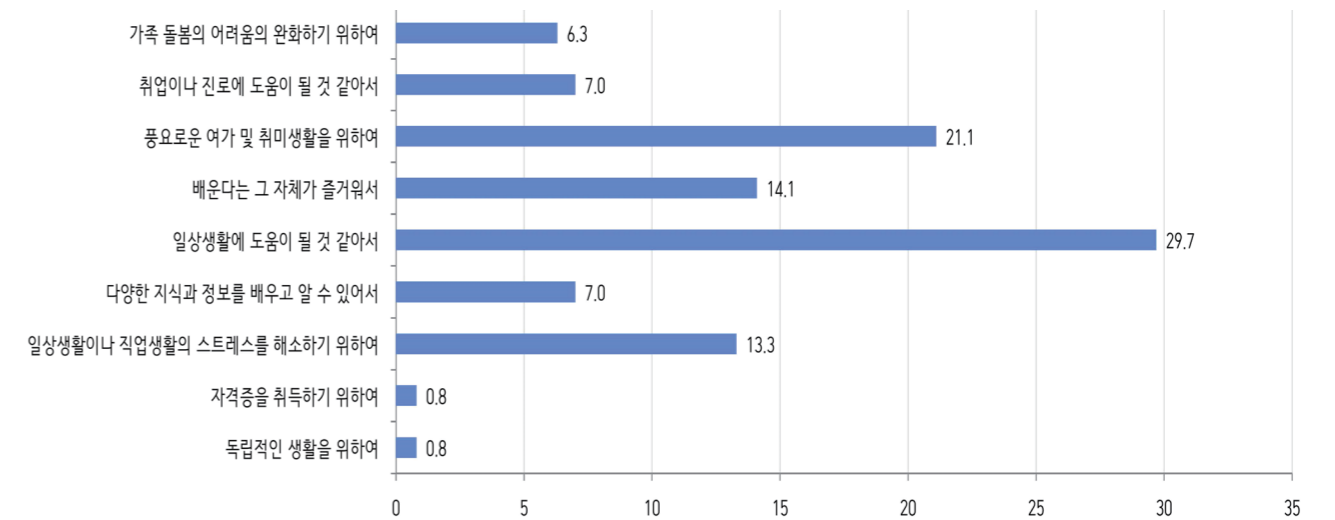
(19)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이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이유 1순위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의 완화하기 위하여가 36명(26.7%)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33명(24.4%),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4명(17.8%),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명(11.9%),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명(7.4%),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9명(6.7%),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가 3명(2.2%), 기타가 1명(0.7%)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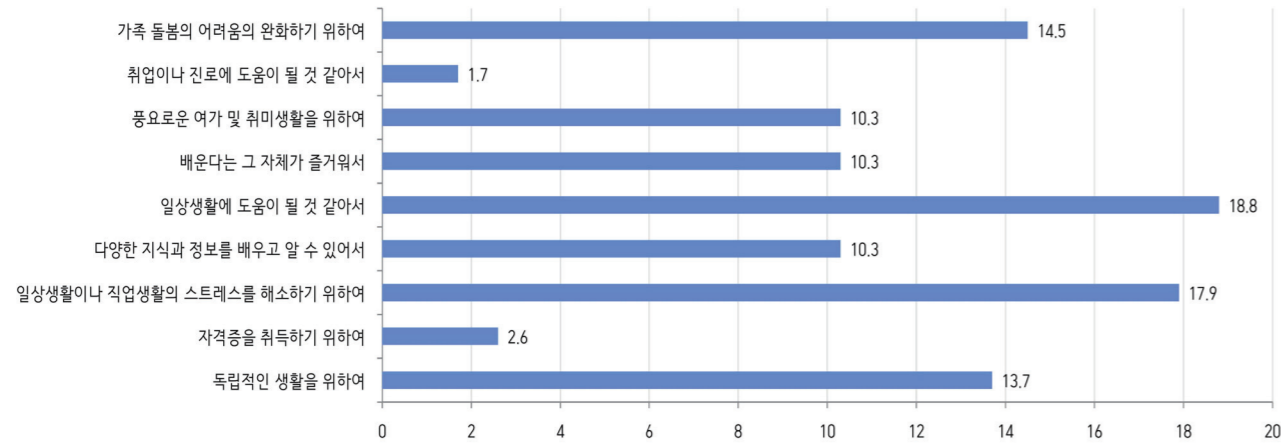
[그림 4.46]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이유 2순위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8명(29.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가 27명(21.1%),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가 18명(14.1%),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가 17명(13.3%),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가 각각 9명(7.0%),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가 8명(6.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가 각각 1명(0.8%)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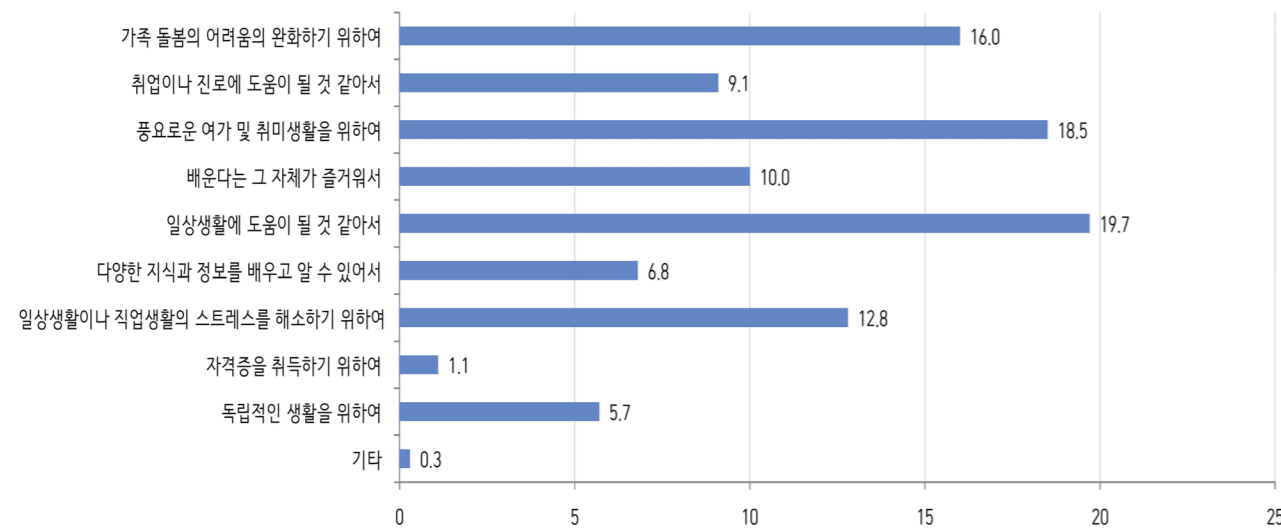
[그림 4.47]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이유 3순위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2명(18.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가 21명(17.9%), 가족 돌봄의 어려움의 완화하기 위하여가 17명(14.5%),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가 16명(13.7%),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가 각각 12명(10.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가 3명(2.6%),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명(1.7%)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8]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9명(19.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가 65명(18.5%),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가 56명(16.0%),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가 45명(12.8%),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가 35명(10.0%),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2명(9.1%),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가 24명(6.8%),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가 20명(5.7%),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가 4명(1.1%), 기타가 1명(0.3%)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49]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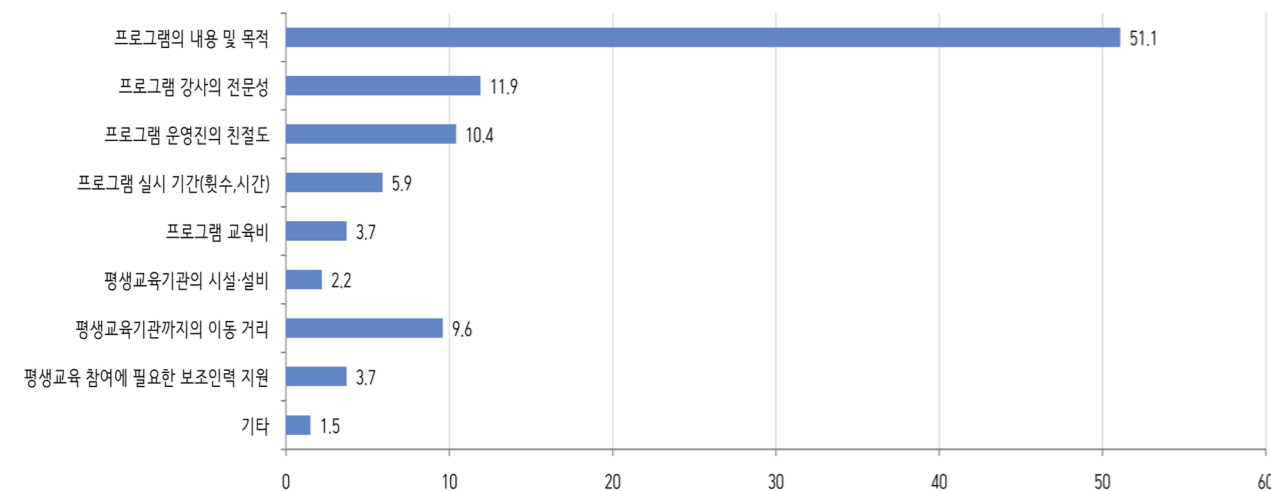
<표 4.31>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 1순위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36	26.7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4	17.8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33	24.4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9	6.7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6	11.9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3	2.2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10	7.4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3	2.2
	기타	1	.7
	총계	13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 2순위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8	6.3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	7.0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27	21.1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18	14.1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8	29.7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9	7.0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17	13.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1	.8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1	.8
총계	128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 3순위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17	14.5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1.7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12	10.3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12	10.3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2	18.8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12	10.3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21	17.9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3	2.6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16	13.7
	총계	117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이유 (다중응답)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56	16.0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2	9.1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65	18.5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35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69	19.7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24	6.8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45	12.8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4	1.1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20	5.7
기타	1	0.3
총계	351	100.0

(20) 평생교육프로그램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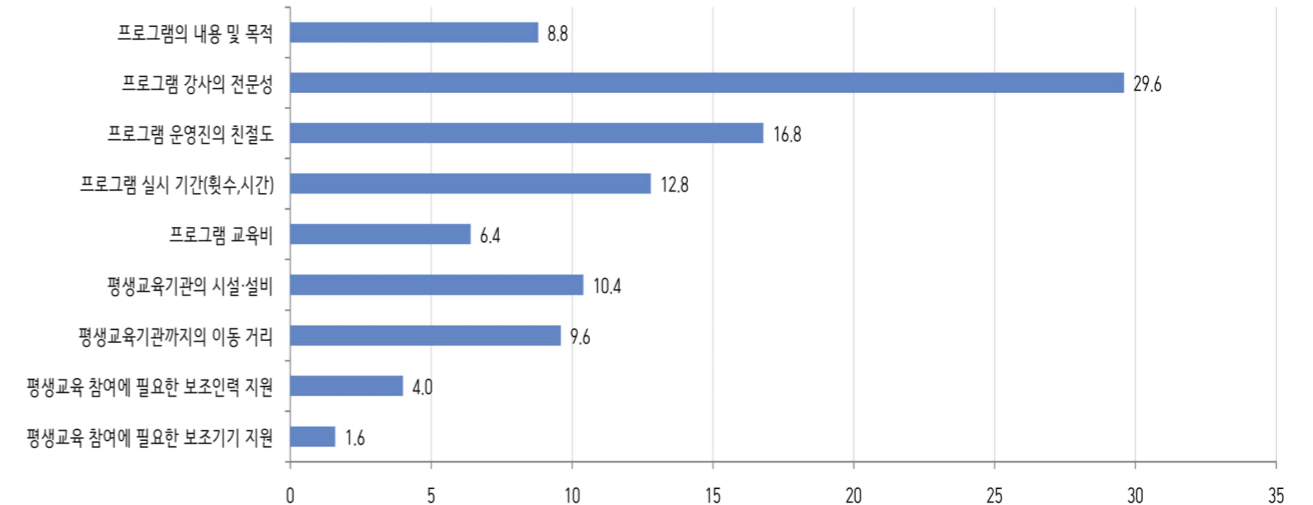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1순위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이 69명(51.1%)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16명(11.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14명(10.4%),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3명(9.6%),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8명(5.9%), 프로그램 교육비 및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이 각각 5명(3.7%),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가 3명(2.2%), 기타가 2명(1.5%)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50]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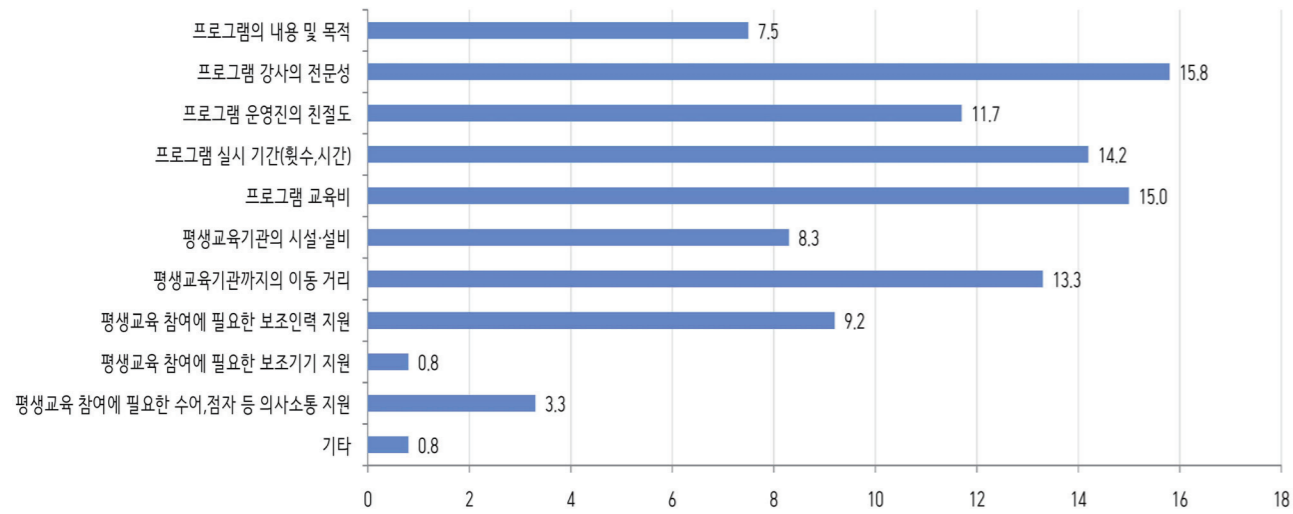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2순위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이 37명(29.6%),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가 21명(16.8%),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이 16명(12.8%),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가 13명(10.4%),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12명(9.6%),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이 11명(8.8%), 프로그램 교육비가 8명(6.4%),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이 5명(4.0%),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 2명(1.6%)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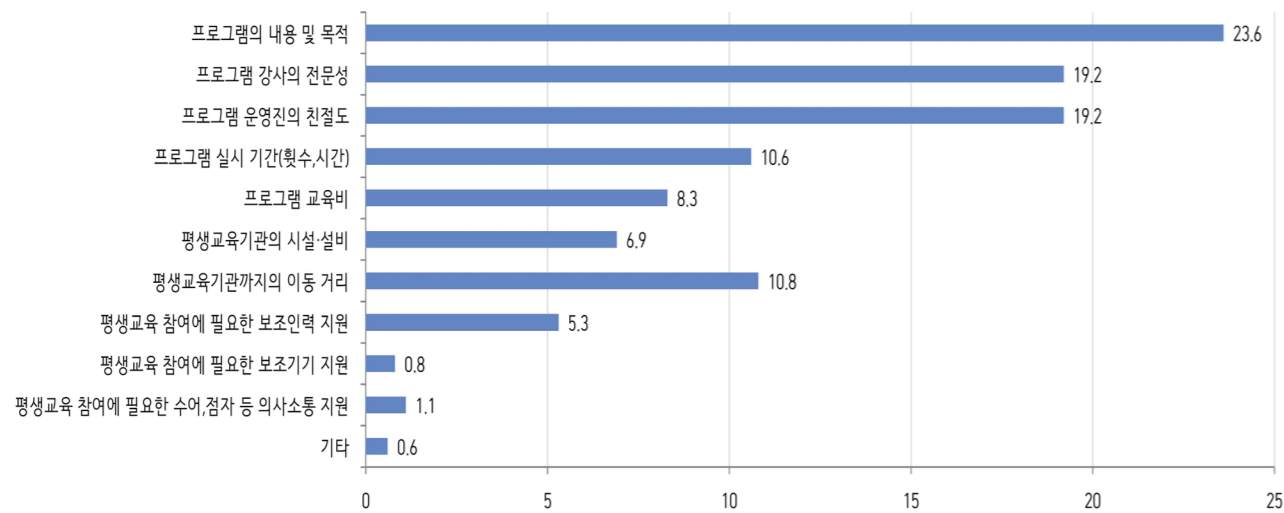
[그림 4.51]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3순위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이 19명(15.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프로그램 교육비가 18명(15.0%),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가 17명(14.2%),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16명(13.3%),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가 14명(11.7%),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이 11명(9.2%),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가 10명(8.3%),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이 9명(7.5%),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이 4명(3.3%),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및 기타가 각각 1명(0.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52]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다중응답으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이 85명(23.6%)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69명(19.2%),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46명(12.8%),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39명(5.3%),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38명(10.6%), 프로그램 교육비 30명(8.3%),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25명(6.9%),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19명(5.3%),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 4명(1.1%),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3명(0.8%), 기타 2명(0.6%)의 비율이었다.



[그림 4.53]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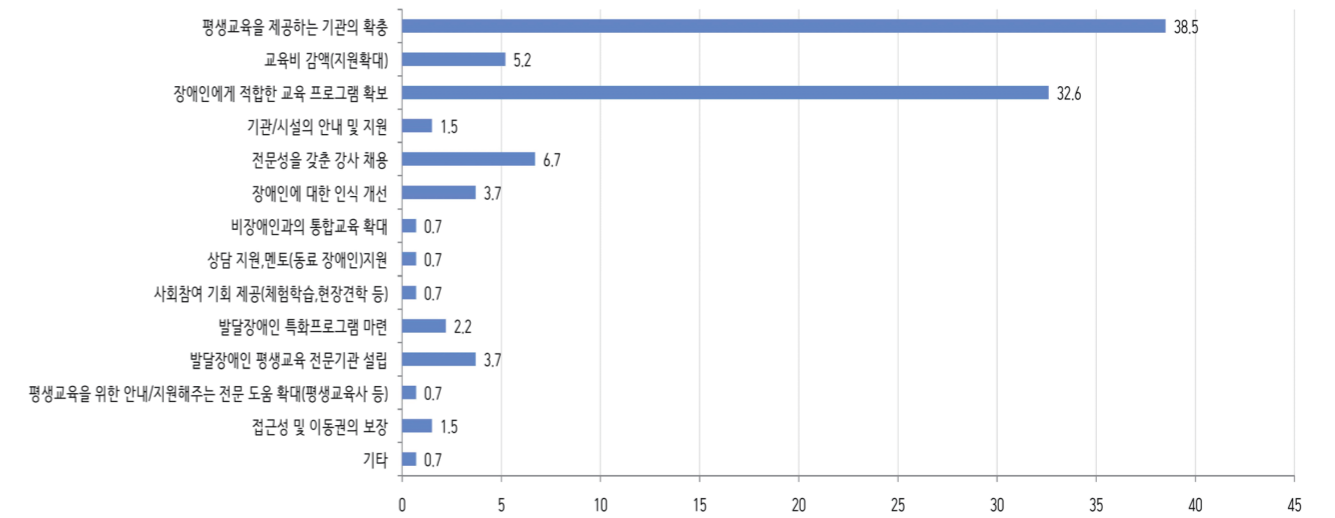
<표 4.32> 평생교육프로그램 고려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1순위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69	51.1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16	11.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14	10.4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8	5.9
	프로그램 교육비	5	3.7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3	2.2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3	9.6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5	3.7
	기타	2	1.5
	총계	13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2순위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11	8.8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37	29.6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21	16.8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16	12.8
	프로그램 교육비	8	6.4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13	10.4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2	9.6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5	4.0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2	1.6
	총계	12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3순위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9	7.5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19	15.8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14	11.7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17	14.2
	프로그램 교육비	18	15.0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10	8.3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6	13.3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11	9.2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1	.8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	4	3.3
	기타	1	.8
	총계	12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다중응답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85	23.6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69	19.2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46	12.8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38	10.6
	프로그램 교육비	30	8.3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25	6.9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39	10.8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19	5.3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3	0.8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	4	1.1
	기타	2	0.6
	총계	3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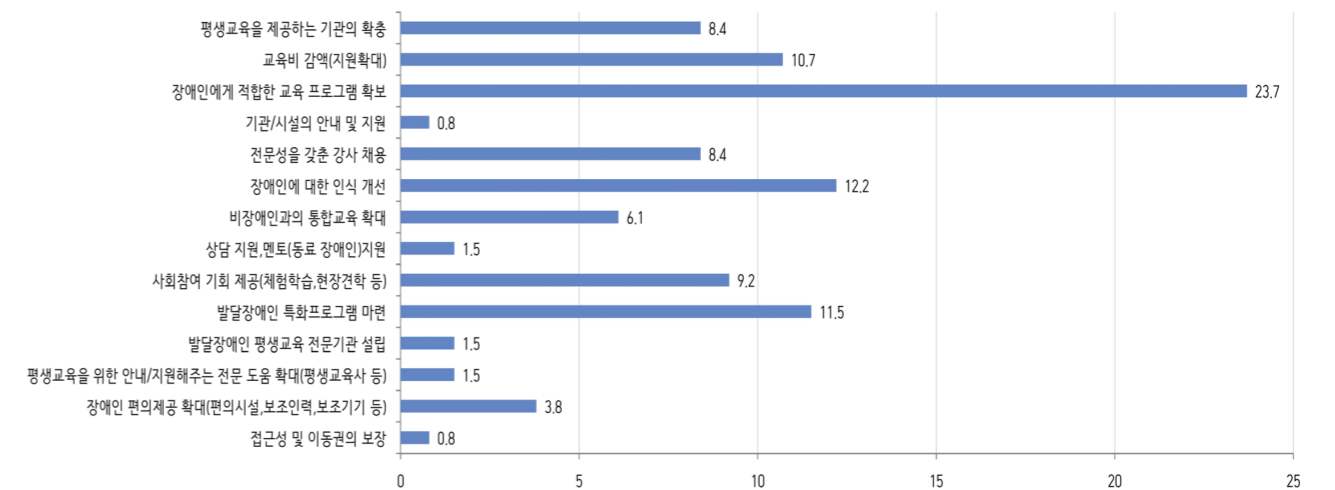
(21)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이 52명(38.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가 44명(32.6%),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이 9명(6.7%), 교육비 감액(지원확대)이 7명(5.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이 각각 5명(3.7%),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이 3명(2.2%),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과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이 각각 2명(1.5%),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와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기타가 각각 1명(0.7%)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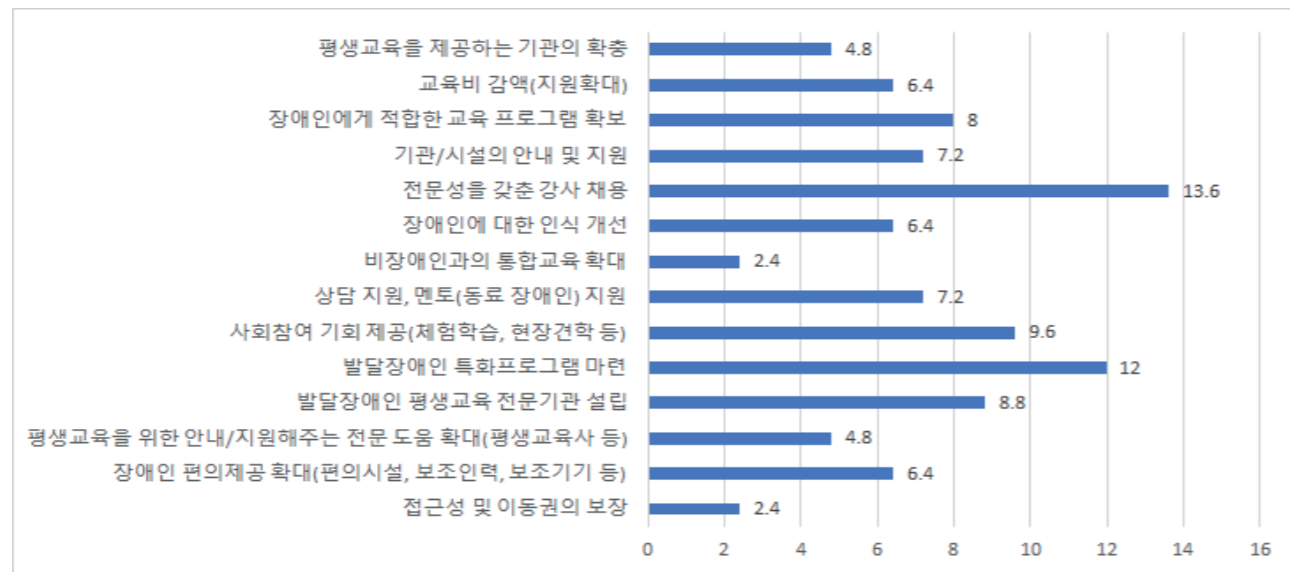
[그림 4.54]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2순위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가 31명(23.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16명(12.2%),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이 15명(11.5%), 교육비 감액(지원확대)이 14명(10.7%),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이 12명(9.2%),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및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이 각각 11명(8.4%),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가 8명(6.1%),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가 5명(3.8%),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가 각각 2명(1.5%),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과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이 각각 1명(0.8%)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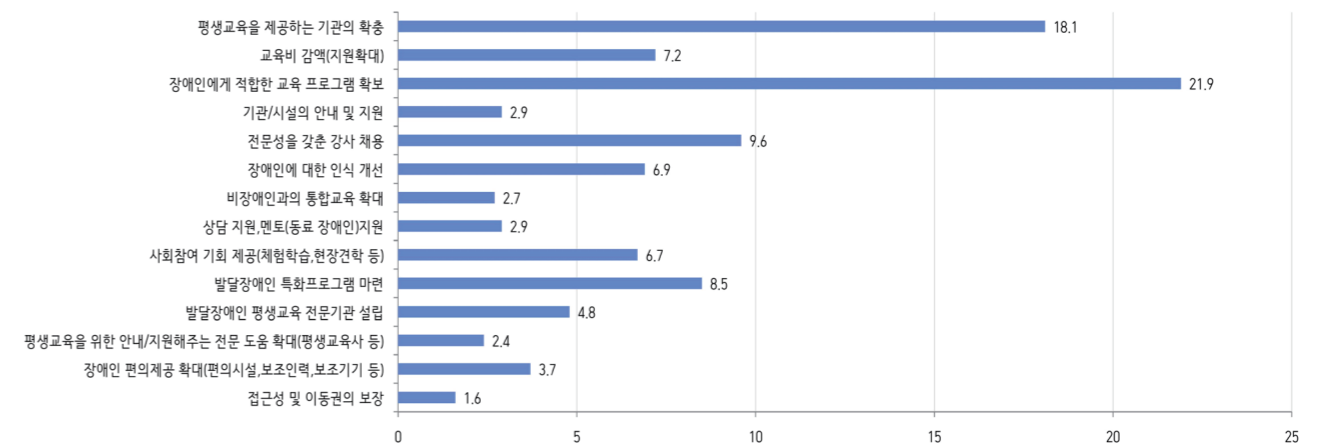
[그림 4.55]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3순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이 17명(13.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15명(1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11명(8.8%),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10명(8.0%),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과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이 각각 9명(7.2%), 교육비 감액(지원확대)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가 각각 8명(6.4%),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과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가 각각 6명(4.8%),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와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이 각각 3명(2.4%)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56]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다중응답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가 82명(21.9%),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이 68명(18.1%),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이 36명(9.6%),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이 32명(8.5%), 교육비 감액(지원확대)이 27명(7.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26명(6.9%),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이 25명(6.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이 18명(4.8%),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가 14명(3.7%),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과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이 각각 11명(2.9%),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가 10명(2.7%),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가 9명(2.4%),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이 6명(1.6%)의 비율이었다.



[그림 4.57]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다중응답)

<표 4.33>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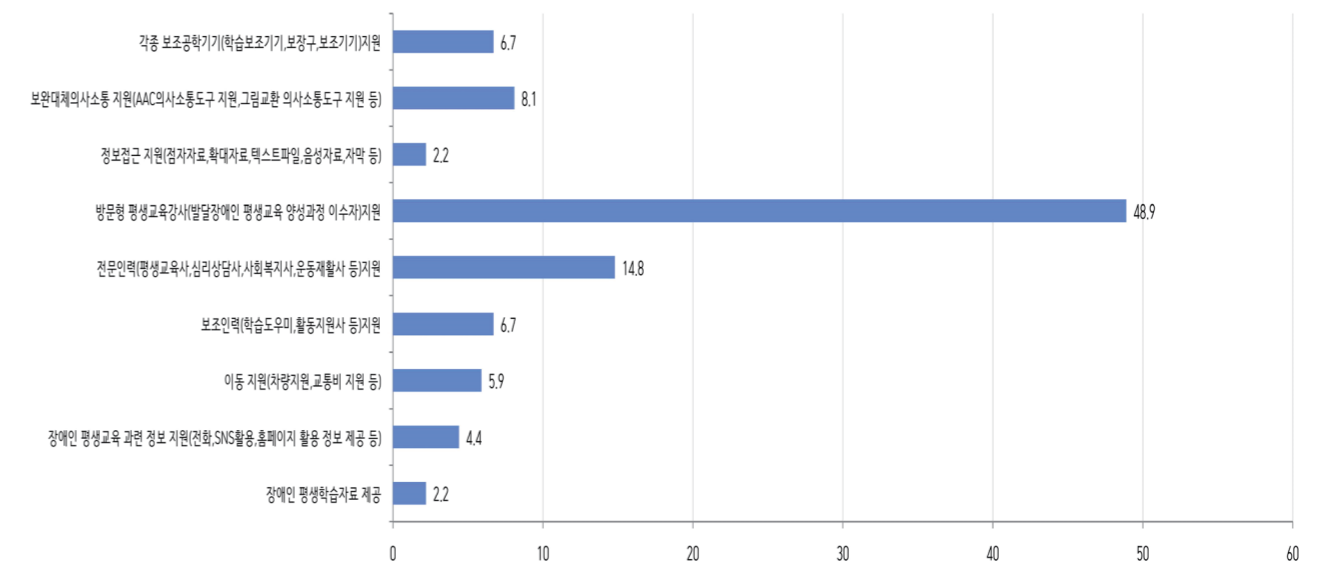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52	38.5
	교육비 감액(지원확대)	7	5.2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44	32.6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	2	1.5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	9	6.7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5	3.7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	1	.7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	1	.7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1	.7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3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5	3.7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1	.7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1	.7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	2	1.5
기타	1	.7	
총계	135	100.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2순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11	8.4
	교육비 감액(지원확대)	14	10.7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31	23.7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	1	.8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	11	8.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6	12.2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2순위	비장애인과 의 통합교육 확대	8	6.1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	2	1.5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12	9.2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15	1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2	1.5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2	1.5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5	3.8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	1	.8
	총계	131	100.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3순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6	4.8
	교육비 감액(지원 확대)	8	6.4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10	8.0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	9	7.2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	17	13.6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8	6.4
	비장애인과 의 통합교육 확대	3	2.4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	9	7.2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12	9.6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15	1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11	8.8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6	4.8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8	6.4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	3	2.4	
총계	125	100.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다중응답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68	18.1
	교육비 감액(지원 확대)	27	7.2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82	21.9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	11	2.9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	36	9.6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26	6.9
	비장애인과 의 통합교육 확대	10	2.7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	11	2.9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25	6.7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32	8.5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다중응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18	4.8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9	2.4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14	3.7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	6	1.6
	총계	3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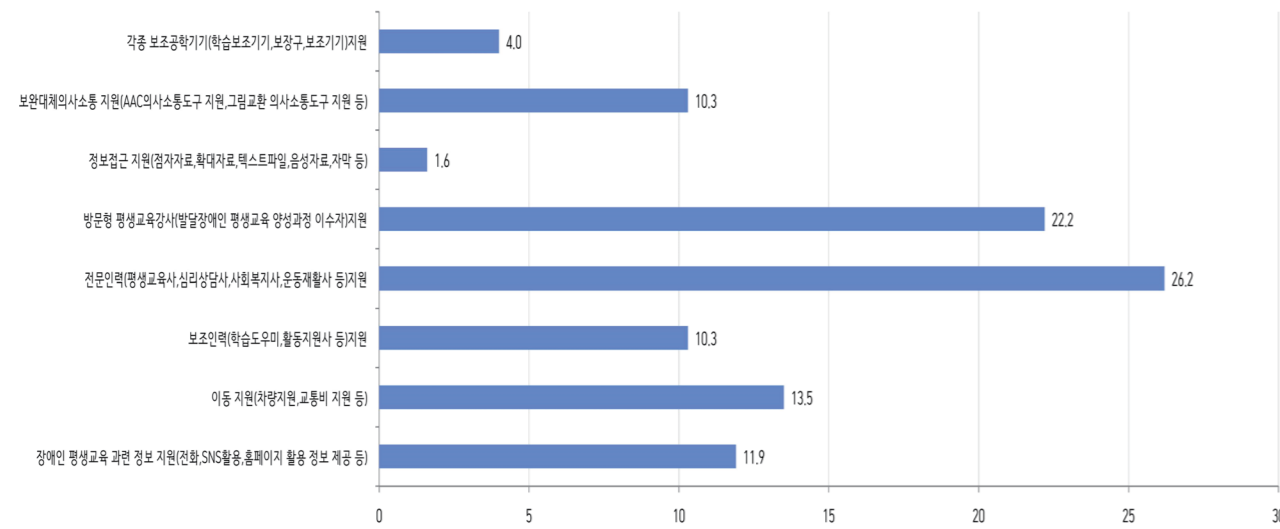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1순위로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이 66명(48.9%)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이 20명(14.8%),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11명(8.1%),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과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각각 9명(6.7%),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8명(5.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6명(4.4%),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과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각각 3명(2.2%)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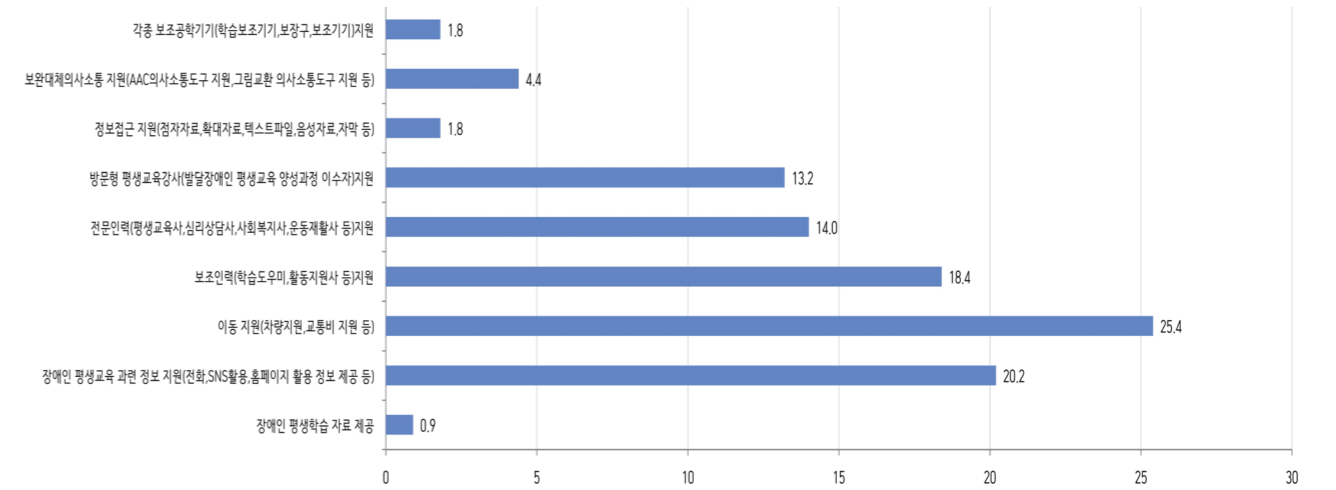
[그림 4.5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2순위로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이 33명(26.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이 28명(22.2%),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17명(13.5%),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15명(11.9%),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과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각각 13명(10.3%),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이 5명(4.0%),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이 2명(1.6%)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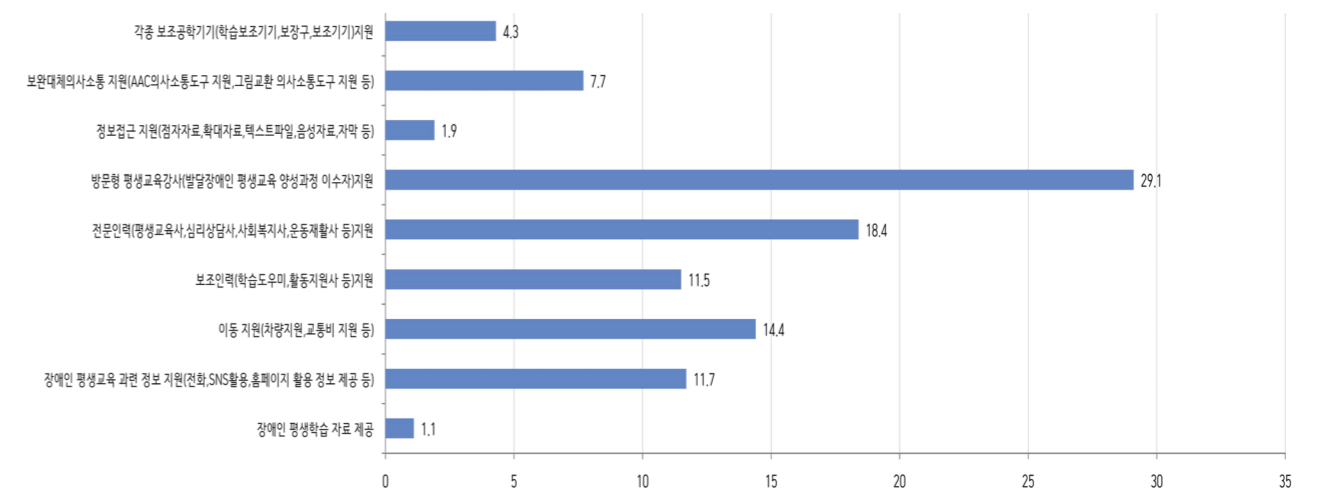
[그림 4.5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3순위로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29명(25.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23명(20.2%),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21명(18.4%),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이 16명(14.0%),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이 15명(13.2%),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5명(4.4%),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이 각각 2명(1.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6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다중응답으로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이 109명(29.1%)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이 69명(18.4%),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54명(14.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44명(11.7%),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43명(11.5%),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29명(7.7%),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이 16명(4.3%),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이 7명(1.9%),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4명(1.1%)의 비율이었다.



[그림 4.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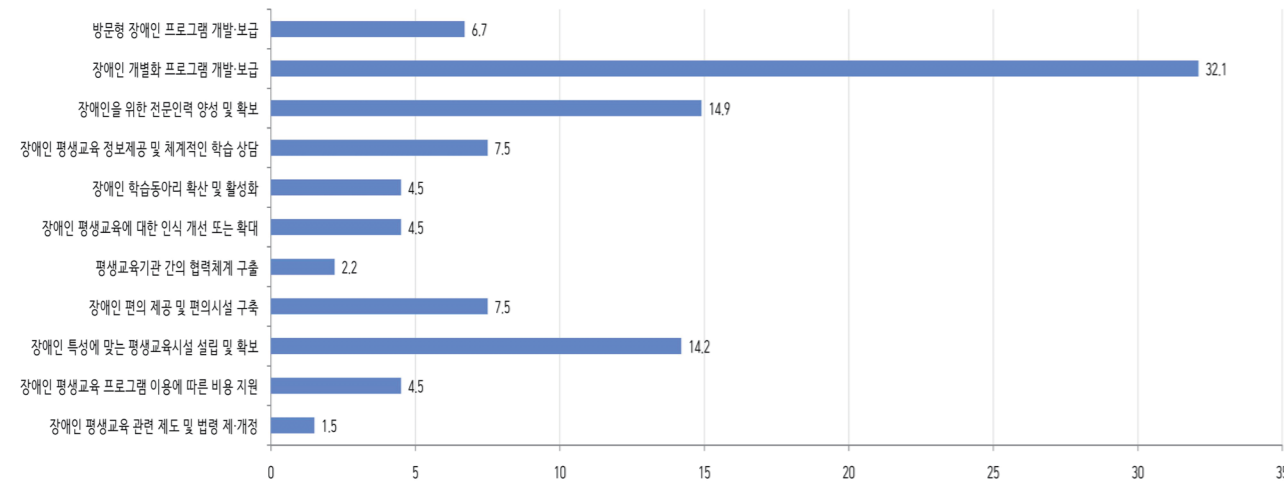
<표 4.3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1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9	6.7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11	8.1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3	2.2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66	48.9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20	14.8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9	6.7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8	5.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6	4.4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3	2.2
	총계	135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2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5	4.0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13	10.3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2	1.6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28	22.2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33	26.2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13	10.3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17	13.5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15	11.9
	총계	126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3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2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5	4.4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2	1.8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15	13.2

구분		빈도	퍼센트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16	14.0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21	18.4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29	25.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23	20.2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1	.9
	총계	114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다중응답)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16	4.3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29	7.7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7	1.9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109	29.1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69	18.4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43	11.5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54	14.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44	11.7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4	1.1
	총계	3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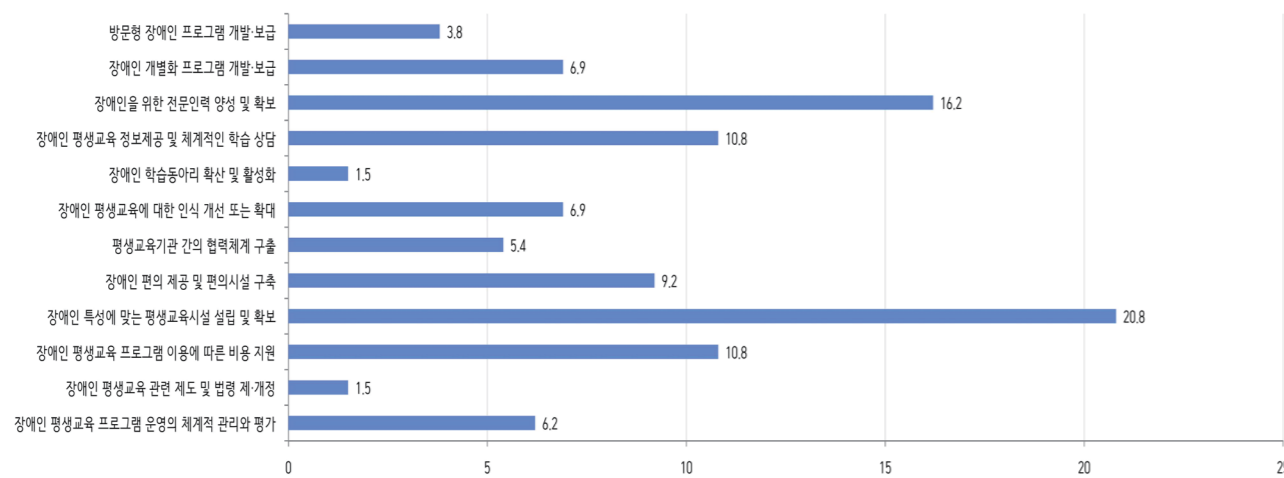
(2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1순위로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43명(32.1%)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20명(14.9%),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19명(14.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과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각각 10명(7.5%),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9명(6.7%),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각각 6명(4.5%),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3명(2.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2명(1.5%)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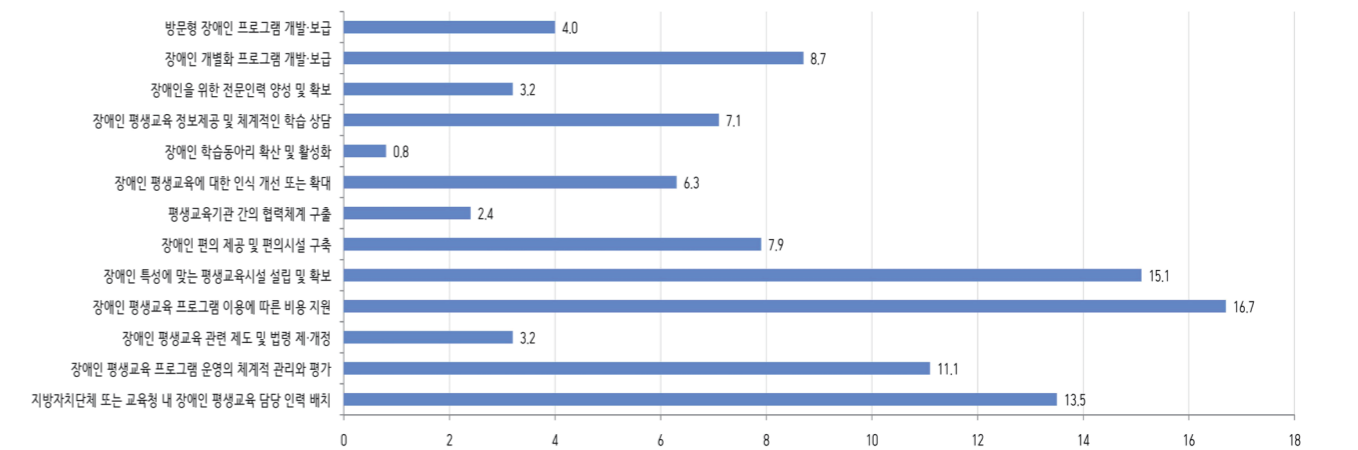
[그림 4.6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2순위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27명(20.8%),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21명(16.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각각 14명(10.8%),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12명(9.2%),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가 각각 9명(6.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8명(6.2%),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7명(5.4%),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5명(3.8%),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각각 2명(1.5%)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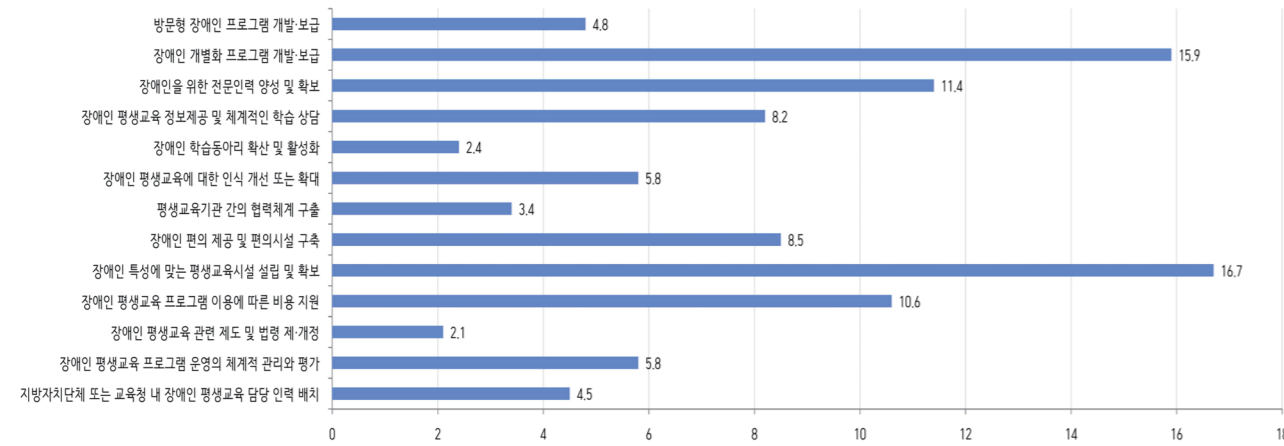
[그림 4.6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2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3순위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19명(15.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가 17명(13.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14명(11.1%),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11명(8.7%),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10명(7.9%),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이 9명(7.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가 8명(6.3%),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5명(4.0%),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각각 4명(3.2%),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3명(2.4%),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가 1명(0.8%)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6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3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다중응답으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63명(16.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60명(15.9%),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43명(11.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40명(10.6%),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32명(8.5%),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이 31명(8.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각각 22명(5.8%),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18명(4.8%),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가 17명(4.5%),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13명(3.4%),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가 9명(2.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8명(2.1%)의 비율이었다.



[그림 4.6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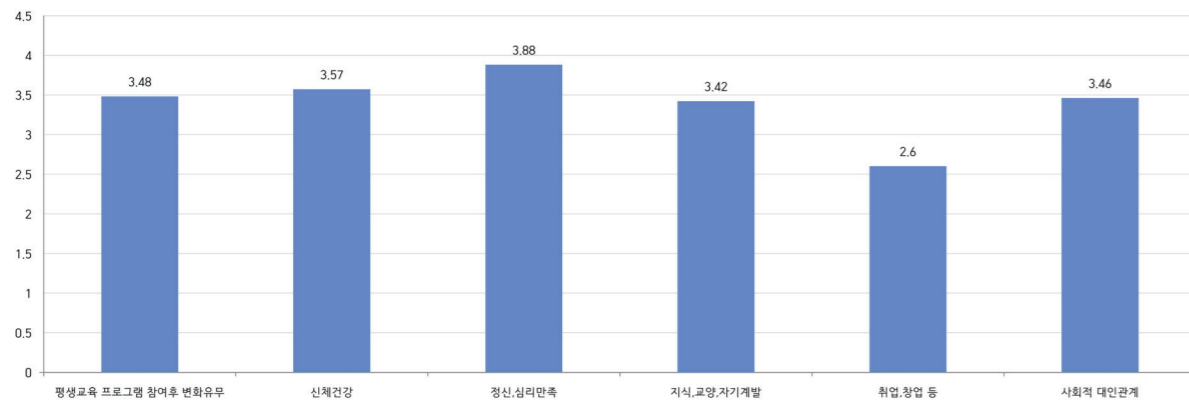
<표 4.3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1순위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9	6.7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43	32.1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20	14.9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10	7.5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6	4.5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6	4.5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2.2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10	7.5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19	1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6	4.5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2	1.5
	총계	134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2순위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5	3.8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9	6.9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21	16.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14	10.8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2	1.5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9	6.9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7	5.4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12	9.2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27	20.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14	10.8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2	1.5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8	6.2
총계	130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3순위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5	4.0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11	8.7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3.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9	7.1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1	.8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8	6.3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2.4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10	7.9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19	15.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21	16.7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4	3.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14	11.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17	13.5
총계	126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다중응답)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18	4.8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60	15.9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3	11.4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31	8.2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9	2.4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22	5.8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13	3.4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32	8.5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63	16.7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40	10.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8	2.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22	5.8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17	4.5	
총계	378	100.0	

(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유무에 평균 3.48(SD=.976)으로 비교적 높은 변화도를 보였다. 참여후 변화에 관한 세부내용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가 평균 3.88(SD=.9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평균 3.57(SD=1.00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평균 3.46(SD=1.1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평균 3.42(SD=1.0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평균 2.60(SD=1.110)을 확인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로 취업 및 창업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변화가 있었다.



[그림 4.6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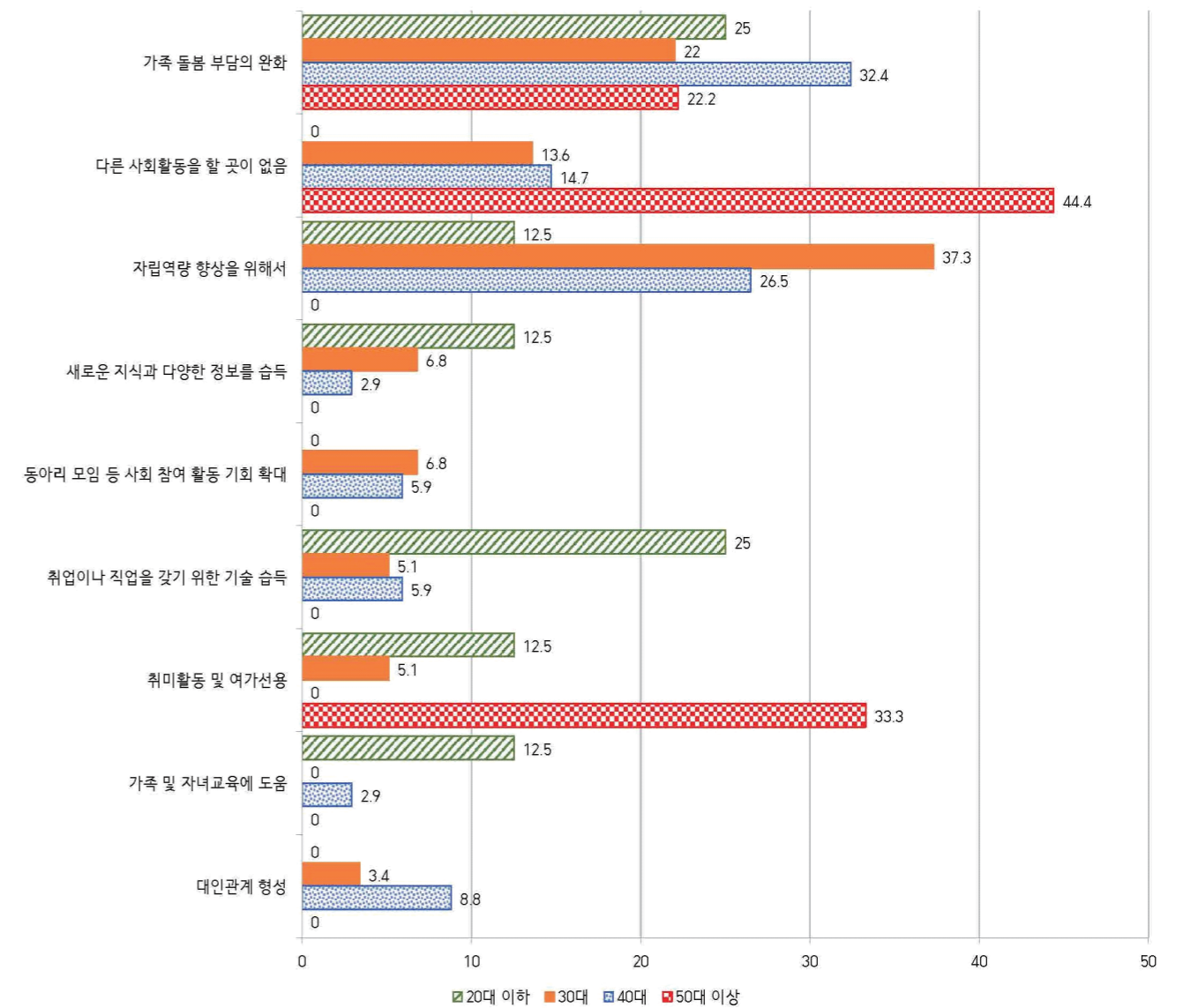
<표 4.3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의견 평균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유무	1	5	3.48	.97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1	5	3.57	1.00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	1	5	3.88	.9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1	5	3.42	1.0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1	5	2.60	1.2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1	5	3.46	1.110

4)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차이 분석

(1)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차이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비교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5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과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20대의 경우 취업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 습득과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이었다($X^2=41.960, p<0.05$).



[그림 4.67]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표 4.37>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구분	연령대				총계	X ² / p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2 25.0%	13 22.0%	11 32.4%	2 22.2%	28 25.5%	41.960 /.013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0 0.0%	8 13.6%	5 14.7%	4 44.4%	17 15.5%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1 12.5%	22 37.3%	9 26.5%	0 0.0%	32 29.1%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1 12.5%	4 6.8%	1 2.9%	0 0.0%	6 5.5%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0 0.0%	4 6.8%	2 5.9%	0 0.0%	6 5.5%	
취업이나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 습득	2 25.0%	3 5.1%	2 5.9%	0 0.0%	7 6.4%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1 12.5%	3 5.1%	0 0.0%	3 33.3%	7 6.4%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1 12.5%	0 0.0%	1 2.9%	0 0.0%	2 1.8%	
대인관계 형성	0 0.0%	2 3.4%	3 8.8%	0 0.0%	5 4.5%	
총계	8 100.0%	59 100.0%	34 100.0%	9 100.0%	110 100.0%	

(2)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차이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차이 분석결과,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확인했다.

<표 4.38>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구분	학력			총계	X ² / p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6 54.5%	8 24.2%	14 22.2%	28 26.2%	19.514 /.243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4 36.4%	4 12.1%	8 12.7%	16 15.0%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0 0.0%	9 27.3%	22 34.9%	31 29.0%	

구분	학력			총계	X ² / p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1 9.1%	2 6.1%	3 4.8%	6 5.6%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0 0.0%	3 9.1%	2 3.2%	5 4.7%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0 0.0%	2 6.1%	5 7.9%	7 6.5%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0 0.0%	2 6.1%	5 7.9%	7 6.5%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0 0.0%	0 0.0%	2 3.2%	2 1.9%	
대인관계 형성	0 0.0%	3 9.1%	2 3.2%	5 4.7%	
총계	11 100.0%	33 100.0%	63 100.0%	107 100.0%	

(3)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차이 분석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을 확인했다.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20 23.5%	6 28.6%	2 50.0%	28 25.5%	13.955 /.602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15 17.6%	2 9.5%	0 0.0%	17 15.5%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26 30.6%	6 28.6%	0 0.0%	32 29.1%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3 3.5%	2 9.5%	1 25.0%	6 5.5%	

구분	장애 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4	1	1	6	5.5%
	4.7%	4.8%	25.0%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5	2	0	7	6.4%
	5.9%	9.5%	0.0%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5	2	0	7	6.4%
	5.9%	9.5%	0.0%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2	0	0	2	1.8%
	2.4%	0.0%	0.0%		
대인관계 형성	5	0	0	5	4.5%
	5.9%	0.0%	0.0%		
총계	85	21	4	110	100.0%
	100.0%	100.0%	100.0%		

(4)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차이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이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0>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목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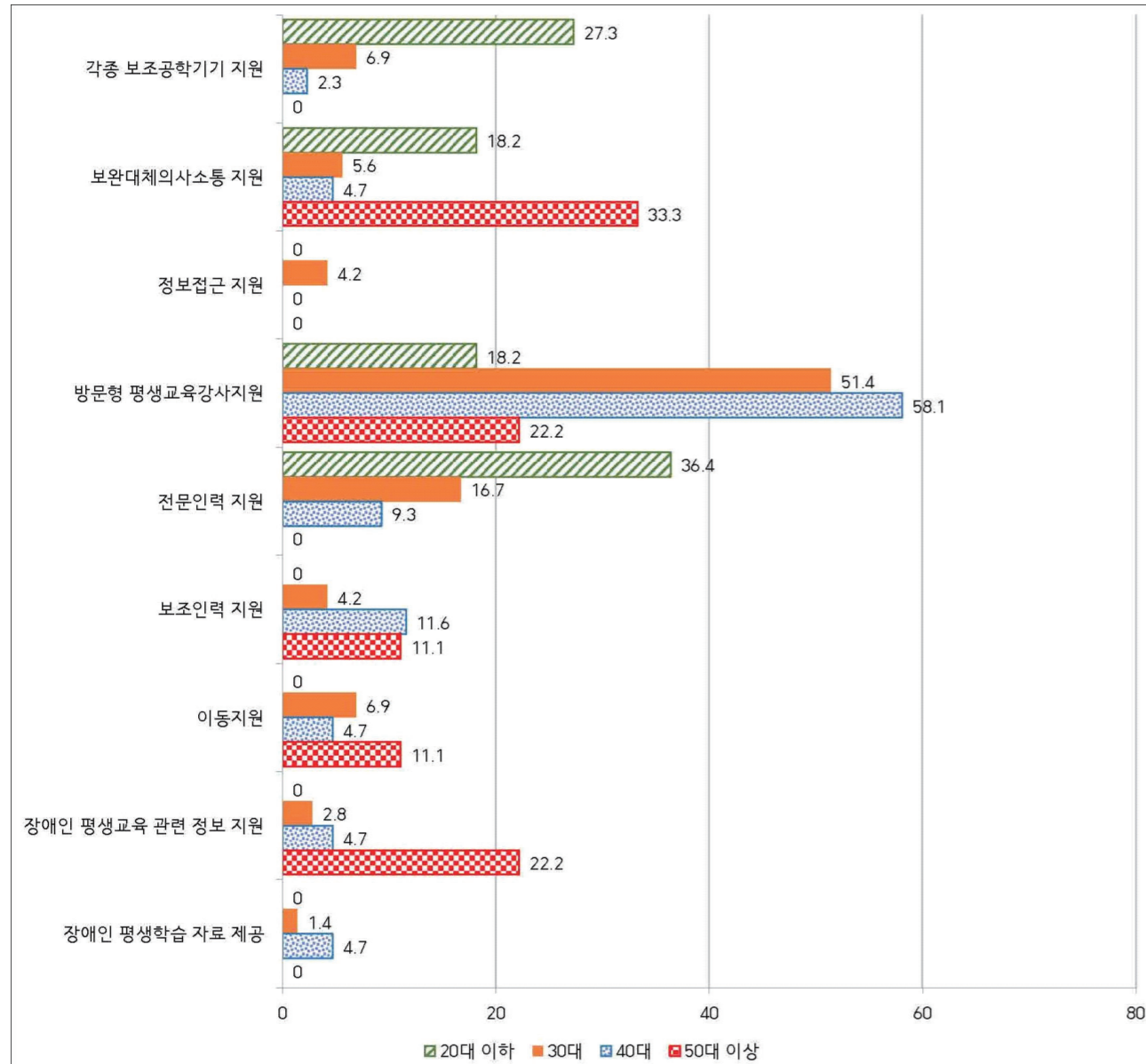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10	4	8	6	28	25.5%
	27.8%	36.4%	25.0%	19.4%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8	2	3	4	17	15.5%
	22.2%	18.2%	9.4%	12.9%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11	2	10	9	32	29.1%
	30.6%	18.2%	31.3%	29.0%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3	0	2	1	6	5.5%
	8.3%	0.0%	6.3%	3.2%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1	0	3	2	6	5.5%
	2.8%	0.0%	9.4%	6.5%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0	0	4	3	7	6.4%
	0.0%	0.0%	12.5%	9.7%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1	2	1	3	7	6.4%
	2.8%	18.2%	3.1%	9.7%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1	1	0	0	2	1.8%
	2.8%	9.1%	0.0%	0.0%		
대인관계 형성	1	0	1	3	5	4.5%
	2.8%	0.0%	3.1%	9.7%		
총계	36	11	32	31	110	100.0%
	100.0%	100.0%	100.0%	100.0%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에 관한 차이분석

(1)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비교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과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30대와 40대가의 경우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또한, 50대 이상의 경우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개선사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X²=44.885, p<0.05).



[그림 4.68]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표 4.41>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총계	X ² / p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3	5	1	0	9	44.885 / .006
	27.3%	6.9%	2.3%	0.0%	6.7%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2	4	2	3	11	
	18.2%	5.6%	4.7%	33.3%	8.1%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0	3	0	0	3	
	0.0%	4.2%	0.0%	0.0%	2.2%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2	37	25	2	66	
	18.2%	51.4%	58.1%	22.2%	48.9%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4	12	4	0	20	
	36.4%	16.7%	9.3%	0.0%	14.8%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0	3	5	1	9	
	0.0%	4.2%	11.6%	11.1%	6.7%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0	5	2	1	8	
	0.0%	6.9%	4.7%	11.1%	5.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0	2	2	2	6	
	0.0%	2.8%	4.7%	22.2%	4.4%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0	1	2	0	3	
	0.0%	1.4%	4.7%	0.0%	2.2%	
총계	11	72	43	9	135	
	100.0%	100.0%	100.0%	100.0%	100.0%	

(2)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선사항 차이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센터에 대한 개선사항이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2>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구분	학력			총계	X ² /p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6	8	14	28	19.514 /243
	54.5%	24.2%	22.2%	26.2%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4	4	8	16	
	36.4%	12.1%	12.7%	15.0%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0	9	22	31	
	0.0%	27.3%	34.9%	29.0%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1	2	3	6	
	9.1%	6.1%	4.8%	5.6%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0	3	2	5	
	0.0%	9.1%	3.2%	4.7%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0	2	5	7	
	0.0%	6.1%	7.9%	6.5%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0	2	5	7	
	0.0%	6.1%	7.9%	6.5%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0	0	2	2	
	0.0%	0.0%	3.2%	1.9%	
대인관계 형성	0	3	2	5	
	0.0%	9.1%	3.2%	4.7%	
총계	11	33	63	107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유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선사항 차이 분석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개선사항이 같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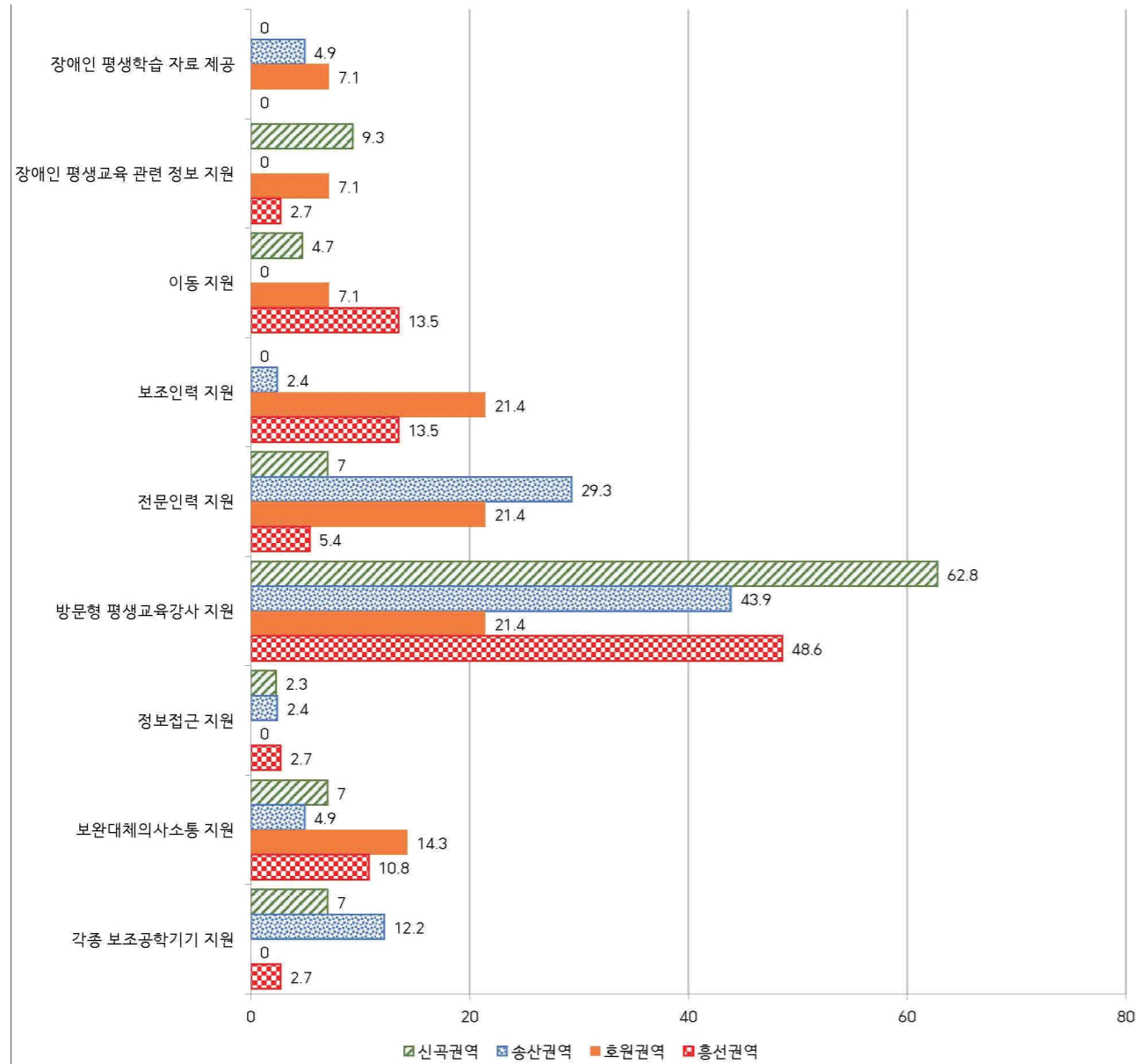
<표 4.43>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20	6	2	28	13.764 /616
	23.5%	28.6%	50.0%	25.5%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15	2	0	17	
	17.6%	9.5%	0.0%	15.5%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26	6	0	32	
	30.6%	28.6%	0.0%	29.1%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3	2	1	6	
	3.5%	9.5%	25.0%	5.5%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4	1	1	6	
	4.7%	4.8%	25.0%	5.5%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5	2	0	7	
	5.9%	9.5%	0.0%	6.4%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5	2	0	7	
	5.9%	9.5%	0.0%	6.4%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2	0	0	2	
	2.4%	0.0%	0.0%	1.8%	
대인관계 형성	5	0	0	5	
	5.9%	0.0%	0.0%	4.5%	
총계	85	21	4	110	
	100.0%	100.0%	100.0%	100.0%	

(4) 거주지역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비교는 다음과 같다. 신곡 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였고, 호원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였고, 흥선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하여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에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였다.



[그림 4.69]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표 4.44>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선사항 차이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홍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 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1	0	5	3	9	46.401 / .004
	2.7%	0.0%	12.2%	7.0%	6.7%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홍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4	2	2	3	11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1	0	1	1	3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18	3	18	27	66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2	3	12	3	20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5	3	1	0	9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5	1	0	2	8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1	1	0	4	6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0	1	2	0	3	
총계	37	14	41	43	135	
	100.0%	100.0%	100.0%	100.0%	100.0%	

6)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에 관한 차이분석

(1)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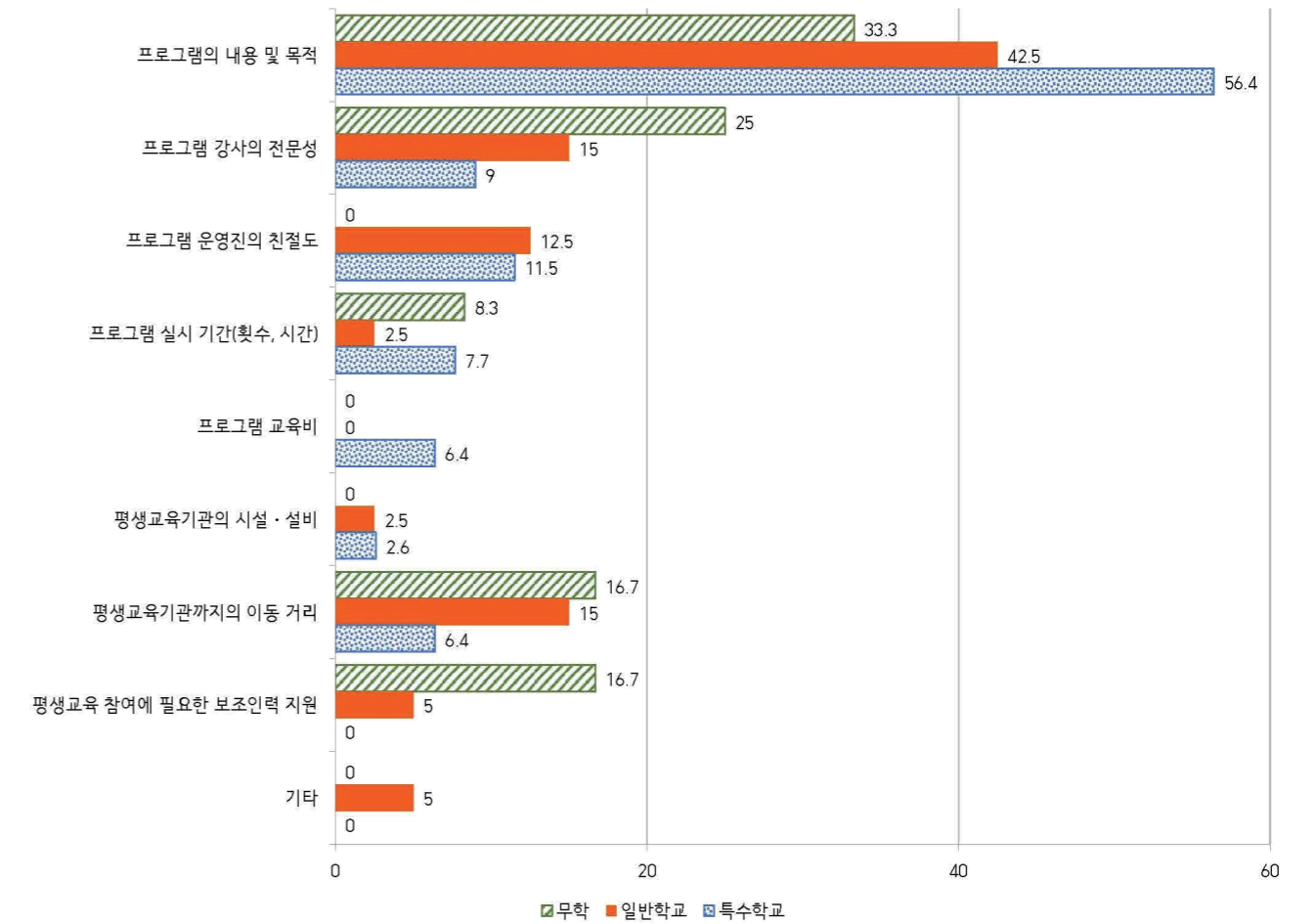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고려사항 차이 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려사항이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5>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구분	연령대				총계	X ² / p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4	38	24	3	69	32.767 /.109
	36.4%	52.8%	55.8%	33.3%	51.1%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3	6	6	1	16	
	27.3%	8.3%	14.0%	11.1%	11.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0	9	4	1	14	
	0.0%	12.5%	9.3%	11.1%	10.4%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1	3	4	0	8	
	9.1%	4.2%	9.3%	0.0%	5.9%	
프로그램 교육비	1	1	1	2	5	
	9.1%	1.4%	2.3%	22.2%	3.7%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0	3	0	0	3	
	0.0%	4.2%	0.0%	0.0%	2.2%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	7	3	2	13	
	9.1%	9.7%	7.0%	22.2%	9.6%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0	5	0	0	5	
	0.0%	6.9%	0.0%	0.0%	3.7%	
기타	1	0	1	0	2	
	9.1%	0.0%	2.3%	0.0%	1.5%	
총계	11	72	43	9	135	
	100.0%	100.0%	100.0%	100.0%	100.0%	

(2)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비교는 다음과 같다.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 특수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에 관한 고려사항이 다른 학력보다 높았고, 무학의 경우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이 다른 학력보다 높았다(X²=27.736, p<0.05).



[그림 4.70]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표 4.46>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구분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총계	X ² / p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4	17	44	65	27.736 /.034
	33.3%	42.5%	56.4%	50.0%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3	6	7	16	
	25.0%	15.0%	9.0%	12.3%	

구분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총계	X ² /p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0	5	9	14	
	0.0%	12.5%	11.5%	10.8%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1	1	6	8	
	8.3%	2.5%	7.7%	6.2%	
프로그램 교육비	0	0	5	5	
	0.0%	0.0%	6.4%	3.8%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0	1	2	3	
	0.0%	2.5%	2.6%	2.3%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2	6	5	13	
	16.7%	15.0%	6.4%	10.0%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2	2	0	4	
	16.7%	5.0%	0.0%	3.1%	
기타	0	2	0	2	
	0.0%	5.0%	0.0%	1.5%	
총계	12	40	78	13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유형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고려사항 차이 분석결과,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고려사항이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7>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56	11	2	69	13.106 /665
	52.3%	47.8%	40.0%	51.1%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11	4	1	16	
	10.3%	17.4%	20.0%	11.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12	2	0	14	
	11.2%	8.7%	0.0%	10.4%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6	1	1	8	
	5.6%	4.3%	20.0%	5.9%	
프로그램 교육비	4	1	0	5	
	3.7%	4.3%	0.0%	3.7%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3	0	0	3	
	2.8%	0.0%	0.0%	2.2%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11	1	1	13	
	10.3%	4.3%	20.0%	9.6%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2	3	0	5	
	1.9%	13.0%	0.0%	3.7%	
기타	2	0	0	2	
	1.9%	0.0%	0.0%	1.5%	
총계	107	23	5	135	
	100.0%	100.0%	100.0%	100.0%	

(4) 거주지역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고려사항 차이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고려사항이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8>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차이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p
	홍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17	5	19	28	69	31.856 /131
	45.9%	35.7%	46.3%	65.1%	51.1%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9	1	3	3	16	
	24.3%	7.1%	7.3%	7.0%	11.9%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2	3	7	2	14	
	5.4%	21.4%	17.1%	4.7%	10.4%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1	1	4	2	8	
	2.7%	7.1%	9.8%	4.7%	5.9%	
프로그램 교육비	0	1	1	3	5	
	0.0%	7.1%	2.4%	7.0%	3.7%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2	0	0	1	3	
	5.4%	0.0%	0.0%	2.3%	2.2%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4	3	4	2	13	
	10.8%	21.4%	9.8%	4.7%	9.6%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2	0	1	2	5	
	5.4%	0.0%	2.4%	4.7%	3.7%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기타	0	0	2	0	2	
	0.0%	0.0%	4.9%	0.0%	1.5%	
총계	37	14	41	43	135	
	100.0%	100.0%	100.0%	100.0%	100.0%	

7)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차이분석

(1)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차이

연령대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차이 분석결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연령과 상관없이 욕구가 같음을 확인했다.

<표 4.49>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구분	연령대				총계	X ² / p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기초문해교육	6	41	21	5	73	
	15.8%	20.7%	21.6%	21.7%	20.5%	
학력보완교육	4	10	3	0	17	
	10.5%	5.1%	3.1%	0.0%	4.8%	
직업능력향상교육	6	33	17	3	59	
	15.8%	16.7%	17.5%	13.0%	16.6%	
문화예술교육	11	58	27	8	104	10.146 / .927
	28.9%	29.3%	27.8%	34.8%	29.2%	
인문교양교육	6	34	13	3	56	
	15.8%	17.2%	13.4%	13.0%	15.7%	
시민참여교육	5	20	13	3	41	
	13.2%	10.1%	13.4%	13.0%	11.5%	
기타	0	2	3	1	6	
	0.0%	1.0%	3.1%	4.3%	1.7%	
총계	38	198	97	23	356	
	100.0%	100.0%	100.0%	100.0%	100.0%	

(2)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차이

학력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차이 분석결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학력과 상관없이 욕구가 같음을 확인했다.

<표 4.50>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구분	학력			총계	X ² / p
	무학	일반학교	특수학교		
기초문해교육	7	21	43	71	
	25.0%	19.1%	21.3%	20.5%	
학력보완교육	2	4	9	15	
	7.1%	3.6%	4.5%	4.8%	
직업능력향상교육	3	18	33	54	
	10.7%	16.4%	16.3%	16.6%	
문화예술교육	9	31	60	100	4.402 / .975
	32.1%	28.2%	29.7%	29.2%	
인문교양교육	4	21	29	54	
	14.3%	19.1%	14.4%	15.7%	
시민참여교육	3	14	23	40	
	10.7%	12.7%	11.4%	11.5%	
기타	0	1	5	6	
	0.0%	0.9%	2.5%	1.7%	
총계	28	110	202	340	
	100.0%	100.0%	100.0%	100.0%	

(3)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차이

장애유형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차이 분석결과,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욕구가 같음을 확인했다.

<표 4.51>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기초문해교육	57	14	2	73	4.659 / .968
	20.0%	22.6%	22.2%	20.5%	
학력보완교육	15	2	0	17	
	5.3%	3.2%	0.0%	4.8%	

구분	장애유형			총계	X ² / p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직업능력향상교육	49	9	1	59	
	17.2%	14.5%	11.1%	16.6%	
문화예술교육	83	18	3	104	
	29.1%	29.0%	33.3%	29.2%	
인문교양교육	43	10	3	56	
	15.1%	16.1%	33.3%	15.7%	
시민참여교육	33	8	0	41	
	11.6%	12.9%	0.0%	11.5%	
기타	5	1	0	6	
	1.8%	1.6%	0.0%	1.7%	
총계	285	62	9	356	
	100.0%	100.0%	100.0%	100.0%	

(4)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차이 분석결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욕구가 같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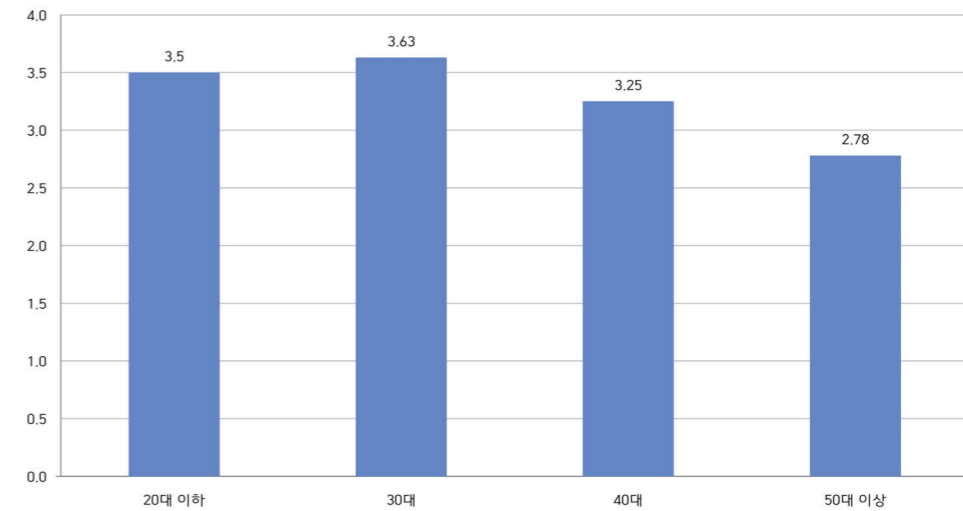
<표 4.52>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차이

구분	거주지역				총계	X ² / p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	신곡권역		
기초문해교육	21	5	26	21	73	1.088 / .982
	28.8%	12.8%	19.7%	18.8%	20.5%	
학력보완교육	2	3	10	2	17	
	2.7%	7.7%	7.6%	1.8%	4.8%	
직업능력향상교육	10	8	21	20	59	
	13.7%	20.5%	15.9%	17.9%	16.6%	
문화예술교육	26	11	35	32	104	
	35.6%	28.2%	26.5%	28.6%	29.2%	
인문교양교육	5	7	21	23	56	
	6.8%	17.9%	15.9%	20.5%	15.7%	
시민참여교육	6	4	19	12	41	
	8.2%	10.3%	14.4%	10.7%	11.5%	
기타	3	1	0	2	6	
	4.1%	2.6%	0.0%	1.8%	1.7%	
총계	73	39	132	112	356	
	100.0%	100.0%	100.0%	100.0%	100.0%	

8)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1)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지식, 교양, 자기계발에 관하여 20대 이하, 30대,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높은 변화차이를 보였다(F=2.310, p<.05).



[그림 4.7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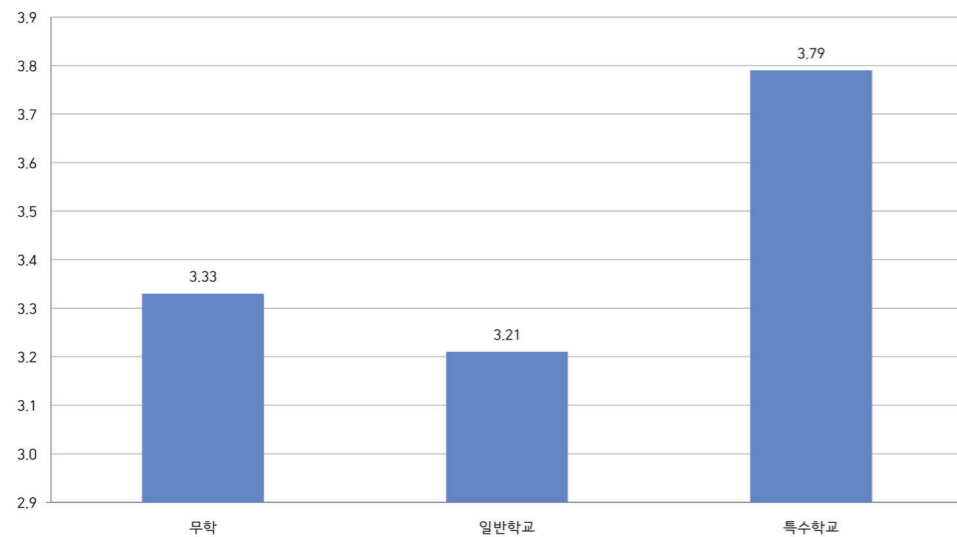
<표 4.53> 연령대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신체건강)	20대 이하	3.60	.388 / .762	
	30대	3.66		
	40대	3.45		
	50대 이상	3.44		
	총계	3.5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정신, 심리만족)	20대 이하	4.00	.812 / .490	
	30대	3.98		
	40대	3.70		
	50대 이상	3.89		
	총계	3.88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20대 이하	3.50 ^a	.850	2.310 /.049	a>b
	30대	3.63 ^a	1.054		
	40대	3.25 ^a	.981		
	50대 이상	2.78 ^b	1.202		
	총계	3.42	1.0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20대 이하	3.10	.568	2.033 /.113	
	30대	2.77	1.279		
	40대	2.35	1.189		
	50대 이상	2.11	1.167		
	총계	2.60	1.2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20대 이하	3.70	1.059	1.887 /.136	
	30대	3.66	1.116		
	40대	3.15	1.122		
	50대 이상	3.33	.866		
	총계	3.46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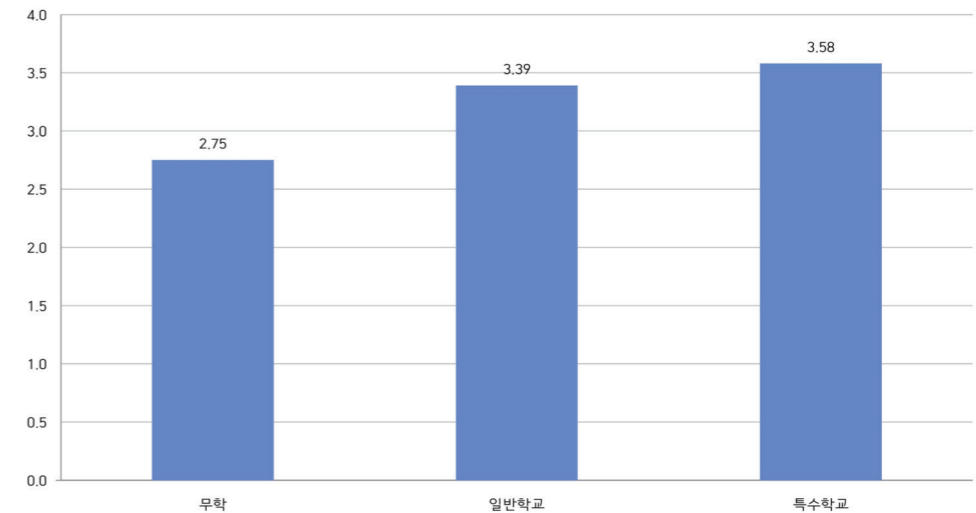
(2)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신체건강에 관하여 특수학교 집단이 무학, 일반학교 집단보다 높은 변화 차이를 보였다(F=4.12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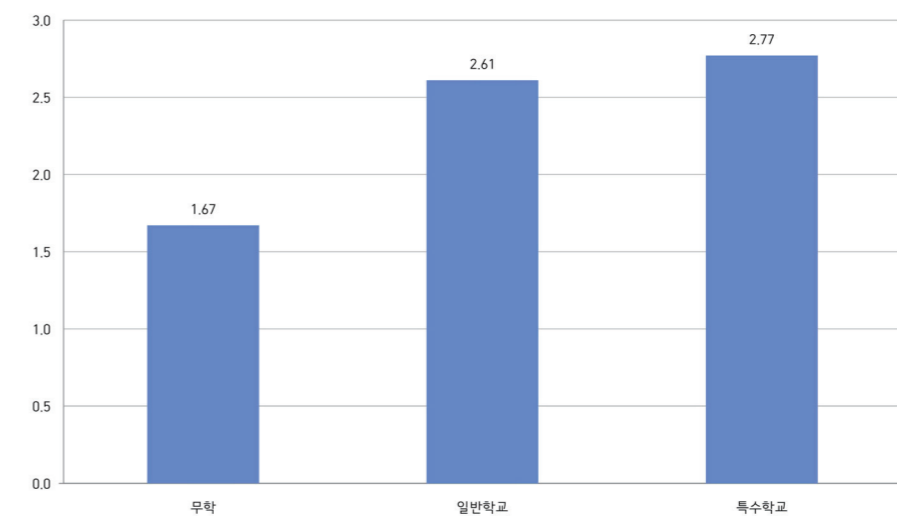
[그림 4.7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지식, 교양, 자기계발에 관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집단이 무학 집단보다 높은 변화 차이를 보였다(F=3.248,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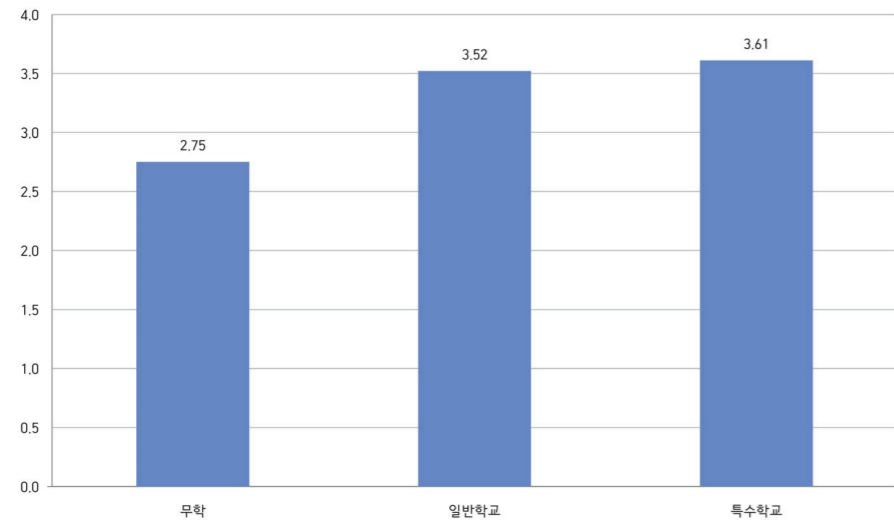
[그림 4.7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취업, 창업 등에 관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집단이 무학 집단보다 높은 변화 차이를 보였다(F=4.352, p<.05).



[그림 4.7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사회적 대인관계에 관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집단이 무학 집단보다 높은 변화 차이를 보였다(F=3.149, p<.05).



[그림 4.7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표 4.54> 학력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구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무학	3.33 ^a	.888	4.122 /.019	a<b
	일반학교	3.21 ^a	1.083		
	특수학교	3.79 ^b	.953		
	총계	3.57	1.01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	무학	3.58	.996	1.008 /.368	
	일반학교	3.82	1.014		
	특수학교	3.97	.859		
	총계	3.88	.922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무학	2.75 ^a	.965	3.248 /.043	a<b
	일반학교	3.39 ^b	1.171		
	특수학교	3.58 ^b	.978		
	총계	3.43	1.058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무학	1.67 ^a	.778	4.352 /.015	a<b
	일반학교	2.61 ^b	1.368		
	특수학교	2.77 ^b	1.161		
	총계	2.60	1.23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무학	2.75 ^a	1.055	3.149 /.047	a<b
	일반학교	3.52 ^b	1.121		
	특수학교	3.61 ^b	1.080		
	총계	3.49	1.111		

(3)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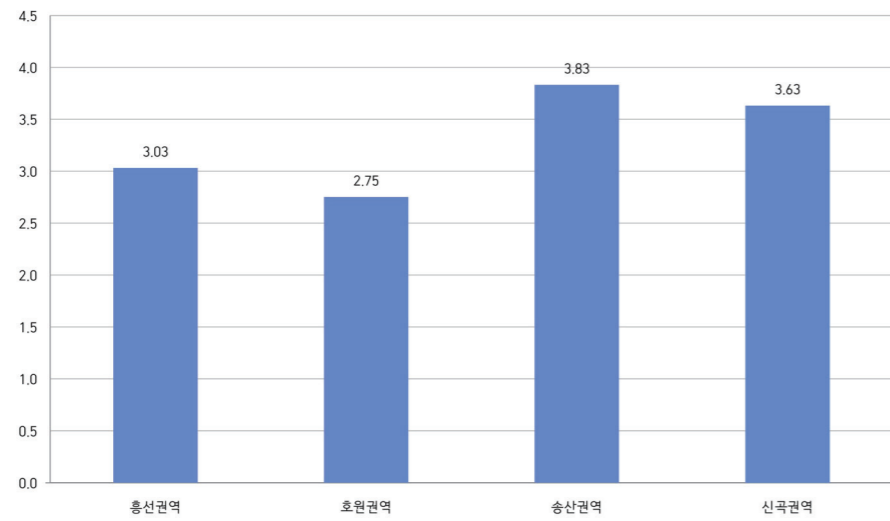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차이 분석결과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표 4.55> 장애유형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구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신체건강)	지적장애	3.53	1.041	.645 /.527	
	자폐성장애	3.76	.889		
	뇌병변장애	3.25	.500		
	총계	3.57	1.00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정신, 심리만족)	지적장애	3.86	.943	.253 /.777	
	자폐성장애	4.00	.837		
	뇌병변장애	3.75	.500		
	총계	3.88	.9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지적장애	3.38	1.097	.374 /.689	
	자폐성장애	3.52	.873		
	뇌병변장애	3.75	.500		
	총계	3.42	1.0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취업, 창업 등)	지적장애	2.51	1.229	1.296 /.278	
	자폐성장애	2.86	1.195		
	뇌병변장애	3.25	.500		
	총계	2.60	1.2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후 변화(사회적 대인관계)	지적장애	3.44	1.133	.486 /.617	
	자폐성장애	3.43	1.121		
	뇌병변장애	4.00	0.000		
	총계	3.46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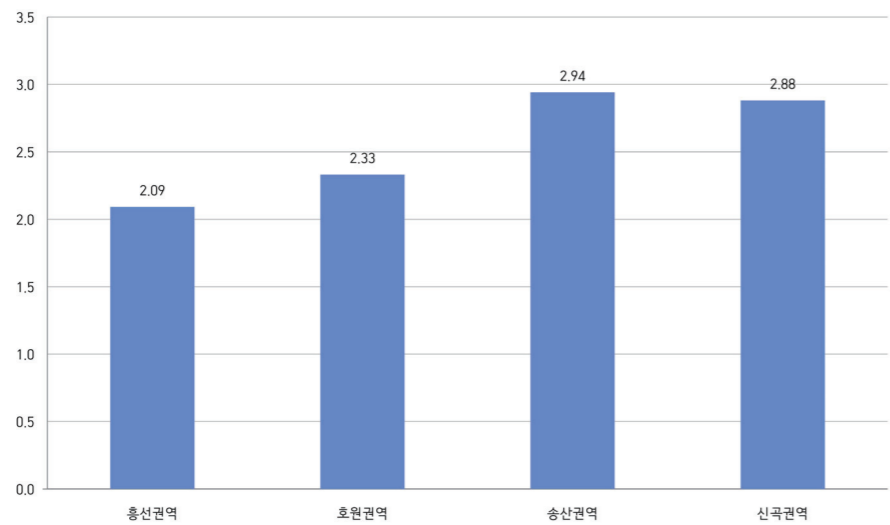
(4)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지식, 교양, 자기계발에 관하여 송산권역, 신곡권역이 흥선권역, 호원권역 집단보다 높은 변화차이를 보였다(F=6.385, p<.001).



[그림 4.76]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지식, 교양, 자기계발)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변화 차이로 취업, 창업 등에 관하여 송산권역, 신곡권역이 흥선권역, 호원권역 집단보다 높은 변화차이를 보였다(F=4.122, p<.01).



[그림 4.77]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취업, 창업 등)

<표 4.56> 거주지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차이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신체건강)	흥선권역	3.54	.886	.853 / .468	
	호원권역	3.25	1.055		
	송산권역	3.75	.937		
	신곡권역	3.50	1.164		
	총계	3.57	1.00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정신, 심리만족)	흥선권역	3.83	.954	.982 / .404	
	호원권역	3.67	.888		
	송산권역	4.08	.770		
	신곡권역	3.78	1.008		
	총계	3.88	.90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지식, 교양, 자기계발)	흥선권역	3.03 ^a	.857	6.385 / .000	a<b
	호원권역	2.75 ^a	1.138		
	송산권역	3.83 ^b	.941		
	신곡권역	3.63 ^b	1.070		
	총계	3.42	1.04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취업, 창업 등)	흥선권역	2.09 ^a	1.040	4.122 / .008	a<b
	호원권역	2.33 ^a	.985		
	송산권역	2.94 ^b	1.194		
	신곡권역	2.88 ^b	1.314		
	총계	2.60	1.21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사회적 대인관계)	흥선권역	3.31	1.157	1.065 / .367	
	호원권역	3.08	1.084		
	송산권역	3.64	1.046		
	신곡권역	3.56	1.134		
	총계	3.46	1.110		

다. 장애인 발달장애인 기관 현황

1) 기관현황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현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설유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은 12곳(80.0%),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은 3곳(20.0%)의 비율이었다. 운영 주체 및 방식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12곳(80.0%), 국가·지자체와 개인, 기타가 각각 1곳(6.7%)의 비율이었다. 법인 또는 단체형태로 사단법인이 7곳(46.7%), 협동조합이 4곳(26.7%), 사회복지법인 2곳(13.3%), 학교법인과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가 각각 1곳(6.7%)의 비율이었다. 건물소유형태로 임차가 8곳(53.3%), 무상 임대 3곳(20.0%), 공공소유와 법인소유, 개인소유, 기타가 각각 1곳(6.7%)의 비율이었다. 기관평가 형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10곳(66.7%), 자체 평가가 4곳(26.7%), 없음이 1곳(6.7%)의 비율이었다. 홈페이지 유무로 있음이 10곳(66.7%), 기타(블로그, 카페 등)이 2곳(13.3%), 없음이 3곳(20.0%)의 비율이었다. 기관유형로는 기타가 6곳(40.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각각 2곳(13.3%),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한국수어,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각각 1곳(6.7%)의 비율이었다. 기관유형의 기타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법인, 기타평생교육시설, 특수학교가 있었다.

<표 4.57> 기관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시설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신고된 시설	3	20.0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12	80.0
	총계	15	100.0
운영주체 및 방식	국가·지자체	1	6.7
	법인 또는 단체	12	80.0
	개인	1	6.7
	기타	1	6.7
	총계	15	100.0
법인 또는 단체 형태	사회복지법인	2	13.3
	학교법인	1	6.7
	사단법인	7	46.7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1	6.7
	협동조합	4	26.7
	총계	15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건물소유 형태	공공소유	1	6.7
	법인소유	1	6.7
	개인소유	1	6.7
	임차	8	53.3
	무상 임대	3	20.0
	기타	1	6.7
	총계	15	100.0
기관평가 형태	자체평가	4	26.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10	66.7
	없음	1	6.7
	총계	15	100.0
홈페이지	있음	10	66.7
	기타	2	13.3
	없음	3	20.0
	총계	15	100.0
기관유형	장애인복지관	1	6.7
	장애인 보호작업장	2	13.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2	13.3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	6.7
	한국수어 통역센터	1	6.7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1	6.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6.7
	기타	6	40.0
	총계	15	100.0

2) 기관 규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직원수는 평균 10.33명(SD=7.83)이었고, 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평균 1.67명(SD=1.16), 전문대학교 졸업 평균 3.71명(SD=2.81), 4년대 졸업 평균 3.92명(SD=4.70), 대학원 이상 평균 2.38명(SD=1.51)이었다. 직원연령으로 20대가 평균 2.44명(SD=2.01), 30대가 평균 4.60명(SD=5.02), 40대가 평균 5.00명(SD=5.70), 50대가 평균 2.56명(SD=1.88), 50대 이상이 평균 1.25명(SD=.50)이었다. 직원경력으로 1년 미만의 직원이 평균 2.00명(SD=1.53), 1년이상 3년 미만의 직원이 평균 2.44명(SD=2.30), 3년 이상 5년 미만의 직원이 평균 3.00명(SD=1.90), 5년 이상 7년 미만의 직원이 평균 2.83명(SD=1.72),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이 평균 3.57명

(SD=3.65), 10년 이상 직원이 평균 4.10명(SD=5.57)이었다. 학습자 수로 1개 프로그램 평균이 9.60명(SD=3.44)이었고, 학습자 연령은 20대 미만인 18.80명(SD=14.34), 20대가 16.38명(SD=14.34), 30대가 8.43명(SD=8.68), 40대가 8.20명(SD=10.64), 50대가 7.40명(SD=9.94), 60대 이상이 25.75명(SD=41.00)이었다. 보조인력의 수로 남성이 평균 3.20명(SD=1.10), 여성이 4.40명(SD=2.07), 전체 인원수가 평균 6.33명(SD=3.50)이었고, 강의실 수는 평균 2.77개(SD=2.95)였다.

<표 4.58> 기관 규모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직원	남자	1	24	6.27	7.62
	여자	1	28	5.73	6.65
	전체	2	46	10.33	12.34
사회복지사		2	31	6.93	7.83
학력	고등학교	1	3	1.67	1.16
	전문대	1	8	3.71	2.81
	4년대	1	19	3.92	4.70
	대학원 이상	1	5	2.38	1.51
직원연령	20대	1	7	2.44	2.01
	30대	1	18	4.60	5.02
	40대	1	16	5.00	5.70
	50대	1	6	2.56	1.88
	50대 이상	1	2	1.25	0.50
직원경력	1년 미만	1	5	2.00	1.53
	1년~3년	1	8	2.44	2.30
	3년~5년	1	5	3.00	1.90
	5년~7년	1	5	2.83	1.72
	7년~10년	1	11	3.57	3.65
10년 이상	1	18	4.10	5.57	
직원고용형태		1	40	8.20	10.20
학습자 수 (1개 프로그램 평균)		3	17	9.60	3.44
학습자 연령	20대 미만	5	36	18.80	14.34
	20대	2	60	16.38	18.39
	30대	1	25	8.43	8.68
	40대	1	27	8.20	10.64
	50대	1	25	7.40	9.94
	60대 이상	1	87	25.75	41.0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보조인력	남성	2	4	3.20	1.10
	여성	2	7	4.40	2.07
	전체	2	10	6.33	3.50
강의실 수		1	10	2.77	2.95

3)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개시설로 주 출입구 접근로는 전체 시설이 구비하고 있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14곳(93.3%)이 있었고,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는 11곳(73.3%)이 구비되어 있었다. 내부시설로 출입구는 11곳(77.3%)이 있었고, 복도는 9곳(60%), 승강기는 14곳(93.3%)이 있었다. 안내시설로 경보 및 피난시설은 15곳(100.0%)이 있었고, 점자블록은 12곳(80.0%)이 있었고, 유도 및 안내설비는 10곳(66.7%)이 있었다.

<표 4.59> 편의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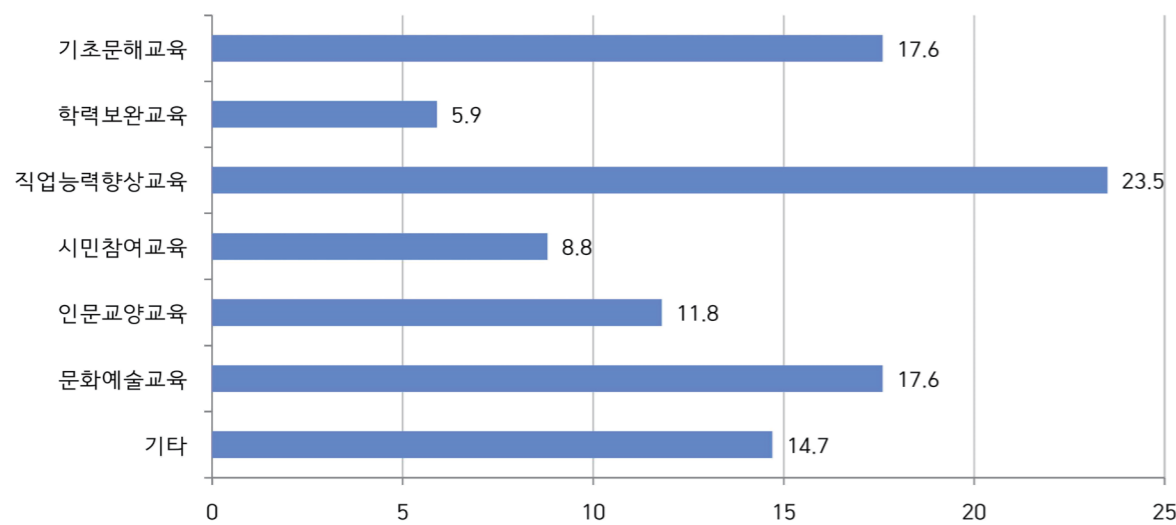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매개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있음	15	100.0
		총계	15	100.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음	14	93.3
		없음	1	6.7
	총계		15	100.0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있음	11	73.3
없음		4	26.7	
총계		15	100.0	
내부시설	출입구	있음	11	73.3
		없음	4	26.7
		총계	15	100.0
	복도	있음	9	60.0
		없음	6	40.0
		총계	15	100.0
승강기	있음	14	93.3	
	없음	1	6.7	
	총계	15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안내시설	점자블록	있음	12	80.0
		없음	3	20.0
		총계	15	100.0
	유도 및 안내설비	있음	10	66.7
		없음	5	33.3
		총계	15	100.0
경보 및 피난시설	있음	15	100.0	
	총계	15	100.0	

4) 장애인 학습 및 학습자 현황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장애인 학습은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향상교육 학습은 8곳(23.5%)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초문해교육 학습과 문화예술교육 학습은 각각 6곳(17.6%)에서 진행하며, 기타 학습 5곳(14.7%), 인문교양교육 학습 4곳(11.8%), 시민참여교육 학습 3곳(8.8%), 학력보완교육 학습을 2곳(5.9%)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1) 장애인 학습 현황



[그림 4.78] 장애인 학습 현황

<표 4.60> 장애인 학습 현황

구분	빈도	퍼센트
기초문해교육	6	17.6
학력보완교육	2	5.9
직업능력향상교육	8	23.5
시민참여교육	3	8.8
인문교양교육	4	11.8
문화예술교육	6	17.6
기타	5	14.7
총계	34	100.0

(2) 장애인 학습자 현황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장애인 학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중 지체·뇌병변은 평균 36.15명(SD=49.53)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 21.75명(SD=31.23), 여성 14.40명(SD=20.79)이었다. 지적·자폐성(전체)은 평균 53.33명(SD=60.69)이 이용하고 있으며, 남성 30.78명(SD=38.51), 여성 22.56명(SD=22.88)이 이용하고 있었다. 연령대로 지체·뇌병변 장애의 경우 60대 이상이 평균 25.33명(SD=42.15)으로 이용 인원이 많았고, 이어서 20대 미만 평균 10.00명(SD=1.41), 40대 평균 8.00명(SD=4.24), 30대 평균 7.00명(SD=4.24), 50대 평균 6.67명(SD=7.23), 20대 평균 4.33명(SD=2.08)이 이용하고 있었다.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20대 미만이 평균 36.50명(SD=61.03)으로 이용 인원이 많았고, 20대 평균 15.56명(SD=15.89), 30대 평균 12.83명(SD=11.86), 40대 평균 7.75명(SD=5.25), 60대 이상 평균 5.00명(SD=1.00), 50대 평균 4.00명(SD=4.24)이 이용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지적·자폐성 장애와 지체·뇌병변 장애와 이용 연령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61> 장애인 학습자 현황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성별	지체·뇌병변(남성)	1	68	21.75	31.23
	지체·뇌병변(여성)	2	51	14.40	20.79
	지체·뇌병변(전체)	2	119	36.15	49.53
	지적·자폐성(남성)	6	118	30.78	38.5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연령	지적·자폐성(여성)	4	65	22.56	22.88
	지적·자폐성(전체)	14	183	53.33	60.69
	지체·뇌병변(20대 미만)	9	11	10.00	1.41
	지체·뇌병변(20대)	2	6	4.33	2.08
	지체·뇌병변(30대)	4	10	7.00	4.24
	지체·뇌병변(40대)	5	11	8.00	4.24
	지체·뇌병변(50대)	2	15	6.67	7.23
	지체·뇌병변(60대 이상)	1	74	25.33	42.15
	지적·자폐성(20대 미만)	1	160	36.50	61.03
	지적·자폐성(20대)	2	54	15.56	15.89
	지적·자폐성(30대)	2	32	12.83	11.86
	지적·자폐성(40대)	3	15	7.75	5.25
	지적·자폐성(50대)	1	7	4.00	4.24
	지적·자폐성(60대 이상)	5	5	5.00	1.00

5) 교·강사 현황 및 강사료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교·강사 현황 및 강사료는 다음과 같다. 교·강사의 학력으로 기타가 평균 8.50명(SD=3.85)이 많았고, 4년제가 평균 5.50명(SD=3.85), 대학원 이상이 평균 1.67명(SD=0.58)이었다. 연령으로 40대가 평균 2.78명(SD=2.22)으로 많았고, 50대가 평균 2.63명(SD=2.07), 30대가 평균 2.40명(SD=2.19), 20대가 평균 1.80명(SD=0.84), 60대 이상이 평균 1.20명(SD=0.45)이었다. 강사료로는 최저가 평균 46,429원(SD=4,756), 최고가 평균 77,500원(SD=27,124)이었고, 강사료 평균은 61,250원(SD=13,906)이었다.

<표 4.62> 교·강사 현황 및 강사료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학력	4년제	1	12	5.50	3.85
	대학원 이상	1	2	1.67	0.58
	기타	3	14	8.50	7.78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연령	20대	1	3	1.80	0.84
	30대	1	6	2.40	2.19
	40대	1	7	2.78	2.22
	50대	1	7	2.63	2.07
	60대 이상	1	2	1.20	0.45
	강사료	최저	40,000	50,000	46,429
최고		50,000	120,000	77,500	27,124
평균		45,000	85,000	61,250	13,906

6)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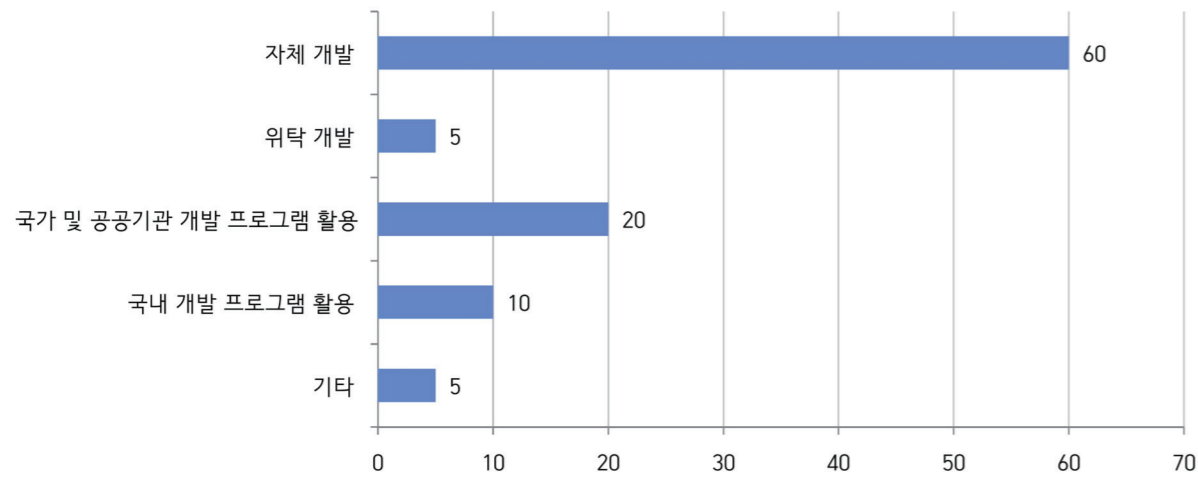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5.55개(SD=6.68) 운영하고 있었고, 연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균 4.50개(SD=4.72) 운영하고 있었다.

<표 4.6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	20	5.55	6.68
연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	13	4.50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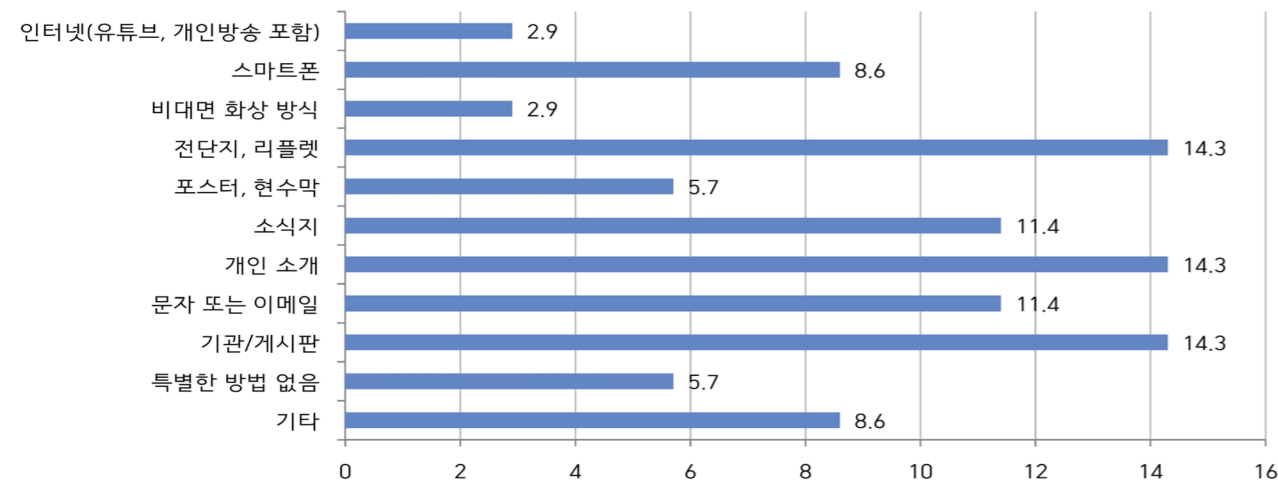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방법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자체 개발에 12곳(60.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국가 및 공공기관 개발 프로그램 활용이 4곳(20.0%), 국내 개발 프로그램 활용이 2곳(10.0%), 위탁 개발과 기타가 각각 1곳(5.0%)였다.



[그림 4.7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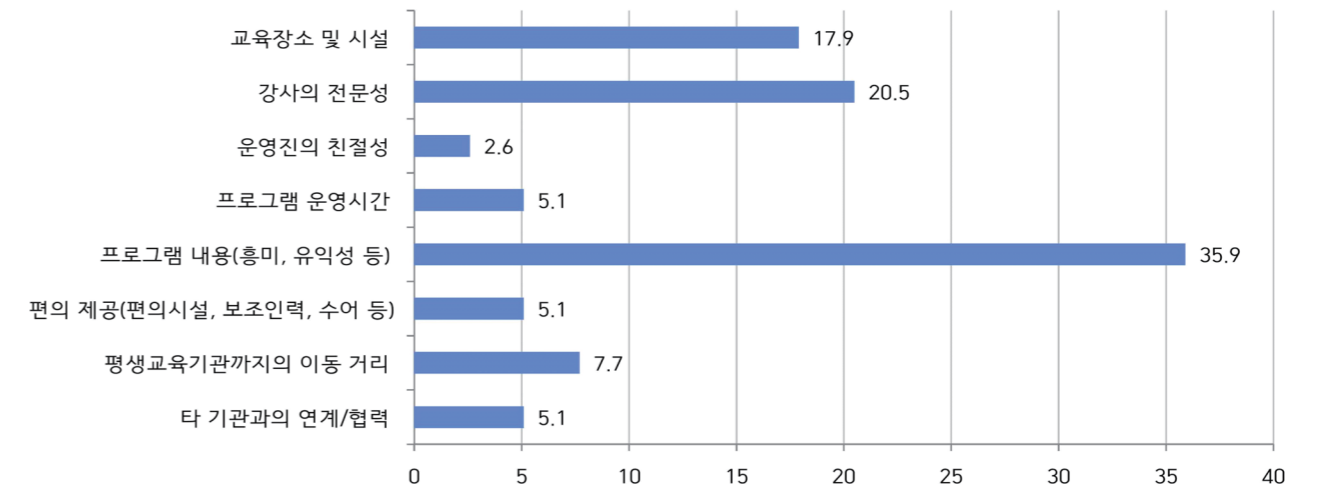
평생교육프로그램 홍보방법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전단지, 리플렛과 개인 소개 및 기관/게시판이 각각 5곳(14.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문자 또는 이메일과 소식지가 각각 4곳(11.4%), 스마트폰과 기타가 각각 3곳(8.6%), 포스터, 현수막과 기타가 각각 3곳(8.6%), 특별한 방법 없음이 2곳(5.7%), 인터넷(유튜브, 개인방송 포함)과 비대면 화상방식이 각각 1곳(2.9%)의 비율이었다.



[그림 4.80]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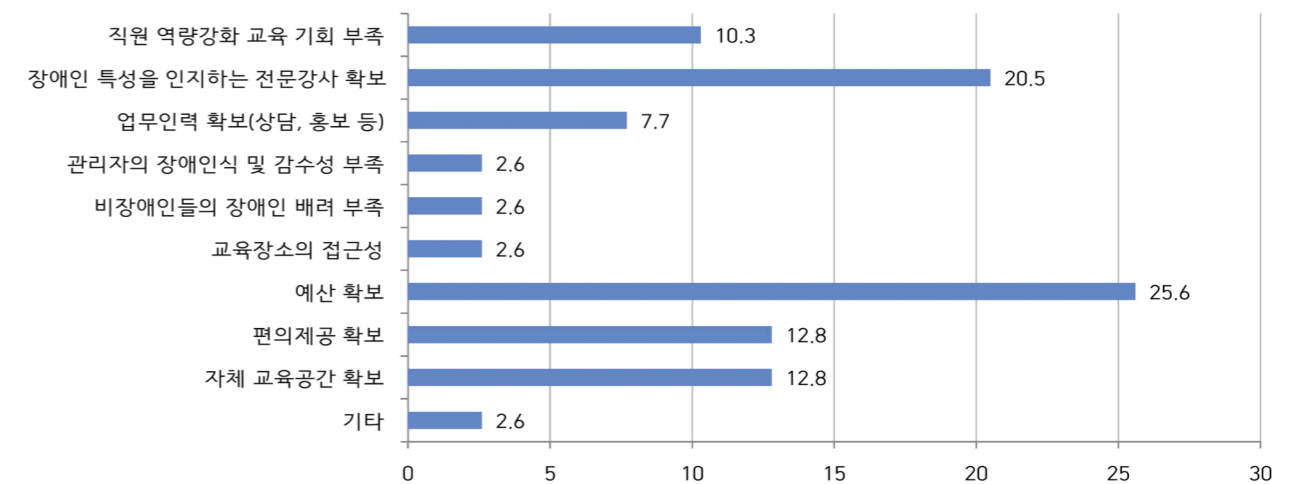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프로그램 내용(흥미, 유익성 등)이 14곳(35.9%)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강사의 전문성이 8곳(20.5%), 교육장소 및 시설이 7곳(17.9%),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가 3곳(7.7%), 프로그램 운영 시간

과 편의 제공(편의시설, 보조인력, 수어 등) 및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각각 2곳(5.1%), 운영진의 친절성이 1곳(2.6%)의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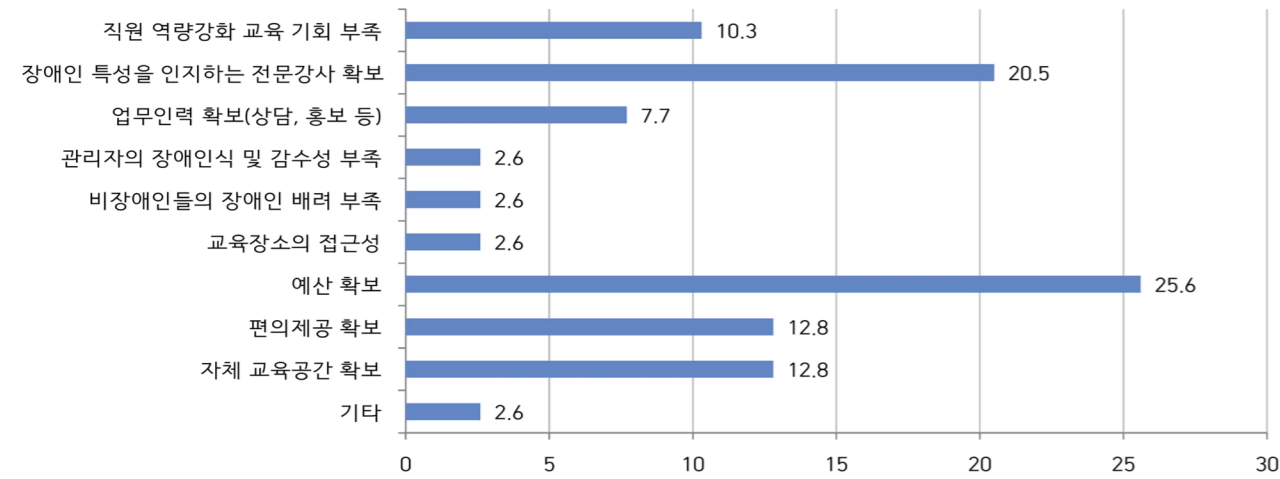
[그림 4.81]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운 점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예산 확보가 10곳(25.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특성을 인지하는 전문 강사 확보가 8곳(20.5%), 편의제공 확보와 자체 교육공간 확보가 각각 5곳(12.8%),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족이 4곳(10.3%),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가 3곳(7.7%),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부족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배려 부족, 교육장소의 접근성, 기타가 각각 1곳(2.6%)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2] 운영에 어려운 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운영 예산 증액이 11곳(31.4%)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강사 확보가 9곳(25.7%),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가 4곳(11.4%), 교육장소의 접근성이 3곳(8.6%), 교재 및 교구 확충과 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각각 2곳(5.7%),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교육 강화와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확대,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확충, 기타가 각각 1곳(2.9%)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3] 필요한 지원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계획이 있다가 9곳(60.0%), 고려 중이다가 6곳(40.0%)의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평생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의사가 높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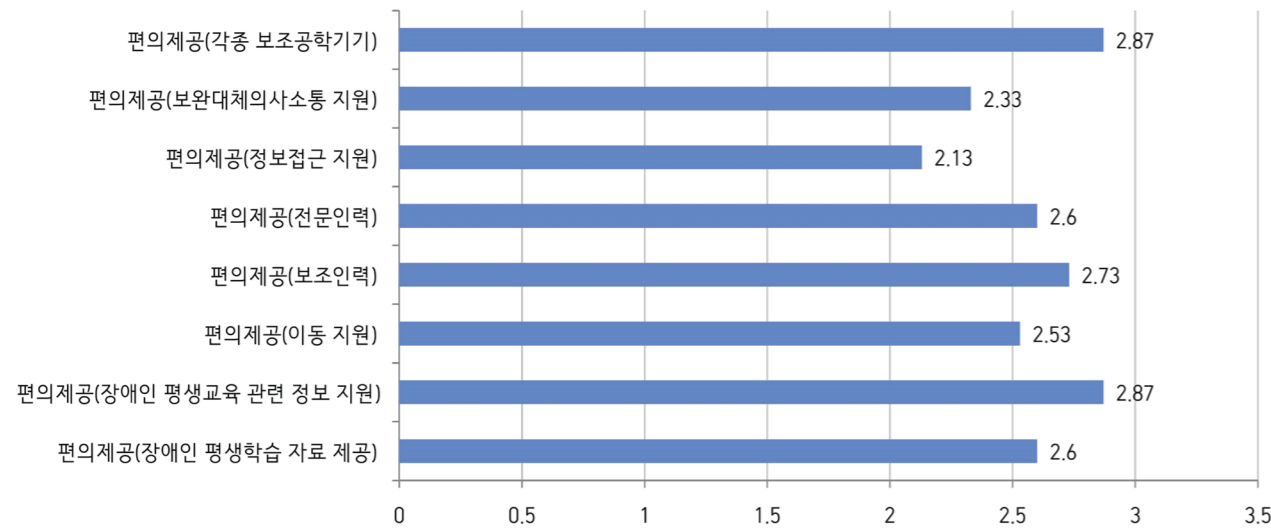
<표 4.6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방법	자체 개발	12	60.0
	위탁 개발	1	5.0
	국가 및 공공기관 개발 프로그램 활용	4	20.0
	국내 개발 프로그램 활용	2	10.0
	기타	1	5.0
	총계	20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방법	인터넷(유튜브, 개인방송 포함)	1	2.9
	스마트폰	3	8.6
	비대면 화상 방식	1	2.9

구분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방법	전단지, 리플렛	5	14.3
	포스터, 현수막	2	5.7
	소식지	4	11.4
	개인 소개	5	14.3
	문자 또는 이메일	4	11.4
	기관/게시판	5	14.3
	특별한 방법 없음	2	5.7
	기타	3	8.6
	총계	3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장소 및 시설	7	17.9
	강사의 전문성	8	20.5
	운영진의 친절성	1	2.6
	프로그램 운영 시간	2	5.1
	프로그램 내용 (흥미, 유익성 등)	14	35.9
	편의 제공(편의시설, 보조인력, 수어 등)	2	5.1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3	7.7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2	5.1
	총계	39	100.0
	운영에 어려운 점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족	4
장애인 특성을 인지하는 전문 강사 확보		8	20.5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		3	7.7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부족		1	2.6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배려 부족		1	2.6
교육장소의 접근성		1	2.6
예산 확보		10	25.6
편의제공 확보		5	12.8
자체 교육공간 확보		5	12.8
기타		1	2.6
총계		39	100.0
필요한 지원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교육 강화	1	2.9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강사 확보	9	25.7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확대	1	2.9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	4	11.4
	운영 예산 증액	11	31.4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확충	1	2.9
	교육장소의 접근성	3	8.6
	교재 및 교구 확충	2	5.7
	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2	5.7
	기타	1	2.9
총계	35	1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	계획이 있다	9	60.0
	고려 중이다	6	40.0
	총계	15	100.0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에 관한 의견으로 4점 만점에 편의제공(각종 보조공학기기)과 편의제공(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이 각각 평균 2.87(SD=1.1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편의제공(보조인력)이 평균 2.73(SD=1.28), 편의제공(전문인력)이 평균 2.60(SD=1.18), 편의제공(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평균 2.60(SD=1.24), 편의제공(이동 지원)이 2.53(SD=1.30), 편의제공(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이 2.33(SD=1.18), 편의제공(정보접근 지원)이 평균 2.13(SD=1.13)을 보였다.



[그림 4.8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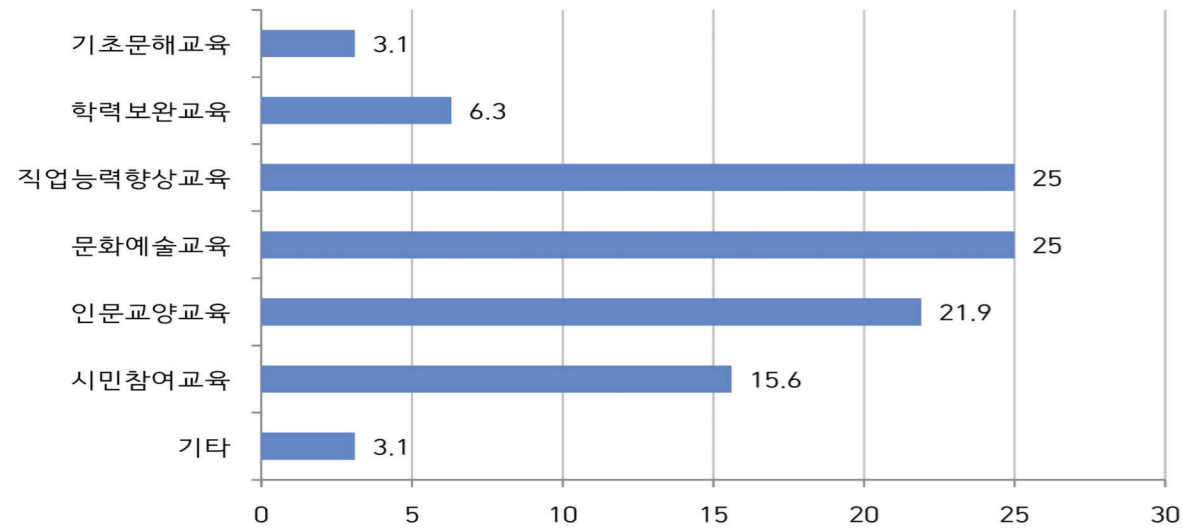
<표 4.6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편의 제공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편의제공(각종 보조공학기기)	해당사항없음	1	2.87	1.13
	부족	3		
	보통	8		
	충분	2		
	매우 충분	1		
	총계	15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SD
편의제공(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해당사항없음	1	2.33	1.18
	매우 부족	1		
	부족	8		
	보통	3		
	충분	1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정보접근 지원)	해당사항없음	2	2.13	1.13
	매우 부족	1		
	부족	6		
	보통	5		
	충분	1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전문인력)	해당사항없음	1	2.60	1.18
	매우 부족	1		
	부족	5		
	보통	4		
	충분	4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보조인력)	해당사항없음	1	2.73	1.28
	매우 부족	1		
	부족	4		
	보통	5		
	충분	3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이동 지원)	해당사항없음	1	2.53	1.30
	매우 부족	2		
	부족	4		
	보통	5		
	충분	2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	해당사항없음	1	2.87	1.13
	부족	3		
	보통	8		
	충분	2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편의제공(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해당사항없음	2	2.60	1.24
	부족	3		
	보통	7		
	충분	3		
	매우 충분	1		
총계	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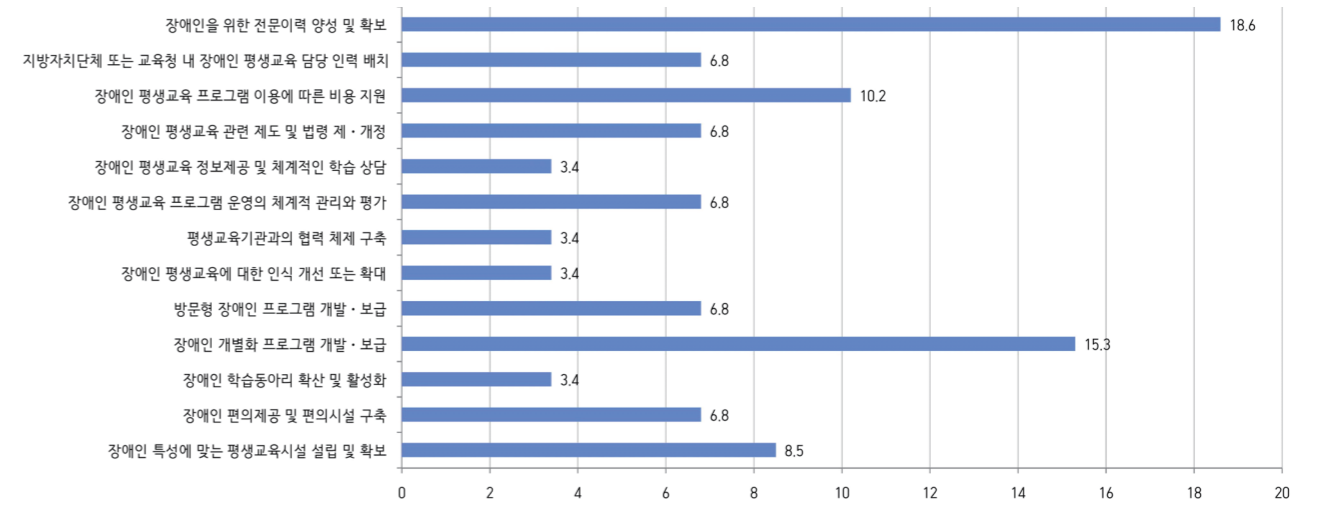
(4) 중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과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의 다중응답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이 각각 8곳(25.0%)으로 높았고, 인문교양교육이 7곳(21.9%), 시민참여교육이 5곳(15.6%), 학력보완교육이 2곳(6.3%), 기초문해교육과 기타가 각각 1곳(3.1%)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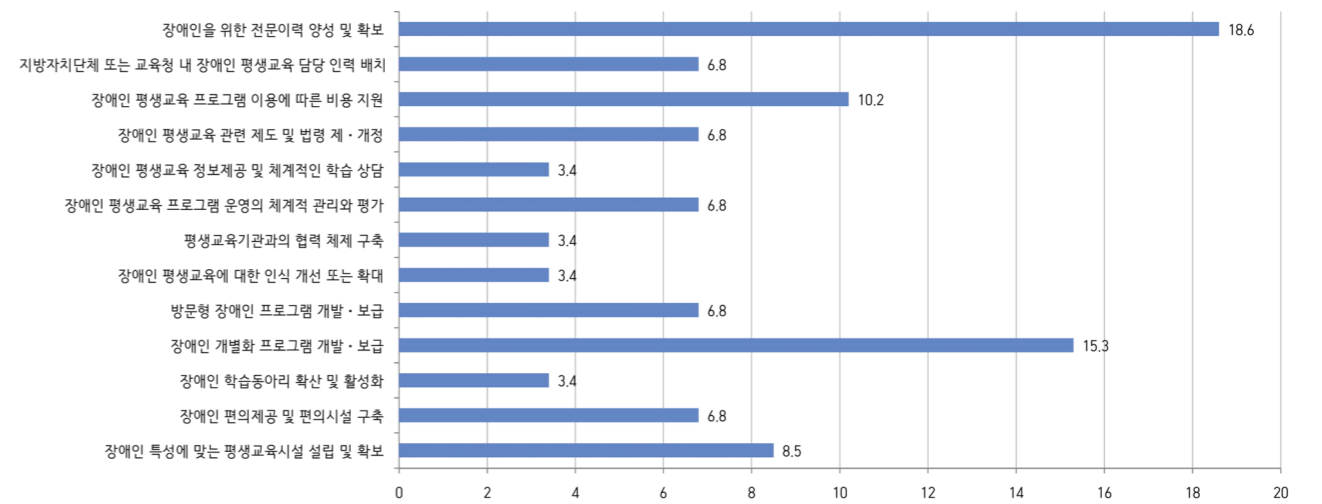
[그림 4.85] 중점프로그램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에서 추후 장애인을 위해 확충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이 9곳(27.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과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각각 6곳(18.2%),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과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 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각각 3곳(9.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2곳(6.1%),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이 1곳(3.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6] 확충해야 할 편의제공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11곳(18.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9곳(15.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6곳(10.2%),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5곳(8.5%),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각각 4곳(6.8%),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과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가 각각 2곳(3.4%)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7] 개선 과제

<표 4.66> 중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과제

구분		N	퍼센트
중점 프로그램	기초문해교육	1	3.1
	학력보완교육	2	6.3
	직업능력향상교육	8	25.0
	문화예술교육	8	25.0
	인문교양교육	7	21.9
	시민참여교육	5	15.6
	기타	1	3.1
	총계	32	100.0
확충해야 할 편의제공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9	27.3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3	9.1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3	9.1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1	3.0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3	9.1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6	18.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2	6.1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6	18.2
총계	33	100.0	
개선 과제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11	18.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4	6.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6	10.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4	6.8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2	3.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4	6.8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2	3.4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2	3.4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4	6.8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9	15.3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2	3.4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4	6.8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5	8.5
총계	59	100.0	

라.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

1) 일반상황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의 일반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여성이 24명(72.7%)으로 남성 9명(27.3%)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연령으로 만 30~39세가 14명(42.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만 20~29세가 8명(24.2%), 만 40~49세가 7명(21.2%), 만 50~59세가 4명(12.1%)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으로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이 19명(57.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대학원 이상이 8명(24.2%),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이 6명(18.2%)의 비율을 보였다. 전공분야로는 사회복지가 25명(75.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특수교육과 기타가 각각 3명(9.1%), 교육학(평생교육 포함)과 그 외 장애 관련 분야가 각각 1명(3.0%)의 비율을 보였다. 전공분야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건축소방설비, 광고홍보, 생명과학과가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으로 2년 이상 5년 미만이 15명(45.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1년 이하가 8명(24.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명(21.2%), 10년 이상이 3명(9.1%)의 비율을 보였다. 보유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이 30명(91.0%)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기타 민간자격증이 각각 1명(3.0%)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복지급수로는 1급과 2급이 각각 15명(50%)의 비율을 보였다. 자격증 취득 기관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이 27명(81.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학점은행기관이 6명(18.2%)의 비율을 보였다. 근로·고용 형태로 정규직이 29명(87.9%)으로 비정규직 4명(12.1%)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소속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으로 장애인복지관과 기타가 각각 7명(21.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각각 6명(18.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3명(9.1%),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이 2명(6.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가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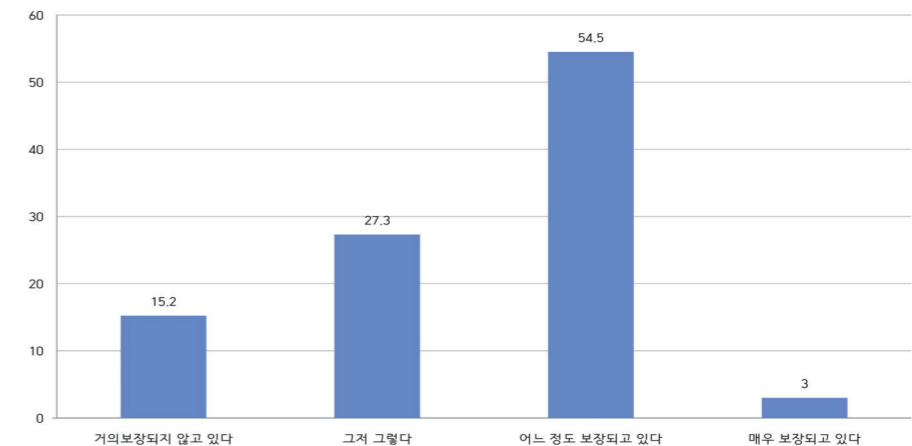
<표 4.67> 일반상황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9	27.3
	여성	24	72.7
	총계	33	100.0
연령	만 20~29세	8	24.2
	만 30~39세	14	42.4
	만 40~49세	7	21.2
	만 50~59세	4	12.1
	총계	33	100.0
학력	전문대(3년제 이하)	6	18.2
	대학교(4년제 이상)	19	57.6
	대학원 이상	8	24.2
	총계	33	100.0
전공분야	사회복지	25	75.8
	특수교육	3	9.1
	교육학(평생교육 포함)	1	3.0
	그 외 장애 관련 분야	1	3.0
	기타	3	9.1
	총계	33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경험	1년 이하	8	24.2
	2년이상 5년 미만	15	45.5
	5년이상 10년 미만	7	21.2
	10년 이상	3	9.1
	총계	33	100.0
보유자격증	사회복지사	30	91.0
	상담사	1	3.0
	청소년지도사	1	3.0
	기타 민간자격증	1	3.0
	총계	33	100.0
사회복지사급수	1급	15	50.0
	2급	15	50.0
	총계	30	100.0
자격증 취득기관	대학 또는 대학원	27	81.8
	학점은행기관	6	18.2
	총계	33	100.0
근로·고용 형태	정규직	29	87.9
	비정규직	4	12.1
	총계	33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소속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장애인복지관	7	21.2
	장애인 보호작업장	6	18.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	18.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	3.0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9.1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2	6.1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1	3.0
	기타	7	21.2
	총계	33	100.0

2)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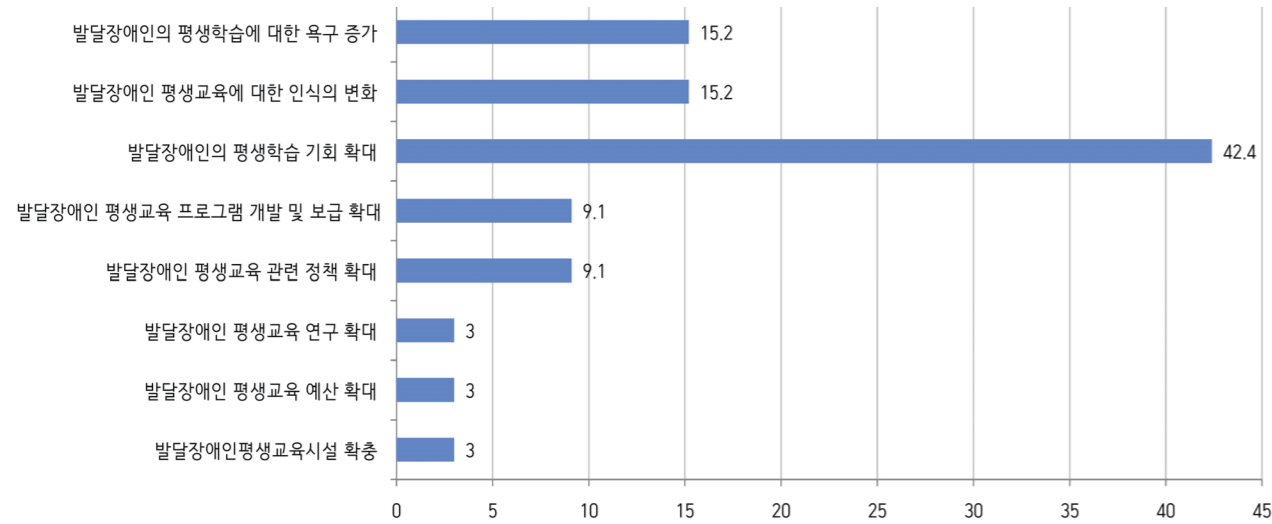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 정도로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가 18명(54.5%), 그저 그렇다가 9명(27.3%),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가 5명(15.2%), 매우 보장되고 있다가 1명(3.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4.88]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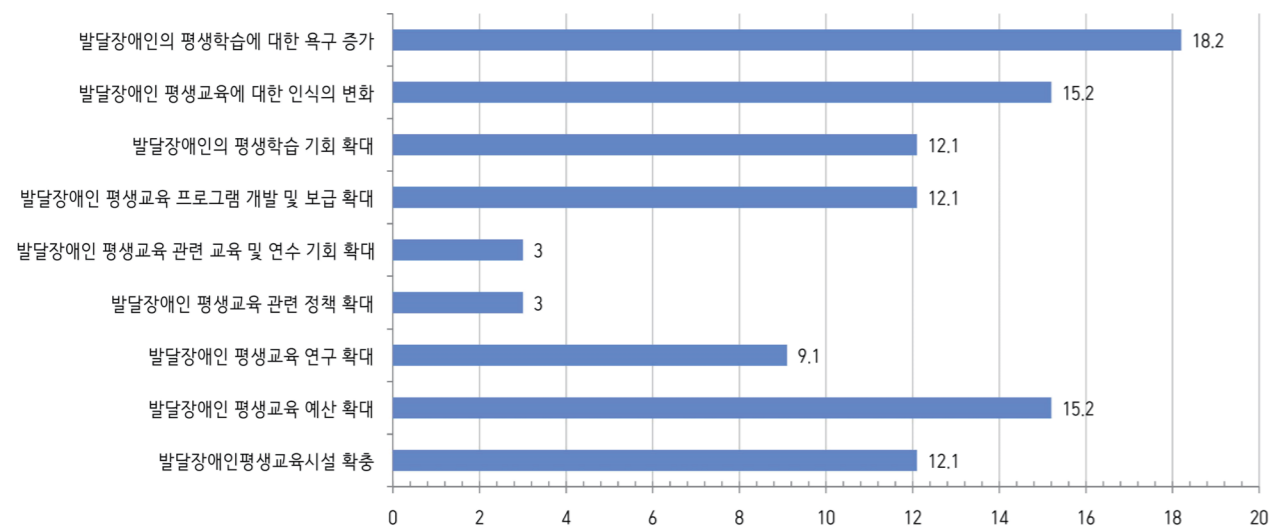
2016년 「평생교육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변화 1순위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가 14명(42.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각각 5명(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가 각각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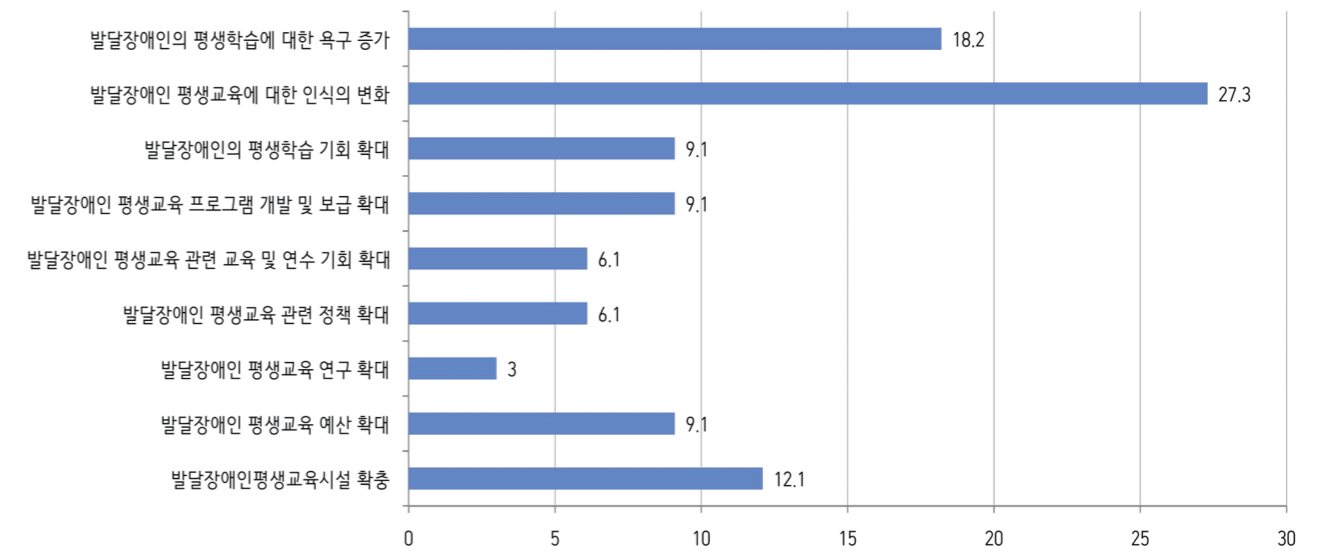
[그림 4.89]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1순위)

2016년 「평생교육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변화 2순위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가 6명(18.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가 각각 5명(15.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이 각각 4명(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가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가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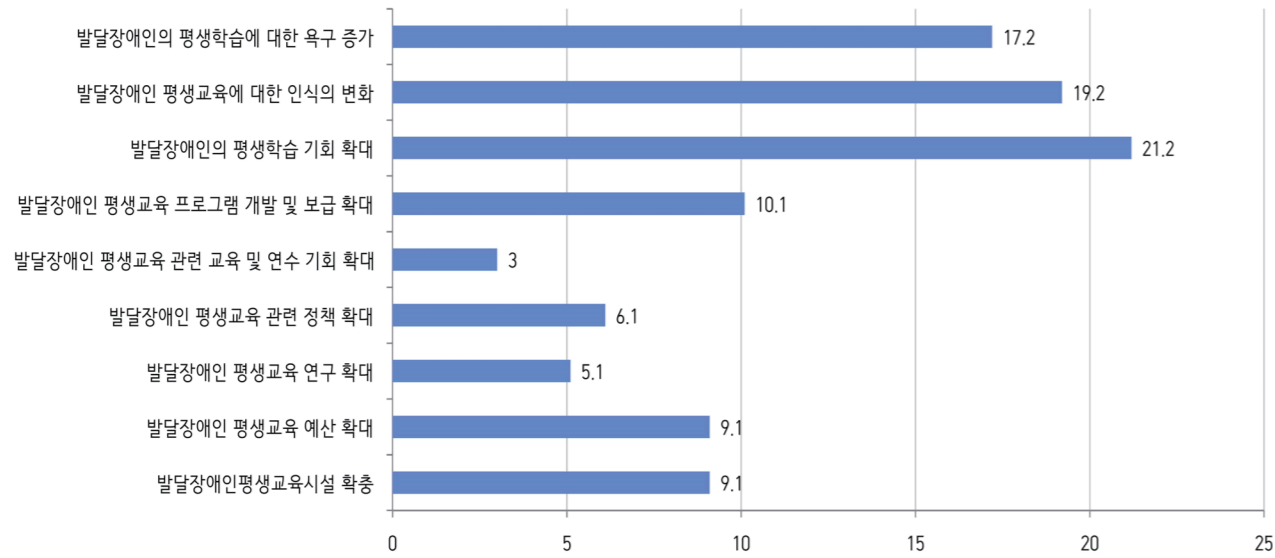
[그림 4.90]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2순위)

2016년 「평생교육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변화 3순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9명(27.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가 6명(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이 4명(12.1%),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가 각각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가 각각 2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가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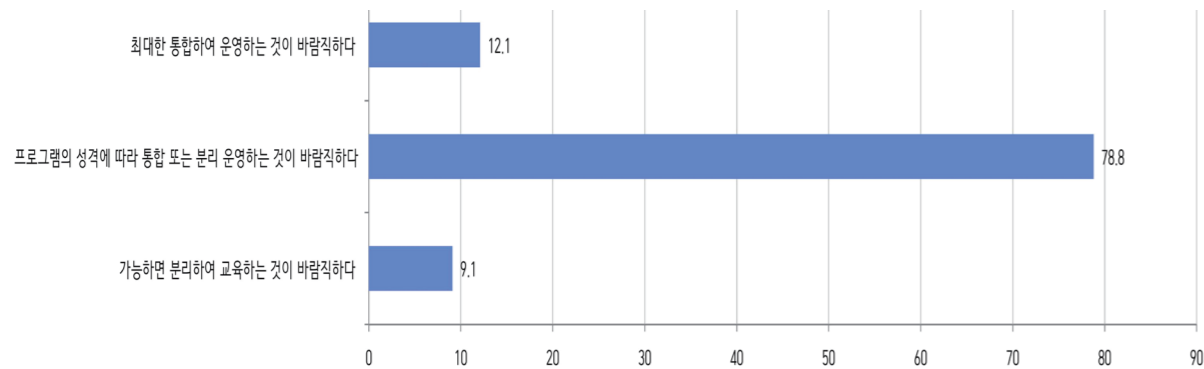
[그림 4.91]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3순위)

2016년 「평생교육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변화 다중응답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가 21명(21.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17명(19.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가 17명(17.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가 10명(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이 9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가 6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가 5명(5.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가 3명(3.0%)의 비율이었다.



[그림 4.92]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다중응답)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한 의견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명(78.8%)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명(12.1%), 가능하면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명(9.1%)의 비율이 있었다.



[그림 4.93]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필요성

<표 4.68>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 보장정도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5	15.2
	그저 그렇다	9	27.3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18	54.5
	매우 보장되고 있다	1	3.0
	총계	33	100.0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 1순위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15.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14	4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1	3.0
	총계	33	100.0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 2순위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	6	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15.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4	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4	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4	12.1
총계	33	100.0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 3순위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	6	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9	27.3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4	12.1
총계	33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2016년 「평생교육법」이후 필요한 변화 다중응답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	17	17.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19	19.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21	21.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10	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3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	6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	5	5.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9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9	9.1
	총계	33	100.0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필요성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12.1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78.8
	가능하면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9.1
	총계	33	100.0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수강거부 경험

기관에서 장애인의 수강을 거부 경험이 없는 경우가 28명(87.5%)로 있는 경우 4명(12.5%)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수강 거부 이유로는 발달장애정도가 심해서와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없어서의 사유가 있었다.

<표 4.6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수강거부 경험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수강 거부 경험	있다	4	12.5
	없다	28	87.5
	총계	32	100.0
거부 이유	발달장애정도가 심해서	2	50.0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없어서	2	50.0
	총계	4	100.0

4)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담당업무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14명(42.4%)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가 11명(33.3%), 기타가 4명(12.1%),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평가·컨설팅이 각각 2명(6.1%)의 비율이었다. 담당업무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직업재활, 홍보, 회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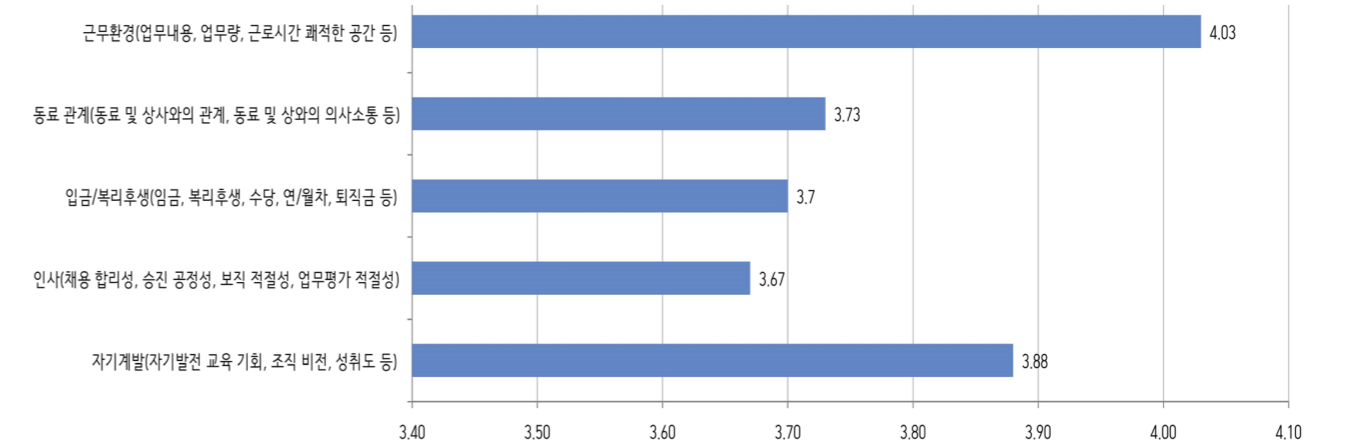
장애교육 및 연수 경험으로 있다가 19명(57.6%)으로 없다 14명(42.4%)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장애교육 및 연수는 경기도시설협회, 복지재단, 한국문화교육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법인, 이룸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참여하였다. 교육주제는 도전적행동, 사례관리, 발달장애인전문가과정,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보조기기 사용방법, 인식개선교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장애인 인권, 장애인정책아카데미, 평생교육사업, 활동지원사 교육 등 개인 역량개발에 맞추어 참여하고 있었다.

근무환경에 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근무환경(업무내용, 업무량, 근로시간 쾌적한 공간 등)에 관한 만족으로 만족이 21명(63.6%), 매우 만족이 7명(21.2%), 보통이 4명(12.1%), 불만족이 1명(3.0%)의 비율이었다. 동료 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만족으로 만족이 17명(51.5%), 보통이 8명(24.2%), 매우 만족이 5명(15.2%), 불만족이 3명(9.1%)의 비율이었다. 임금/복리후생(임금, 복리후생, 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에 관한 만족으로 만족이 18명(54.5%), 보통이 9명(27.3%), 매우 만족이 4명(12.1%),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인사(채용 합리성, 승진 공정성, 보직 적절성, 업무평가 적절성)에 관한 만족으로 만족이 17명(51.5%), 보통이 10명(30.3%), 매우 만족이 4명(12.1%),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자기개발(자기발전 교육 기회, 조직 비전, 성취도 등)에 관한 만족으로 만족이 20명(60.6%), 보통이 7명(21.2%), 매우 만족이 5명(15.2%), 불만족이 1명(3.0%)의 비율이었다.

<표 4.70>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구분	빈도	퍼센트	
담당업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4	42.4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2	6.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평가·컨설팅	2	6.1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11	33.3
	기타	4	12.1
	총계	33	100.0
장애교육 및 연수 경험	있다	19	57.6
	없다	14	42.4
	총계	33	100.0
근무환경(업무내용, 업무량, 근로시간 쾌적한 공간 등)	불만족	1	3.0
	보통	4	12.1
	만족	21	63.6
	매우 만족	7	21.2
	총계	33	100.0
동료 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	불만족	3	9.1
	보통	8	24.2
	만족	17	51.5
	매우 만족	5	15.2
	총계	33	100.0
임금/복리후생(임금, 복리후생, 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	매우 불만족	1	3.0
	불만족	1	3.0
	보통	9	27.3
	만족	18	54.5
	매우 만족	4	12.1
총계	33	100.0	
인사(채용 합리성, 승진 공정성, 보직 적절성, 업무평가 적절성)	매우 불만족	1	3.0
	불만족	1	3.0
	보통	10	30.3
	만족	17	51.5
	매우 만족	4	12.1
총계	33	100.0	
자기개발(자기발전 교육 기회, 조직 비전, 성취도 등)	불만족	1	3.0
	보통	7	21.2
	만족	20	60.6
	매우 만족	5	15.2
	총계	33	100.0

근무환경에 관한 만족도 평균을 확인한 결과 근무환경(업무내용, 업무량, 근로시간 쾌적한 공간 등)이 평균 4.03(SD=.6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기개발(자기발전 교육 기회, 조직 비전, 성취도 등)이 평균 3.88(SD=.70), 동료 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이 평균 3.73(SD=.84), 임금/복리후생(임금, 복리후생, 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이 평균 3.70(SD=.85), 인사(채용 합리성, 승진 공정성, 보직 적절성, 업무평가 적절성)가 평균 3.67(SD=.8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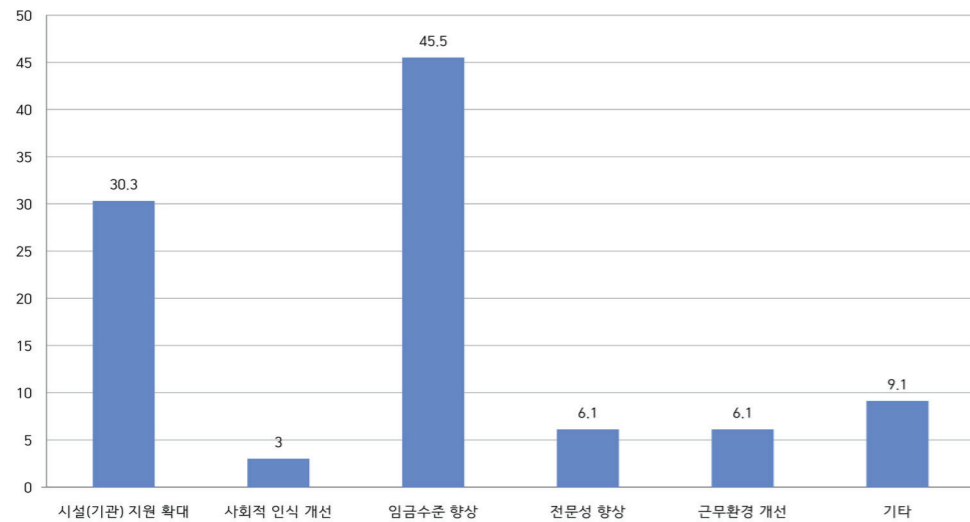
[그림 4.94]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표 4.71>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근무환경(업무내용, 업무량, 근로시간 쾌적한 공간 등)	2.00	5.00	4.03	.68
동료 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	2.00	5.00	3.73	.84
임금/복리후생(임금, 복리후생, 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	1.00	5.00	3.70	.85
인사(채용 합리성, 승진 공정성, 보직 적절성, 업무평가 적절성)	1.00	5.00	3.67	.85
자기개발(자기발전 교육 기회, 조직 비전, 성취도 등)	2.00	5.00	3.88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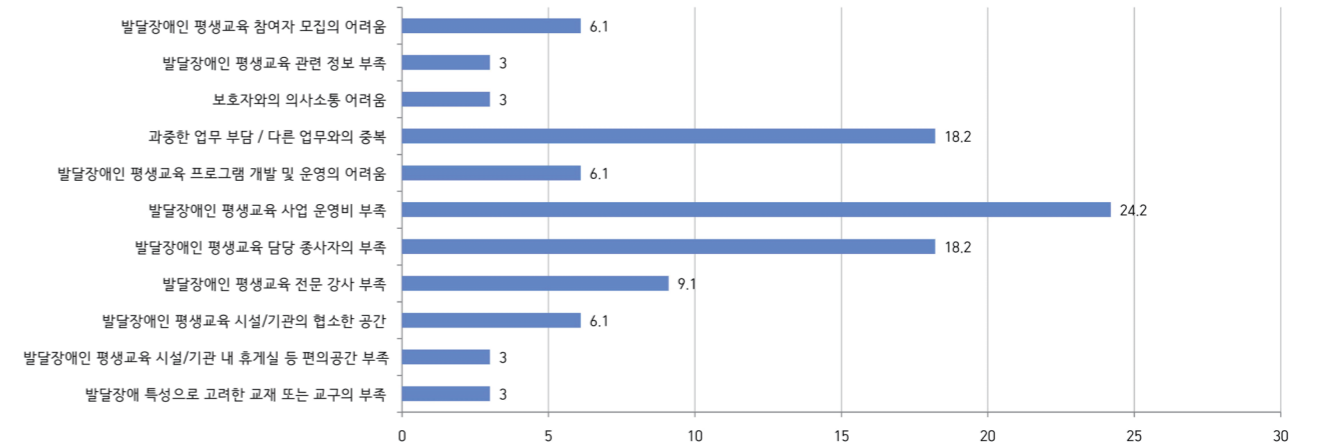
5)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임금수준 향상이 15명(45.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시설(기관) 지원 확대가 10명(30.3%), 기타가 3명(9.1%),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각각 2명(6.1%), 사회적 인식 개선이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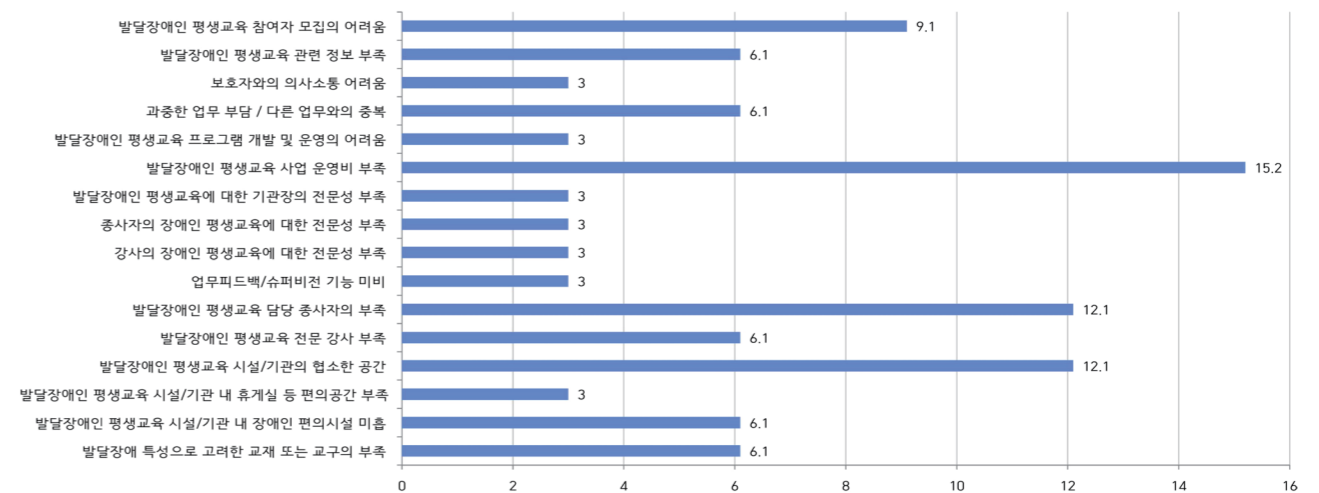
[그림 4.95]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 1순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이 8명(24.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다른 업무와의 중복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이 각각 6명(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이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이 2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과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의 기타의견으로는 임금에 따른 경력인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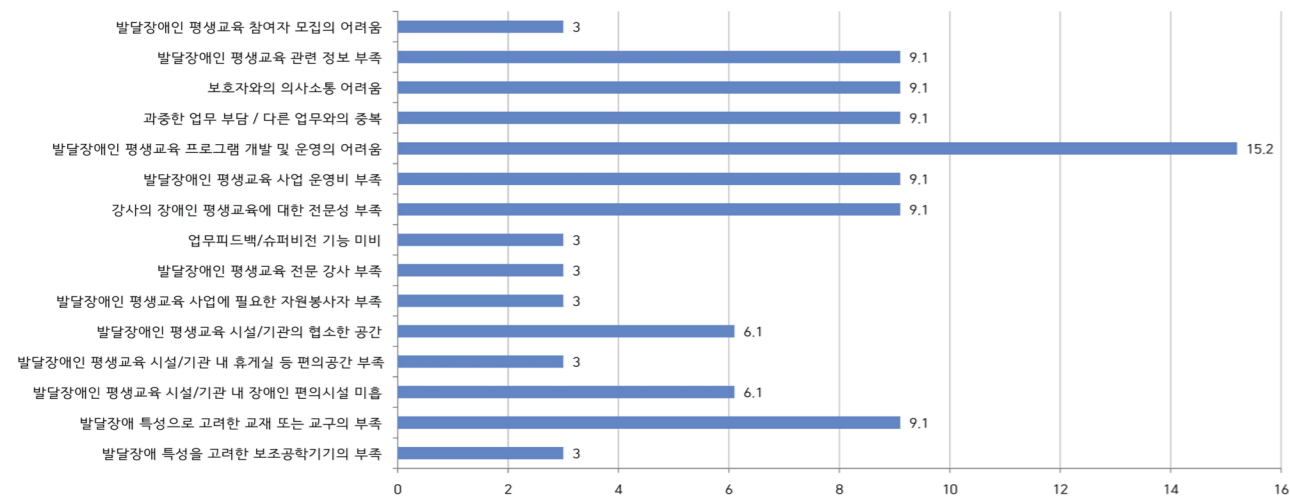
[그림 4.9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1순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 2순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이 5명(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이 각각 4명(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다른 업무와의 중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이 각각 2명(6.1%),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그림 4.97]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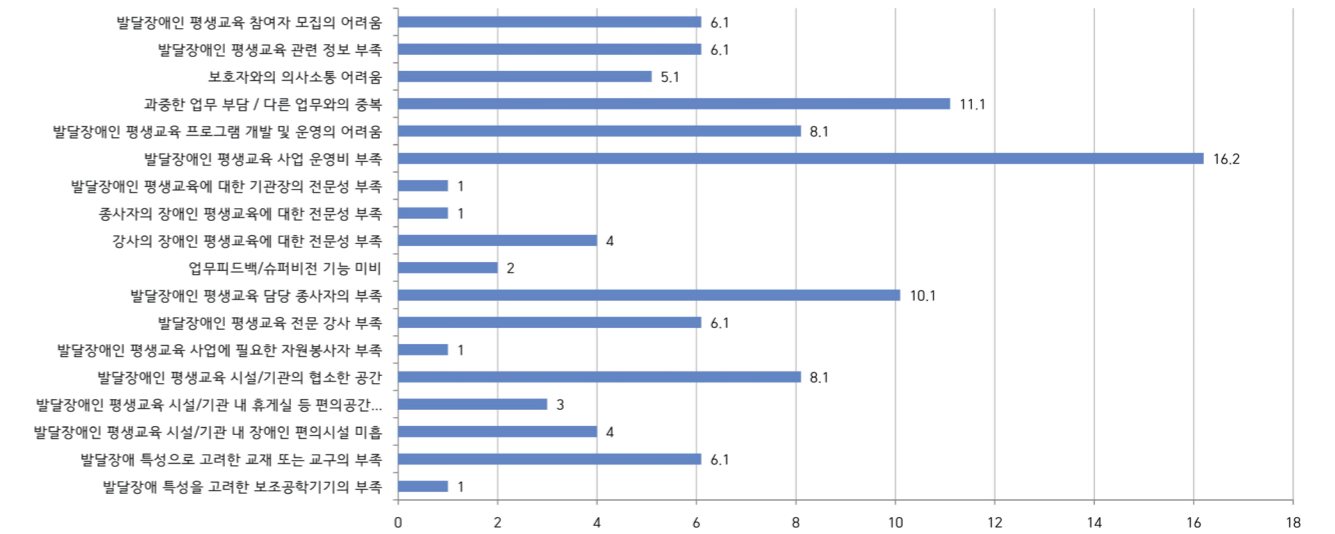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 3순위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이 5명(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과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과중한 업무 부담/다른 업무와의 중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이 각각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각각 2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부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의 부족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그림 4.98]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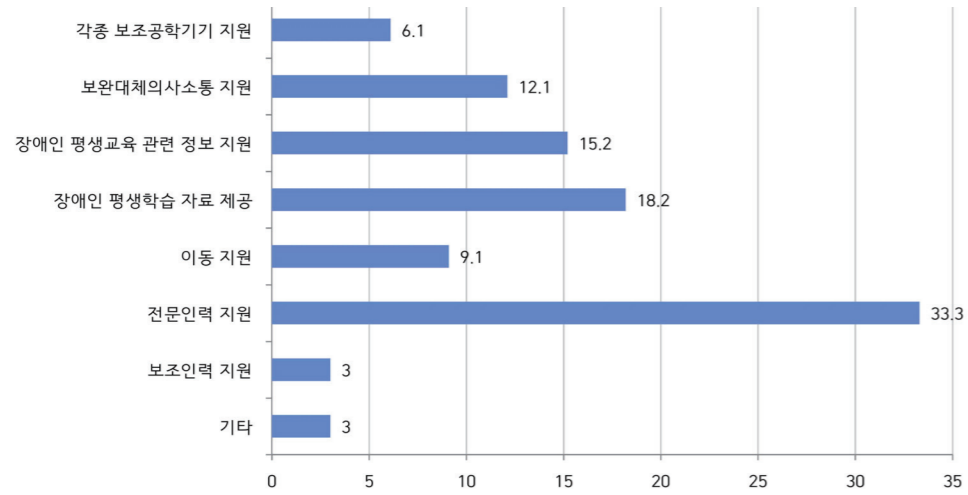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 다중응답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이 16명(16.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이 11명(1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이 10명(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이 각각 8명(8.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이 각각 6명(6.1%),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5명(5.1%),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각각 4명(4.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이 3명(3.0%),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이 2명(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과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부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의 부족이 각각 1명(1.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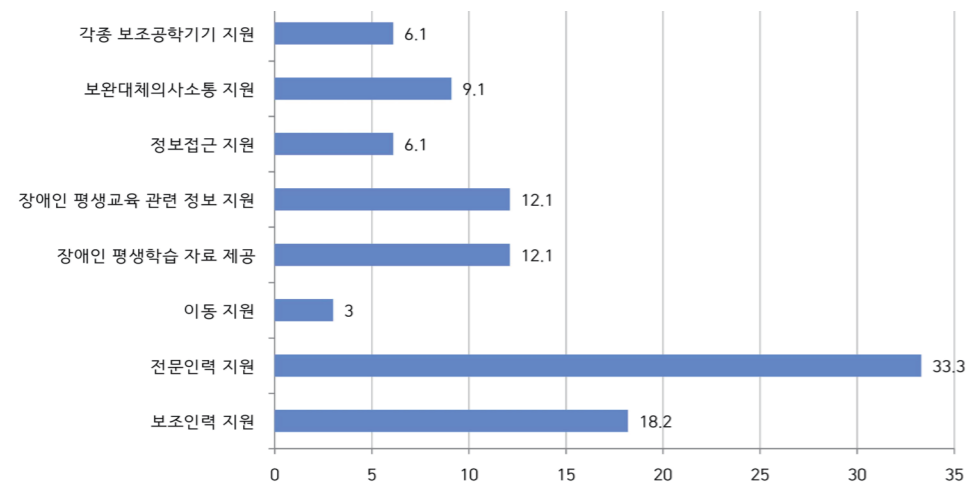
[그림 4.9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다중응답)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과제 1순위는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이 11명(33.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6명(18.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이 5명(15.2%), 보완 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4명(12.1%),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3명(9.1%),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이 2명(6.1%),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과 기타가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관한 기타의견으로 예산확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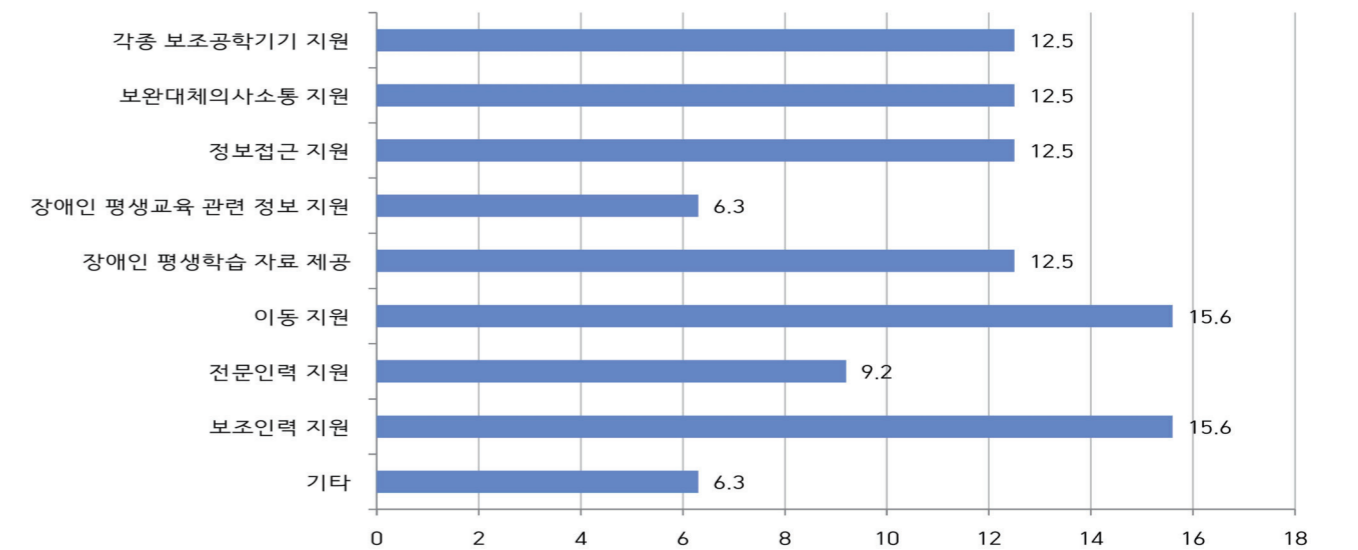
[그림 4.100]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1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과제 2순위는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이 11명(33.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6명(18.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과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각각 4명(12.1%),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3명(9.1%),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과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이 각각 2명(6.1%),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1명(3.0%)의 비율이었다.



[그림 4.101]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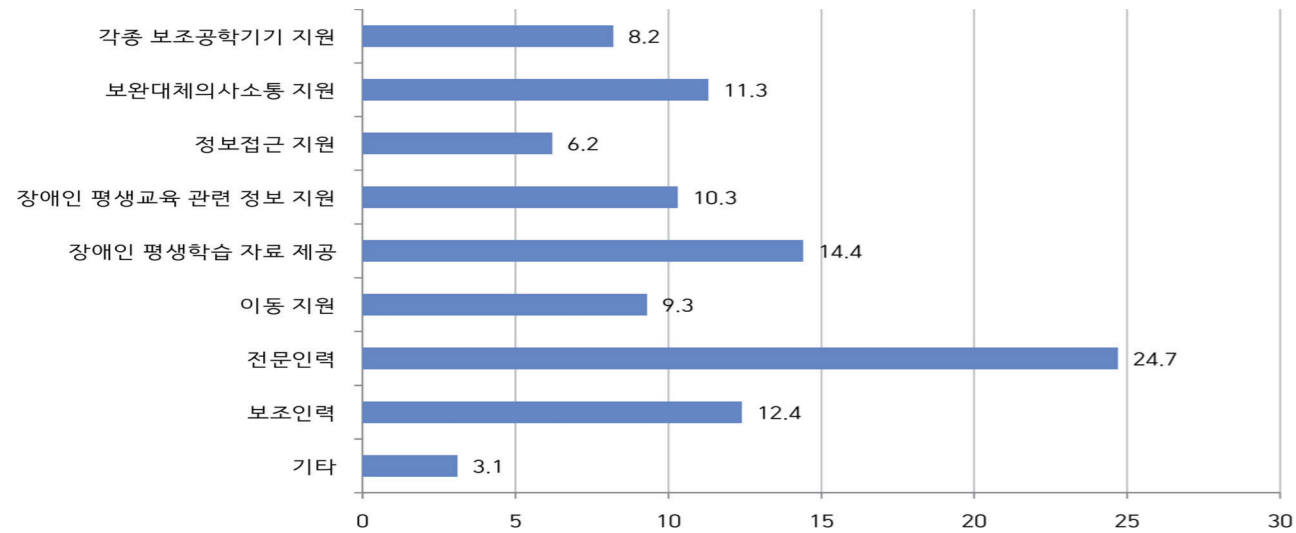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과제 3순위는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과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각각 5명(15.6%)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각각 4명(12.5%),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이 3명(9.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과 기타가 각각 2명(6.3%)의 비율이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욕구부합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식 증진, 일상생활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섭외 지원, 강사료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관리, 참여자 모집 지원, 사각지대 당사자 발굴 지원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4.102]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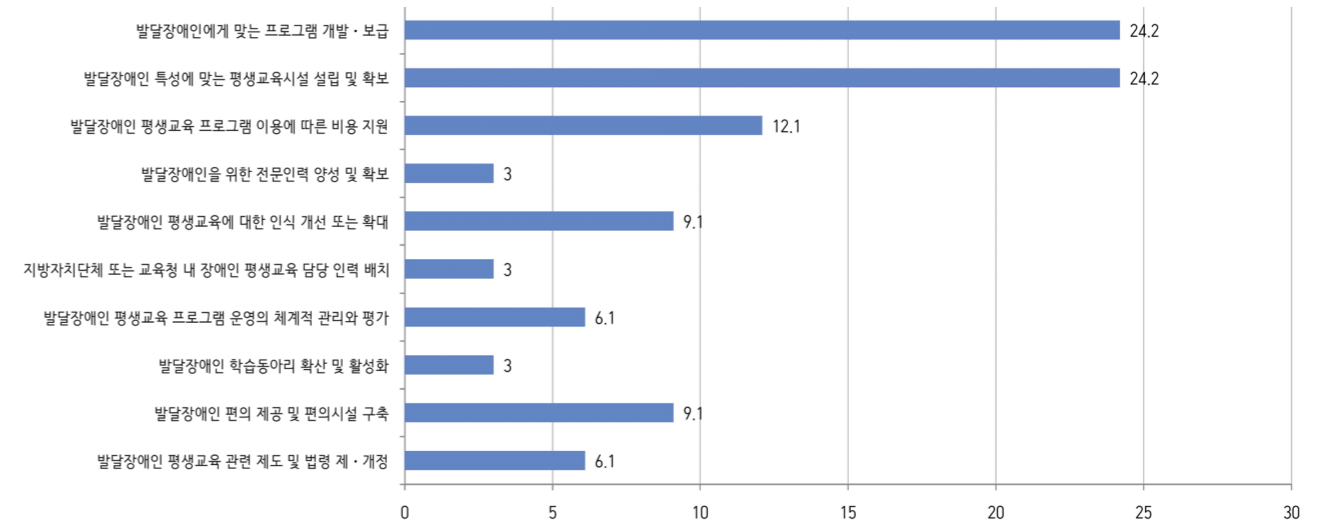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기관 종사자가 생각하는 과제 다중응답으로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이 24명(24.7%)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14명(14.4%),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이 12명(12.4%),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이 11명(11.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

공 등이 10명(10.3%),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이 9명(9.3%),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이 8명(8.2%),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이 6명(6.2%), 기타가 3명(3.1%)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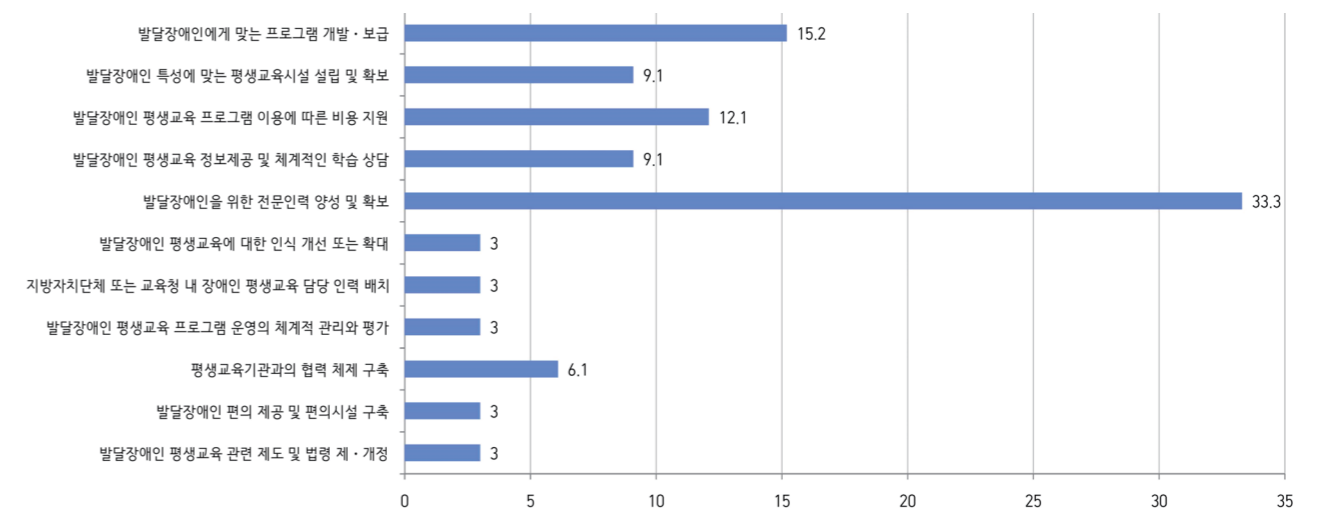
[그림 4.103]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다중응답)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각각 8명(24.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4명(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와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3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각각 2명(6.1%),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가 각각 1명(3.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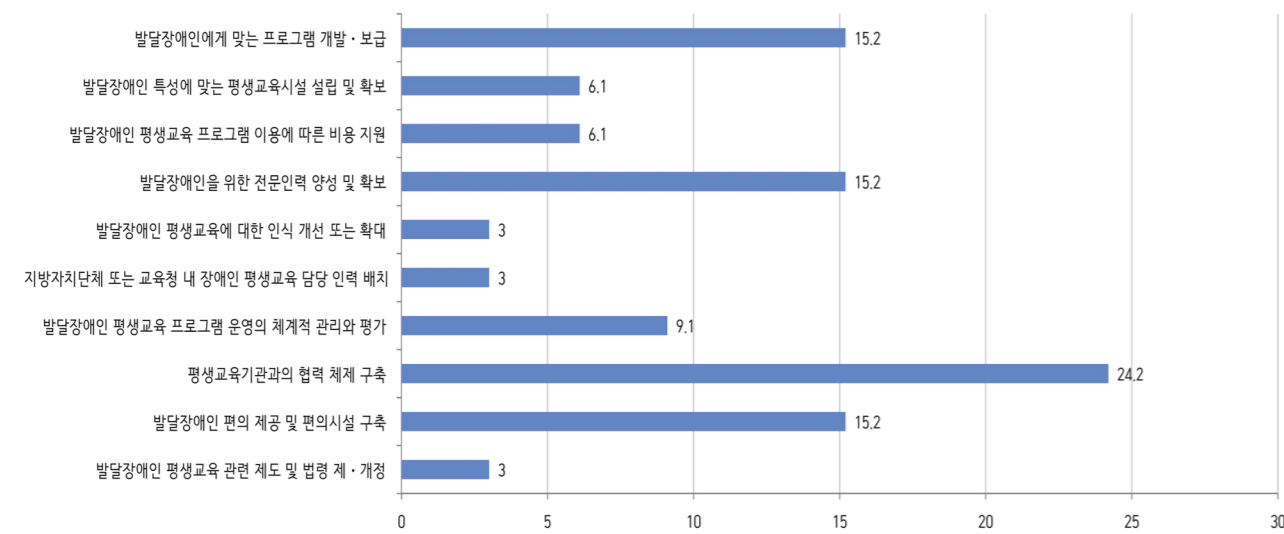
[그림 4.10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1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2순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11명(33.3%)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5명(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4명(12.1%),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이 각각 3명(9.1%),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2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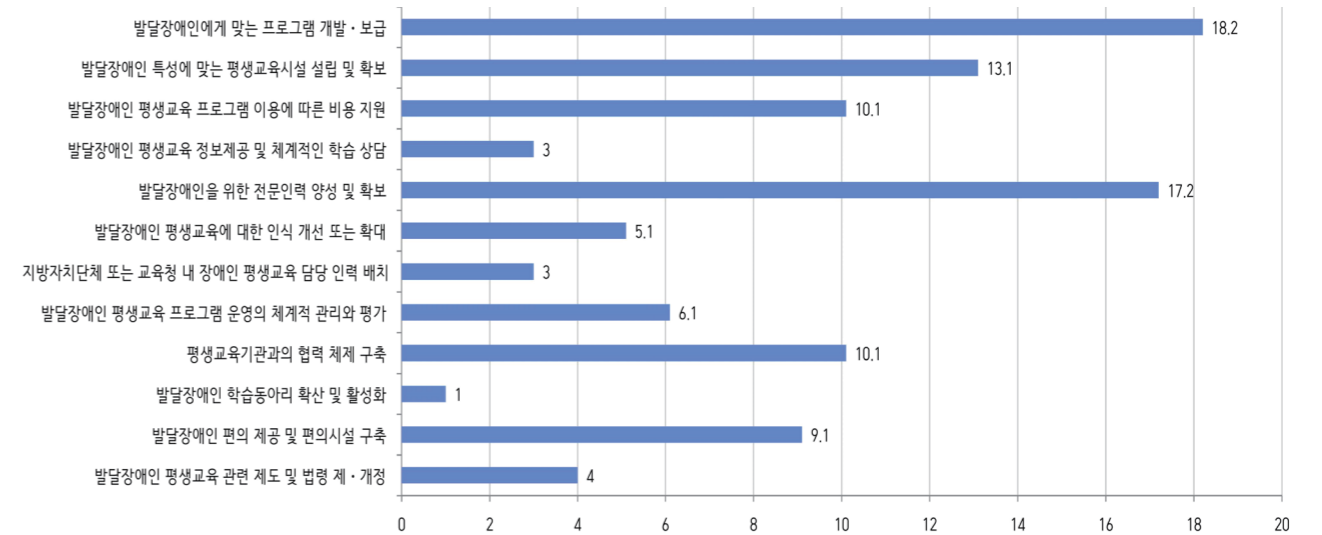
[그림 4.105]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2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3순위로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8명(24.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각각 5명(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3명(9.1%),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각각 2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각각 1명(3.0%)의 비율이었다.



[그림 4.106]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3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관한 다중응답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18명(18.2%)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17명(17.2%),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13명(13.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각각 10명(10.1%),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이 9명(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가 6명(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가 5명(5.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이 4명(4.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가 각각 3명(3.0%),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가 1명(1.0%)의 비율이었다.



[그림 4.107]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중응답)

<표 4.7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빈도	퍼센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시설(기관) 지원 확대	10	30.3
	사회적 인식 개선	1	3.0
	임금수준 향상	15	45.5
	전문성 향상	2	6.1
	근무환경 개선	2	6.1
	기타	3	9.1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 1순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1	3.0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	3.0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	6	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8	2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	6	18.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1	3.0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	1	3.0
총계	33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2	6.1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1	3.0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	1	3.0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3.0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3.0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	4	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	4	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2	6.1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	2	6.1
총계	33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3	9.1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3	9.1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3	9.1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3	9.1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부족	1	3.0

구분	빈도	퍼센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2	6.1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	3	9.1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의 부족	1	3.0
총계	33	1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6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6	6.1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5	5.1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	11	1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8	8.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16	16.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	1	1.0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1.0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4	4.0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2	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	10	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6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부족	1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	8	8.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3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4	4.0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	6	6.1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의 부족	1	1.0
총계	99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1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2	6.1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4	12.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5	15.2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6	18.2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3	9.1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11	33.3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1	3.0
	기타	1	3.0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2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2	6.1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3	9.1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2	6.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4	12.1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4	12.1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1	3.0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11	33.3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6	18.2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3순위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4	12.5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4	12.5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4	12.5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3순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2	6.3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4	12.5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5	15.6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3	9.2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5	15.6
	기타	2	6.3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다중응답)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8	8.2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11	11.3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6	6.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10	10.3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14	14.4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9	9.3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24	24.7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12	12.4
	기타	3	3.1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8	24.2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8	24.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4	12.1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3	9.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1	3.0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2	6.1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1	3.0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2	6.1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2순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15.2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3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4	1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3	9.1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11	33.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1	3.0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1	3.0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2	6.1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1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1	3.0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3순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2	6.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2	6.1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1	3.0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1	3.0

구분		빈도	퍼센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 3순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3	9.1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8	24.2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5	15.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1	3.0
	총계	33	100.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중응답)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18	18.2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13	13.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10	10.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3	3.0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17	17.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5	5.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3	3.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6	6.1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10	10.1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1	1.0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9	9.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4	4.0
	총계	99	100.0

3. FGI 연구 분석 결과

가. FGI 연구 참여자의 특성

<표 4.73> FGI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일자	참여자 기호	연령대	직책
10월 19일	A	40대	최고중간관리자
	B	60대	기관장
	C	30대	중간관리자
	D	30대	사회재활교사
	E	30대	사무국장
	F	50대	최고중간관리자
	G	40대	기관장
10월 26일	A	40대	최고중간관리자
	B	60대	기관장
	C	30대	중간관리자
	D	30대	사회재활교사
	E	30대	사무국장
	F	40대	중간관리자
	G	30대	일반직원

FGI는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9일(화)과 10월 26일(화) 2차례 실시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FGI는 질적조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다. FGI는 총 14명이 참여하였으며, 각각 2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FGI 연구는 재가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요구, 대상자별 프로그램 요구,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함께 진행하였고, 녹취한 자료는 전사 과정을 통해 자료를 구축했다. 전사 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대주제 및 요구에 따라 정렬한 뒤 초점집단 인터뷰(FGI) 결과로 요약하였다.

나. FGI 연구 결과

<표 4.74> FGI 연구 결과

구분	대주제	요구
재가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 - 프로그램 다양화 - 재가 방문프로그램 - 낮 활동 프로그램 - 일상생활 정보 제공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교육 - 자녀양육 코칭 - 발달장애인의 노후 준비 - 가족과의 사별 후 일상생활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요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생활 기술 강사파견 - 일상생활 반복 훈련 프로그램 - 직장인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 주장애 유형별 1:1 코칭 상담 - 보안관(보호책임관) 제도 구축
	직원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 전문가 파견 - 도전적 행동(문제행동) 대처를 위한 전문가 파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 - 정기적인 재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 친화도시 구현 - AAC 보완대체의사소통 거리 조성 - 발달장애인 바우처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 및 기능개선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양성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지도사) - 일상생활 상담·교육 전문가 제도 구축 - 맞춤형 가사도우미 제도 구축 -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인센티브 제공

구분	대 주제	요구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발달장애인 행동수정 전문기관 설립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 확충 - 기존 장애인관련기관 내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연계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동주민센터 등 유휴공간 개방
대상자별 프로그램 요구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증 가해자·피해자 대처 프로그램 - 도전적 행동(문제행동) 의사소통 프로그램 - 도전적 행동(문제행동) 외부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발달장애인 멘토, 멘티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당사자,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 통합 교육 - 비장애 가족프로그램 - 비장애 형제 프로그램 -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 자조집단 프로그램
의정부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 파견 메뉴얼 개발 - 일상생활 지원 교육(요리, 수납정리전문가 등) - 발달장애 가족 심리·정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지역사회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대상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발달장애인 이용 가맹점 지정
	전문가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 도전적 행동(문제행동) 대처 1:1 양육전문가 양성 및 파견 - AI인공지능 활용 강사양성 프로그램

5장. 결론 및 제언

동 및 여가선용,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대인관계 형성,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및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자격증 취득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대인관계 형성이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및 다른 사회 활동을 할 곳이 없음,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및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의 순이었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수집 방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장애부모 당사자 및 단체가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가족, 이웃, 친구,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센터, 복지관, 사회단체 등)의 전화 상담 및 방문, 시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인터넷, SNS, 홈페이지 및 일반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전단 광고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운 점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족, 프로그램 홍보 부족 및 건강이나 직업상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 프로그램 수업시간 부족, 편의시설 부족, 기관/시설에서의 거부 및 교육장소 거리상의 문제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자녀의 비참여, 적응의 어려움, 안전상의 문제,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음, 최종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력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보호자의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관한 질문에서는 당사자와 동일하게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기초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순으로 욕구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기초문해교육에 관한 세부항목에 관한 욕구로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한글 문해교실, 책 읽어주기, 고급 문해반, 컴퓨터문해교육반, 한글작문교실, 한글 응용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욕구를 보였다.

6)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교육 기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평생교육 1, 2순위 동일하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근소한 차이로 순위의 변동을 나타내었으며 3순위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평생교육 기관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7)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에 관한 의견으로 만족이 47.4%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보통이 31.9%, 매우 만족이 16.4%, 불만족이 2.6%, 매우 불만족 1.7%의 비율 순이었다. 평생교육 만족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교·강사 전문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8) 평생교육프로그램 희망 이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희망 이유 1순위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가 26.7%로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평생교육 프로그램 고려사항

장애인 보호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1순위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이 51.1%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프로그램 실시 기간, 프로그램 교육비 및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 인력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비율의 고려사항이었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프로그램 실시 기간,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의 순으로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3순위 역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프로그램 교육비,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 인력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항도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 학습을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는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이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32.6%,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가장 높은 욕구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뒤를 이었다. 3순위로는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채용이 13.6%로 가장 높은 욕구를 나타냈고, 뒤를 이어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 평생교육 전문기관의 확충,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 등의 욕구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응답에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보가 21.9%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평생교육기관의 확충,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채용,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의 마련, 교육비의 지원 또는 감액,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마련 등의 욕구를 보였다. 1,2,3 순위의 욕구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해 가능한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줄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선사항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개선사항으로 1순위로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이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이어서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의 지원과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의 지원 그리고 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과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1순위로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2순위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3순위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을 가장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배치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과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평생교육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등의 과제가 의정부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FGI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을 위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금번 연구에 있어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해가 쉬운 그림 파일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욕구를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에 있어 스포츠활동, 요리활동과 같은 문화예술활동과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 자체에 목적을 두는 활동보다는 지역사회를 이용하고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 교육적 측면으로 치중하기 보다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적 접근을 밑바탕에 두고 그 위에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해결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 다수의 문헌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생활 도구로서의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상호교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상 현실 기술을 적용한 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화훼중심의 일자리 연계 직업교육과 같은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강점을 개발하여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에 있어 특이점을 발견한 것은 바로 장애 유형에 따른 교차분석의 결과이다. 장애유형에 있어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의 세 유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지적장애인이 다른 두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봉사활동과 같은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큰 욕구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발달장애인이 각자의 재능과 장점, 가능한 역량을 개발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어

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교재로 구조화 된 훈련과 교육을 받아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으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사회적 역할 강화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준비활동, 스포츠, 요리 활동 및 지역시설 이용 활동 등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 또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도 높은 비율을 보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장애인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 있어서도 보호자 역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기관에 대한 분석에 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은 일정 규모의 조건을 갖춘 공간과 편의시설 및 다양한 전문 인력, 체계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이 같은 기관에서 받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을 구성하고 눈높이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의 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37%의 부모가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 그 이유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응답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접근의 모색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다른 질문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수집을 한 경우 어떤 경로로 정보를 수집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장애인부모 당사자및 단체와의 교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족, 이웃, 친구,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과의 소통, 인터넷, SNS, 인터넷 홈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들 매체를 통한 센터와 프로그램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감수성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홍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존의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합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를 확인한 결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의 부족이 가장 어려움이고 다음으로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호자의 눈으로 볼 때 보다 장애 자녀를 위한 다양하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의 제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경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볼 수 있다. 이들 응답자들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 결과 만족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점에 만족도가 높았고 교, 강사의 전문성 역시 높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 보다 이해가 쉽고, 참여가 가능하며 어떤 이유로도 소외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의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의지를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복지적 차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준비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있어 장애 감수성과 친화력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보호자가 고려하는 최우선 사항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이어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운영진의 친절도,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거리, 프로그램 실시기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는 1, 2, 3 순위에서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지목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적 기량이나 교육의 내용과 함께 얼마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장애 친화적인 교육을 제공하는가가 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일곱째, 의정부형 방문형 교·강사의 양성 및 보급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선사항으로는 1순위로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양성과정 이수자) 및 심리상담사, 운동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의 방문형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장 높은 욕구를 나타내었다. 이어서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지원, 각종 보

조공학기기의 지원, 센터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의 편의시설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향후 과제로서 교, 강사의 훈련을 통해 센터로 내원하는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재가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문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관련 분야에서 효과성 입증 연구가 진행 중인 시각발달 중복장애인 방문 인지운동 프로그램(시각발달장애인 인지운동 프로그램)¹²⁾과 같은 다양한 방문 지원 프로그램 사례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보완하여 보호자와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덟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에 있어 개별화, 생애주기별, 장애특성별 맞춤형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호자가 생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1순위로는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2순위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 및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장애 관련 본 연구의 문헌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와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 개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당사자는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관련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복지적 패러다임의 철학과 가치 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센터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장애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정부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욕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의 마련을 위해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를 함께 실시 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프로그램명 : 「시각발달장애인 인지운동 프로그램」
 : 이화선×김선희×오나래(2018)는 신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도록 공간적, 시간적, 강도적인 요인을 이용하여 신체기능과 인지능력을 증진하는 인지운동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시각 주의력과 운동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6세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설계는 개별 실험 연구(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중 A-B 설계를 사용하였고, 기초선 A는 4회기, 중재기 B는 8회기였다. 기초선 기간에는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40분간 실시하였고, 중재기간에는 인지운동치료를 40분 동안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운동능력과 시각 주의력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성과와 한계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의정부시 권역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본 연구는 8명의 연구진 이외에 14명의 설문지 개발을 위한 외부 자문, 그리고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행되어 진행되었다.

셋째,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된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회의 간담회(FGI)를 통한 질적 조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양적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슈와 숨은 의미를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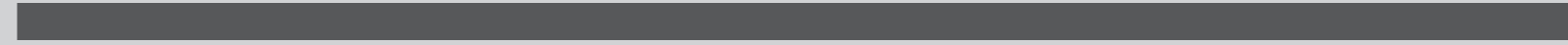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여 비확률표집방법인 유의표집을 진행하였기에,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전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이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경험이 없거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까지 조사가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한정된 기간의 연구 및 코로나 19로 인해 설문조사자의 역량강화교육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조사 응답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전수조사나 군집표집의 확률표집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적조사 연구이기에 설문조사자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이해와 설문방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 수시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은숙·신혜정·엄미란·임정임·정선영(2021). 뉴노말, 초연결, 플랫폼시대의 평생교육론, 서울: 동문사.
- 강진숙·심향은·김성동·이은혜(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육과정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제24권 제1호, pp. 65~92.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2019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아람도자, pp. 7-8.
- 관계부처 합동(1997.12.11).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03.02.19).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08.08.06). 제3차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2.12.07.).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3-2017).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관계부처 합동(2018.03.05.).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
- 관계부처 합동(2018),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 광명시·서울대학교(2021).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도시증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 교육부(2018),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 (2018~202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교육부(2019).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방안('20~'22).
- 교육부(2021). 장애인평생교육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설명회 자료집.
-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19). “2019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기초문해교육 영역-”.
-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 지역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주)대원인쇄.
-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2021). 지역기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주)대원인쇄.
- 국립특수교육원(2021). <http://www.nise.go.kr/>(2021.11.05. 검색)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1.03.23.). 제 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제 및 민간위원 위촉. 보도자료.

박사혁(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국내 연구동향 분석-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희(2020). “사회 실생활 도구로의 발달장애 학생 스마트폰 활용 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0-11 25(11):255-262.

송순태(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소개. 제 27권 제4호. 대한재활의학 회지.

안인숙·안덕근·남영란·한정은(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발 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제6권 제1호 pp. 117-149.

양주연(2020). 발달장애인 가정의 가족건강성 영향요인 분석.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우영중(2006). 발달장애의 개념과 소아과 의사의 역할. 대한소아과학회, 49(10), 1031-1036.

울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2021). “팬데믹 시대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

의정부시, 2021년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 계획 발표(국명수, 시사 복지신문. 2021.01.06.).

이병화·이미영·최유일(2018), “경기도 장애인복지 계획(2021~2023) 수립 연구”, 경 기복지재단

이복실·박주영·이윤희(2013).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 장애인개발원.

이지수(2019). 장애인 평생교육의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전북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 연구, 25(1), 55~83.

이하영·임경원(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 1998년부터 2018 년까지” 평생교육학연구, Vol.25, No.3 pp. 1-28.

이화선, 김선희, & 오나래. (2018). 인지운동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시지각 능력과 운 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신경인지재활치료학회지 제, 10(1). Shephard R. Aerobic Fitness and Health. Windsor, ON: Human Kinetics; 1994.

임경미·김선자·김소윤·이석진·임정임(2019). 세계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문해교육 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말벗.

주영하·박미진(2020). 국내외 발달장애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 구, Vol. 6. No. 1. pp. 93-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017.1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및 정책제안 토론회. 참고자료.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2020).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 1급, 경기 성남: (학)신 구학원신구문화사, pp. 58-63.

한민정·강영심·옥혜숙(2020). “발달장애성인의 취업과 연계된 화훼중심 직업교육 사 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 59, No. 3, pp. 65~93.

Ashburner, J., Ziviani, J. & Rodger, S.(2010). Surviving in the mainstream: Capacity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o perform academically and regulate their emotions and behavior at school.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4(1), 18-27.

Elder, L. M., Caterino, L. C., Chao, J., Shacknai, D., & De Simone, G.(2006). The efficacy of social skills treatment for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Education & Treatment of Children, 29(4). 635-663.

Kanner, L(1943).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 Nervous Child, (2), 217-250.

<http://www.broso.or.kr/contents.do?menuId=0502000000>(2021.10.16 검색),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202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875>(2021.11.05. 검색), FN투데이(2021).

<http://www.gongo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3(2021.11.8. 검색), e-나라지표(2021).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https://blog.naver.com/osan_si/222127879895(2021.11.05 검색), 오산시 블로그(2020).

<https://www.breaknews.com/791775>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로 선정(장선희, 브레이크뉴스. 2021.03.12.).

<http://www.easy-read.or.kr/> 알기쉬운 자료개발센터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2021.11.4. 검색), e-나라지표(2021). 장애인현황.

<https://www.law.go.kr>(2021.10.16.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센터(2021).

<https://www.moleg.go.kr>, 법제처(2021.10.25.검색)

https://www.ui4u.go.kr(2021.10.16 검색),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검색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4043100060 의정부시청 농성 발달장애 부모해 산...시장 제안 방안 수용(최재훈, 연합뉴스, 2018.10.14.).

부록1. 설문지(장애인 당사자용)

ID				-			
----	--	--	--	---	--	--	--

조사자	
-----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장애인 당사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에서는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다 나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설문자료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권리를 제공하는 '알기쉬운 자료개발센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 주관기관 :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 연구기관 :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 연구책임 : 정용충 교수
- 조사 관련 문의 : 010-4310-9757

1. 000님이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십니까?¹³⁾

항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기초문해교육(글자공부·책 읽기 활동)	○	△	X
 시민참여교육(자립생활체험활동)	○	△	X
 직업능력향상교육(직업준비활동)	○	△	X
 문화예술교육(스포츠활동)	○	△	X
 문화예술교육(미술·만들기활동)	○	△	X

항목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문화예술교육(노래·합창활동)	○	△	X
 문화예술교육(악기·합주활동)	○	△	X
 문화예술교육(요리활동)	○	△	X
 시민참여교육(봉사활동)	○	△	X
 시민참여교육(지역시설이용활동)	○	△	X

13) 알기쉬운 자료개발센터 <http://www.easy-read.or.kr/>

A 응답자 기본 정보

1. 000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000님 연령은 ? 만 ()세
3. 000님 의정부시 거주 지역은? ()
①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능1동, 흥선동, 녹양동)
②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③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④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⑤ 의정부시 외 지역->조사중단
4. 000님의 주된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③ 뇌병변장애
5. 000님은 선택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
- ④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⑦ 지체장애인시설 ⑧ 지적장애인시설 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⑩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⑪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⑫ 시각장애인시설
- ⑬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⑭ 한국수어 통역센터 ⑮ 점자도서관
- ⑯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⑰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⑲ 장애인 수련시설 ⑳ 장애인체육관

■평생교육원■

- ㉑ 초·중등학교 부설 ㉒ 대학(원) 부설 ㉓ 사업장 부설 ㉔ 언론기관 부설
- ㉕ 지식·인력개발 부설 ㉖ 시민사회단체 부설 ㉗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 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㉙ 평생학습관(원) ㉚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㉛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㉜ 주간활동서비스 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㉞ 시민사회단체 ㉟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 ㊱ 문화예술체육시설 ㊲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㊳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
- ㊴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㊵ 학원 ㊶ 기타()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2. 설문지(장애인 보호자용)

ID											조사자	
----	--	--	--	--	--	--	--	--	--	--	-----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장애인 보호자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에서는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다 나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 근거 : 「평생교육법」 제18조·제19조 : 평생교육 통계조사·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업무)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 주관기관 :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 연구기관 :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 연구책임 : 정용충 교수
- 조사 관련 문의 : 010-4310-9757

※ 보호자(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시설 종사자 등)가 조사도구에 응답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에 V표 해 주십시오.

- 귀하는 000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형제·자매 ④ 그 밖의 친인척 ⑤ 기관/시설 종사자
 ⑥ 장애인활동지원사 ⑦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 귀하는 000님과 주1일 이상 같이 살고 계십니까? ()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같이 살고 있지 않다
-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 귀하의 연령은? 만 ()세

A 자녀의 기본 정보

- 000님 자녀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 000님 자녀의 연령은? ()
 ① 만 20세 미만 ② 만 20~29세 ③ 만 30~39세 ④ 만 40~49세 ⑤ 만 50~59세
 ⑥ 만 60세 이상
- 000님 자녀의 의정부시 거주 지역은? ()
 ① 흥선권역(의정부1동, 가남1동, 흥선동, 녹양동)
 ② 호원권역(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③ 송산권역(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④ 신곡권역(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⑤ 의정부시 외 지역 → 조사중단
- 000님 자녀의 장애 등록은 언제 하셨습니까? ()년도
- 000님 자녀의 주된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지적장애 ② 자폐성장애 ③ 뇌병변장애
- 000님 자녀는 중복장애가 있습니까? ()
 ① 있다 7번 문항으로 ② 없다 8번 문항으로
- 000님 자녀의 중복장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체장애 ② 청각장애 ③ 시각장애 ④ 언어장애 ⑤ 지적장애 ⑥ 안면장애
 ⑦ 정신장애 ⑧ 신장장애 ⑨ 심장장애 ⑩ 뇌병변장애 ⑪ 자폐성장애
 ⑫ 호흡기장애 ⑬ 간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전 시점(2019년 6월)에 000님 자녀의 장애등급은? ()
 ① 1~3급 ② 4~6급 ③ 2019년 7월 이후 등록
- 000님 자녀의 주거형태는? () ※ 세부 문항 □ 체크
 ① 자택 □ 가족동거 □ 독거
 ②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③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 000님 자녀의 혼인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 000님 자녀에 해당하는 부분은? ()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 없음
- 000님 자녀의 최종 학력은? () ※ 일반·특수학교의 경우 □ 체크
 ① 무학 ② 일반학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③ 특수학교(□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전공과)
 ④ 전문대학교 ⑤ 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⑦ 기타(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 현재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휴학(유예) 중인 경우 작성바랍니다.

- 현재 000님 자녀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⑤ 잘 적응하고 있다
- 000님 자녀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까? ()
 ① 매우 싫어함 ② 싫어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좋아하는 편임 ⑤ 매우 좋아함
- 000님 자녀는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 학교에 다니는 것이 000님 자녀의 학습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⑤ 큰 도움이 된다

17. 000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꺾임표

- ① 심한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심해져서 학교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짐
- ② 장애인 당사자(자녀)가 다니기 싫어함
- ③ 학교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수업내용이나 수준이 장애인 당사자(자녀)에게 적절하지 않음
- ⑤ 학교에 보내기기 위한 시간적으로 어려움
- ⑥ 발달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
- ⑦ 등하교 하기(교통수단 이용 등)가 불편함
- ⑧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등에 대한 지원(편의제공 등)이 부족
- ⑨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장애로 인한 따돌림 등
-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 ⑪ 특별히 없음

18. 000님 자녀의 졸업 이후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

- ① 상급학교 진학(전공과 포함) ② 취업 ③ 취업 관련 훈련 또는 교육 참여
- ④ 취업 이외 훈련 또는 교육 참여 ⑤ 가정 내 생활 ⑥ 보호시설 입소
- ⑦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 자녀가 무학, 초·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 작성바랍니다.

19. 000님 자녀가 초·중·고 과정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 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심한 장애로 인해서, 장애가 심해져서 ② 장애인 당사자가 다니기 싫어해서
- ③ 학교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④ 근처에 갈만한 학교가 없어서
- ⑤ 근처에 학교는 있어도 등하교하기(교통수단 이용 등)가 불편해서
- ⑥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등에 대한 지원(보조인력, 편의제공 등)이 없거나 미비해서
- ⑦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장애로 인한 따돌림 등 때문에
- ⑧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20. 학교에 다녔던 것이 000님 자녀의 학습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③ 그저 그랬다
- ④ 도움이 된 편이다 ⑤ 큰 도움이 되었다

B 자녀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1. 000님 자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3번 문항으로 ② 없다 ⇨ 2번 문항 이후 7번 문항으로

2. 000님 자녀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꺾임표

- ①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②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 ④ 시간이 없어서
- ⑤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⑥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 ⑦ 비장애인과 통합교육이 불편해서 ⑧ 인원 초과로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 ⑨ 가까운 거리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⑩ 이동불편 및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 ⑪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3. 000님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은 무엇인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 ② 다른 사회활동을 할 곳이 없음
- ③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④ 기초문자 이해 교육(한글, 산수 등)
- ⑤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
- ⑥ 동아리 모임 등 사회 참여 활동 기회 확대
- ⑦ 취업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술 습득
- ⑧ 취미활동 및 여가선용 ⑨ 가족 및 자녀교육에 도움
- ⑩ 대인관계 형성 ⑪ 자격증 취득
- ⑫ 졸업 학위 수료증 취득 ⑬ 학력보완(검정고시 준비)
- ⑭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4. 000님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5번 문항으로 ② 없다 ⇨ 6번 문항으로

5. 000님 자녀가 중도에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꺾임표

- ① 교육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강사, 프로그램 등)
- ② 교육시설(편의시설 등)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 ③ 학습비가 너무 비싸서(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 ④ 계속 참여할 자신이 없거나 싫어서 ⑤ 건강상의 이유로
- ⑥ 직장 업무로 시간이 부족해서 ⑦ 거리가 멀어서(이동이 어려워서)
- ⑧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6. 000님 자녀가 최근 2년간(2019년 10월 1일 ~ 현재) 주로 이용한 평생교육 기관은 어디입니까? ※ 꺾임표 ()

■ 장애인복지시설 ■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
- ④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⑦ 지체장애인시설 ⑧ 지적장애인시설 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⑩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⑪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⑫ 시각장애인시설
- ⑬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⑭ 한국수어 통역센터 ⑮ 점자도서관
- ⑯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⑰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⑲ 장애인 수련시설 ⑳ 장애인체육관

■ 평생교육원 ■

- ㉠ 초·중등학교 부설 ㉡ 대학(원) 부설 ㉢ 사업장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인력개발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 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㉕ 평생학습관(원) ㉖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㉗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㉘ 주간활동서비스 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㉚ 시민사회단체 ㉛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 ㉜ 문화예술체육시설 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㉞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
- ㉟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㊱ 학원 ㊲ 기타()

7. 000님은 자녀의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 ※ **꺾 꺾**

- ① 가족, 이웃, 친구 ② 직장동료 및 상사
- ③ 시청,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④ 장애부모당사자 및 단체
- ⑤ 일자리 안내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전화 상담 및 직접 방문
- ⑥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센터, 복지관, 사회단체 등)의 전화 상담 및 방문
- ⑦ 인터넷, SNS, 홈페이지 등 ⑧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전단 광고 등)
- ⑨ 인쇄매체(책, 잡지 등) ⑩ 기타 ()

8. 000님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 ② 자가용(개인 자동차)
- ③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④ 시설의 제공차량
- ⑤ 도보 ⑥ 기타 ()

9. 000님 자녀의 교육비는 주로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

- ① 본인 ② 본인의 가족 ③ 본인의 친구 또는 이웃
- ④ 본인이 가입한(소속된) 단체 ⑤ 본인의 직장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⑦ 기타 (작성바랍니다)

10. 000님 자녀가 최근 2년간(2019년 10월 1일 ~ 현재) 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었습니까? () ※ **꺾 꺾**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 읽고 쓰기, 수 계산 등)
- ② 학력보완교육(학점은행제, 강사, 독학사 등)
- ③ 직업능력향상교육(기초작업능력, 직장예절, 직업준비, 자격증 취득 등)
- ④ 문화예술교육(요리, 난타, 노래, 영화, 전시회, 스포츠, 여행 등)
- ⑤ 인문교양교육(독서, 자기관리 능력(위생, 질병 예방),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등)
- ⑥ 시민참여교육(투표 참여, 봉사활동, 자기결정기술, 인권교육 등)
- ⑦ 기타 (프로그램명:)

11. 000님은 자녀가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C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보호자 요구

1. 000님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느꼈던 만족스러운 점은? ()

※ **꺾 꺾**

- ① 교·강사 전문성 ② 프로그램의 전문성 ③ 수강인원
- ④ 프로그램의 다양성 ⑤ 프로그램 수업시간 ⑥ 프로그램 운영 시간
- ⑦ 수강료 ⑧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
- ⑨ 교육장소와의 이동거리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

2. 000님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느꼈던 어려운 점은? ()

※ **꺾 꺾**

- ① 기관/시설에서의 거부 ② 프로그램 수업시간 부족 ③ 경제적 부담
- ④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⑤ 프로그램 홍보 부족
- ⑥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움(건강, 직업 등) ⑦ 교육장소 거리
- ⑧ 장애를 고려한 지원(정당한 편의제공)이 부족 ⑨ 편의시설 부족
-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

3. 000님 자녀는 최근 2년간(2019년 10월 1일 ~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변화가 있었습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000님 자녀는 최근 2년간(2019년 10월 1일 ~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신체적 건강 측면의 도움					
정신적 건강, 심리적 만족에서의 도움					
지식습득, 교양향상 등 자기계발 측면에서의 도움					
취업, 이직, 창업 등의 측면에서 도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대인관계(동호회, 각종 모임 등) 증진 측면에서의 도움					

5. 000님은 자녀가 주로 참여했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담당 강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①, ②, ③번 응답 ⇨ 7번 문항으로 / ④, ⑤ 번 응답 ⇨ 6번 문항으로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 000님의 강사 만족 측면은 무엇입니까? () ※ **꺾임**

- ①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②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③ 쉽게 설명한다.
 ④ 적절한 교재·교구를 사용한다. ⑤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⑥ 좋은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⑦ 배려가 있다.
 ⑧ 문제 발생 시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⑨ 즉시 피드백을 해준다.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 _____)

7. 000님은 참여했던 기관의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 ①, ②, ③번 응답 ⇨ 9번 문항으로 / ④, ⑤ 번 응답 ⇨ 8번 문항으로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8. 000님의 프로그램 담당자 만족 측면은 무엇입니까? () ※ **꺾임**

- ① 친절하다. ② 의사소통이 잘 된다. ③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④ 프로그램 정보를 잘 안내한다. ⑤ 건의 사항을 잘 반영한다.
 ⑥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
 ⑦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⑧ 기타 (_____)

9. 000님은 자녀가 계속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000님은 자녀가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

※ 중복 응답, 세부 문항 체크

- ① 기초문해교육
 한글문해프로그램(한글교실(초급, 중급), 문해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등)
 한글생활문해프로그램(고급 문해반, 컴퓨터문해교육반, 한글작문교실, 한글 응용교육 등)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스스로 학교, 신변자립교육, 지역사회적응교육, 자립생활지원교육 등)
 ②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중입검정고시반, 초등학력인증강좌, 초등교과연계강좌 등)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수능준비반 등)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학점은행제강좌, 독학사강좌, 대학비학점강좌 등)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의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업적응훈련, 직장예절교육 등)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직업기능교육, 직종훈련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기능대회준비교육 등)
 자격인증 프로그램(컴퓨터 등 자격취득과정, 지도자양성과정 등)

④ 문화예술교육

- 여가스포츠 프로그램(레저스포츠강좌, 생활스포츠강좌, 스포츠예술활동, 건강스포츠강좌 등)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노래교실, 난타교실, 미술활동, 사진교실, 도예교실 등)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악기교실, 합창교실, 영상미디어교실, 체력단련교실 등)

⑤ 인문교양교육

- 사회소양 프로그램(정보화교육, 생활요리, 역할교육 등)
 인문학적교양 프로그램(시낭송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인문학·철학강좌, 건강강좌 등)

⑥ 시민참여교육

- 시민의식 프로그램(장애인권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권교육, 장애인 기자단 등)
 시민역량 프로그램(방문강사 양성과정,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등)
 시민활동 프로그램(지역나눔활동, 봉사활동동아리 등)

⑦ 기타 (프로그램명: _____)

11. 000님은 선택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이용하기를 희망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장애인복지시설 ■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
 ④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⑦ 지체장애인시설 ⑧ 지적장애인시설 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⑩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⑪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⑫ 시각장애인시설
 ⑬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⑭ 한국수어 통역센터 ⑮ 점자도서관
 ⑯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⑰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⑲ 장애인 수련시설 ⑳ 장애인체육관

■ 평생교육원 ■

- ㉠ 초·중등학교 부설 ㉡ 대학(원) 부설 ㉢ 사업장 부설 ㉣ 언론기관 부설
 ㉤ 지식·인력개발 부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 기타 평생교육시설 ■

-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학습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주간활동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시민사회단체 ㉮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 문화예술체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
 ㉼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 학원 ㉾ 기타(_____)

12. 000님은 자녀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

- ① 1주일 5회(평일 기준 매일) ② 1주일 3회 ~ 4회(평일 기준)
 ③ 1주일 1회 ~ 3회(평일 기준) ④ 1개월 1회 ~ 2회(평일 기준)
 ⑤ 주말 ⑥ 기타 (작성바랍니다. _____)

13. 000님이 선택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좌 시간(1회당)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시간 이상 ② 3시간 ~ 4시간 ③ 2시간 ~ 3시간 ④ 1시간 ~ 2시간
 ⑤ 30분 ~ 1시간 ⑥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4. 000님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가족 돌봄의 어려움의 완화하기 위하여
 ②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풍요로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④ 배운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⑥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서
 ⑦ 일상생활이나 직업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⑧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⑨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5. 000님이 자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적 ②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③ 프로그램 운영진의 친절도 ④ 프로그램 실시 기간(횟수, 시간)
 ⑤ 프로그램 교육비 ⑥ 평생교육기관의 시설·설비
 ⑦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⑧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
 ⑨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⑩ 평생교육 참여에 필요한 수어, 점자 등 의사소통 지원
 ⑪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6. 000님이 생각하시기에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충 ② 교육비 감액(지원확대)
 ③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확보 ④ 기관/시설의 안내 및 지원
 ⑤ 전문성을 갖춘 강사 채용 ⑥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⑦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확대 ⑧ 상담 지원, 멘토(동료 장애인) 지원
 ⑨ 사회참여 기회 제공(체험학습, 현장견학 등)
 ⑩ 발달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마련 ⑪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기관 설립
 ⑫ 평생교육을 위한 안내/지원해주는 전문 도움 확대(평생교육사 등)
 ⑬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등)
 ⑭ 접근성 및 이동권의 보장 ⑮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7. 000님이 생각하시기에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②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③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자막 등)
 ④ 방문형 평생교육강사(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양성과정 이수자) 지원
 ⑤ 전문인력(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운동재활사 등) 지원
 ⑥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⑦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⑧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⑨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8. 000님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①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④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⑤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⑥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⑦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⑧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⑨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⑪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⑫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⑭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19. 000님이 생각하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으면 이면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3. 설문지(장애인평생교육기관)

ID				-			
----	--	--	--	---	--	--	--

조사자	
-----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에서는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보다 나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 근거 : 「평생교육법」 제18조·제19조 : 평생교육 통계조사·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업무)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 주관기관 :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 연구기관 :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 연구책임 : 정용충 교수
- 조사 관련 문의 : 010-4310-9757

A 응답자 정보

1. 응답자 성명 :
2. 직책(직위) :
3. 연락처 : (휴대폰) (내선번호)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 : ()년 ()개월
5.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
① 담당하고 있다 ② 담당하고 있지 않다

B 기관 현황

6. 기관명 :
7. 시설 유형 : ()
①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신고 된 시설
②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시설
8. 운영주체 및 방식 : ()
① 국가·지자체 ② 법인 또는 단체 ③ 개인 ④ 기타(_____)
9. 법인 또는 단체 형태 : ()
① 사회복지법인 ② 학교법인 ③ 사단법인 ④ 재단법인 ⑤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
⑥ 종교시설 ⑦ 영리법인 ⑧ 협동조합 ⑨ 사회적기업 ⑩ 기타(_____)
10. 건물 소유 형태 : ()
① 공공소유 ② 법인소유 ③ 개인소유 ④ 임차 ⑤ 위탁 ⑥ 무상 임대
⑦ 기타(_____)
11. 평생교육시설 등록 현황 : ()
① 평생교육기관 등록기관 ② 평생학습관(원) 지정기관
③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④ 일자리 또는 직업능력개발 지정기관
⑦ 기타(_____)

12. 기관 운영 관리 평가 형태(중복 응답 가능) ()

- ① 자체평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③ 민간기관 위탁 평가 ④ 없음

13. 운영 지역 유형 : ()

- ① 도시지역 ② 도·농 복합 지역 ③ 농·산·어촌 지역

14. 기관 주소 :

15. 대표 전화 :

16. 홈페이지 : ()

- ① 있음(주소:http://)
- ② 기타()
- ③ 없음

C 기관 규모

17. 전체 직원 수 : 남자()명, 여자()명, 전체()명

18. 전체 직원 중 해당자격 보유자

- ① 사회복지사 ()명
- ② 평생교육사 ()명
- ③ 특수교사 ()명
- ④ 간호사 ()명
- ⑤ 물리 ()명
- ⑥ 작업치료사 ()명
- ⑦ 언어재활사 ()명
- ⑧ 수어통역사 ()명
- ⑨ 장애인 재활상담사 ()명
- ⑩ 청소년지도사 ()명
- ⑪ 청소년상담사 ()명
- ⑫ 장애인활동지원사 ()명
- ⑬ 기타 업무관련 민간자격증 ()명

19. 직원 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명
- ② 전문대학 졸업 ()명
- ③ 대학교 졸업 ()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명
- ⑤ 기타 ()명

20. 직원 연령

- ① 만 20대 ()명
- ② 만 30대 ()명
- ③ 만 40대 ()명
- ④ 만 50대 ()명
- ⑤ 만 50대 ()명
- ⑥ 만 60대 이상 ()명

21. 직원 경력(장애인 분야 경력)

- ① 1년 미만 ()명
- ② 1년이상~3년미만 ()명
- ③ 3년이상~5년미만 ()명
- ④ 5년이상~7년 미만 ()명
- ④ 7년이상~10년 미만 ()명
- ⑥ 10년이상 ()명

22. 직원 고용 형태

- ① 정규직 ()명
- ② 비정규직 ()명

23. 총 학습자 수 : 1개 프로그램 평균 참여 인원 ()명
연간 총 학습자 수(실인원) ()명

24. 학습자 연령

- ① 만 20세 미만 ()명
- ② 만 20~29세 ()명
- ③ 만 30~39세 ()명
- ④ 만 40~49세 ()명
- ⑤ 만 50~59세 ()명
- ⑥ 만 60세 이상 ()명

25. 이동지원, 학습지원, 근로지원, 활동지원 등 보조(지원) 인력 수

- ① 남 ()명
- ② 여 ()명
- ③ 전체 ()명

26. 강의실 보유여부 ()

- ① 있음(강의실 개)
- ② 없음

27. 기관 시설면적 : ()m / 강의실 포함 기관 내 전체 시설(건물) 면적기준

D 편의시설 설치 현황

28. 매개시설 (중복응답 가능) ()
 ① 주 출입구 접근로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③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29. 내부시설 (중복응답 가능) ()
 ① 출입구(문) ② 복도 ③ 계단 또는 승강기
30. 위생시설 (중복응답 가능) ()
 ① 화장실 대변기 ② 화장실 소변기 ③ 화장실 세면대 ④ 욕실 ⑤ 샤워실, 탈의실
31. 안내시설 (중복응답 가능) ()
 ① 점자블록 ② 유도 및 안내설비 ③ 경보 및 피난시설
32. 그 밖의 시설 (중복응답 가능) ()
 ① 객실 침실 ② 관람석/열람석 ③ 접수대/작업대 ④ 매표소/판매기/음료대
 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33. 귀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
 ④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⑦ 지체장애인시설 ⑧ 지적장애인시설 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⑩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⑪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⑫ 시각장애인시설
 ⑬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⑭ 한국수어 통역센터 ⑮ 점자도서관
 ⑯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⑰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⑲ 장애인 수련시설 ⑳ 장애인체육관

■평생교육원■

- ㉑ 초·중등학교 부설 ㉒ 대학(원) 부설 ㉓ 사업장 부설 ㉔ 언론기관 부설
 ㉕ 지식·인력개발 부설 ㉖ 시민사회단체 부설 ㉗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 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㉙ 평생학습관(원) ㉚ 장애인평생교육시설
 ㉛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㉜ 주간활동서비스 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㉞ 시민사회단체 ㉟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㊱ 문화예술체육시설 ㊲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㊳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
 ㊴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㊵ 학원 ㊶ 기타()

E 장애인학습자 현황

※ 다음은 귀 기관 장애인학습자의 장애유형별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연간 실인원 수).

장애유형	34. 학습자 수			35. 장애정도		36. 연령대 (만으로 작성바랍니다)					
	남	여	전체	경증	중증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 이상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기타 ()장애											

37. 장애인학습자가 최근 1년간(2019년 1월 1일 ~ 현재)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이었습니까?(중복응답 가능/아래 프로그램 유평 표 참조)
 ()
 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④ 시민참여교육
 ⑤ 인문교양교육 ⑥ 문화예술교육 ⑦ 기타(프로그램명: _____)

F 계약된 교·강사 현황

※ 다음은 귀 기관에 계약된 교·강사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기준).

38. 계약된 교·강사 수(발달장애인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강사 포함)
 ① 1년미만 / 남자()명, 여자()명, 전체()명
 ② 1년이상 / 남자()명, 여자()명, 전체()명
39.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명
 ② 전문대학 졸업()명
 ③ 대학교 졸업 ()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명
 ⑤ 기타 ()명

40. 연령

- ① 20대()명
- ② 30대()명
- ③ 40대()명
- ④ 50대()명
- ⑤ 60대 이상()명

41. 강사료(시간당)

- ① 최고액()원
- ② 최저액()원
- ③ 평균()원

42. 연수 실시 유무 ()

- ① 실시(실시 주기 : 연 회 / 연 시간)
- ② 미실시

43. 프로그램 운영여부(기준 : 2019년 1월1일 ~ 현재) ()

- ① 있음(조사 진행)
- ② 없음(조사 종료)

※ 44번~55번은 귀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다음 페이지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2019년 1월 1일~현재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

구분	44. 프로그램 분야	45. 프로그램 명	46. 프로그램 목적	47. 교육시수	48. 교육기간	49. 수강인원
예시	①	한글쓰기 프로그램	장애인이 한글을 쓸 수 있도록 도움	10시간	③	15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7				시간		
8				시간		
9				시간		
10				시간		

구분	50. 주요대상	51. 평균 수강료(월)	52. 재정지원	53. 운영 형태	54. 교·강사 자격	55. 운영만족도
예시	②	50,000원	④	①	00교육사, 00기관	④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6		원				
7		원				
8		원				
9		원				
10		원				

→ 작성항목이 추가될 경우, 표의 행을 추가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44.	프로그램 분야	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④ 문화예술교육 ⑤ 인문교양교육 ⑥ 시민참여교육 ⑦ 기타
45.	프로그램 명	정확한 프로그램명 기입- 유사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간, 대상, 강사가 다른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간주
46.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운영 목적을 간략히 기술
47.	교육사수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 시 총 교육시간 수 입력(시간) 교육사수 계산 방법: (프로그램 운영 주간 수, 예: 10주) × (주당 수업횟수, 예: 1회) × (1회당 수업시간, 예: 1시간)=10시간
48.	수업기간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⑤ 1년 이상~3년 미만 ⑥ 3년 이상
49.	수강인원	해당 프로그램 총 수강인원의 실인원 작성 (2회 이상 운영된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작성)
50.	주요대상 (중복응답)	① 지체장애 ② 청각장애 ③ 시각장애 ④ 언어장애 ⑤ 지적장애 ⑥ 안면장애 ⑦ 정신장애 ⑧ 신장장애 ⑨ 심장장애 ⑩ 뇌병변장애 ⑪ 자폐성장애 ⑫ 호흡기장애 ⑬ 간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51.	월평균 수강료	① 무료 ② 유료(원) (예 : 3개월에 수강료 1번 납부, 6개월에 수강료 1회 납부일 경우 1개월 치료 환산해 작성)
52.	재정지원 (중복응답)	① 지원 없음 ② 국고 지원 ③ 교육청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 ⑤ 운영비 ⑥ 기타 지원
53.	프로그램 운영 형태	① 자체운영 ② 위탁운영 ③ 병행운영
54.	교·강사 요구 자격	강의 시 요구된 교·강사 자격증 명칭/유형 제시
55.	운영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만족도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제시)

56. 귀 기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자체 개발 ② 위탁 개발 ③ 국가 및 공공기관 개발 프로그램 활용
④ 국내 개발 프로그램 활용 ⑤ 해외 개발 프로그램 활용 ⑥ 기타 ()

57. 귀 기관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장애인 학습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인터넷(유튜브, 개인방송 포함) ② 스마트폰 ③ 비대면 화상 방식
④ AI형 전자게시판 ⑤ 신문, 잡지 ⑥ TV, 라디오 ⑦ 전단지, 리플렛
⑧ 포스터, 현수막 ⑨ 소식지 ⑩ 개인 소개 ⑪ 문자 또는 이메일
⑫ 기관/게시판 ⑬ 특별한 방법 없음 ⑭ 기타 ()

58. 현재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발달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① 연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수 ()개
② 발달장애인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수 ()개

59.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교육장소 및 시설 ② 강사의 전문성 ③ 운영진의 친절성 ④ 저렴한 수강료
⑤ 프로그램 운영 시간 ⑥ 프로그램 내용 (흥미, 유익성 등)
⑦ 편의 제공(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수어 등) ⑧ 평생교육기관까지의 이동 거리
⑨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⑩ 기타 ()

60. 귀 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받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지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 지원내용 :
- 지원기관(예: 자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원 등) :

61. 귀 기관에서 현재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교재·교구(보조공학 기기 포함)는 무엇이며, 필요한 교재·교구는 무엇입니까?
- 현재 확보된 교재·교구 :
- 필요한 교재·교구 :

62. 귀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후, 장애인을 위한 교육평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래 문항으로)
②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래 문항으로)
③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71번 문항으로)

※ 귀 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63. 저장형태 ()
① 수기형태 기록 ② 컴퓨터 파일 저장 ③ 웹 데이터베이스 ④기타()

64. 기록기간 ()
① 정기적 (☐ 일 ☐ 주 ☐ 월 ☐ 년) ② 비정기적

65. 내용형식 ()
① 정해진 형식 있음 ② 정해진 형식 없음

66. 관리자 및 내부회의 검토 여부 ()
① 관리자 및 내부검토 있음 (☐ 정기적 ☐ 비정기적) ② 관리자 및 내부검토 없음

67. 외부전문가 검토여부 ()
① 외부전문가 검토 있음 (☐ 정기적 ☐ 비정기적) ② 외부전문가 검토 없음

68. 수강자 평가 여부 ()
① 수강자 평가 있음 (☐ 정기적 ☐ 비정기적) ② 수강자 평가 없음

69. 보관 주기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년 이상

70. 귀 기관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요청 시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십니까?
(예: 전문상담인력이 있음, 직원 중 홍보책자와 설명으로 안내, 추후 연계기관을 통해 안내 등)
()

71. 귀 기관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인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72번 문항으로) ② 없다(☞ 74번 문항으로)

72. 귀 기관에서 장애인 지원인력이 있다면, 어떤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인력유형(예: 활동지원사 등) :
- 배치인력수 :
- 업무내용 :

73. 지원인력은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치됩니까?
()

74. 귀 기관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운영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부족 ② 장애인 특성을 인지하는 전문 강사 확보
- ③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 ④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부족
- 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배려 부족 ⑥ 교육장소의 접근성
- ⑦ 업무 전산화 시스템 부족 ⑧ 예산 확보 ⑨ 편의제공 확보
- ⑩ 자체 교육공간 확보 ⑪ 기타 ()

75. 귀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인 학습자에게 다음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구분	해당 없음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① 각종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②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③ 정보접근 지원 (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④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⑤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⑥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 (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⑧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⑥

76. 귀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관리자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교육 강화 ②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강사 확보
-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 기회 확대 ④ 업무인력 확보(상담, 홍보 등)
- ⑤ 프로그램 홍보 강화 ⑥ 운영 예산 증액 ⑦ 업무 전산화 시스템 강화
- ⑧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 확충 ⑨ 교육장소의 접근성 ⑩ 교재 및 교구 확충
- ⑪ 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⑫ 기타 ()

77. 현재 「평생교육법」에 의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지속해서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유치 및 개발·운영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 ① 계획이 있다 (☞ 78번 문항으로)
- ② 고려 중이다 (☞ 78번 문항으로)
- ③ 계획하지 않고 있다 (☞ 79번 문항으로)

78. 계획이 있거나 고려 중이라면, 귀 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영역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기초문해교육 ② 학력보완교육 ③ 직업능력향상교육
- ④ 문화예술교육 ⑤ 인문교양교육 ⑥ 시민참여교육 ⑦ 기타()

79. 귀 기관에서 추후 장애인을 위해 확충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 ②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 ③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 ④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 ⑤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 ⑥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⑦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 ⑧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 ⑨ 기타 ()

8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 ①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 ③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④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 ⑤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 ⑥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 ⑦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⑧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 ⑨ 방문형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⑩ 장애인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⑪ 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 ⑫ 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 ⑬ 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 ⑭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81. 의정부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4. 설문지(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ID				-			
----	--	--	--	---	--	--	--

조사자	
-----	--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에서는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및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보다 나은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 근거 : 「평생교육법」 제18조·제19조 : 평생교육 통계조사·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업무)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 주관기관 :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 연구기관 :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 연구책임 : 정용충 교수
- 조사 관련 문의 : 010-4310-9757

A 응답자 정보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
① 만 20~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59세 ⑤ 만 6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3년제 이하)
③ 대학교(4년제 이상)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전공분야는? ()
① 사회복지
② 특수교육
③ 교육학(평생교육 포함)
④ 그 외 장애 관련 분야
⑤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5. 귀하의 경력은?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경력 : ____년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 경력 : ____년
6. 귀하의 보유자격증은?()
① 사회복지사(____급) ② 평생교육사(____급) ③ 특수교사 ④ 상담사
⑤ 치료사(____치료사) ⑥ 청소년지도사 ⑦ 장애인재활상담사
⑧ 기타 민간자격증 (작성바랍니다_____)
7. 귀하의 자격증 취득기관은?(중복응답 가능) ()
① 대학 또는 대학원 ② 학점은행기관 ③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④ 평생교육원 또는 시민사회단체 ⑤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8. 귀하의 근로·고용 형태는?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기타

9. 귀하가 소속된 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

■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 ③ 장애인 근로사업장
- ④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⑦ 지체장애인시설 ⑧ 지적장애인시설 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⑩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⑪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⑫ 시각장애인시설
- ⑬ 청각·언어장애인시설 ⑭ 한국수어 통역센터 ⑮ 점자도서관
- ⑯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⑰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⑱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⑲ 장애인 수련시설 ⑳ 장애인체육관

■평생교육원■

- ㉑ 초·중등학교 부설 ㉒ 대학(원) 부설 ㉓ 사업장 부설 ㉔ 언론기관 부설
- ㉕ 지식·인력개발 부설 ㉖ 시민사회단체 부설 ㉗ 장애부모당사자단체 부설

■기타 평생교육시설■

- 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㉙ 평생학습관(원) ㉚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㉛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㉜ 주간활동서비스 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㉞ 시민사회단체 ㉟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주민자치센터 등)
- ㊱ 문화예술체육시설 ㊲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㊳ 원격형태 평생교육제도
- ㊴ 학점은행제 등 평생교육제도 ㊵ 학원 ㊶ 기타()

B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1. 귀하의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 ②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 ⑤ 매우 보장되고 있다

2. 2016년 「평생교육법」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포함된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증가
-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 ③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④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 확대
- ⑦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확대
- ⑧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확대
- 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충
- ⑩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3.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가능하면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4. 귀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강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5 문항으로) ② 없다(☞ C 문항으로)

5. 발달장애인의 수강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보조인력, 활동지원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 ② 발달장애정도가 심해서
- ③ 다른 학습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 ④ 프로그램 강사가 원하지 않아서
- ⑤ 발달장애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없어서
- ⑥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C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1. 귀하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②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 ③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평가·컨설팅
- ⑤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⑥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2. 귀하는 장애 관련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3번 문항으로) ② 없다(☞ 5 문항으로)

3. 있다면 장애 관련 교육 또는 연수 경험 정보는?

- 교육 또는 연수 제공기관 ()
- 주제(교육 또는 연수 제목) ()
- 교육 또는 연수 시간 ()

4 교육 또는 연수 만족 수준은? ()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5 귀하가 소속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근무환경(업무내용, 업무량, 근로시간 쾌적한 공간 등)					
동료 관계(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등)					
임금/복리후생(임금, 복리후생, 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					
인사(채용 합리성, 승진 공정성, 보직 적절성, 업무평가 적절성)					
자기개발(자기발전 교육 기회, 조직 비전, 성취도 등)					

D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
- ① 시설(기관) 지원 확대
 - ② 사회적 인식 개선
 - ③ 임금수준 향상
 - ④ 조직화
 - ⑤ 전문성 향상
 - ⑥ 근무환경 개선
 - ⑦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2. 귀하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로 어떤 어려움이었습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부족
- ③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 ④ 과중한 업무 부담 / 다른 업무와의 중복
- 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
- ⑥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 ⑦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비 부족
- ⑧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전문성 부족
- ⑨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 ⑩ 강사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 ⑪ 업무피드백/슈퍼비전 기능 미비
- ⑫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종사자의 부족
- 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부족
- 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부족
- ⑮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의 협소한 공간
- ⑯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휴게실 등 편의공간 부족
- 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 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 또는 교구의 부족
- ⑲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의 부족
- ⑳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3.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각종 보조공학기기(학습보조기기, 보장구, 보조기기) 지원
- ②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AAC 의사소통도구 지원, 그림교환 의사소통도구 지원, 앱을 활용한 지원, 몸짓언어 지원 등)
- ③ 정보접근 지원(점자자료, 확대자료, 텍스트파일, 음성자료, 수어, 자막 등)
- ④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지원(전화, SNS 활용, 홈페이지 활용 정보 제공 등)
- ⑤ 장애인 평생학습 자료 제공
- ⑥ 이동 지원(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등)
- ⑦ 전문인력(평생교육전문가, 전문상담원 등) 지원
- ⑧ 보조인력(학습도우미, 활동지원사 등) 지원
- ⑨ 기타 (작성바랍니다_____)

4.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②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확보
-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④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 상담
- 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 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 ⑦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 배치
- ⑧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
- ⑨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⑩ 발달장애인 학습동아리 확산 및 활성화
- ⑪ 발달장애인 편의 제공 및 편의시설 구축
- ⑫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법령 제·개정
- ⑬ 기타 (작성바랍니다 _____)

5.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개선을 위해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욕구조사 종합보고서

저 자 책임교수 정용충 외
감 수 의정부시평생학습원장 송원찬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 이경재
발 행 2021년 12월 20일
인 쇄 2021년 12월 26일
발 행 인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
(11675)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65

비매품 / 무료



발 행 처 KCF153교육복지연구소 박 선 희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9
전 화 031-829-0153
팩 스 031-829-0154
홈 페이지 <https://kcf153.modoo.at/>

ISBN 979-11-967800-6-7
부가기호 93370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재를 금합니다.